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 25-15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25. 12.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서원선(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고은정(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임수정(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겸임교수)
이진영(다양성공감교육센터 대표)
신동희(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연구팀 연구원)

연구지원

심연숙(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장애인식개선팀 과장)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발간사

장애에 대한 인식은 한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사회는 제도와 환경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여전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데 있어 문화와 예술은 제도적 접근을 보완하는 강력한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말과 규범을 넘어 감정과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공연과 전시, 창작 활동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장애를 설명하거나 설득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이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이끄는 과정으로 확장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본 연구보고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되어 온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참여자와 수행기관, 장애예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의 본래 목적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 전달 방식, 성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일회성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예술인의 참여가 단순한 출연에 그치지 않고 창작 활동과 자립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교육 참여자가 장애를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 설계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현장에서 교육을 기획·운영하는 실무자에게는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되고, 정책을 설계하는 관계자에게는 방향성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의 힘을 바탕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장애에 대한 공감이 일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연구진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 경 혜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목 차

연구요약 ····· i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문헌조사 ····· 2
   1)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 관련 문헌 ····· 2
   2)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및 평가 사례 ····· 3
3. 연구내용 ····· 8
4. 연구방법 ····· 8
5. 연구 과정 도식 ····· 9

Ⅱ. 국내외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특징 및 장애 예술가 지원 정책 ····· 10

1. 국내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례 ····· 10
   1)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 10
   2) 국내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사례 ····· 18
2.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규정한 해외 법률 및 규정 ····· 22
   1)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및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의 비차별 개념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 22
   2) 영국 보건케어법(Health and Care Act 2022) 및 올리버맥거윈행동규범(Oliver McGowan Code of Practice)에 따른 의무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23
   3) 유럽연합(EU) Regulation (EU) No 181/2011 (버스·코치 승객 권리 규정)에 의한 의무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24
3. 해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사례 ····· 25
   1) 예술 속 장애(Disability in the Arts) ····· 25
   2) 8가지 장애인식 아이들을 위한 아트 프로젝트(8 Disabilities Awareness Art Projects for Kids) ····· 28
   3) 일리노이주 허니콤 프로젝트(Honeycomb Project)의 트레스 프리다스 프로젝트(Tres Fridas Project) ····· 29
4. 국내 장애 예술가를 위한 정책 및 지원 사례 ····· 30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련 법률 및 제도 ····· 30

2)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및 사례 ····· 32
5. 해외 장애 예술가를 위한 지원 정책 ····· 34
1) 미국의 장애 예술가를 위한 추가 보장 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34
2) 장애 예술가를 위한 장애인 퓨처스 펠로우십(Disability Futures Fellowship) ····· 36
3)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예술 접근성 ····· 38

Ⅲ.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관계자의 사업 참여 경험 : 포커스 그룹인터뷰 및 심층인터뷰 ····· 39

1. 조사개요 ····· 39
1) 연구 방법 ····· 39
2) 자료수집 및 연구참여자 ····· 39
3) 자료 분석 ····· 45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 45
2. 조사 결과 ····· 46
1)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의 의미와 효과 ····· 47
2)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수행의 어려움 ····· 63
3) 수행 기관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개선 방안 ····· 76
3. 소결 ····· 103

Ⅳ.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 107

1. 조사개요 ····· 107
1) 연구방법 ····· 107
2) 조사의 목적 ····· 107
3) 조사 대상 ····· 107
4) 자료수집 ····· 111
5) 자료 분석 ····· 112
2. 분석 결과 ····· 113
1)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과정의 충실성 ····· 113
2)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성과 ····· 117
3)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만족도 ····· 121
4)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의 어려움 ····· 125
5)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분석 ····· 126
6)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 ····· 131
3. 소결 ····· 134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Ⅴ.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델파이조사 ····· 136

1. 조사개요 ····· 136
1) 조사목적 및 절차 ····· 136
2) 델파이 전문가 패널 구성 ····· 137
3) 델파이 조사를 위한 평가지표(안) 개발 ····· 137
4) 자료분석 방법 ····· 140
2. 조사 결과 ····· 141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41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51

Ⅵ.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 방향 ····· 157

1.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기관 성과 중심 운영 체계 ····· 157
1) 성과 중심 운영의 필요성 ····· 157
2) 성과 중심 운영의 개념 ····· 158
3) 교육 실시에 대한 모니터링 ····· 162
4) 사후 관리 및 운영 ····· 164
2.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장기 추진 과제 ····· 170
1)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홍보 강화 ····· 170
2) 정량적 수치 중심의 수행기관 실적 평가 개선 ····· 171
3. 기타 ····· 173
1) 의무교육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필요 ····· 173
2) 의무교육기관 종사자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 174

참고문헌 ····· 175

[부록]

1. 포커스 그룹인터뷰 및 심층인터뷰 질문지 ····· 177
2. 설문조사표 ····· 183
3. 델파이 조사지 ····· 191

표목차

〈표 Ⅰ-1〉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심사표 ····· 4
〈표 Ⅰ-2〉 한국장애인개발원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대상자 심사 기준표 ····· 5
〈표 Ⅰ-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심사기준(일반) ····· 6
〈표 Ⅰ-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 지정 심사표(문화체험형) ····· 7
〈표 Ⅰ-5〉 연구 과정 도식 ····· 9
〈표 Ⅱ-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근거 ····· 10
〈표 Ⅱ-2〉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방법 ····· 12
〈표 Ⅱ-3〉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방법 ····· 13
〈표 Ⅱ-4〉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운영 절차 ····· 13
〈표 Ⅱ-5〉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프로그램 현황 ('22년~'25년) ····· 14
〈표 Ⅱ-6〉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 특별과정 ····· 18
〈표 Ⅱ-7〉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방법 ····· 18
〈표 Ⅱ-8〉 2025년 문화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기관 ····· 19
〈표 Ⅱ-9〉 버먼트주 예술 속 장애 ····· 26
〈표 Ⅱ-10〉 버지니아주 8가지 장애인식 아이들을 위한 아트 프로젝트 ····· 28
〈표 Ⅱ-11〉 일리노이주 트레스 프리다스 프로젝트 ····· 29
〈표 Ⅱ-12〉 장애예술인의 정의 ····· 31
〈표 Ⅱ-13〉 미국 장애 예술가를 위한 SSI 지원 ····· 35
〈표 Ⅲ-1〉 포커스그룹인터뷰 및 심층인터뷰 질문지 구성 ····· 40
〈표 Ⅲ-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43
〈표 Ⅲ-3〉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운영 및 참여 경험의 주제 ····· 46
〈표 Ⅳ-1-1〉 응답자 일반적 특성 ····· 108
〈표 Ⅳ-1-2〉 기관 유형 ····· 109
〈표 Ⅳ-1-3〉 장애인식개선교육 참여유형별 현황 ····· 110
〈표 Ⅳ-1-4〉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설문지구성 ····· 112
〈표 Ⅳ-2-1〉 주요 요인별 운영과정 평균비교 ····· 114
〈표 Ⅳ-2-2〉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계획단계의 충실성에 대한 담당자 인식 ····· 115
〈표 Ⅳ-2-3〉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투입단계의 충실성에 대한 담당자 인식 ····· 116
〈표 Ⅳ-2-4〉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행단계의 충실성에 대한 담당자 인식 ····· 117
〈표 Ⅳ-2-5〉 주요 요인별 운영성과 평균비교 ····· 119
〈표 Ⅳ-2-6〉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결과에 대한 담당자 인식 ····· 120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Ⅳ-2-7〉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영향에 대한 담당자 인식 ····· 121
〈표 Ⅳ-2-8〉 주요 요인별 만족도 평균비교 ····· 122
〈표 Ⅳ-2-9〉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만족도에 대한 응답자 인식 ····· 124
〈표 Ⅳ-2-10〉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계획 ····· 125
〈표 Ⅳ-2-11〉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의 어려움 ····· 126
〈표 Ⅳ-2-12〉 운영 과정, 운영 성과 간 상관관계 ····· 127
〈표 Ⅳ-2-13〉 운영과정: 계획, 투입, 실행의 충실성이 운영 결과에 미치는 영향 ····· 128
〈표 Ⅳ-2-14〉 운영과정: 계획, 투입, 실행의 충실성이 교육의 영향에 미치는 영향 ····· 129
〈표 Ⅳ-2-15〉 운영과정: 계획, 투입, 실행의 충실성이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130
〈표 Ⅴ-1〉 델파이 조사 전문가 패널 구성 ····· 137
〈표 Ⅴ-2〉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A지표) 초안 ····· 138
〈표 Ⅴ-3〉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평가지표(B지표) 초안 ····· 139
〈표 Ⅴ-4〉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A지표) ····· 142
〈표 Ⅴ-5〉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B지표) ····· 144
〈표 Ⅴ-6〉 1차 델파이 조사 질적 조사 결과 ····· 146
〈표 Ⅴ-7〉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표 조정 내용(A지표) ····· 147
〈표 Ⅴ-8〉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표 조정 내용(B지표) ····· 149
〈표 Ⅴ-9〉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A지표) ····· 151
〈표 Ⅴ-10〉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B지표) ····· 153
〈표 Ⅴ-11〉 2차 델파이 조사 질적 조사 결과 ····· 154
〈표 Ⅴ-12〉 최종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지표' ····· 155
〈표 Ⅴ-13〉 최종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교육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지표' ····· 156
〈표 Ⅵ-1〉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 방향 ····· 157
〈표 Ⅵ-2〉 초기 진입 단계 교육기관 선정 지표 초안 ····· 160
〈표 Ⅵ-3〉 성장 단계 교육기관 평가 지표 초안 ····· 161
〈표 Ⅵ-4〉 체크리스트 모니터링 지표안 초안 ····· 163
〈표 Ⅵ-5〉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기관 지정 지표 초안 ····· 166
〈표 Ⅵ-6〉 교육 콘텐츠 품질 인증 지표 초안 ····· 170

그림목차

[그림 Ⅱ-1]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2025년 사업수행기관 예시) ····· 17
[그림 Ⅱ-2] '인클루시브 아우름' 체험교육 교재 ····· 19
[그림 Ⅱ-3]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가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하트해피스쿨' ····· 20
[그림 Ⅱ-4]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하트하트오케스트라' ····· 21
[그림 Ⅱ-5] 장애인 예술단 '어울림'의 공연 ····· 22
[그림 Ⅴ-1]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절차 ····· 136
[그림 Ⅴ-2] 델파이 조사 문항 내용 타당도 비율(CVR) 공식 ····· 141
[그림 Ⅴ-3] 델파이 조사 문항 내용 타당도 비율(CVR) 공식 ····· 141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연구요약

Ⅰ. 서론

○ 장애인식개선이란 범국민 장애이해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행정기관 교육기관 일반기관 등의 국민 직원 학생 등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 여러 현장의 장애통합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을 말함.

○ 국민의 올바른 장애인식의 조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며 긍정적인 장애인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장애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면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25조 제25조의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2 등임. 체계적 종합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부정적인 인식 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법적 근거에 의한 교육내용으로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등이 있음. 교육방법으로는 집합 교육과 원격 교육 등이 있음.

○ 특히, 중증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확산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중증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정서적 공감과 인식전환 효과를 이끌어냄. 장애인식개선 효과 증대와 중증장애예술인의 자립지원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문화예술 활동 특색에 따라 교육콘텐츠를 기획함. 교육콘텐츠는 중증장애예술인 당사자의 직접메시지를 포함함.

○ 기존 전통적인 집합형 강의식 장애인식개선교육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각화 필요성 인식에서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영상동화 및 고전설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경우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함이 발견되었음.

○ 202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수행기관이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운영해왔음. 그러나 단년도 공모 방식과 성과관리 체계의 부재로 교육의 지속성과 효과검증이 어려운 상황임.

○ 제도적 기반과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중증장애예술인의 참여가 단기간에 그치는 사례가 많으며, 문화예술 활동이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연계가 미흡함. 교육사업과 자립지원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운영기관의 지원체계와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1. 연구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조사함.
○ 첫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현황을 분석함.
- 국내외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중증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의 제도적 구조 추진 흐름 법령 기반 등을 분석함.
- 유사 사업 사례를 통해 본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과 시사점을 도출함.
- 수행기관의 조직 구조 운영방식 프로그램 구성 예산 인력운용 등 지원체계 등을 분석함.
- 단년도 공모 구조에 따른 지속성 저하 수행기관 운영 기반의 미비로 인한 운영상의 한계를 진단함.

○ 둘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함.
- 교육 참여자의 반응 태도 변화 참여 지속성 등 정성적 요소 중심의 효과성을 분석함.
- 프로그램 유형별 공연형 체험형 등 성과특성을 검토하고 중증장애예술인의 자립 연계 가능성 및 제약 요인도 함께 검토함.

○ 셋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 교육 기관의 평가기준 설계 및 활용방안을 모색함.
- 수행기관의 운영역량 자원 구성 교육 품질 자립 연계 노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혼합형 평가기준 운영기관 기준표를 설계함.
- 공모 선정 사후 평가 기관 컨설팅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활용방안을 제시함.

○ 넷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분석 결과를 종합해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공모 구조 개선 수행기관 육성 전략 지정기관 편입 등 자립 연계형 프로그램 설계 등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설계함.

2.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함.
○ 첫째, 문헌조사 및 정책분석을 실시함.
- 국내외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중증장애예술인 지원 정책과 제도를 문헌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함.

○ 둘째, 개별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를 실시함.
- 장애예술인 기획자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고 자립 연계 실태와 제도 개선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FGI를 병행함.

○ 셋째, 전문가 자문 및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평가기준 설계 정책 실효성 실행 전략 검토 등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평가 항목과 정책 전략 합의 도출을 위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또한 수행기관의 역량 운영 특성 자립 연계수준 등을 반영한 혼합형 평가기준을 구성하고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 넷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설계를 실시함.
○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공모구조 개선 수행기관 육성 자립 연계형 프로그램 설계 등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운영모델을 도출함.

II. 국내외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특징 및 장애 예술가 지원 정책

1. 국내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례

1)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1)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근거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다양한 교육방식 중 하나의 유형으로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체험 감상을 통한 인식개선에 특화된 교육 방법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 및 제25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2)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문화예술 체험, 연주, 연극, 전시 등과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접목한 교육방식임.
○ 기존의 전통적인 강의형 교육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효과를 높이는데 특화된 접근법임.
○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을 접목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도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양한 교육 진행 방식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음.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수행기관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교육을 원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서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대상 기관은 매년 새롭게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으로서 오케스트라 앙상블, 연극, 공연, 전시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신청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수행기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일정을 협의하여 1회 1시간 이상의 대면 교육을 실시하게 됨.
○ 다만 사업수행기관 별로 연간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횟수가 제한되어 있음.

(3)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 특별과정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 특히 2021년 제3기 전문강사 양성 과정의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 특별과정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스포츠, 미디어 등에 특기를 가진 전문강사를 양성함.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이 전문강사로 위촉되기도 하였음.

2) 국내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사례

(1)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문화예술 공연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결합한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문화체험형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음.

○ 공단에서 지정한 장애 전문 예술기관에서 1시간 이상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오케스트라 앙상블 뮤지컬 연극 공연 미술 전시 분야를 실시함.
○ 공단에서는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

(2)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및 하트해피스쿨 장애인식개선교육 (하트-하트재단)

○ 하트-하트재단은 장애인 예술단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장애인식개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 그림공모건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및 콘텐츠 제작 발달장애인 유튜버 양성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 하트-하트재단의 장애인식개선센터는 발달장애에 특화된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발달장애인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오고 있음.
○ 하트-하트재단 장애이해교육 하트해피스쿨은 발달장애인 강사가 진행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으로 문화예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진행됨.
○ 발달장애인 강사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 악기 연주와 강의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식개선을 이끌어냄.
○ 발달장애인 전문강사가 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며 다양한 연령층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제고하고 있음.

(3) 장애인 예술단 어울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세종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여 예술단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 창출 및 장애인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 예술단 어울림은 2022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창단되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임.
○ 7인 24년 기준의 성인 중증 장애인 단원 모두 직원으로 고용되어 정식 출근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 다양한 장애유형 자폐성 지적 등을 가진 단원들이 다양한 악기 피아노 엘렉톤 해금 오카리나 등을 연주하거나 노래 민요 등을 부르며 예술공연이 진행됨.
○ 학교와 외부 기관을 방문하여 학생 시민 교육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40회 이상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공연도 병행하고 있음.

2.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규정한 해외 법률 및 규정

1) 미국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및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의 비차별 개념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는 고용 공공 서비스 공공 편의 시설 이용 통신 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임.
○ ADA는 장애인 차별 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임.
○ 공식 연방 법령과 공공 문건에서는 의무적 인식교육이라는 문구 또는 해당 취지의 조항은 없음.
○ 그러나 ADA는 차별 금지 동등한 기회 보장 합리적 편의 제공 등 구조적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 차별 금지를 내포하고 있음.
○ 일부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시민단체 또는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장애인 인식교육이나 다양성 인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 미국 노동부 내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ODEP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 및 고용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기구임.
○ ODEP는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 개발 우수 관행 확산 기술지원 자료 보급 고용주 및 사업주 지원 등을 수행함.
○ ODEP는 의무 교육이라기보다는 자율적 또는 정책적으로 장애인 포용과 인식 개선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도구 자료 리소스를 제공함.
○ 미국에서 장애인식교육은 법이 요구하는 필수 요소라기보다는 사회적 책임 다양성 정책 기업 기관의 자율 실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는 ADA의 고용 관련 조항을 집행하는 연방 기관임.
○ ADA의 고용 규정은 타이틀 I이며 EEOC는 해당 규정의 집행 조사 권한 구제 조치 착수 해석 지침과 기술 지원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함.
○ EEOC는 기술 지원 문서와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고용주와 구직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안내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2) 영국 보건케어법 Health and Care Act 2022 및 올리버맥거원행동규범 Oliver McGowan Code of Practice에 따른 의무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2022년 7월 1일부터 영국에서는 보건 및 성인 사회돌봄 영역에서 등록된 제공자들이 소속 직원들에게 학습장애 및 자폐성에 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적용되었음.
○ 해당 법률의 요구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행지침을 제시하는 문서는 Oliver McGowan Code of Practice임.
○ 이 코드는 2025년 9월 최종 확정되었음.
○ 본 규정은 병원 요양시설 일반 의원 보건소 치과 행정직원 등 건강 돌봄 제공 서비스에 등록된 모든 기관과 그 소속 직원에게 적용됨.
○ 영국에서는 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품질위원회 Care Quality Commission CQC에 등록해야 함.
○ CQC에 등록된 제공자는 소속 직원이 역할에 적합한 수준의 학습장애 및 자폐성 훈련을 받도록 보장해야 함.
○ Code를 따르지 않을 경우 CQC는 대안이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훈련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3) 유럽연합 Regulation EU No 181 2011 버스 코치 승객 권리 규정에 의한 의무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Regulation EU No 181 2011은 EU 내 버스 또는 코치로 운송되는 승객의 권리를 규정한 법적 수단임.
○ 본 규정은 장애인 및 이동성 제한 승객의 비차별 동등한 수송 기회 무상 지원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권리 체계를 제시함.
○ 제16조 Training 조항은 운송사업자 및 터미널 운영 주체에게 장애인 관련 교육 절차 수립과 직원 훈련 제공을 의무화함.
○ 장애인 또는 이동성 제한 승객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직원과 운전기사를 포함한 모든 승객 대면 직원이 대상임.
○ 이는 일부 전문 인력에 국한되지 않고 승객과 만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원이 대상임.
○ 훈련은 장애인식훈련과 장애지원훈련의 두 부분으로 구분됨.

3. 해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사례

1) 예술 속 장애(Disability in the Arts)

○ 버몬트주 자립생활위원회(Vermont Statewide Independent Living Council, SILC)는 버몬트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옹호하고 장려하는 단체임.
○ 장애인의 자립생활 장벽 제거, 서비스 강화, 버몬트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함(Vermont Statewide Independent Living Council, 2025).
○ SILC는 예술 속 장애(Disability in the Arts) 수업을 통해 장애 예술가의 활동을 활용한 장애인식개선을 추진함.
○ 장애 예술가의 삶과 작품을 탐구하며 창의성, 감각적 경험, 능력과 장애를 연계함.
○ 학생들은 장애 예술가 관련 도서를 포함한 예술과 장애 주제의 작품을 이해하고 직접 접함으로써 장애 예술가에 대한 인식 개선 기회를 가짐.
○ 장애인에 의한 예술 프로젝트, 감각 활동, 접근성을 강조하는 미술 전시회 준비 과정에 참여함.
○ 젊은 장애 예술가들이 시각예술, 음악, 춤, 글쓰기, 연극 분야에서 새로운 작품과 창의적 표현 방식을 창작하고 있음.
○ 장애 예술가들이 웹사이트, 블로그, 커뮤니티 공간에서 창작 및 공연 활동을 공유함.

2) 8가지 장애인식 아이들을 위한 아트 프로젝트(8 Disabilities Awareness Art Projects for Kids)

○ 버지니아주 RQS 프로덕션 주식회사(RQS Productions Inc.)는 만화와 영화를 활용한 8가지 장애인식 아트 프로젝트를 운영함.
○ 장애와 관련된 그림 튜토리얼, 그림 프로젝트 아이디어, 기타 창의적 미술 활동을 제공함.
○ 초등학생 대상 단계별 미술 수업을 제공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인쇄 도서 외에도 스케치 및 비디오 다이어그램을 포함한 다수의 드로잉 웹사이트를 제공함.
○ 장애 캐릭터를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기 방법을 교육함.
○ 장애 캐릭터는 기존 영화 및 TV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일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다양한 장애 캐릭터가 등장하고 있음.

3) 일리노이주 허니콤 프로젝트(Honeycomb Project)의 트레스 프리다스 프로젝트(Tres Fridas Project)

○ 허니콤 프로젝트는 시카고에 소재한 자선단체로 크리스티나 로웬스타인이 공동 설립하고 운영함. 캐서린 타넨이 공동 창립자로 참여함.
○ 가족 단위 자원봉사를 통해 도시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임.
○ 아이들과 가족이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학습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감, 사회적 인식, 시민 행동 촉진을 핵심 목표로 함.
○ 가족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강하고 연결된 커뮤니티 구축을 지향함.
○ 매주 수백 명의 아이와 부모가 참여하여 시카고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함(Honeycomb Project, 2025).
○ 50개 이상의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2011년부터 주거 불안, 환경 보호, 지역사회 건강 등 주요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함.
○ 예술 기반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인 트레스 프리다스 프로젝트를 운영함(Honeycomb Project, 2025).

4. 국내 장애 예술가를 위한 정책 및 지원 사례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련 법률 및 제도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예술인 정의

○ 한국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장애예술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2022년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함.
○ 장애예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예술 창작을 삶의 본질적 활동으로 인식하는 사람으로 정의됨(장선녀 등, 2024).
○ 고용 여부나 협회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예술인으로 인정받거나 인정 가능함.
○ 관련 법에서는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 중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종사자로 정의함(장선녀 등, 2024).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 장애예술인지원법 제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함.
○ 장애예술인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2024년 조사 결과, 창작 활동은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접근성 문제가 확인됨.
○ 최근 3년간 평균 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는 16.8회임.
○ 장애 유형은 청각/언어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많으며, 활동 분야는 서양음악, 방송연예, 사진 순으로 나타남.
○ 전업 예술인 비율은 50.4%이나 연평균 수입 500만 원 이하가 76.2%로 경제적 취약성이 확인됨.
○ 문화시설 내 활동 가능 응답은 57.7%에 그쳤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이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남.

2)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및 사례

(1)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안정적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모사업임.
○ 전문 창작활동, 일상 예술활동, 예비 장애예술인, 장애예술단체, 장애·비장애 협력 활동을 통합 지원함. 총 11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장애예술인, 장애예술단체, 예비 예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접근성 확대와 문화향유권 보장을 주요 목표로 함.
○ 2025년 기준 총 6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함.

(2) 시설 및 공간 지원: 모두미술공간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 모두미술공간을 운영함.
○ 전시·공연·창작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열린 공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전시 및 교육사업을 추진함.
○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에 우선 대관과 대관료 할인 혜택을 제공함.
○ 협력 사업과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함.

(3)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서울문화재단)

○ 장애예술인 및 단체 발굴과 지원을 중심으로 창작활성화지원 사업을 운영함.
○ 예술적 성장과 안정적인 장애예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함.
○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창작활동지원금을 지원함.
○ 정액 300만 원의 창작활동비를 별도로 제공함.

5. 해외 장애 예술가를 위한 지원 정책

1) 미국의 장애 예술가를 위한 추가 보장 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추가 보장 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은 특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예술가에게 매월 제공되는 현금 서비스임.
○ SSI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연방 프로그램임.
○ 예술가의 경우 미술품 판매로 인한 소득이 재산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미술품 판매로 인한 소득은 SSI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25년 장애인의 월 SSI 최대 금액은 967달러임. 해당 금액은 연방 최대 수혜율에 해당함.
○ 실제 수령 금액은 장애 예술가의 소득, 생활 상황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최대 금액보다 낮을 수 있음(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25).
○ SSI 산정 시 월 총 수입이 핵심 기준이 됨. 매월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의 처음 65달러는 총액에서 공제하며, 공제 후 남은 금액의 절반을 추가로 공제함.
○ 장애 예술가가 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총 금액을 조사함.
○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예술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지출을 공제함.
○ 예술 용품, 종이 등 생산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재산을 산정함.
○ 이러한 공제 가능한 비용을 소득 획득 비용(expenses of obtaining income)이라고 함.

2) 장애 예술가를 위한 장애인 퓨처스 펠로우십(Disability Futures Fellowship)

○ 장애인 퓨처스 펠로우십(Disability Futures Fellowship)은 포드 재단과 앤드류 W. 멜론 재단이 자금을 지원하는 펠로우십임.
○ 미국 예술가들이 주관하는 중장기 지원 계획임.
○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창의적인 장애 예술가들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장애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포드 재단과 멜론 재단은 문화 분야 내 장애 예술가 부족 문제를 지적함.

○ 장애인 실무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전문성 개발 기회 부족을 문제로 제시함.
○ 장애 예술가의 고유한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 국가 보조금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함.
○ 예술과 문화,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영화 분야 전반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 장애 예술가들은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렌즈를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함.
○ 장애를 가진 예술가 및 예술 실무자들은 역사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환경에 놓여 있었음.
○ 특히 여성,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장애 예술가는 복합적인 불평등 환경에 직면할 수 있음.
○ 본 펠로우십은 장애 주도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전반의 발전을 촉진함.
○ 장애 예술가의 작업에 대한 추가적이고 교차적인 지원을 촉진함(Ford Foundation, 2025).

3)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예술 접근성

○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은 1965년 설립된 미국 연방 정부의 독립 기관임.
○ 예술 활동과 우수한 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과 펀드를 제공함.
○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개인과 단체가 프로그램과 시설을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함.
○ 장애인이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과 연결되도록 지원함.
○ NEA 접근성 사무소는 장애인, 노인, 참전용사, 기관 거주자의 예술 접근을 지원하는 부서임.
○ 예술 기금 활용과 접근성 관련 기술 지원을 제공함.
○ 접근성 사무소는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25).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Ⅲ.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관계자의 사업 참여 경험: 포커스 그룹인터뷰 및 심층인터뷰

1. 조사개요

1) 연구 방법

○ 본 절에서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관계자들의 사업 운영, 교육 기획 및 참여 경험을 풍부하게 탐색함으로써 교육 사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중증 장애인 문화예술 강사의 자립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질적연구를 수행함.
○ 이를 위해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먼저 수행함.
○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장애 비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in depth interview)를 수행함.
○ 본 연구에서 FGI와 심층인터뷰를 차례로 적용한 것은 데이터 출처를 삼각화하여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상황에 부합하는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는 상호보완적인 자료수집 방법임(Kaplowitz & Hoehn, 2001; Lambert & Loiselle, 2008).
○ 연구 질문은 책임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가 질문 초안을 작성하고 상호 검증 후 구조화함.
○ 구조화된 연구 질문은 사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전달함.
○ 수집된 자료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공통의 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분석함.
○ 이를 위해 일반적 질적연구(Generic Qualitative Research)의 주제 분석을 수행함.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FGI 참여자는 2025년도 사업 수행 기관 7개소 및 2년 이상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 2개소의 주 사업 담당자임.
○ 포커스그룹은 참여자 간 원활한 상호작용과 경험 공유가 가능하도록 구성함.
○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 참여 경험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세 개의 그룹을 구성함.
○ 포커스그룹 구성은 지속 참여기관 5개소 5인, 신규 참여기관 2개소 2인, 이전 참여기관 2개소 3인으로 총 9개소 10명임.
○ FGI는 2025년 7월 중 온라인 줌을 활용하여 진행함.
○ 각 그룹당 인터뷰 소요 시간은 150분 내외였음.

○ FGI 참여자 소속기관 중 2개소는 장애인복지관이었음. 7개소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었음.
○ 참여자 10명 중 여성 비율은 80퍼센트였음. 참여자 전원은 비장애인이었음.
○ 해당 기관 근무 경력은 최소 2년에서 최대 16년 8개월까지 분포되어 있었음.
○ 장애인복지관 소속 참여자를 제외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참여자 7명은 모두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를 직접 수행하고 있었음.
○ 해당 참여자의 강의 경력은 2년에서 7년 3개월로 보고되었음.
○ 이 중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증을 보유한 참여자는 5명이었음.
○ 심층인터뷰 참여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참여 경험 파악을 위하여 2025년도 사업 수행기관 7개소 참여자로 제한함.
○ 일부 수행기관은 본 사업에 과거 참여 경험이 있었음. 자료 수집 시 경험의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2025년도 이전 사업 참여 경험도 포함됨.
○ 사업 수행기관 대표자 또는 담당자로부터 연구 주제에 적합한 참여자를 추천받는 세평적 사례 선택 방법을 활용함.
○ 참여자는 지역적 특성, 사업 참여 기간, 장애 여부 및 유형, 문화예술 활동 분야를 고려하여 선정함.
○ 2025년 8월 중 참여자별 각 1회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 각 인터뷰의 소요 시간은 90분 내외였음. 심층인터뷰는 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함.
○ 의사소통 방식의 특성, 참여자의 의사 및 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진행 방식을 조정함.
○ 사전 서면 인터뷰 후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음.
○ 기관 방문을 통한 대면 인터뷰 및 온라인 줌 활용 방식도 병행함.
○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 담당자가 배석하여 수어 통역 및 설명을 지원함.
○ 일부 인터뷰는 일대일이 아닌 다대일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심층인터뷰 참여자는 모두 예술인이었음.
○ 장애 예술인 3명과 비장애 예술인 4명으로 총 7명이 참여함.
○ 참여자 중 여성은 3명 남성은 4명이었음.
○ 근속기간은 1년 7개월에서 15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음.
○ 비장애 예술인 중 2명은 직접 공연에 참여하지 않고 기획 사업 운영 장애 예술인 훈련을 담당하고 있었음.
○ 그 외 참여자는 모두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진행되는 공연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음.
○ 참여자 전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

〈표 Ⅲ-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대	장애	소속	지역	직위	근속기간 (강의경력)	자격증	사업 내 역할	비고	
참여자1	F	50대	비장애	A문화예술단체	비수도권	사무국장	7년3개월 (7년3개월)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사회복지사	사업 담당	포커스그룹인터뷰	이전 참여 기관
참여자2	F	30대	비장애	B장애인복지관	수도권	팀장	11년	사회복지사	사업 지원		
참여자3	F	30대	비장애			팀장	4년 4개월	사회복지사	사업 담당		
참여자4	M	30대	비장애	C문화예술단체	비수도권	대표	5년 6개월 (6년)	발달재활/음악치료사	기관(대표)		지속 참여 기관
참여자5	F	50대	비장애	D비영리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비수도권	대표	8년 2개월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사회복지사	기관(대표)		
참여자6	F	30대	비장애	E문화예술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비수도권	팀장	4년 8개월 (4년)	보육교사/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사업 담당		
참여자7	F	50대	비장애	F문화예술단체 (사회적기업)	비수도권	상임이사	16년 7개월 (5년 6개월)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발달재활/유아교사	사업 담당		
참여자8	F	40대	비장애	G문화예술단체	비수도권	팀장	12년 4개월 (2년 1개월)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사회복지사	사업 담당		
참여자9	F	30대	비장애	H문화예술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비수도권	대표	2년 1개월 (2년)	장애인평생교육강사	기관(대표)		신규 참여 기관
참여자10	M	30대	비장애	I장애인복지관	수도권	팀장	10년	사회복지사	사업 지원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참여자	성별	연령대	장애	소속	지역	직위	근속기간 (강의경력)	자격증	사업 내 역할	비고
참여자11	M	40대	발달장애	G문화예술단체	비수도권	예술인	10년 이상	-	교육-공연 (마술, 연주 등)	심층 인터뷰
참여자12	F	20대	비장애	G문화예술단체	비수도권	팀장	1년 7개월	- (공연예술경영 전공)	사업 기획/ 교육-공연 (연주)	
참여자13	M	20대	청각장애	H문화예술단체	수도권	예술인	3년	사회복지사	교육-공연 (연기)	
참여자14	M	30대	비장애	H문화예술단체	수도권	예술 감독	2년	-	각본, 기획, 연출	
참여자15	M	30대	뇌병변장애	F문화예술단체	비수도권	예술인	15년 (5년)	-	교육-공연 (무용)	
참여자16	F	20대	비장애	F문화예술단체	비수도권	팀장	4년 7개월 (4년)	문화예술교육자격	사업담당/무용장	
참여자17	F	30대	비장애	E문화예술단체	비수도권	예술인	5년 (4년)	-	인형극 배우	

2. 조사 결과

○ FGI 자료 분석 결과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수행기관의 경험과 관련한 주요한 주제는 아래와 같음.

〈표 Ⅲ-2〉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운영 및 참여 경험의 주제

구분	주제	세부주제
사업의 의미와 효과	(1) 접촉면의 확장을 통한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완화하다	① '거리감'의 감소 ② '장애'에 가려져왔던 긍정성을 인식 ③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힘 ④ 협력하고 소통하는 '동료'예술인
	(2)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확장하다	① 새로운 접근 : '정답이 없는 예술'이 가진 가능성 ② 더 체계적인 교육 :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의 진전 ③ 부가적 효과 : 미래의 장애 예술인을 위한 진로교육
	(3) 중증 장애 예술인의 '삶의 자리'를 만들다	①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경험 ② '장애+예술인'으로서 정체성을 인식하는 경험 ③ '예술인'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경험 ④ 의미있는 관계와 장소를 만들어가는 경험 ⑤ 가족의 지지와 응원을 받는 경험
사업 수행의 어려움	(1) 정해진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교육콘텐츠 '공연'	① 교육 '실적'과 '효과'의 불일치 ② '좋은' 공연이라는 기준의 모호함 ③ 보이지 않는 'cost'의 발생
	(2) 한정된 예산이 만드는 한계	① '현실'과 거리가 있는 예산 집행 기준 ② '두 마리 토끼' 잡기
	(3)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벽'	① 교육기관의 수요와 사업 수행 방식의 간극 ② 사업에 대한 낮은 이해 ③ 편의시설의 부재를 감당하기
개선 방안	(1) 사업 안착을 위한 밑그림의 재구성	① 사업 선정 및 운영 기간의 조정 ② 수행기관 선정-점검-평가 기준의 조정 ③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④ 수행기관의 성과와 참여자들의 기여 인정 ⑤ 예산 구조 및 사업 지원 방식의 점검과 개선
	(2) 사업의 고유성을 강화할 방안	① '문화예술'이 손상되지 않는 지원 ② 장애 예술인이 '장애'를 경험하지 않도록
	(3) 자립의 '첫걸음'에서 나아가 '실질적' 자립지원으로	① 소득의 적정성 확보 ②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③ 장애 예술인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한 지원
	(4)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① 교육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② 장애 예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③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 ④ 장애 예술인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간 연계

Ⅳ.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1. 조사개요

1) 연구방법

○ 본 절에서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체계, 실행 과정, 성과 수준, 그리고 교육 참여자의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양적 연구방법을 적용함.
○ 이를 위해 관련 교육을 기획·운영한 관계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검수를 거쳐 개발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본 조사 목적은 문화예술 기반 접근이 기존의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비교해 어떠한 차별적 강점을 갖는지 파악하는 데 있음.
○ 교육 기획·운영·성과 전 과정에서 실제 현장 담당자가 인식하는 운영의 충실성, 효과성, 개선 요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음.
○ 이를 통해 문화예술 기반 접근이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함.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 방향과 향후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사 대상

○ 본 조사의 대상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기획하거나 실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교육 담당자 62명임.
○ 전국 5개 권역을 포함하여 표집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함.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62개 기관의 교육 담당자임.
○ 성별 분포는 여성이 5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남성은 9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음.
○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가 전체의 약 66퍼센트를 구성함. 20대 5명 50대 13명 60대 이상 3명으로 나타남.
○ 전체 평균 연령은 42.3세임.
○ 직급은 직원급이 대부분을 차지함. 기관장 또는 사업주는 소수에 해당함.
○ 근무 기관 소재지는 호남권이 가장 많음.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 제주도 순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전국 각 지역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
○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응답자의 다수가 장기 종사자임을 의미함.
○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됨.

(2) 기관 유형

○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총 62곳임.
○ 기관은 A유형 B유형 C유형으로 구분됨.
○ A유형은 전체의 9.7퍼센트를 차지함. A유형 중 국가기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B유형은 전체의 62.9퍼센트로 가장 높은 참여 비중을 보임.
○ B유형 중 초등학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도 포함됨.
○ C유형은 전체의 27.4퍼센트를 차지함. C유형 중 유치원이 대부분을 구성함.
○ 보육기관 중에서도 유치원 중심으로 교육이 운영됨.
○ 전체적으로 학교급 기관의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음.
○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높은 수요와 활용성을 지님.
○ 공공기관 및 보육기관도 일정 규모로 참여함.
○ 교육이 다양한 유형의 기관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함.

2. 자료 분석

○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결측값 및 미응답을 확인하여 원자료를 구축함.
○ SPSS 통계 프로그램 25.0 버전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빈도 비율 평균 및 변수 간 관계를 산출함.
○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차이를 비교하고 유의미성을 검증함.
○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함.

3. 분석 결과

1)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과정의 충실성

○ 본 조사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하 교육 관계자가 인식하는 운영과정 및 운영 성과와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하였음.
○ 먼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과정 영역은 교육이 실제로 기관에서 어떻게 기획되고 준비되며 실행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계획 투입 실행의 세 차원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음.
○ 분석은 기관 유형과 지역군을 중심으로 운영과정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고 이어서 응답 기관의 교육 담당자가 인식하는 각 차원 즉 계획 투입 실행의 충실성 정도를 분석하였음.

(1) 주요 요인별 운영 과정 평균 비교

○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과정 계획 투입 실행에 대해 기관 유형과 지역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는 표 Ⅳ-2-1과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높은 수준의 운영충실성이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음.
○ 먼저 기관 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A유형 국가기관 등 B유형 학교 C유형 보육기관 모두 계획단계에서 4.75점에서 4.86점 사이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계획충실성을 보였음.
○ 투입 단계 또한 4.67점에서 4.82점 사이로 나타났음.
○ 실행단계에서도 4.80점에서 4.93점으로 세 유형 모두 높은 평가를 기록하였음.
○ 특히 계획 투입 실행단계의 표준편차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교육 운영과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F 검정 결과에서도 계획 F=.695 투입 F=.744 실행 F=1.03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기관 유형에 따른 운영 수준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지역별 비교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 계획단계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모두 4.69점에서 4.90점 사이에 분포하여 지역 간 큰 편차가 없었음.
○ 투입 단계에서도 모든 지역이 4.68점에서 4.77점 사이에 위치하였음.
○ 실행단계 역시 4.74점에서 4.9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평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음.
○ 각 단계별 F 검정 결과 계획 F=.883 투입 F=.092 실행 F=.709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지역별로도 운영과정 평가가 고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음.
○ 정리하면 기관 유형과 지역 모두에서 운영과정 계획 투입 실행의 평균값은 4.7점 후반에서 4.8점 후반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음.

○ 어떠한 요소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 이는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기관의 성격이나 지역적 조건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일정한 품질과 완성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함.
○ 즉 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체계가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일관된 교육 효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운영 과정 계획 단계의 충실성

○ 교육의 계획단계 충실성에 대한 담당자 인식 분석 결과는 표 Ⅳ-2-2와 같이 전체 6개 문항 모두 평균 4.63점에서 4.94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음.
○ 이는 담당자들이 문화예술특화형 교육의 기획 준비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우선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문항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교육을 계획하였다 평균 4.94점로 나타났음.
○ 이는 교육계획 과정에서 장애인식개선이라는 핵심 목적이 명확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담당자들이 사업의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줌.
○ 다음으로 기관의 운영목적 또는 교육목적과의 연계성 평균 4.89점과 참여자 수준에 적합한 목표설정 평균 4.85점도 높은 점수를 나타냈음.
○ 특히 계획단계에서 기관의 운영철학 및 학습자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교육이 단순한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와 연계된 체계적 과정임을 시사함.
○ 한편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를 고려한 계획 평균 4.87점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이는 담당자들이 콘텐츠 다양성 확보 방식의 다변화 등 교육의 질적 향상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줌.
○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한 문항은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을 계획에 반영하였음. 평균 4.63점와 기관장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평균 4.74점였음.

(3) 운영 과정: 투입 단계의 충실성

○ 교육 투입 단계의 충실성에 대한 담당자 인식 분석 결과는 표 Ⅳ-2-3과 같이 전체 문항의 평균값이 4.16점에서 4.95점 사이에 분포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충실성을 평가하였음.
○ 먼저 교육에 공연연출자 간의 협업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가 평균 4.9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음.

○ 이는 교육 준비 과정에서 공연전문가들 간의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예술 기반 교육의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함.
○ 다음으로 교육에 장애인 공연전문가가 적절히 투입되었다 평균 4.90점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당사자 관점 반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이어서 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환경이 적절히 마련되었다 평균 4.85점도 높은 점수를 보여 교육 장소 설비 기자재 등 기반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시사함.

(4) 운영 과정: 실행 단계의 충실성

○ 교육의 실행 단계의 충실성에 대한 담당자 인식을 분석한 결과 표 Ⅳ-2-4와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높은 수준의 충실성이 확인되었음.
○ 각 문항의 평균 점수는 4.73점에서 4.9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이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었음을 시사함.
○ 먼저 응답자들은 교육 참여자 수강생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였다와 나는 교육 수강생에게 장애인인식개선 활동 자체의 즐거움을 제공하였다는 항목이 평균 4.94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나타냈음.
○ 이는 교육장 시설 분위기 학습 환경 등 교육 실행에서의 물리적 정서적 조건이 참여자에게 매우 잘 갖춰졌으며 프로그램이 즐거움 중심의 경험적 학습 활동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줌.
○ 이어서 교육 참여자 수강생에게 장애인 관련 학습자료를 제공하였다 평균 4.92점도 높게 평가되어 교육과정에서 학습적 자료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음.
○ 다음으로 교육은 공연예술자 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평균 4.89점의 경우 프로그램이 문화예술 콘텐츠의 특성과 협력 구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행되었음을 나타냄.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해 계획한 내용을 모두 달성하였다 평균 4.84점는 교육이 계획 대비 실제 실행이 충실히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음.
○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균 4.73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이 결과는 사후평가가 대체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는 평가의 체계화가 향후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함.

2)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성과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성과는 교육을 통한 교육 참여자의 변화와 참

여자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음.

○ 먼저 기관유형과 지역 요인을 중심으로 운영결과와 영향에 대한 평균을 비교한 후 운영결과와 영향의 하위요인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분석하였음.

(1) 주요 요인별 운영 성과 평균 비교

○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성과를 기관 유형과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표 Ⅳ-2-5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성과가 나타났으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음.

○ 결과와 영향 두 영역 모두 평균값이 4.7점 후반에서 5.0점 수준에 이르러 교육의 효과성과 파급력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 먼저 기관 유형별 결과 영역 평균을 살펴보면 A유형 국가기관 등은 4.80점 B유형 학교는 4.72점 C유형 보육기관은 4.88점으로 나타났음. 전체 평균은 4.77점으로 기관 유형 간 큰 편차는 존재하지 않았음. 표준편차 역시 모든 유형에서 0.219에서 0.548 범위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교육성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의미함.

○ 영향 영역에서도 A유형 4.97점 B유형 4.94점 C유형 4.93점으로 기관 유형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전체 평균은 4.94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F 검정 결과 역시 결과 F는 0.722 영향 F는 0.097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관 유형에 따른 성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기관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관되고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함.

○ 다음으로 지역별 평균에서 지역별 결과는 4.5점에서 4.9점대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높은 평균을 나타냈음.

○ 영향의 경우 모두 4.8점에서 5.0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표준편차 또한 대체로 낮게 나타나 교육성과가 지역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발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지역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4.56점 충청권 4.62점 호남권 4.83점 영남권 4.86점 제주도 4.85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지역 간 평균 차이가 일부 존재하나 F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F는 1.439 지역별 차이는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 영향 영역에서도 수도권 4.87점 충청권 4.88점 호남권 4.97점 영남권 5.00점 제주도 5.00점으로 모든 지역에서 매우 높은 평균을 보였음. 특히 영남권과 제주도의 영향 평균은 만점에 가까운 수준인 5.00점으로 나타나 교육의 파급 효과가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이러한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음(F=1.099).

○ 기관 유형과 지역을 기준으로 한 비교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두 요인 모두에서 교육의 결과 및 영향 영역 평균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즉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기관의 성격이나 지역적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일관적이고 안정된 품질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실질적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이는 본 교육 프로그램이 표준화된 운영체계와 충분한 교수역량 그리고 문화예술 기반 콘텐츠의 강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관 및 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함.
○ 향후 확산 및 보급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을 시사함.

(2) 운영 성과: 결과

○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성과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교육이 참여자에게 미친 효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는 4.56점에서 4.92점 사이로 나타나 교육이 기획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와 기대효과를 충실히 달성하였음을 시사함.
○ 먼저 응답자들은 교육을 통해 계획된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다 평균 4.92점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이는 문화예술 중심의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기관 또는 학교가 의도한 목표와 교육설계 의도를 실제 실행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응답도 평균 4.82점을 기록하여 문화예술 기반 접근이 장애 관련 감수성과 이해를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음. 이는 교육의 인식적 변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교육 참여자가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봉사활동 또는 사회적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문항은 평균 4.5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육이 참여자들의 자발적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함.
○ 다만 다른 항목과 비교할 때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교육은 참여자들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정서 감소에 기여하였다는 항목에서도 평균 4.69점으로 긍정적 평가가 나타났음.
○ 이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간접적 경험이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함.
○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공연연출자와 참여자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었다 평균 4.87점도 높은 점수를 보여 교육과정에서 상호작용 경험의 질이 매우 높았음을 나타내었음.
○ 이는 예술활동 특유의 협력 과정과 감정 공유가 교육의 사회 정서적 효과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함.

(3) 운영 성과: 영향

○ 조사 결과, 담당자들은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기관과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는 4.92점에서 4.97점 사이에 분포하여, 교육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음.

○ 우선, “교육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문항의 경우 평균 4.92점을 기록하여 담당자들이 문화예술 기반 접근이 교육의 전문성 확보에 효과적이라고 보았음을 보여줌. 이는 교육자 및 운영기관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지식과 방법론을 더욱 체계적으로 축적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 또한, “교육 참여 기관의 운영역량 향상에 기여하였다”(평균 4.95점)의 경우 문화예술특화형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이 교육기관의 교육기획, 협업 구조 형성, 운영 관리 등 전반적 역량 강화로 이어졌음을 시사함.

○ 문화예술특화형 교육이 지역사회 장애인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에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문항 3) 역시 평균 4.92점으로 높게 나타나, 본 교육이 단기적 교육 효과를 넘어서 지역사회 문화예술환경과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인식을 보여줌.

○ 더불어, “교육이 장애인 문화예술의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였다”(평균 4.97점)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음.

○ 이는 본 교육이 장애 관련 콘텐츠의 표현 방식과 예술적 접근의 폭을 넓히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주며, 문화예술 중심의 인식개선이 기존 교육 방식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다양성의 가치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함.

Ⅴ.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델파이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절차

○ 본 조사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지정 선정과 관리 감독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함.
○ 델파이 조사방법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게 의견 도출을 위한 질문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함(강용주, 2008).
○ 이러한 델파이 조사는 평가지표의 선행연구가 미비한 주제에 대해 사전 검증된 판단을 적용하여 가능한 대안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개발하는 데 유용함(Sandford, 2007).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문헌분석과 연구진 검토를 통해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지정 선정과 관리 감독을 위한 평가지표 초안을 개발함.
○ 개발된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함.

2) 델파이 전문가 패널 구성

○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은 장애학 또는 장애인복지, 장애인식개선 분야의 학계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함.
○ 장애인식개선 및 문화예술 분야의 현장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함.
○ 전체 전문가 패널은 총 15명으로 구성함.

〈표 V-1〉 델파이 조사 전문가 패널 구성

구분	참여자	분야	소속	직위
학계 전문가	패널 1	장애인 고용,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OO개발원	부장
	패널 2	사회복지, 장애학	OO대학교	교수
	패널 3	장애인고용,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OO연구원	책임연구원
	패널 4	사회복지, 장애인식개선	OO연구소	소장
현장 전문가	패널 5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OO협동조합	팀장
	패널 6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OO공단	차장
	패널 7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주)OO극장	대표
	패널 8	장애인식개선	OO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패널 9	장애인복지,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OO복지관	팀장
	패널 10	장애예술	OO예술원	부장
	패널 11	사회복지,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주)OOO	대표
	패널 12	장애인식개선, 교육, 문화예술	OO하우스	이사
	패널 13	장애인식개선	OO센터	사무국장
	패널 14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사단법인 OO	대표
	패널 15	문화예술	OO예술단	부장

2. 분석 결과

○ 1차 및 2차 델파이 조사의 양적 분석 결과와 질적 분석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반영하고 조정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개발함.

○ 1차 델파이 조사와 동일하게 양적 분석 결과를 통해 타당도가 낮은 문항으로 확인된 항목은 모두 삭제함.

○ 추가 문항 구성 시 각 지표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자유의견을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함.

○ 평가지표는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필수 항목과 필수는 아니나 가산점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함.

○ A지표인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지표는 운영의 정합성 5개 지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안 기자재 윤리성 3개 지표, 교육 콘텐츠 다양성 및 창의성 3개 지표, 콘텐츠의 질적 향상 모니터링 2개 지표로 구성된 배점 지표 총 13개로 구성함.

○ A지표의 가산점 적용 영역은 장애당사자 구성원 참여 1개 지표와 법정 필수 교육 내용 반영 4개 지표로 총 5개 지표로 구성함.
○ 이에 따라 A지표는 배점 지표와 가산점 지표를 포함하여 총 18개 지표로 확정됨.
○ B지표인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교육기관 관리 감독을 위한 지표는 교육 현장 접근성 및 교육 효과성 9개 지표와 운영 체계 지속 가능성 6개 지표로 구성된 배점 지표 총 15개로 구성함.
○ B지표의 가산점 적용 영역은 법정 필수 교육내용 반영 4개 지표와 교육의 질적 향상 2개 지표로 총 6개 지표로 구성함.
○ 이에 따라 B지표는 배점 지표와 가산점 지표를 포함하여 총 21개 지표로 확정됨.
○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정된 최종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V-2〉 최종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지표'

구분	영역	지표(안)
배점 평가	운영의 정합성	1. 기획·운영·안전·행정 전담/대행 지정
		2. "교육강사"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3. 대상 분석·욕구 반영을 위한 사전 조사 체계 보유
		4. 물리/정보/의사소통 접근성 체크·보완계획
		5. 안전/민원/중단 시 공연 안전 대처 능력
	교육 프로그램 및 교안·기자재·윤리성	6. 세션별 목표-콘텐츠-활동 일치
		7. 비낙인·비시혜·다양성 존중 반영
		8. 원저작물·이미지·음원 사용 적법성
	교육 콘텐츠 다양성 및 창의성	9. 콘텐츠 기획·운영 전문 인력(전문 프로듀서 또는 제작진·스텝) 보유
		10. 보유 교육 콘텐츠의 창의성
		11. 보유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다양한 메시지의 내재화)
	콘텐츠의 질적 향상·모니터링	12. 교육 목표의 명료성(목표 및 성취기준 제시 가능성)
		13. 교육 피드백 체계 보유(만족도, 피드백 수집)
가산점 적용	장애당사자 구성원 참여	14. 제작진 또는 출연진 등의 장애당사자 참여 여부
	법정 필수 교육내용 반영	15.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16.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17.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18.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표 Ⅴ-3〉 최종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교육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지표'

구분	항목/세부항목	지표(안)
배점 평가	교육 현장 접근성 및 교육 효과성	1. 안전 대응 및 비상시 동선 확보
		2. 교안 구조가 목적 달성에 기여
		3. 장애인식개선 메시지의 명확성
		4. 흥미/집중·호응 유도(콘텐츠의 몰입성)
		5. 교육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변화 정도
		6. 콘텐츠의 완성도·창의적 구성
		7. 교육대상 중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를 고려한 접근성(음성해설/대체자료/자막) 대응 마련
		8. 관객(교육대상)과의 상호작용의 균형
		9. 현장 대응력(현장 수준과 분위기 대응)
	운영 체계·지속 가능성	10. 피드백·모니터링 수집 및 관리 체계
		11. 사전·사후 조사 및 평가 분석/반영
		12. 보고-조치-재발 방지 체계
		13. 교육 대상 및 효과 등에 따른 비용의 적정성
		14. 예산 집행과 재정 관리의 투명성
		15. 성과보고서 및 결과 발표의 충실성·투명성
가산점 적용	법정 필수 교육내용 반영	16.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포함 여부
		17.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18.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19.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포함 여부
	교육의 질적 향상	20. 다양한 교육 대상을 고려한 다변 교육 방식(교육생의 참여/표현 등) 운영
		21. 참여자/강사/대상 기관 피드백 반영·개선 여부 및 개선 정도(달성률: %)

Ⅵ.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 방향

○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체계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설문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1.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기관 성과 중심 운영 체계

1) 성과 중심 운영의 필요성

○ 본 연구에서 의무교육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관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균등한 사업 품질을 보여주고 있음.

○ 구체적으로 기관 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A유형 국가기관 등 B유형 학교 C유형 보육기관 모두 계획단계에서 4.75점에서 4.86점 사이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계획 충실성을 보였음. 투입 단계도 4.67점에서 4.72점 사이로 큰 차이가 없었음. 실행단계도 4.80점에서 4.89점으로 높은 수준의 평균을 보여주었음. F 검정 결과에서도 계획, 투입, 실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기관 유형에 따른 운영 수준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기관의 성격이나 지역적 조건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일정한 품질과 완성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함. 즉 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체계가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일관된 품질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담당자들의 교육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기관 유형별 만족도 평균은 A유형 4.76점, B유형 4.91점, C유형 4.98점으로 나타났음. 전체 평균은 4.91점으로 나타났고, 세 유형 모두 4.7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전문가 인터뷰에 참석한 전문가 다수는 문화예술 실력의 단기 완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요구하였음. 인터뷰 분석 결과 더 체계적인 교육 예술인으로서의 역량 강화 수행기관 선정 점검 평가 기준 조정 등에서 장기적인 역량 강화 운영 체계가 필요함.

○ 이처럼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의무교육기관의 사업 균일성과 만족도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 효과 가능성이 확인되었음.

○ 그러나 단년도 공모 방식으로 인해 성과의 누적과 검증 및 교육기관의 안정적 성장이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예술적 표현과 체험을 통해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 방식임. 이러한 교육은 콘텐츠 기획 제작 시범 운영 개선 과정을 통해 완성도가 제고됨.

○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며, 단기 공모 방식 운영 시 콘텐츠 축적과 고도화가 제한됨. 이에 따라 사업 본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존재함.

○ 문화예술 기반 교육 콘텐츠는 반복적 검증 과정을 필요로 함. 그러나 단년도 지원 체계에서는 성과 중심 운영이 불가피하며, 그 결과 콘텐츠 완성도와 교육 품질의 일관된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시기 중심 운영 체계는 교육기관 성장 도모에 한계가 있음.

○ 성과 중심 운영 체계는 단계별 목표 설정과 평가를 통해 교육 품질 관리 기반을 제공함. 따라서 교육기관을 단년도 참여 주체가 아닌 성장 대상 기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연차별 성과 관리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교육기관별 성과 이력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전 연도 운영 실적과 성과 평가 결과를 차년도 선정 및 지원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중장기 운영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

(1) 초기 진입 단계 교육기관 선정

○ 초기 진입 단계는 사업 착수 이전 또는 직후에 적용되는 단계임.

○ 해당 연도 최초 참여 기관 또는 성과 이력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설정.

○ 사업 수행 결과 평가보다는 공모 선정 과정 자체가 진입 단계 평가 역할을 수행하게 됨.

○ 공모 선정 지표를 통해 기본 운영 역량과 수행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기관을 초기 진입 단계 기관으로 분류됨.

○ 적용 시점은 사업 선정 및 초기 수행 단계임.

○ 평가 목적은 기본 수행 가능성과 사업 이해도 확인에 있음.

(2) 성장 단계 확장 및 안정화 기관 평가

○ 성장 단계는 과거 참여 이력과 성과 평가 결과가 누적된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함.

○ 해당 연도 사업 수행 결과와 함께 다년도 누적 성과를 반영하여, 일정 기준 이상 성과를 충족한 기관을 사전 분류함.

○ 성장 단계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적용.

○ 단기 평가 한계를 보완하고, 성과의 연속성과 축적 효과를 확보하게 됨.

○ 적용 시점은 사업 중반 및 종료 시점임.

○ 평가 목적은 교육 성과의 질과 운영 고도화 수준 확인에 있음.

(3) 자립 단계 고도화 교육기관 운영

○ 자립 단계는 일정 기간 우수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한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함.
○ 다년도 성장 단계 평가에서 우수 성과를 반복 달성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 수요 확보 실적이 확인된 기관으로 한정함.
○ 다년도 성과 자료와 외부 연계 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함.
○ 자립 단계는 교육기관 지정 체계로 운영하고, 지정 유효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재검증 필요함.

2) 교육 실시에 대한 모니터링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모니터링은 교육 품질 제고와 표준 운영을 위한 관리 평가 활동임.
○ 운영 적정성 콘텐츠 타당성 장애 이해 증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업 이행 여부를 확인함.
○ 모니터링 결과는 보완 개선 계획 수립에 활용하며, 우수기관 발굴과 콘텐츠 고도화 기초 자료로 활용.

3) 사후 관리 및 운영

○ 자립 단계 이후 재정적 지원은 중단하고, 기관 자립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함.
○ 기관 지정과 비재정적 운영을 중심으로 관리하며 모든 기관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차등 적용함.
○ 기관 지정 여부는 수행기관이 결정하며 비재정 운영은 과거 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함.
○ 일반적으로 성장 단계 평가 80점 이상 기관에 적용함.
○ 적용 기준은 기관 특성과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기관 지정

○ 전문가 인터뷰 결과 중장기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단기 공모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 지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 공모 중심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지정을 통해 검증된 기관 중심으로 교육을 확산하며 개발원의 품질 관리와 정책 연계 역할을 강화할 수 있고 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고함.
○ 현행 공모 방식은 공정성과 신규 진입 기회를 보장함. 그러나 지속성과 질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교육 품질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단년도 성과 중심 기획이 반복될

수 있으며 노하우와 콘텐츠 축적이 제한될 수 있음. 공모 대응 중심 기획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으며, 창의적 실험적 모델 개발이 위축될 수 있음.

○ 또한, 수행기관 운영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고 전문 인력 고용과 장기 투자에 어려움이 있음. 반복 선정 기관과 신규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정 제도는 기관의 구조적 역량과 공공성을 종합 평가함.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품질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지정 기관은 중장기 투자와 성장이 가능함. 공신력을 확보하여 자립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지정 평가는 단년도 수행 능력이 아닌 구조적 역량 평가에 목적이 있음.

(2) 비재정적 관리 및 운영

○ 자립 단계 이후 재정 지원 중단은 필요하며 비재정적 구조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직접 사업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비재정 중심 성장 지원 체계로 전환.

○ 교육기관 자생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영역 확산을 도모할 필요성.

○ 비재정적 지원과 성과 모니터링을 병행, 공공 지원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적 운영 기반을 확보, 장기적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제공.

○ 자체적으로 교육 품질을 유지 개선하도록 지원할 필요성.

2.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장기 추진 과제

1)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홍보 강화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지속성과 감수성 향상에 강점이 있음.

○ 그러나 정보 접근성과 인지도가 낮아 활용이 제한되어, 공식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교육 내용 운영 방식 효과 사례를 체계화하고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이 요구됨.

○ 교육기관 수요 확대와 선택 편의성 제고, 맞춤형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

○ 우수 사례 중심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행기관 홍보 역량 강화를 지원.

○ 대국민 인식 확산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

2) 정량적 수치 중심의 수행기관 실적 평가 개선

○ 정량 중심 평가의 한계가 제기되었음. 교육 질과 효과 반영이 어려움.

○ 가중치 적용 평가 방식이 필요함. 교육 대상별 가중치 및 교육 방식별 가중치를 적용.

○ 교육 난이도와 심화 정도를 반영.

○ 지역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

3. 기타

1) 의무교육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필요

○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확인되었음.
○ 특히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가 결여된 학교가 다수 존재함.
○ 법률에 따라 학교는 편의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으나, 인증 학교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 관련된 실태 조사와 현황 파악이 필요함.
○ 편의시설 개선 요구가 필요함.

2) 의무교육기관 종사자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 일부 종사자의 장애인식 부족이 확인되었음.
○ 부정적 인식 사례가 존재하며, 장애 예술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과도한 요구 행위는 중단되어야 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안내와 교육이 필요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장애인식개선이란 범국민 장애이해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행정기관, 교육기관, 일반기관 등의 국민, 직원, 학생 등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 여러 현장의 장애통합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 올바른 장애인식의 조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며 긍정적인 장애인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면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5).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등이며 체계적·종합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부정적인 인식 등을 해소하는데 있다.

법적 근거에 의한 교육내용으로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등이며, 교육방법으로는 집합 교육(내부직원 및 외부초빙 교육, 동영상 시청 등), 원격 교육(사이버 교육, 시청각 교육 등)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의 문화 · 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확산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중증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정서적 공감과 인식전환 효과를 이끌어내며, 장애인식개선 효과 증대와 중증장애예술인의 자립지원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문화예술 활동(연주, 연극, 인형극, 교구 활용형 등) 특색에 따라 교육콘텐츠를 기획하고 교육콘텐츠는 중증장애예술인 당사자의 직접메시지를 포함한다. 또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기존 전통적인 집합형, 강의식 장애인식개선교육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백영은, 유은주, 2021). 특히 장애인식개선교육 방법 중 '영상동화' 및 '영상동화와 고전설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경우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함을 발견하였다(이현용, 2021).

202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수행기관이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운

영해왔으나, 단년도 공모 방식과 성과관리 체계의 부재로 교육의 지속성과 효과 검증이 어려운 상황임으로 제도적 기반과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예술인의 참여가 단기간에 그치는 사례가 많고, 문화예술 활동이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연계가 미흡하여, 교육사업과 자립지원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운영기관의 지원체계와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체계를 마련하며,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문헌조사

1)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 관련 문헌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효과성, 발전방향 등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

이한우, 강인언(2006)은 진주시내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하여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한후 비장애학생들이 장애를 겪고있는 학생들에대한 수용태도의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검사-실험처치(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적용)-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적용 후 학년에 따른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태도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적용 후 초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유무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태도변화는 있었는데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초등학교의 비장애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태도점수가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초등학교 비장애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종남, 한상미(2018)의 연구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식개선 프로그램 강사교육을 진행한 후,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과 성인 총 508명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장애 인식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장애 인식의 변화(장애 이해, 장애인 인권의식)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다름에 대한 지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험설계를 바탕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전보다 후에 장애에 대한인식이 개선되었으며, 차별과 다름에 대한 지식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정혜경(2016)은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강원도춘천시에 소재한 S초등학교 4학년 학생 52명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실험집단에 25명, 통제집단에 27명을 배정하고, 실험집단에 주 2회씩 12주 동안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

를 t-검정하여 비교하였다.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초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평가·능력·활동요인과 관련된 장애인식이 향상되었다.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통합교육에 대한 장애수용태도에서는 통계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의 능력인식·행동의도·학급 동료 인식 기대와 관련된 장애수용태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현용(2021)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통합반의 효과'와 '영상동화,고전설화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2020년 6월에 '영상동화'를 'A·B반'에, 2020년 9월에 '영상동화와 고전설화'를 'C·D반'에 교육하였다. 남자 4, 여자 4의 총 8명으로, A·C반은 비장애인학생으로, B·D반은 같은 수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하여, 5회기 교육을 진행하였다. '형용사 척도'를통해 '인식적 측면'을 측정하고, '활동 선호도 척도'를 통해 '행동적 측면'을 측정하였다. '통합반'의 효과는 '영상동화'를 활용한 교육에서는 '긍정 인식 척도, 부정 인식 척도, 활동적 척도'의 세 부분에서, '영상동화와 고전설화'를 활용한 교육에서는 '부정 인식 척도, 활동적 척도'의 두 부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2)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및 평가 사례

현재 전통적인 교육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체계적인 운영 방법의 일환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는 구체적이며 체계화된 지표를 활용하여 개별 교육기관을 점수화한다.

(1)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심사 기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기관·법인·시설·단체로 전문강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인식개선교육 역량을 갖춘 곳은 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결과 80점 이상 득점한 기관에 한에서 선정하며 기관의 역량(30점), 교육 운영 적정성(30점),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기반 적정성(4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표 Ⅰ-1〉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심사표

구분	평가항목	주요 평가요소	배점
기관의 역량 (30)	기관의 사업 운영 능력	• 기관의 장애인식개선 관련 사업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수행 경험 • 강사와 의무교육 대상기관과의 교육 연계 노력 등	10
	조직구성의 전문성	• 기관 운영인력(조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양질의 강사 보유(경력 등의 전문성) 및 강사진 구성의 적절성 등	10
	기관장 의지	• 기관장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가치관 및 비전 • 교육기관 운영 목적 및 취지와의 부합성 등	10
교육 운영 적정성 (30)	계획 수립 충실성	• 전반적인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전 조사의 적절성 • 교육 대상별 교육 콘텐츠 및 방법의 다양성 등	20
	교육 운영 강사의 역량	• (대표) 강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시연의 우수성 등	10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기반 적정성 (40)	교육 프로그램 적정성	• (대표) 교육 교재 및 교안의 적정성 등	20
	교육 훈련기반 적정성	• 교육기관 운영 및 환경의 적정성(기자재 보유 등) • 기관의 교육훈련 방법 및 훈련전파 노력도 등	20
장애 당사자 중심(5)	장애당사자 강사 보유	• 강사 중 50% 이상 장애당사자 강사 보유	(5)
총 점		100점 (가점 105점)	

(2) 한국장애인개발원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대상자 심사 기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선정을 위해 심사를 실시하며 연극형, 인형극, 교구 활용형, 샌드아트 공연형, 마술공연형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목한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을 선정한다. 수행기관 선정심사로 서류심사에서는 사업목적의 적합성(20점), 프로그램운영실적(30점), 사업수행 역량 및 실행능력(30점),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20점)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대면심사에서는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50점),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5점), 발표충실성(15점)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표 Ⅰ-2〉 한국장애인개발원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대상자 심사 기준표
(서류평가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배 점
1	사업목적의 적합성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장비/시설/예산 등의 구비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도	20
2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	-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경험(실적) - 기관의 사업수행의지 및 강사 등의 전문성	30
3	사업수행역량 및 실행 능력	- 프로그램 운영 가능여부(12회)와 프로그램의 예술성 -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 프로그램 신청기관 모집 및 교육운영 계획 적절여부	30
4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사업운영을 통한 성과 대외적 활용 능력(홍보 등) - 사업의 완성도와 추후 발전 가능성(환류)	20
계			100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 지정 심사(일반)

신청 가능한 기관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강사보유 현황 및 강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교육 시 사용할 교육교재 등의 자료(교육교재는 법정 필수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 등과 같은 필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 가능하다.

〈표 Ⅰ-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심사기준(일반)

구 분	내 용
지정 요건	아래 중 하나에 속하는 단체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① 사업주단체(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및 그 연합체(예: 전경련, 경총,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②「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 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법인·단체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 그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① 법인 이 운영하는 연수·교육 시설 : 법인 이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20.3.17. 이후 요건 강화)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도 지정 대상 포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및 자활연수원(복지부), 지방연수원(지자체)등 ② 인식개선 교육 적합 기관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장애인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예방, 차별금지 등을 사업의 일부로 수행하고 있거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출 서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강사보유 현황 및 강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교육 시 사용할 교육교재 등의 자료(교육교재는 법정 필수 교육 내용 *을 포함하여 구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 집합교육의 경우 실제 강의에서 사용할 교육교재(PPT 파일 등) 제출 ※ 원격교육의 경우 원격교육용 콘텐츠의 스토리보드와 원격교육 시스템 구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테스트용 URL 등)를 반드시 포함 ※ 체험교육의 경우 체험교육 운영 계획서와 시설 현황을 제출
추가 서류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 법인만 해당),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정관 등 관련 서류 제출 (※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신고증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 지정 심사(문화체험형)

내·외부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를 심사한다. 사업목적 적합성, 사업(예산)계획 타당성·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위원별 채점결과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80점 이상 획득한 기관을 선정한다. 2차 심사는 1차와 동일하게 구성하며 발표심사를 실시한다. 2차 심사기준은 1차 심사 기준과 동일하다.

〈표 Ⅰ-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 지정 심사표(문화체험형)

<table>
<tr><th>구분</th><th>세부항목</th><th>배 점</th></tr>
<tr><td>사업목적 적합성</td><td>• 위탁 사업의 목적과 제안된 사업 계획의 적합성 여부</td><td>20</td></tr>
<tr><td>사업계획
타당성·적정성</td><td>•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 실행계획, 일정, 예산계획 등의 적정성 및 체계성</td><td>20</td></tr>
<tr><td>사업수행 능력</td><td>• 사업의 현실적 수행 가능성
• 관련 사업 수행 경험, 사업수행을 위한 물적·인적 기반, 독립적 사업수행 능력(상근 직원 인건비 자체 부담 능력 포함)등</td><td>40</td></tr>
<tr><td>사업의 효과성</td><td>•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고용촉진 등에의 기여 정도
• 사업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확대 보급 가능성
• [문화체험형 교육 사업 분야] 지역교육 활성화 정도
※ ① 신청기관 소재지의 비수도권 해당 여부, ② 지역 민간기업 등 대상 교육 추진 계획 등</td><td>20</td></tr>
<tr><td>예산 자체부담액 비율
(가점)</td><td>• 총 소요예산 중 자체부담액 비율 정도
<table>
<tr><td>자부담 비율(%)</td><td>5.01 ~10.00</td><td>10.01 ~15.00</td><td>15.01 ~20.00</td><td>20.01 ~25.00</td><td>25.01 ~30.00</td><td>30.01 ~</td></tr>
<tr><td>가점(점)</td><td>0</td><td>1</td><td>2</td><td>3</td><td>4</td><td>5</td></tr>
</table>
※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td><td>(5)</td></tr>
<tr><td colspan="2">총 점</td><td>100점 (가점 105점)</td></tr>
</table>

3.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조사한다.

첫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현황을 분석한다. 국내외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중증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의 제도적 구조, 추진 흐름, 법령 기반 등을 분석한다. 유사 사업 사례를 통해 본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수행기관의 조직 구조, 운영방식, 프로그램 구성, 예산·인력운용 등 지원체계 등을 분석한다. 단년도 공모 구조에 따른 지속성 저하, 수행기관 운영 기반의 미비로 인한 운영상의 한계를 진단한다.

둘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교육 참여자의 반응, 태도 변화, 참여 지속성 등 정성적 요소 중심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프로그램 유형별(공연형, 체험형 등) 성과특성을 검토하고, 중증장애예술인의 자립 연계 가능성 및 제약 요인도 함께 검토한다.

셋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 교육 기관의 평가기준 설계 및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수행기관의 운영역량, 자원 구성, 교육 품질, 자립 연계 노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혼합형 평가기준(운영기관 기준표)을 설계한다. 공모 선정, 사후 평가, 기관 컨설팅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공모 구조 개선, 수행기관 육성 전략(지정기관 편입 등), 자립 연계형 프로그램 설계 등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설계한다.

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문헌조사 및 정책분석을 실시한다. 국내외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중증장애예술인 지원 정책과 제도를 문헌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개별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한다. 장애예술인, 기획자,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고, 자립 연계 실태와 제도 개선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FGI를 병행한다.

셋째, 전문가 자문 및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다. 평가기준 설계, 정책 실효성, 실행 전략 검토 등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평가 항목과 정책 전략 합의 도출을 위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수행기관의 역량, 운영 특성, 자립 연계수준 등을 반영한 혼합형 평가기준을 구성하고,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넷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설계를 실시한다. 분석 결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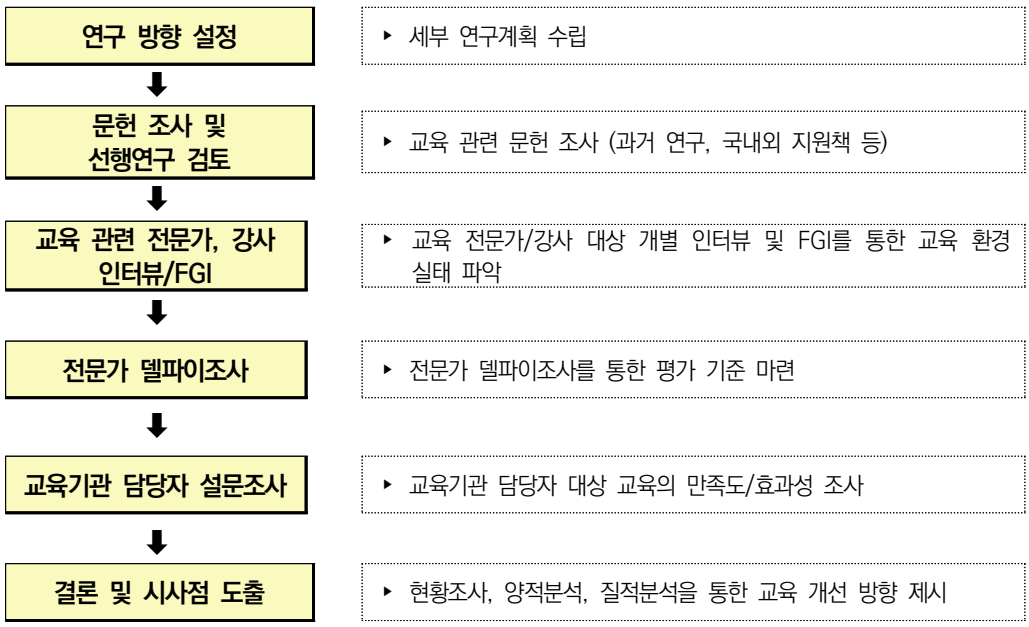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통합하여 공모구조 개선, 수행기관 육성, 자립 연계형 프로그램 설계등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운영모델을 도출한다.

5. 연구 과정 도식

본 연구의 진행 과정 도식은 다음과 같다.

〈표 Ⅰ-5〉 연구 과정 도식



Ⅱ 국내외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특징 및 장애 예술가 지원 정책

1. 국내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례

1)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1)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근거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다양한 교육방식 중 하나의 유형으로,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체험·감상을 통한 인식개선에 특화된 교육 방법이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및 제25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표 Ⅱ-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근거

구분	근거 법령	세부 내용
추진 근거	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운영 주체	-	- 보건복지부(중앙행정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사업전담기관)
교육 대상	법 제25조 제2항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
교육 내용	시행령 제16조 제3항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표 Ⅱ-1〉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근거(계속)

구분	근거 법령	세부 내용
교육 내용	시행령 제16조 제3항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29.〉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2021. 6. 29.〉 (이하 생략)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법 제25조 제7항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교육기관 지정 (지정기관)	법 제25조의2 (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인식개선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하 생략)
교육 플랫폼 운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이러닝센터, 강사·기관 전용시스템)	법 제25조 제8항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이준우 등(2024)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보건복지부(중앙행정기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사업전담기관)에서 함께 운영하며, 정책사업은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기관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과정의 내실화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확대를 목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대상은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대상 기관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인, 각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기관장 및 소속 직원, 학생을

포괄한다. 교육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는 20분, 성인은 60분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대면)과 원격교육(비대면) 등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면교육을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진행 방식은 강사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촉한 전문강사, 문화예술 특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교육, 외부 일반강사를 초빙하거나 내부직원의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비대면 교육은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온라인 원격교육센터 등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교육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는 전통적인 강의형을 비롯하여 감상형(콘서트, 영화, 인형극 등), 체험형(장애인 스포츠, 장애체험 등)으로 다각화되어 교육 참여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 Ⅱ-2〉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방법

교육 방법	교육 유형 (진행방식)
대면 교육	- 전문강사 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교육강사) - 지정기관 교육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 - **사업수행기관 교육*** (문화예술 특화형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개발원 주관 사업 수행기관)
	일반강사 교육
	내부지원 교육
비대면 교육	표준(정규) 자료 활용
	일반 자료 활용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25) 2025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최근에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성 증진을 위해 참여형·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온라인 교육과정에서도 스토리텔링과 시각적 요소를 강화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서도 '깨닫다, 알다, 장애인식개선교육(깨.알.장.인.)', '발달장애 바른공감(통통, 다름의 새로고침)' 등과 같이 스토리텔링, 시각적 요소를 강화한 콘텐츠들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형, 체험형, 감상형 교육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의 실제 사례와 작품을 교육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장애를 다름이 아닌 다양성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문화예술 체험(연주, 연극, 전시 등)과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접목한 교육 방식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강의형 교육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효과를 높이는데 특화된 접근법이다.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을 접목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도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양한 교육 진행 방식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플랫폼(홈페이지)에서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수행기관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교육을 원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서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대상 기관은 매년 새롭게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오케스트라, 앙상블, 연극, 공연, 전시 등)을 무료로 신청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수행기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일정을 협의하여 1회, 1시간 이상의 대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사업수행기관 별로 연간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표 Ⅱ-3〉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방법

교육의무기관 (학교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대상 기관)		사업수행기관 및 교육의무기관	교육의무기관
① 교육 계획 (희망하는 사업수행기관, 일시, 장소 등)	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서 제출	③ 교육 일정, 장소 등 협의	④ 교육 실시 (1회, 1시간 이상)

출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able-edu.or.kr/)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통해 문화예술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수행기관을 매년 공모·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활용하여 장애예술인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연 최대 12~20회 이상 무료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확산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202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단년도 공모 방식을 통해 다양한 수행기관이 매년 선정되어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운영해왔다.

〈표 Ⅱ-4〉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운영 절차

① 공고·접수	② 선정 및 협약체결	③ 중간보고	④ 결과보고
사업 모집공고 (개발원)	평가위원회 개최 (개발원)	교육 실시, 중간보고 (수행기관→개발원)	교육 실시, 최종보고서 제출 (수행기관→개발원)
신청서 접수 (신청기관→개발원)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개발원↔수행기관)	중간점검 모니터링 (개발원→수행기관)	

출처: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모 안내 (https://www.koddi.or.kr/)

〈표 Ⅱ-5〉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프로그램 현황 (‘22년~’25년)

참여연도	연번	수행기관명	교육유형	주 교육지역	주 교육대상	비고
2022년	1	밀알복지재단	앙상블 음악연주, 미술체험	서울, 경기	성인, 학생, 유아	-
	2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팝밴드공연 및 교육	전국	성인, 학생	-
	3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퓨전난타 및 팝밴드공연 등	전라, 충남	성인, 학생, 유아	-
	4	(사)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클래식, 팝밴드공연 및 전문강사교육 (장애당사자 교육 포함)	전국	학생	-
	5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국악, 퓨전 (토크콘서트)	서울, 경기, 인천	성인, 학생, 유아	-
	6	주식회사 한국파릇하우스	동화무용극 (소리동화책), 뮤지컬 (보드게임)	대구, 경상도	학생, 유아	-
2023년	1	(사)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마술, 전시, 밴드, 난타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성인, 학생, 유아	기존
	2	(사)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클래식, 가요, 국악, 무용	서울 및 수도권	학생	기존
	3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교육, 퀴즈, 공연, 촉각점자체험	창원, 김해	성인, 학생, 유아	신규
	4	피어라풀꽃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식개선교육, 댄스, 악기, 미술전시 등 문화예술활동	서울, 경기, 인천	학생	신규
	5	㈜아트랑	마칭밴드, 앙상블, 뮤지컬	강원, 원주	성인, 학생, 유아	산규
	6	주식회사 한국파릇하우스	동화무용극 (동화책+코코아이셋트), 뮤지컬 (보드게임+토크쇼)	대구, 경북	유아, 학생	기존
	7	사단법인 희망이룸	음악극 (관객참여형)	경남	청소년, 성인	신규

〈표 Ⅱ-5〉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프로그램 현황 (‘22년~’25년)(계속)

참여연도	연번	수행기관명	교육유형	주 교육지역	주 교육대상	비고
2024년	1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마술/전시/밴드/난타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성인, 학생, 유아	기존
	2	사이영사회적협동조합	연극	전북, 전남	성인, 유아	기존
	3	(사)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클래식, 가요, 국악, 무용 (팝밴드, 탭댄스 등)	서울 및 수도권	성인, 학생, 유아	신규
	4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복합형 (인형극)	서울 및 수도권	학생, 유아	신규
	5	사단법인 문화복지 하음	클래식	제주특별자치도	성인, 학생	신규
	6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창작뮤지컬	서울 및 수도권	성인, 학생, 유아	신규
	7	얼쑤사회적협동조합	마당극	충남, 충북	학생, 유아	신규
2025년	1	사이영사회적협동조합	복합형 (이론, 공연, 인형극)	전남, 전북	학생(초·중학생)	기존
	2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복합형 (마술, 밴드, 난타)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성인, 학생, 유아	신규
	3	(주)바이주나	연극	수도권 지역	학생(초·중·고)	신규
	4	사단법인 문화복지 하음	클래식	제주특별자치도	성인, 학생, 유아	기존
	5	행복한우리복지관	복합형 (클래식, 미술 전시회)	대전	성인, 학생	기존
	6	주식회사 한국파릇하우스	복합형 (음악, 무용, 뮤지컬, 아동문학)	대구, 경북	학생(유아,초·중·고),성인(교육 관계자)	기존
	7	(주)아트랑	클래식, 뮤지컬 공연	경남, 경북, 부산	성인, 학생, 유아	기존

출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able-edu.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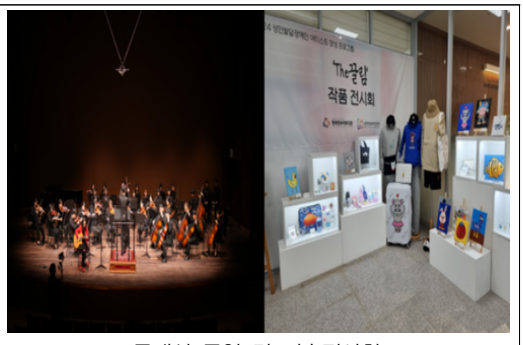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간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프로그램 현황은 〈표 II-5〉와 같다. 사업수행기관 수는 2022년 6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매년 7개 기관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연간 일정 횟수(연도별 상이)의 무료 교육을 실시하였다. 참여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복지관, 문화예술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재단 등 다양한 단체가 포함되었으며, 특히 사이영사회적협동조합, 한국파룻하우스 등 일부 기관에서 여러 연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지역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교육 대상 또한 유아부터 학생, 성인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고 있으나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지방 지역에서도 꾸준한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개년 간 실시된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연극, 무용, 국악, 클래식, 인형극, 복합형 교육 등 문화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다채로운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한 장애인식개선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의도를 반영한다. 2025년 사업수행기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휠체어 댄스, 연극, 클래식 음악, 미술전시, 복합형 교육(아동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에 접근하는 특징을 보인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5).



휠체어 댄스 공연



클래식 공연 및 미술전시회



연극



음악 공연 (클래식, 뮤지컬 등)


복합형 (음악, 무용, 뮤지컬, 아동문학)



복합형 (마술, 밴드, 난타)

출처: 2025년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교육기관 소개 (https://www.able-edu.or.kr/)

[그림 Ⅱ-1]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2025년 사업수행기관 예시)

특히 사업수행기관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공연과 교육 준비뿐만 아니라 장애인 참여자(공연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참여자(공연자)가 함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장애인 참여자(공연자)의 공연 연습과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도 구성할 수 있다.

2024년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운영사업을 살펴보면 총 7개의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다양한 장르와 대상을 포괄하는 교육이 실시되었다.[1] 2024년 사업수행기관은 연간 최소 15회 이상의 무료 교육을 실시하여야 했으며, 수행기관별 교육 횟수는 총 15회에서 약 40회까지 차이를 보였다. 교육 참여자 수는 사업수행기관 별로 약 2,000명에서 최대 4,400명에 이르렀다. 교육 내용은 뮤지컬, 오케스트라, 인형극, 밴드, 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활용하였으며, 교육 대상의 연령층도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였다. 다만 교육대상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대학교, 공공기관, 기타기관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장애인 참여자(공연자)를 대상으로 공연 훈련을 최소 20회 이상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앙상블 반복 훈련, 인형극 대본리딩 및 무대연출, 대사 연습, 자기소개, 무대매너 등 다양한 내용을 연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 특별과정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2021년(제3기) 전문강사 양성 과정의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 특별과정'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스포츠, 미디어 등에 특기를 가진 전문강사를 양성하였다.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이 전문강사로 위촉되기도 하였다.

1)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운영사업 내부 자료

〈표 Ⅱ-6〉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 특별과정

구분	[유형A] 강의 전문가	[유형B] 특기 전문가
기본 자격	• 공공 또는 민간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중 최근 3년(2019, 2020, 2021) 간 최소 60회 이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경력 보유자	• 장애 관련 스포츠 또는 문화예술(음악, 미술 등) 수상이력(올림픽 등)이 있는 자 • 장애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 또는 참여 경력이 있는 자
가점	• 장애당사자(복지카드 사본 등) • 장애 관련 협회, 복지관, 시설 등 현장 전문경력을 보유한 자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특별과정) 참가자 모집 안내

2) 국내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사례

(1)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문화예술 공연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결합한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험형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공단에서 지정한 장애 전문 예술기관에서 1시간 이상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오케스트라, 앙상블, 뮤지컬, 연극, 공연, 미술, 전시 분야)을 실시하며, 공단에서는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표 Ⅱ-7〉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방법

사업체	사업체, 공단	사업체, 교육기관	사업체
교육 계획 (희망하는 교육기관, 일시, 장소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 상담 또는 교육기관 직접 상담	교육 일정, 장소 등 협의	교육 실시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포털 안내 재구성 (https://edu.kead.or.kr/ai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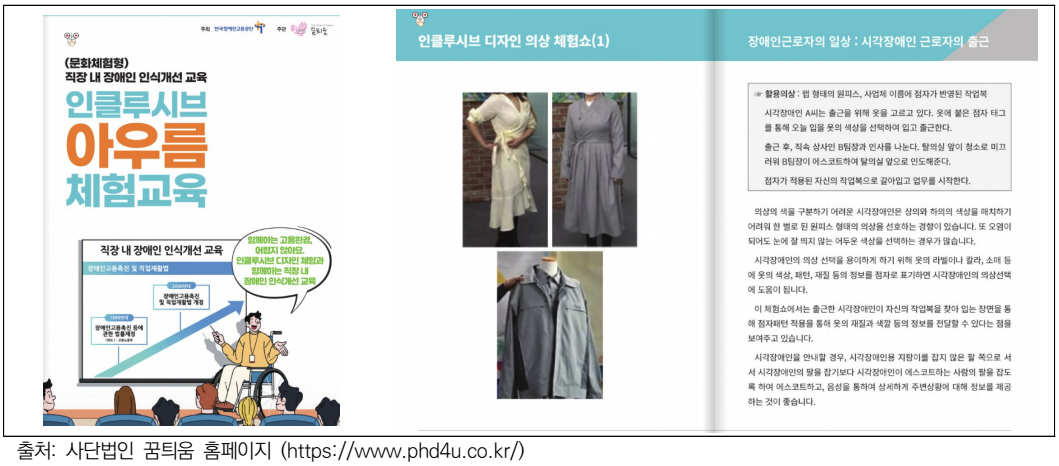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 유형은 간이·집합·원격·체험 교육으로 구분된다. 체험형 교육은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전문강사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장애체험,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문화예술을 접목한 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지정된 장애 전문 예술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정교육기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에 근거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1명 이상 둔 경우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포털에서 당해연도 문화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있다.

〈표 Ⅱ-8〉 2025년 문화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기관

연번	기관명	교육내용
1	한빛예술단	강의 + 공연 + 체험 일체형 콘서트
2	드림위드 앙상블	교육 + 공연 (클라리넷앙상블, 밴드팀)
3	밀알복지재단	음악공연 & 미술전시 & 시청각교육 + 교육
4	희망이룸	오케스트라 + 교육
5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연극 + 교육
6	(사)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교육 + 합창, 뮤지컬
7	한국 파릇하우스	강의식 + 체험형 + 관람형 (이머시브 공연)
8	아트위캔	교육 + 공연 (클래식, 국악, 실용음악, 크로스오버)
9	사단법인 꿈틔움	패션 융복합 공연 + 인형극 공연 + 교육 + 체험
10	빛된소리글로벌 예술협회	공연 + 교육 + 전시
11	인천시립 장애인예술단	강의 + 오케스트라 공연
12	라하프	뮤지컬 드라마 + 교육
13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교육 + 공연 + 전시 + 체험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포털 (https://edu.kead.or.kr/aisd/)

예를 들어, 사단법인 꿈틔움은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2020년을 시작으로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인클루시브 아우름'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인클루시브 디자인(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연계 문화체험과 강의가 융합된 형태로 구성된다. 약 1시간 동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의 강의(강의형)와 함께 문화체험형 스토리텔링 - 장애보조기기 및 인클루시브 디자인, 장애인 미술작가 작품을 활용한 디자인 의상 체험, 인형극 등 - 을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인클루시브 디자인 및 장애예술인 작품 패턴 디자인 의상을 장애인 패션모델이 소개하는 융복합 패션공연, 장애인 근로자의 일상을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한 인클루시브 디자인 쇼케이스 공연,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인형극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출처: 사단법인 꿈틔움 홈페이지 (https://www.phd4u.co.kr/)

[그림 Ⅱ-2] '인클루시브 아우름' 체험교육 교재

(2)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및 '하트해피스쿨' 장애인식개선교육 (하트-하트재단)

하트-하트재단은 장애인 예술단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장애인식개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그림공모전,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및 콘텐츠 제작, 발달장애인 유튜버 양성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트-하트재단의 장애인식개선센터는 발달장애에 특화된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발달장애인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오고 있다. 하트-하트재단 장애이해교육 '하트해피스쿨'은 발달장애인 강사가 진행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으로 문화예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달장애인 강사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 악기 연주와 강의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식개선을 이끌어낸다. 발달장애인 전문강사가 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며 다양한 연령층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의 지원을 받은 '2020년 장애인식개선교육 발달장애인 전문강사 양성사업'(발달장애인 전문교육과정 1~4기)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전문교육과정(1~4기)은 10명씩 총 40명의 발달장애인 전문강사 양성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발달장애인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수행하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7명)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2022년 한 해동안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하트해피스쿨'의 강사로 활동하며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새로운 직업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직접적인 경험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하트-하트재단에서 2006년 창단한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발달장애인 연주자(37명)로 구성된 장애인 예술단이다. 현재까지 국내외 1,000여회 이상의 연주를 통해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출처: 하트-하트재단 홈페이지 (https://www.heart-heart.org/)

[그림 Ⅱ-3]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가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하트해피스쿨'



출처: 하트-하트재단 홈페이지 (https://www.heart-heart.org/)

[그림 Ⅱ-4]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하트하트오케스트라'

(3) 장애인 예술단 '어울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여 예술단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 창출 및 장애인(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예술단 '어울림'은 2022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창단되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성 소속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이다. 7인(24년 기준)의 성인 중증 장애인 단원 모두 직원으로 고용되어 정식 출근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장애유형(자폐성, 지적 등)을 가진 단원들이 다양한 악기(피아노, 엘렉톤, 해금, 오카리나 등)를 연주하거나 노래(민요 등)를 부르며 예술공연이 진행된다. 학교와 외부 기관을 방문하여 학생, 시민, 교육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40회 이상 공연을 진행하며, 정기공연도 병행하고 있다. 24년에는 교육청 예산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공공기관, 직속 기관 등에서 40회 이상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단원들의 공연 프로그램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교사의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뿐만 아니라, 공연 지도를 위한 보컬, 협연, 오카리나, 엘렉톤, 클라리넷, 해금, 드럼 각 분야 전문 강사(6명)를 추가로 채용하여 개인 수업, 단원별 공연 프로그램 준비도 병행된다.

학교 대상의 공연에서는 장애예술인 단원들의 공연(연주) 뿐만 아니라 '함께하기', '장애인식개선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중증장애인의 공연 관람과 함께 참여형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어울리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목표로 한다.



출처: 세종시교육청 블로그 '세종교육 온소식' (https://blog.naver.com/sje_go_kr/223580628127)

[그림 Ⅱ-5] 장애인 예술단 '어울림'의 공연

2.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규정한 해외 법률 및 규정

1)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및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의 비차별 개념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는 고용, 공공 서비스, 공공 편의시설 이용, 통신, 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다. ADA는 "장애인 차별 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식 연방 법령과 공공 문건(예: ADA 원문, 고용주 지침, 연방 기관 설명)에서는 "의무적 인식교육(training/awareness training)"이라는 문구 또는 해당 취지의 조항은 없다. 그러나 ADA는 "차별 금지", "동등한 기회 보장", "합리적 편의 제공" 등 구조적·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 차별 금지를 내포하고 있다.

일부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시민단체 또는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장애인 인식교육이나 다양성 인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내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ODEP)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 및 고용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노동부 내 정책기구이다. ODEP는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 개발, 우수 관행 확산,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자료 보급, 고용주 및 사업주 지원 등을 수행한다. ODEP는 직접 "의무 교육"이라기보다는, 고용주와 기관이 자율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장애인 포용과 인식 개선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도구, 자료 및 리소스를 제공한다.

미국에서 장애인식교육은 법이 요구하는 필수 요소라기보다는, 사회적 책임, 다양성 정책, 기업·기관의 자율 실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ADA의 고용 관련 조항을 집행하는 연방 기관이다. ADA의 고용 규정은 타이틀 I이며 EEOC는 이 타이틀 I의 집행과 관련된 조사 권한, 구제 조치의 착수, 해석 지침과 기술 지원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EEOC는 법령을 단순히 해석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해당 법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는 기술 지원 문서와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고용주와 구직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안내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EOC는 연방 행정부 소속의 독립형 행정 기관으로서 직장 내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차별에 관한 민원 접수와 조사, 불법 차별 사례에 대한 행정적 구제 또는 소송 제기, 연방법 관련 규정 제정과 해석 지침 제공, 고용주와 피고용자를 위한 기술 지원과 장애인식개선교육·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EEOC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홍보를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서를 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웨어러블 활용 연방법상 고용 차별 금지 규정에 따른 웨어러블 기술 사용 지침 2024, 직장 내 시각장애와 미국 장애인법 2023, 직장 내 청각장애와 미국 장애인법 2023, 정신 건강 상태 관련 구직자 직원 고용주를 위한 지원 자료 2022, 직장 내 당뇨병과 미국 장애인법 2013, 직장 내 뇌전증과 미국 장애인법 2013, 직장 내 지적장애인과 미국 장애인법 2013 등을 통해 여러 종류의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EEOC, 2025).

2) 영국 보건케어법(Health and Care Act 2022) 및 올리버맥거윈행동규범(Oliver McGowan Code of Practice)에 따른 의무적 장애인식개선교육

2022년 7월 1일부터, 영국에서는 보건 및 성인 사회돌봄(health & adult social care) 영역에서, 정부에 등록된 제공자(provider)들이 소속 직원들에게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y) 및 자폐성(autism)'에 대한 훈련(training)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적용되었다. 해당 법률의 요구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행지침을 제시하는 문서가 바로 Oliver McGowan Code of Practice이다. 이 코드는 2025년 9월 최종 확정되었다.

본 규정은 단지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요양시설, 일반 의원, 보건소, 치과, 행정직원 등 "건강·돌봄" 제공 서비스에 등록된 모든 기관과 그 소속 직원에게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장애인 및 돌봄이 필요한 성인에게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CQC)에 등록해야하며, CQC에 등록된 건강 및 사회돌

봄 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직원들이 그 역할에 적합한 수준의 학습장애 및 자폐성 훈련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Code를 따르지 않을 경우, CQC는 그 사유를 확인하며 그 대안이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훈련임을 입증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보건·사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의 모든 직원이 교육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직접 돌봄(provision) 직원뿐 아니라 행정직, 지원직, 부속직원 등 "서비스 이용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원이 포함된다. 직원의 역할(role)에 따라 훈련 내용과 수준이 달라져야 하며, 단순 행정직과 직접 돌봄직은 다른 수준의 훈련을 받는다.

교육은 학습장애 지원을 위한 주요역량 교육(Core capabilities framework for supporting people with a learning disability)와 자폐성장애 지원을 위한 주요역량 교육(Core capabilities framework for supporting autistic people)이 제시하는 "최소 역량(minimum capabilities)"을 포함해야 한다. 즉, 단순한 인식 제고(awareness)를 넘어서, 실제로 장애인 및 자폐인에 대해 "이해 → 적절한 상호작용 → 필요에 맞춘 지원(조정, reasonable adjustments)"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역량 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 혹은 훈련 받는다.

Code of Practice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e-learning(온라인 학습 모듈) + live/interactive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인식 수준을 위한 직원이라면, 최소 90분 온라인 + 1시간 라이브/인터랙티브 세션을 포함해야 한다. 돌봄 제공 직원 또는 복잡한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는 직원이라면, 최소 하루(face-to-face) 교육이 요구된다.

교육은 "공동제작(co-production) + 공동전달(co-delivery)" 방식이어야 한다. 즉, 학습장애인·자폐성 이용자 또는 그 가족/보호자 등이 설계나 전달 과정에 실제 참여해야 한다.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학습장애인 + 한 명 이상의 자폐인"이 강사 또는 공동강사로 참여해야 한다.

3) 유럽연합(EU) Regulation (EU) No 181/2011 (버스·코치 승객 권리 규정)에 의한 의무적 장애인식개선교육

Regulation (EU) No 181/2011은 유럽연합(EU) 내에서 버스 혹은 코치(bus/coach)로 운송되는 승객의 권리를 규정한 법적 수단이다. 본 규정은 단순한 소비자 권리보호나 교통 편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및 이동성 제한이 있는 승객(disabled persons or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의 비차별, 동등한 수송 기회, 무상 지원,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제16조(Training) 조항으로, 운송사업자(carriers) 및 터미널 운영 주체(terminal managing bodies)에게 "장애인-관련 교육 절차(disability-related training

procedures)"를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훈련 또는 지시(instruction)를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승객, 특히 장애인 또는 이동성 제한 승객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assistance)을 제공하는 직원 - 운전기사 외의 지원 인력 등 버스/코치의 운전기사(drivers)를 포함하여, 승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승객 관련 업무(public-facing / passenger-related issues)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 등이 의무 대상이다. 즉, 단지 일부 전문 인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운전기사, 매표원, 터미널 직원 등 "승객과 만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원"이 대상이 된다.

훈련은 크게 모든 승객 대면 직원 대상인 장애인식훈련(disability-awareness training)과 직접 지원 제공 직원 대상으로 장애지원훈련(disability-assistance training)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3. 해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사례

1) 예술 속 장애(Disability in the Arts)

버몬트주 자립 생활 위원회(Vermont Statewide Independent Living Council, SILC)는 버몬트 주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옹호하고 장려하는 단체이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며 버먼트주 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Vermont Statewide Independent Living Council, 2025).

SILC에서는 "예술 속 장애(Disability in the Arts)" 수업을 통해 장애 예술가의 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장애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을 탐구하며, 창의성과 감각적 경험 및 능력과 장애를 연결한다. 학생들은 장애 예술가들에 관한 책을 포함하여 예술과 장애에 관한 작품을 이해하고 직접 접해봄으로서 장애 예술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또한 장애인에 의한 예술 프로젝트, 감각 활동, 접근성을 강조하는 미술 전시회 준비에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많은 젊은 장애 예술가들이 시각 예술, 음악과 춤, 글쓰기, 연극 분야에서 새로운 작품과 새로운 창의적 표현 방식을 창작하고 있다. 장애인 웹사이트, 블로그, 예술가들이 창작하고 공연하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찾아서 작품 활동을 공유하기도 한다.

장애가 예술적 재능과 창작 실천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많은 예술가들이 있으며, 현재 온라인이나 출판물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학생들은 장애가 있는 예술가와 없는 예술가의 작품을 연구하고 시각이외의 감각을 통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감각적인 방법을 교육한다(Vermont Statewide Independent Living Council, 2025).

〈표 Ⅱ-9〉 버먼트주 예술 속 장애

구분	세부내용
수업기초	단원: 장애 인식 포커스: 예술과 감각 학년 수준: 이 수업은 다양한 학년 수준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주제: 읽기와 언어 예술
개요	-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 창의성과 감각 경험, 능력과 장애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함. - 학생들은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의 책을 포함하여 예술과 장애에 관한 다양한 책을 읽거나 접함. - 보충 서술형 글쓰기 활동지에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시와 산문 쓰기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시각장애인, 저시력인을 위해 시각 및 공연 예술의 서면이나 음성 설명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글쓰기 기법을 탐구함.
시간 및 설정	- 최소 40분(또는 두 번의 20분 세션)이 소요되며 보충 활동은 며칠에 걸쳐 진행할 수 있음. - 대규모 그룹과 소규모 그룹 활동이 가능함.
학습 목표	- 텍스트, 이미지 및 예술을 분석하여 예술과 장애의 사회적, 문화적 경험에 대한 정보를 얻음. - 다양한 형태로 예술을 탐구하고 창조함. - 텍스트, 예술 작품 분석 및 창작 경험을 활용하여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다양한 장애 예술가들의 예술적 능력, 감각적 기술을 파악하고 예술을 통한 장애인 자립의 의미를 창조하는 방법을 이해함. -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서술적 글쓰기를 탐구하고 창조함. - 시각 정보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을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인들에게 소개함.
수업활동/표준	-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업 대화에 참여함. - 수업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룹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이야기 속 캐릭터, 설정 및 주요 사건을 식별함. - 텍스트에서 주요 세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제공함. - 이야기의 텍스트와 텍스트의 시각적 또는 구술적 표현을 연결함. - 표현된 주요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토론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함.
도구	- 도서관, 인터넷 및 기타 출처의 장애 및 예술과 관련된 소설 및 논픽션 책, 예술 작품. - 선택된 책, 활동과 관련된 미술 자료 및 도구(예술 작품에서 고려해야 할 촉각 자료로는 사포, 엘머 접착제, 흥미로운 질감의 종이나 천, 파이프 클리너, 모래 및 천연재료 물건 등) - 작품, 설명 및 학생 글을 게시할 테이프나 핀 - 접근성 표지판 및 서비스 목록 - 선택적 활동: 서술적 글쓰기 활동 워크시트

〈표 Ⅱ-9〉 버먼트주 예술 속 장애(계속)

구분	세부내용
수업 구현	○ 입문 읽기: - 소그룹으로 나누어 예술과 장애 또는 특정 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에 관한 소설이나 논픽션을 읽도록 함. - 독서를 마친 후, 학생들에게 독서에서 중요한 점을 공유하고 독서, 장애, 예술에 대한 반응을 논의하도록 함(실제 또는 상상 속의 개인에 대해 무엇을 배웠으며 장애와 예술이 그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예술 작품이 강조되었나요? 예술가들과 그들의 예술적 업적에서 어떤 점이 눈에 띄었나요? 학생들이 여러 예술가나 예술 형식을 탐구할 기회가 있었다면, 각 예술가의 스타일이나 색상, 질감, 모양, 소리 또는 기타 감각 요소의 사용에서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의 작품을 가장 모방하거나 더 배우고 싶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예술 활동: - 학생들이 선택한 책 중 하나를 바탕으로 콜라주, 그림 또는 기타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함. - 학생들에게 영감을 받은 콜라주, 그림, 조각 또는 기타 예술 프로젝트, 또는 예술가의 전기와 관련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미술 세션을 구성함. - 학생들이 콜라주나 그림을 만들고 있다면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으로도 예술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것을 유도함. - 미술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생각해보고, 작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물어봄(어떤 배경 정보와 기타 설명을 포함하고 싶으신가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떠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나요?) -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도록 함. - 알아볼 수 있는 시각장애를 가진 예술가로는 프리다 칼로, 빈센트 반 고흐, 척 클로즈, 도나 윌리엄스와 래리 비소네트와 같은 예술가들이 있음. ○ 대안 예술, 감각 활동 및 음악 활동: - 레이 찰스, 베토벤, 타악기 연주자 에블린 글레니 또는 기타 장애가 있는 음악가들의 작품을 읽고 들은 후, 학생들에게 음악을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함. - 음악과 관련된 요소들(리듬, 멜로디, 음색, 구조 등)이 어떻게 감정과 기억을 불러일으키는지 탐구하도록 함. - 선택된 음악을 들은 후, 학생들이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시, 춤, 노래, 에세이 또는 시각적 또는 촉각적 예술 작품을 만들도록 함(이 활동은 특정 장르의 다른 음악을 탐구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에블린 글레니의 음악을 들은 후 학생들은 다른 드러머와 타악기 연주자의 음악을 비교할 수 있음). - 학생들에게 소리를 진동으로 생각하고 진동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보도록 요청함.
수업 마무리/ 최종 발표	- 미술 전시회를 열고 교실과 현관에 작품을 전시함. - 학생들이 자신의 예술 작품을 벽이나 다른 전시 공간에 게시하고, 예술가와 그들의 예술 작품에 대한 전기나 설명도 함께 게시하도록 함. - 전시에는 학생들의 예술 작품에 대한 텍스트나 오디오 설명뿐만 아니라 각 예술가의 프로필과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의견도 포함될 수 있음.

2) 8가지 장애인식 아이들을 위한 아트 프로젝트(8 Disabilities Awareness Art Projects for Kids)

버지니아주 RQS 프로덕션 주식회사(RQS Productions Inc.)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나 영화를 통해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8가지 장애인식 아이들을 위한 아트 프로젝트(8 Disabilities Awareness Art Projects for Kids)를 실시하고 있다. 아이들이 미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와 관련된 그림 튜토리얼, 그림 프로젝트, 아이디어 제작 또는 기타 창의적인 활동을 제공한다. 특히 초등학생을 위한 단계별 미술 수업을 제공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쇄된 책 외에도 스케치와 비디오, 다이어그램이 포함된 수많은 드로잉 웹사이트를 제공하며 아이들에게 장애 캐릭터를 통해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친다. 장애 캐릭터는 오랫동안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 간과되어 왔지만, 다행히도 일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장애 캐릭터가 등장한다. 인기 어린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장애와 관련된 스토리라인에 등장하면 아이들은 장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해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아래는 다양한 장애에 대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미술 수업 모음이다. 드로잉 프로젝트 모음과 각 캐릭터에 대한 메모이다. 해당 웹사이트 프로젝트로 이동할 이미지 또는 제목을 선택할 수 있다(RQS Productions Inc., 2025).

〈표 Ⅱ-10〉 버지니아주 8가지 장애인식 아이들을 위한 아트 프로젝트

순번	제목	메모내용
1	아이들을 위한 쉬운 그림 그리기 동영상	이요르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	곰돌이 푸 돼지	피글렛은 불안 장애가 있으며 불안 장애는 피글렛을 끊임없이 걱정하게 하며, 아마도 그가 말을 더듬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3	니모를 찾아서의 니모	니모의 오른쪽 지느러미는 왼쪽 지느러미보다 작으며, 이는 선천성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니모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4	니모를 찾아서의 도리	도리는 단기 기억 상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은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5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줄리아 그리기	줄리아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서미 스트리트에서는 그녀가 삶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보여줍니다.
6	드래곤 이빨 없는 그림 그리기	투슬리스는 꼬리의 일부와 비행 능력을 잃었지만, 의수를 통해 그와 그의 친구 히컵을 돕습니다.
7	용의 딸꾹질	히컵은 다리의 일부를 잃었지만, 걷는 데 도움이 되는 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8	노트르담의 꼽추에서 콰지모도 그리기	고전 영화에서 예상치 못한 영웅이었던 콰지모도는 선천적으로 허리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일리노이주 허니콤 프로젝트(Honeycomb Project)의 트레스 프리다스 프로젝트(Tres Fridas Project)

일리노이주 허니콤 프로젝트(Honeycomb Project)는 시카고에 소재한 자선 단체로서 전 무이사로 재직 중인 크리스티나 로웬스타인이 공동 설립하고 이끌고 있다. 또한 캐서린 타넨과 함께 이 단체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시카고 허니콤 프로젝트는 가족들을 의미 있는 자원봉사 기회에 참여시켜 도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비영리 단체이다. 이 단체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지역 차원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배우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감, 사회적 인식 및 시민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허니콤 프로젝트는 온 가족이 참여하고, 동원되고, 서로 영감을 주어 강하고 연결된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거의 매 주말마다 수백 명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허니콤 프로젝트와 함께 자원봉사를 하며 시카고의 복잡한 도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을 취한다(Honeycomb Project, 2025).

허니콤 프로젝트는 50개 이상의 지역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모든 시민들 및 능력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풍부한 경험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시카고 전역의 가족들을 동원하여 주거 불안, 환경 보호, 지역 사회 건강과 같은 중요한 지역 문제에 대해 배우고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특히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예술을 통한 장애인식개선인 트레스 프리다스 프로젝트(Tres Fridas Project)를 실시하고 있다(Honeycomb Project, 2025).

〈표 Ⅱ-11〉 일리노이주 트레스 프리다스 프로젝트

구분	내용
프로젝트 배경	- 삶과 장애의 측면을 탐구하기 위해 고전 예술 작품을 재현하는 세 명의 시카고 장애 예술가 그룹임. - 척수 손상으로 마비된 두 아티스트인 레베카 토레스와 마리암 파레는 온라인에서 만나 예술, 부상, 프리다 칼로와의 깊은 인연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함. -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사진을 이용해 프리다 칼로의 그림 도스 프리다스를 재현하기로 결심하고, 휠체어에 앉아 자신만의 의상을 제작하고 이미지에 자신을 삽입함. - 사진작가이자 장애인 옹호자인 타라 아헌은 여러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프리다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통해 이 프로젝트와 연결됨.
프로젝트 주제	- 여성들은 종종 장애인으로서의 경험과 개인의 경험 및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여 사고를 자극하는 예술을 제작하고 혁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함. - 레바, 마리아만드 타라는 예술, 역사, 대중문화에서 다른 상징적인 이미지를 재현하고 삶과 장애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기 시작함. - 트레스 프리다스 컬렉션에는 도스 프리다스, 모나리자, 로지 더 리벳터, 최후의 만찬, 휘슬러의 어머니, 올드 기타리스트, 크리스티나의 세계 작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모든 주제는 장애인임.

〈표 Ⅱ-11〉 일리노이주 트레스 프리다스 프로젝트(계속)

구분	내용
프로젝트 주제	- 트레 프리다스는 장애를 가진 여성 예술가로서 리베카, 마리암, 타라의 창작 과정을 기록하며, 인간의 장애 경험을 영감, 수치심, 두려움, 연민이 아닌 사랑, 고통, 좌절, 아름다움, 행복, 추진력으로 친숙한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유명함.
프로젝트 관련 주요질문	- 트레스 프리다스의 작품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놀라웠나요? - 트레스 프리다스는 예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일을 하나요? 그들의 작품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트레스 프리다스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 아래 질문들을 통해 오늘 가족과의 멋진 대화를 시작하세요.

4. 국내 장애 예술가를 위한 정책 및 지원 사례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련 법률 및 제도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예술인 정의

한국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를 시작으로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장애예술인(Disability Artists)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예술 창작을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며 고용 여부 및 관련 협회 등의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예술인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자'로 정의될 수 있다(장선녀 등, 2024). 관련 법(장애예술인지원법)에서는 장애예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동법 시행령의 제2조(장애예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장선녀 등, 2024).

〈표 12〉 장애예술인의 정의

구분	조항
제3조(정의)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시행령 제2조 (장애예술인의 범위)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9. 12.〉 1.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장애예술인지원법」 제8조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함께 실시한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은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경제적 여건과 접근성에서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장애예술인이 지난 3년간(‘21~’23년) 작품을 발표하거나 참여한 평균 횟수는 16.8회로 2021년 조사 대비 4.8회 증가하여 창작 활동의 양적 확대를 보여주었으며,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언어장애(22.4회), 지체장애(20.4회), 시각장애(18.9회) 순으로 많았고 활동 분야는 서양음악(36.3회), 방송연예(28.4회), 사진(16.5회)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애예술인 중 전업 예술인 비율이 50.4%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애예술인의 절반은 문화예술창작 활동 수입이 연 30만원 이하였으며 76.2%는 문화예술창작 활동 수입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57.7% 수준이었으며, 81.3%의 문화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하여 물리적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한편, 장애예술인의 경우 창작지원금 부족(59.8%), 생활안정지원금 부족(43.6%), 연습·창작공간 부족(36.3%)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

(3)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는 2022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기존의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공예품, 공연, 미술품 등 문화예술 창작물에 특화되어 있으며 구매 비율도 3%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여야 한다.

특히 본 제도는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기준과 구매 개념을 확장하여 공예품·미술품 등 창작물 구매, 공연·전시 등 서비스 구매 등도 구매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예술인에게 작품을 공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선구매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발표 기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2)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및 사례

(1)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안정적 창작활동 제고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모사업이다.

장애예술인의 전문적인 창작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적인 예술·취미활동 지원, 예비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창·제작 기반 지원(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장애예술 연구 지원, 장애예술 첫 지원), 창·제작 활동 지원(예술 창·제작 과정 지원, 예술 창·제작 발표 지원, 장애예술 협력 프로젝트 지원), 교류 활동 지원(국제 예술교류 지원), 향유 활동 지원(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유통 및 확산 지원(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지원, 장애유형별 특성화 축제 지원) 등 총 11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장애예술인, 장애예술단체, 예비·비장애예술인(단체)로, 장애·비장애 개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의 접근성과 문화향유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분야는 공연예술(연극·무용 등), 시각 예술(그림·사진 등), 문학 등 다양하게 참

여 가능하다. 25년도 기준 총 64억원 규모를 지원하였다.

특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의 사업 이해도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수어·자막·음성해설 등을 포함한 안내영상, 지원사업 지원신청 책자 및 쉬운 안내서(시각장애인용 텍스트 포함)를 배포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질의응답소 운영(서울, 부산)을 통한 대면 상담 지원, 지원신청 도움창구(지원신청 대행·시각장애인 지원신청서 대필), 온라인 상담창구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2) 시설 및 공간 지원 : 모두미술공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체육관광부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 '모두미술공간'을 개관 및 공개하고 있다. 전시·공연·작품발표 등을 위한 시설 부족, 연습 및 창작공간 부족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욕구를 충족하고(장애예술인 실태조사, 2021; 2024),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표방하여 장애유형별 콘텐츠 기획 전시, 장애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5)

장애예술인 창작·발표 기회 확대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단체에 우선 대관 및 대관료 할인(50%)을 제공한다. 장애인·비장애인 협력 사업, 장애예술 담론, 전문예술교육 행사 등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3) 예술활동준비금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지원)을 통해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의 예술활동 안정망 구축을 목적으로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한 창작활동 중단 방지 및 지속적·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으로서, 자격기준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 120% 이내인 자이다. 지원 금액은 일반 부문은 1인당 300만원 (격년 지원, 총 20,000명), 신진예술인 부문은 1인 당 200만원 (총 30,000명) 규모로 선정하여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때 장애예술인에 대하여 지원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지원예술인 총 23,000명(660억) 중 장애예술인 현황은 일반 부문 1,547명, 신진예술인 부문 119명이 우선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더불어 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활동증명과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지원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 지체 장애 예술인의 신청 지원 과정과 선정 사례가 사례집에 소개된 바 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5).

(4)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은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예술인 및 단체를 발굴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 강화 및 예술적 성장, 안정적인 장애예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 예술생태계의 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당해 연도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작품제작(연구활동 포함) 및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장애예술인 개인 또는 장애예술단체'이다. 문학, 연구, 문학외(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의 8개 분야에 걸친 포괄적 지원을 통해 장르적 다양성을 도모하며, 주제가 장애예술에 부합하는 경우 연구 분야에 대해 비장애예술인 및 단체도 포괄하여 지원하고 있다.

최대 2천만원 이내의 창작활동지원금을 제공하며, 사례비, 홍보비, 제작비, 대관료, 재료비, 임차료 등 창작활동과 발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주목할 점은 단순히 작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창작자의 창작과정 전반의 활동을 인정하여 정액 30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5. 해외 장애 예술가를 위한 지원 정책

1) 미국의 장애 예술가를 위한 추가 보장 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추가 보장 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은 특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예술가에게 매월 제공되는 현금 서비스이다. SSI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예술가의 경우 미술품 판매로 인한 소득이 재산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SSI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5년 장애인의 월 SSI 최대 금액은 $967이다. 이는 연방 최대 수혜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 수령 금액은 장애 예술가의 소득, 생활 상황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최고 금액보다 낮을 수 있다(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25).

SSI를 산정하는데 있어 월 총 수입이 핵심이 된다. 매월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의 처음 $65는 그 총액에서 공제하고 추가로 남은 금액의 절반을 공제한다. 그리고 장애 예술가가 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총 금액을 조사하지만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예술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지출(예술 용품, 종이 등)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본인의 재산을 산정한다. 이러한 공제 가능한 비용을 "소득 획득 비용(expenses of obtaining income)"이라고 한다.

SSI를 받기 위한 최대 수입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메디케이드와 같은 의료 혜택이나 특정 혜택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예술가로서 기관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메디케이드와 유사한 의료 보험을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메디케이드는 계속 제공된다.

예술 활동에 대한 보조금과 장학금은 교육비로 사용되는 경우 SSI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식료품, 주거 및 기타 구매에 필요한 자금은 비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SSI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예술적 성취 혹은 예술 활동으로 받은 어떠한 종류의 상 혹은 상금 등은 상을 받은 달의 비근로 소득으로 인정된다. SSI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상금은 $2,000(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000)이며 이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SSI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끝으로 장애 예술가가 작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물품 및 기타 자산은 SSI 금액을 결정하는 재원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원은 특정 한도에 따라 재산으로 계수되지 않는다. 이를 "자립에 필수적인 재산(property essential to self-support)"이라고 한다. 즉 예술 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SSI 금액을 결정하는 계수 가능한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아 실제 재산 총액을 감소시켜 SSI 수급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25).

〈표 Ⅱ-13〉 미국 장애 예술가를 위한 SSI 지원

구분	내용
매월 현금 지급	장애 정도, 거주 형태에 따라 매월 최대 $967 현금을 지원함.
소득 일부 공제	매월 근로소득 중 처음 $65 공제 후 추가로 남은 금액의 절반을 공제함. 예술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지출(예술 용품, 종이 등)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함.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유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메디케이드와 유사한 의료 보험을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메디케이드는 계속 제공됨.
예술 활동 보조금/장학금/상금	예술 활동에 대한 보조금과 장학금은 교육비로 사용되는 경우 SSI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어떠한 종류의 상 혹은 상금 등은 상을 받은 달의 비근로 소득으로 간주함.
자립에 필수적인 재산 (property essential to self-support)	작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물품 및 기타 자산은 SSI 금액을 결정하는 재원으로 간주되지는 않음.

2) 장애 예술가를 위한 장애인 퓨처스 펠로우십(Disability Futures Fellowship)

(1) 장애인 퓨처스 펠로우십(Disability Futures Fellowship)의 목적

장애인 미래 펠로우십(Disability Futures Fellowship)은 포드 재단과 앤드류 W. 멜론 재단이 자금을 지원하는 펠로우십이며 미국 예술가들이 주관하는 중장기 지원 계획이다. 본 펠로우십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창의적인 장애 예술가들의 가시성을 높이고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장애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드와 멜론은 본 펠로우십을 통해 문화 분야의 장애 예술가의 부족, 장애인 실무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전문성 개발 기회 부족, 장애 예술가의 고유한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 국가 보조금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예술과 문화,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영화 분야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장애 예술가들은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렌즈를 사용하여 자신의 작업을 통해 관점을 형성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예술가 혹은 예술 실무자들, 특히 여성,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등은 역사적으로 예술, 저널리즘, 영화 분야에서 지원책이 부족했으며, 불평등이라는 복합적인 환경에 직면할 수도 있다. 본 펠로우십을 통해 장애인 창작자에 대한 장애 주도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장애 예술가들의 작업에 대한 추가적이고 교차적인 지원을 촉진한다(Ford Foundation, 2025).

(2) 장애 예술가의 정의

포드와 멜론 재단은 장애인과 장애인 실무자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의를 사용한다. 장애인 그룹에는 신체적, 감각적, 지적 또는 정신적 사회적 장애와 만성 질환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포함된다. 즉 다양한 유형의 장애 혹은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장애 예술가들을 대상으로하며 본인의 장애가 예술 활동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3) 펠로우 선발 기준 및 자격 요건

본 펠로우십은 포드, 멜론 및 기타 자선 단체가 장애 예술가, 언론인,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전국의 수십 명의 장애 예술가와 창작 실무자를 인터뷰한 1년간의 연구 결과로 창안되었다. 각 펠로우 코호트(그룹)은 자신의 업무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초청된 장애인 실무자들에 의해 지명되었다.

펠로우 코호트들은 뉴욕주 브루클린과 베이 지역과 같은 기존 문화 센터뿐만 아니라 미네소타주 홉킨스와 버몬트주 벌링턴과 같은 전국의 소규모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펠로우 코호트들은 각 분야의 리더로, 축제와 경연대회에서 상을 수상하고 유수의 박물관에서 작품이

상영되었으며 널리 배포되는 영화와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펠로우 코호트들은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또는 LGBTQ로 구분되는 매우 다양한 실천가 그룹이다. 펠로우는 안무부터 영화 제작, 미디어, 건축 및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와 분야에 걸쳐 다양한 예술 활동을 수행한다.

(4) 팰로우를 위한 지원

본 펠로우십을 통해 포드와 멜론은 문화적 환경을 발전시키는 3개의 장애인 창작자 코호트를 지원하고 있다. 각 펠로우십에는 각 장애 예술가의 활동을 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50,000의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별 코호트 당 총 $1,000,000을 제공한다(Ford Foundation, 2025).

(5) 기타 펠로우십

미국 언론인 및 작가 협회 긴급 지원 기금은 도움이 필요한 작가들을 위한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다. 작가 긴급 지원 기금은 고령, 질병, 장애, 자연 재해 또는 특별한 직업적 위기로 인해 활동할 수 없는 프리랜서 작가들을 돕기 위한 기금이다. 작가는 보조금 자격을 얻기 위해 미국 언론인 및 작가 협회의 회원일 필요는 없지만, 지원자는 지속적인 기간 동안 과거의 전문적인 프리랜서 논픽션 작성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미국 언론인 및 작가 협회 회원과 유사한 자격을 의미한다. 본 기금은 미국 언론인 및 작가 협회 자선 신탁을 통해 관리된다. 공연하는 음악가와 작곡가들은 이러한 협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기도 한다.

페트리요 메모리얼 펀드는 1951년 당시 제임스 C. 페트리요 대통령이 고인의 아들을 기리기 위해 $10,000를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페트리요 메모리얼 펀드는 장애인 회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선 신탁 펀드이다. 본 펀드는 건강 의료보험을 대체하거나 일반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긴급 상황에 처한 장애 예술가들에게 적절한 양의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펜 아메리칸 센터의 작가 긴급 기금은 긴급한 비상 금융 위기 상황에서 전문 출판 또는 제작 작가를 위한 긴급 기금이다. 회원 자격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금은 상황에 따라 최대 $2,00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최대 $10,000은 특히 어려운 상황과 자금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급되며 기금은 3년 이내에 동일한 대상자에게 반복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카네기 작가 기금은 장애가 있는 작가들을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작가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 긴급 지원은 독자들의 인정을 받아 합리적인 분양의 도서를 상업적으로 출판한 작가들에게 제공된다.

헤이븐 재단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예술 경력을 위협하는 질병, 사고, 자연재해 또는 개인

적 재난을 겪은 프리랜서 예술가, 작가 및 예술 및 예술 제작 커뮤니티의 일시적인 보조금을 제공한다. 보조금은 헤이븐 재단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수여되고 갱신된다.

3)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예술 접근성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은 1965년 설립된 미국 연방 정부의 독립 기관으로서 예술 활동이나 우수한 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과 펀드를 제공한다, NEA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개인과 단체가 프로그램과 시설을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이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EA의 접근성 사무소는 장애인, 노인, 참전용사, 기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예술 기금의 활용, 접근성 관련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는 부서이다. 접근성 사무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25).

- 기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장애인, 노인 및 기관 내 거주자에게 예술을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재활법 및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비차별 조항 504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함.
- 장애인 및 노인에게 접근 문제와 예술 프로그램의 가치 및 혜택에 대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연방 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함.
- NEA 직원과 주 및 국가 기관을 통해 장애인 및 노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려책을 지원함.
- NEa 직원, 그 수혜자 및 기타 연방 기관을 위한 패널, 접근성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을 조직/소집함.

NEA의 시민권 및 평등 고용 기회 사무소(OCREO)는 시민권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의 개발, 실행 및 조정을 담당한다. NEA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예술 프로그램과 활동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나이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비차별 법령을 준수한다. 또한 NEA에서 실시하는 예술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Ⅲ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관계자의 사업 참여 경험 : 포커스 그룹인터뷰 및 심층인터뷰

1. 조사개요

1) 연구 방법

본 절에서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관계자들의 사업 운영, 교육 기획 및 참여 경험을 풍부하게 탐색함으로써 교육 사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중증 장애인 문화예술 강사의 자립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먼저 수행하고,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장애-비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FGI와 심층인터뷰를 차례로 적용한 것은 데이터 출처를 삼각화하여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상황에 부합하는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자료수집 방법(Kaplowitz & Hoehn, 2001; Lambert & Loiselle, 2008)이기 때문이다. 연구 질문은 책임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가 질문 초안 작성, 상호 검증 후 구조화하였고, 사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전달하였다. 수집된 자료, 즉 참여자들의 경험으로부터 공통의 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반적 질적연구(Generic Qualitative research)의 주제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연구참여자

(1) 자료 수집

FGI 연구 참여자는 사업의 주 담당자이다. FGI는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의 주제에 관한 경험, 느낌, 의견을 상호 나누는 과정에서 심층적인 지식을 얻고자 할 때 적합한 연구방법(김인숙, 2024)이다. 또한 주제와 관련된 공동의 관심사와 일정한 동질성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며, 다른 참여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Carter et al., 2014)에서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할 수 있다. 사업 담당자들은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방식이나 지역 등 서로 다른 조건에 있으면서도 동일한 예산과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인 측면이 있어 공통의 의견을 도출하고 개별 기관의 상황에 따라 고려할 요소들이 있는지 비교 검토하기에 FGI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심층인터뷰의 연구 참여자는 사업을 기획, 지원하거나 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장애-비장애

예술인이다. 심층인터뷰는 장애와 관련된 경험, 개인적인 견해 등 민감한 주제가 포함되는 개인적인 경험을 자료로 수집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장애 예술인 또는 비장애 예술인으로서 교육의 기획, 준비와 참여하는 과정, 일상에서의 경험을 풍부하게 탐색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방향이나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층인터뷰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FGI와 심층인터뷰 이전에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성별, 연령, 장애 여부/유형, 근속 및 관련 경력, 자격증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하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는 FGI를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에게 공통의 질문을 제시하고, 참여자 간 의견을 듣고 관련된 경험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두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FGI와 심층인터뷰 모두 경험의 구체성(김인숙, 2024: 269)에 초점을 두었고, 참여자들이 그러한 견해를 가지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청(스몰, 칼라코, 2023)하고, 연구자가 이해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풍부하고 정확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각 인터뷰 질문은 연구 시작 전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 부서와의 회의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을 기초로 하였다.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는 각각 포커스그룹인터뷰와 심층인터뷰 질문지 초안을 작성한 후, 연구진 간 상호 검토 과정을 거쳐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질문지를 구체적으로 구조화하였고,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또는 참여자의 경험에 따라 연구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질문지는 〈표 III-1〉과 같다.

〈표 Ⅲ-1〉 포커스그룹인터뷰 및 심층인터뷰 질문지 구성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포커스 그룹인터뷰</th><th colspan="2">심층인터뷰</th></tr>
<tr><th>사업 담당자</th><th>사업 참여자(장애)</th><th>사업참여자(비장애)</th></tr>
<tr><td rowspan="2">사업 운영/참여 경험</td><td rowspan="2">• 기관 소개 및 기관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에 대한 설명
• 교육 의무 대상 기관 확보 및 운영 방식
•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확보, 역량강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점
• 사업 운영에서 어려운 점</td><td colspan="2">• 사업 참여 동기
• 사업 내에서 담당하는 업무</td></tr>
<tr><td>• 교육 진행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주변의 지원
• 교육 준비·진행 과정에서 참여, 소통 방식
• 교육 준비·진행 과정에 관한 경험: 기억에 남는 일, 어려운 점과 해결 방법, 보람되거나 좋았던 점
• 연습·공연 참여를 어렵게 하는 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td><td>• 기관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 준비·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
• 현장에서 경험하는 문제점·어려움, 보람되거나 좋았던 점
• 사업 운영에서 어려운 점</td></tr>
</table>

〈표 Ⅲ-1〉 포커스그룹인터뷰 및 심층인터뷰 질문지 구성(계속)

구분	포커스 그룹인터뷰	심층인터뷰	
	사업 담당자	사업 참여자(장애)	사업참여자(비장애)
사업의 효과	• 교육 효과 측정 방법 • 교육의 효과 • 참여 장애인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 및 자립/직업 확보 지원 방안	• 바뀌었으면 하는 장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잘못된 이해	
		• 교육 참여 시 기억에 남는 장면 • 사업에 참여 이후 나의 일상의 변화, 자립에 미치는 영향 • 참여 장애인의 일 지속을 위한 지원 방안	• 교육의 효과 • 장애 예술인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 방안
수행기관 선정/모니터링 관련	• 사업 선정, 모니터링, 결과 보고 등 추진 방법 관련 의견	–	• 사업 선정, 모니터링, 결과 보고 등 추진 방법 관련 의견
중장기 발전 방향	• 사업 발전·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제도적 개선 방안	• 사업 전반에 관한 의견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FGI 참여자는 2025년도 사업 수행 기관(7개소) 및 2년 이상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2개소) 주 사업 담당자(대표 또는 실무자)이다. 포커스그룹은 참여자 간의 원활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경험을 나눌 수 있어야 하므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 참여 경험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세 그룹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포커스 그룹은 지속 참여기관(5개소, 5인), 신규 참여기관(2개소, 2인), 이전 참여기관(2개소, 3인)으로 총 9개소, 10명이 참여하였다. FGI는 2025년 7월 중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고, 각 그룹당 소요 시간은 150분 내외였다.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의 소속기관 중 2개소는 장애인복지관이었고, 7개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주로 하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참여자 10명 중 여성이 80%였고, 모두 비장애인이었으며, 해당 기관에서 최소 2년에서 16년 8개월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 소속 참여자를 제외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참여자 7명은 모두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경력은 2년에서 7년 3개월로 보고되었다. 이중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는 5명이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참여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5년도 사업 수행기관(7개소) 참여자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수행기관 중 일부 기관은 본 사업에 이전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에 자료 수집 시 경험에 관한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도 이전 사업 참여 경험도 자료에 포함되었다. 사업 수행기관 대표자(또는 담당자)로부

터 연구 주제에 적합한 참여자를 추천받는 세평적 사례 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는 지역적 특성(수도권/비수도권), 사업 참여 기간, 장애 여부 및 유형, 문화예술 활동 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2025년 8월 중 각 1회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각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90분 내외였다. 심층인터뷰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의사소통 방식의 특성과 참여자의 의사, 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전 서면 인터뷰 후 대면 인터뷰(청각장애), 기관 방문을 통한 대면 인터뷰(발달장애), 온라인(zoom) 활용 등으로 유연하게 조정하였다.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담당자가 배석하여 수어 통역, 설명 등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인터뷰는 일대일이 아닌 다대일로 이루어졌다.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는 모두 예술인으로 장애 예술인 3명, 비장애 예술인 4명으로 총 7명이었다. 참여자 중 3명은 여성, 4명은 남성이며, 근속기간은 1년 7개월에서 15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비장애 예술인 중 2명은 직접 공연이 참여하지 않고 기획, 사업 운영, 장애 예술인 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모두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진행되는 공연에 직접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단, 참여자 전원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대	장애	소속	지역	직위	근속기간 (강의경력)	자격증	사업 내 역할	비고	
참여자1	F	50대	비장애	A문화예술단체	비수도권	사무국장	7년3개월 (7년3개월)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사회복지사	사업 담당	포커스그룹인터뷰	이전 참여 기관
참여자2	F	30대	비장애	B장애인복지관	수도권	팀장	11년	사회복지사	사업 지원		
참여자3	F	30대	비장애			팀장	4년 4개월	사회복지사	사업 담당		
참여자4	M	30대	비장애	C문화예술단체	비수도권	대표	5년 6개월 (6년)	발달재활/음악치료사	기관(대표)		지속 참여 기관
참여자5	F	50대	비장애	D비영리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비수도권	대표	8년 2개월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사회복지사	기관(대표)		
참여자6	F	30대	비장애	E문화예술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비수도권	팀장	4년 8개월 (4년)	보육교사/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사업 담당		
참여자7	F	50대	비장애	F문화예술단체 (사회적기업)	비수도권	상임이사	16년 7개월 (5년 6개월)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발달재활/유아교사	사업 담당		
참여자8	F	40대	비장애	G문화예술단체	비수도권	팀장	12년 4개월 (2년 1개월)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사회복지사	사업 담당		
참여자9	F	30대	비장애	H문화예술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비수도권	대표	2년 1개월 (2년)	장애인평생교육강사	기관(대표)		신규참여기관
참여자10	M	30대	비장애	I장애인복지관	수도권	팀장	10년	사회복지사	사업 지원		

www.koddi.or.kr

〈표 Ⅲ-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

참여자	성별	연령대	장애	소속	지역	직위	근속기간 (강의경력)	자격증	사업 내 역할	비고
참여자11	M	40대	발달장애	G문화예술단체	비수도권	예술인	10년 이상	-	교육-공연 (마술, 연주 등)	심층 인터뷰
참여자12	F	20대	비장애	G문화예술단체	비수도권	팀장	1년 7개월	- (공연예술경영 전공)	사업 기획/ 교육-공연 (연주)	
참여자13	M	20대	청각장애	H문화예술단체	수도권	예술인	3년	사회복지사	교육-공연 (연기)	
참여자14	M	30대	비장애	H문화예술단체	수도권	예술 감독	2년	-	각본, 기획, 연출	
참여자15	M	30대	뇌병변 장애	F문화예술단체	비수도권	예술인	15년 (5년)	-	교육-공연 (무용)	
참여자16	F	20대	비장애	F문화예술단체	비수도권	팀장	4년 7개월 (4년)	문화예술교육자격	사업담당/무용장	
참여자17	F	30대	비장애	E문화예술단체	비수도권	예술인	5년 (4년)	-	인형극 배우	

3) 자료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심층 인터뷰 자료는 각 연구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녹음(zoom의 경우 녹화 병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사(transcription)하여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작성한 서면 인터뷰 자료는 원문 그대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를 우선 분석하면서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후 인터뷰 자료분석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경험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과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로부터 주제를 도출하는 귀납적 주제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녹음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료에서 의미있는 범주를 찾고, 이를 다시 대범주(주제)로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분석된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출된 범주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과정(김인숙, 2024:330-331)을 거쳤다.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인 참여, 연구 참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추진 이전에 사업 부서를 통하여 각 기관에 연구 진행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고, 이후 각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 및 방법,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보장, 연구 참여를 통한 혜택(사례비) 등을 이메일을 통하여 설명하고 동의서를 수령하였다. 심층인터뷰와 FGI를 시작하기 전 연구자는 연구 자료가 녹음(또는 녹화)되어 자료로 활용됨을 추가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 및 윤리 등에 관한 정보를 다시 설명하였고, 연구보고서 내 참여자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 후 의견 수렴 절차, 인터뷰 중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단이 가능하며, 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참여 전 가능하거나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확인하였다. 사전 서면 인터뷰 진행 등과 같이 인터뷰 방법을 조율하거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배치, 친숙한 장소나 수어 활용 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 섭외 등을 통하여 적절한 인터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행정 서류 처리 등의 과정에서도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수집된 자료에서 기관명과 참여자명은 모두 부호화하여 익명 처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연구진 내에서만 공유하였다.

넷째, 자료 수집과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participant triangulation)(Patton, 1999)하고,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통한 의견 도출과 FGI와 개인의 관련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심층면접의 인터뷰 방식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자료 출처를 삼각화(data source triangulation)(Carter et al., 2014)하였다. 또한 분석된 자료는 공동연구자와의 상호 검토를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조사 결과

FGI 자료 분석 결과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수행기관의 경험과 관련한 주요한 주제는 아래〈표 Ⅲ-3〉과 같이 도출되었다.

〈표 Ⅲ-3〉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운영 및 참여 경험의 주제

구분	주제	세부주제
사업의 의미와 효과	(1) 접촉면의 확장을 통한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완화하다	① '거리감'의 감소 ② '장애'에 가려져왔던 긍정성을 인식 ③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힘 ④ 협력하고 소통하는 '동료'예술인
	(2)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확장하다	① 새로운 접근 : '정답이 없는 예술'이 가진 가능성 ② 더 체계적인 교육 :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의 진전 ③ 부가적 효과 : 미래의 장애 예술인을 위한 진로교육
	(3) 중증 장애 예술인의 '삶의 자리'를 만들다	①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경험 ② '장애+예술인'으로서 정체성을 인식하는 경험 ③ '예술인'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경험 ④ 의미있는 관계와 장소를 만들어가는 경험 ⑤ 가족의 지지와 응원을 받는 경험
사업 수행의 어려움	(1) 정해진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교육콘텐츠 '공연'	① 교육 '실적'과 '효과'의 불일치 ② '좋은' 공연이라는 기준의 모호함 ③ 보이지 않는 'cost'의 발생
	(2) 한정된 예산이 만드는 한계	① '현실'과 거리가 있는 예산 집행 기준 ② '두 마리 토끼' 잡기
	(3)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벽'	① 교육기관의 수요와 사업 수행 방식의 간극 ② 사업에 대한 낮은 이해 ③ 편의시설의 부재를 감당하기

〈표 Ⅲ-3〉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운영 및 참여 경험의 주제(계속)

구분	주제	세부주제
개선 방안	(1) 사업 안착을 위한 밑그림의 재구성	① 사업 선정 및 운영 기간의 조정 ② 수행기관 선정-점검-평가 기준의 조정 ③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④ 수행기관의 성과와 참여자들의 기여 인정 ⑤ 예산 구조 및 사업 지원 방식의 점검과 개선
	(2) 사업의 고유성을 강화할 방안	① '문화예술'이 손상되지 않는 지원 ② 장애 예술인이 '장애'를 경험하지 않도록
	(3) 자립의 '첫걸음'에서 나아가 '실질적' 자립지원으로	① 소득의 적정성 확보 ②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③ 장애 예술인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한 지원
	(4)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① 교육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② 장애 예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③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 ④ 장애 예술인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간 연계

1)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의 의미와 효과

(1) 접촉면의 확장을 통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완화하다

① '거리감'의 감소

'장애인'과 '장애'에 관한 편견은 장애인과 일상에서 "눈으로 마주하고 대화하는 기회"(12)가 부족하기 때문에 존재하기도 한다. 수행기관들은 이러한 편견을 줄이고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르지 않"(6, 17)고 "함께 어울려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6)는 메시지를 공연에 담는다. 그리고 기존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달리 교육자와 학습자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무대 위에서 함께"(C, 4, 16)하는 경험을 갖게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무대 위의 예술인들을 '장애인'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나랑 같은 사람"(1)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 공연 주인공이 이제 장애인이긴 하지만 그냥 저희 일상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장애인이라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은 누구나 다르다, 너랑 내가 다르고 -중략- 공연을 보면서 처음에는 주인공이 장애인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냥 한 인물로서 보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여자 9)

> 대사를 할 때도 인위적으로 저희가 대사를 많이 바꿔서 하지 않고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억양이

나 이런 표현 방식,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저희가 사용해서 이제 대사를 했거든요. -중략- 순간순간에 비장애인 예술인과 같이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그냥 따로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무대 위에서 함께 완성되는 모습들을 (참여자 4)

관람하고 같이 인형도 만져보고 인사도 나눌 수 있게 하고 오케스트라도 악기 체험도 같이 해보고 합주도 하고 약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단순히 관람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대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하면서 좀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그 교육 만족도 조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2)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무대 위에서 함께하거나, 장애인이 감각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공유하는 물리적인 접촉 경험은 장애인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여준다. 줄어든 거리감은 먼저 다가와서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고(12), 안아주며 인사하는(16) 학습자들의 태도 변화나 피드백에서 드러난다. 이는 장애인과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친밀감이 높아지고,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예성·하웅용, 2021; 이진수, 2008; 정숙희, 2020)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끝나고 나서 인형극 단원분들이 이제 자기 인형이랑 같이 소개도 하시고 친구들이랑 아이들이랑 직접 만나서 이제 이렇게 인형도 만지고 악수하고 얘기도 한마디씩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장애 당사자분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다가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약간의 어떤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즐겁게 그날 하하호호 얘기를 하고서 (참여자 3)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유심히 굉장히 애들이 그래서 계속 뭔가 쳐다보고 쳐다보거나 저 사람도 장애인이야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그렇게 읽다가 제가 마지막 곡을 할 때 아이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춤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대에도 같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다 같이 기차 노래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보면 아이들 마음도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 (참여자 12)

② '장애'에 가려져왔던 긍정성을 인식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은 '일을 하지 못한다', '도와주어야 한다'는 편견, 치료나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의료적인 관점이 뿌리깊게 존재함을 느끼고 있었다. 각 수행기관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2]에 초점을 두고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인식에 관해 지식을 전달하듯이 설명하지 않는다. 공연 안에서 장애인은 "당당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펼치"(14)는 존재로 표현되며, 장애는 이들의 삶을 구성하는 한 부분임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납작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노력이 닿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학습자들의 달라진 표정이나 피드백이다. 공연은 학습자들이

2) 참가자들에게 사전 동의서 수령 시 기관의 주요 교육내용을 확인하였고 공통으로 나온 응답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제3항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는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였다.

장애인의 “결핍이나 부족을 보는 게 아니라”(7), “일을 할 수 있는 사람”(3), “장점”(17)이 있는 긍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주인공이 이제 장애인이긴 하지만 그냥 저희 일상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장애인이라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은 누구나 다르다, 너랑 내가 다르고 우리 엄마랑 나도 다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공연을 보면서 처음에는 주인공이 장애인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냥 한 인물로서 보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여자 9)

> 농인들은 말을 못한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도 농인들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깨기 위해서 제가 참여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농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자신감이 있구나, 그냥 만나도 되겠다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참여자 13-당사자)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에서 장애 예술인은 ‘장애인’이기 이전에 “예술인”(7)으로서 무대 위에서 각자가 가진 예술적인 기량을 무대 위에서 드러내며, 교육자로서 학습자와 마주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도 사람들의 시선이 변화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 특화형 사업을 받아서, 특화형으로 훈련 기간에 ,몇 회 한다고 해서 이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평소에도 늘 해오셨고 늘 그거를 직업화 또는 전문가처럼 하고 계셨던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중략- 말 그대로 일단 장애 예술가들이 전문 예술가들이세요. (참여자 7)

> 나는 생각해요. 우리가 공연한 이유가 사람 앞에서 생각을 깨뜨리려고 그러면서 보여주려고 공연하는구나. -중략-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장애인이 하려면 얼마나 잘하겠어 그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연하는 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요. (참여자 11-당사자)

③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힘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교육 현장에 방문한다. 수행기관과 교육기관은 교육 진행 전 장애 예술인들의 이동이나 무대에서의 활동을 위한 ‘접근성’을 점검하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연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의무교육기관들이 장애인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기위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 조금 가깝거나 사전 방문이 가능한 데는 저희가 이제 제가 가거나 이제 조금 먼저 가서 시설들이나 이런 공연하는 곳을 조금 보고 하긴 하는데, (참여자 4)

> “휠체어를 타는 무용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략- 먼저 엘리베이터 여부를 먼저 여쭤봐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나 그런 이제 장애물 같은 거나 조금 위험한 것들이 없는지 그래서 물어보면은 아직까지도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게 조금 안 돼 있는 곳들이 좀 많더라고요. 시설들도 열악한 곳들도 많고 (참여자 16)

또한 공연 안에서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생각해보게 되고, 이들의 속도에 "호흡"(10)을 맞추는 경험을 하며 장애가 '문제'가 아닌 소통방식의 차이임을 인식하게 된다.

> 비장애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그런 평등적인 그런 거를 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비장애인인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비장애 예술가들을 보면서 또 아는 것 같아요. -중략- 그걸 뭐 무조건 도와주고 있거나 굉장히 따로 분리되어 있는 역할이 아니라, 그 역할 속에서 굉장히 공동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작업하는 그 모습이 훨씬 더 효과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참여자 7)

>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런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보면, 단어가 이제 맞는진 모르겠는데 '호흡'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중략- 일반적인 인식 개선과 좀 차이라고 하면 호흡의 좀 차이인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0)

이러한 소통방식의 차이에 대한 인식 확장은 수행기관의 비장애 예술인들의 경험에서도 확인된다. 이들은 장애 예술인과 일상을 함께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결함이 아니라 '차이' 또는 하나의 "특성"(3)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에 맞추어 "다른 방식"(12)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익혀간다. 학습자들 역시 공연을 통해 장애가 있어도 상호이 가능하다는 점을 배우고, 실제로 소통을 시도해보는 경험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장애 예술인과 함께하는 경험 그 자체가 학습자와 비장애 예술인의 인식개선에 기여(6)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예술)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려는 관심과 노력으로 확장되는 경우(9)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교육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이 장애인의 일상과 문화예술계라는 넓은 '일터' 전반에서 소통의 원활함으로 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본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다.

> 인형극 공연을 통해서 비장애인 분들과 장애인 분들이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공연을 함으로써 이제 비장애인분들에게는 장애인 분들과 이렇게 소통 협력하면서 함께하는 장애 인식 개선 자체를 하고 있고 (참여자 6)

> 다른 게 이해가 됐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이게 저희 드럼 치는 분이 계신 데, 발달장애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어요. -중략- 잘 듣지 못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시끄러운 공연장에서 나랑 이 사람이랑 신호를 맞추고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략-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눈짓으로 그게 되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이게 말이 아니어도 소통이 되는 어떤 무언가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참여자 12)

>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수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야 다양한 소통 방식을 사용하는데 입모양을 보고 말하는 구화" 이렇게 짧게 나와요. 근데 한 친구가 공연 끝나고 저희 청각장애인 배우한테 와서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천천히”[상대방이 입 모양으로 말을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한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자 9)

시각 예술인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이 안 보이시다 보니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신체를 만져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중략- 발달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저희 예술가분들은 -중략- 같이 뭔가를 만들면서 어렵지 않은 말로, 몸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작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여자 16)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배우들은 자기가 더 찾아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동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들 그런 도서 만드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놀랐고, -중략- 수어 통역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친구도 생겼고요. 그래서 비장애인 배우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이후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참여자 9)

사업에 참여하는 비장애 예술인들이 모두 ‘장애’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한 것은 아니다. 이들 중에는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일도 많이 없었”(17)거나 “장애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16)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장애 예술인과 일상을 함께하며 “장애를 가진 분들의 불편함”(17)이나 “어려움”(16)을 직접 마주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장애를 처음부터 고려한 환경에서는 ‘장애’가 문제로 경험하지 않으며, “충분히 자유롭게 활동”(17) 할 수 있음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은 일회적인 강의 중심의 교육보다는 “사회 속에서”(17)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고 일상을 함께하는 경험의 확장이 장애 인식 개선에 더욱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장애 인식 개선 쪽으로는 저도 뭔가 공부가 되고 있고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고 있어요 (참여자 14)

제가 이제 장애인 분들은 이제 안 만나봤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분들의 불편함 같은 건 사실 잘 모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적장애인 분들도 있지만 저희 대표님은 이제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중략-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버스를 타는 걸 어려워할 수도 있고, 언덕 조그마한 거 올라오는 걸 어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그 되게 소소하다고 생각하면 소소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내가 너무 몰랐어요., 이거를 누군가는 불편함으로 느낄 수 있었겠구나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 17)

④ 협력하고 소통하는 ‘동료’예술인

이 사업은 중증장애 예술인의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하며, 주된 참여예술인은 중증장애인이다. 그러나 ‘장애’와 ‘장애인’의 삶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비장애 예술인도 사업을 기획하고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공연”(6)을 수행하는 주체이다. 이들은 예술을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장애 예술인들의 “경력단절”(10)이 되지 않게 길을 만들어간

다. 또한 교육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마주하는 현실에 귀 기울이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고하며 예술로 표현할 길을 찾아간다.

> 첫 작품 때 굉장히 많이 인터뷰했었고 이제 이거를 토대로 좀 극을 써 보자라고 했었고 -중략- 이런 비하 발언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써도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라고 여쭤봤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실제 알아야 한다, -중략- 저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만들 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참여자 14)

사업에 참여하는 비장애 예술인들은 장애 예술인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장애'는 걸림돌이 아니라 각자만의 "개성"이자 "예술성"(16)의 토대로 인식되며 자연스럽게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공연을 연습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술인들은 '장애'라는 경계를 넘어 "소통 협력하면서"(6), "동료"(16)로서 함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사업은 장애 예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예술인들과 협력하면서 예술을 '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예술가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이제 몸으로 저희는 같이 또 무용이다 보니까 몸으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중략- 예술가분들이 한 동작을 해도 저희는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동작을 이렇게 뻗는 걸 한 번 이렇게 하면은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장애 예술인 분들은 그 동작을 이제 수백 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데도 그들만의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계속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더 많은 뭔가 더 많은 작품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중략- 저도 개성이 있듯이 각자만의 개성 있고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 16)

> 저희 이제 단원들을 이제 저희 옆에서 이제 노래하고 있고 저희 이렇게 뒤에서 이제 악기 세션들이랑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뭔가, 아 내가 지금 장애인분들이랑 같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은 정말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예술가들 같고, 그걸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잘 보이거든요. 그 무대랑 관객들이랑,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제가 또 또 뭔가 장애에 대해서 오히려 좀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라봤나 이렇게도 또 생각이 들고요. (참여자 12)

(2)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확장하다

① 새로운 접근 : '정답이 없는 예술'이 가진 가능성

장애인과 일상을 함께하며 이들의 권리 옹호를 고민해온 사업 수행기관들은 이전에도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이 있다. 그러나 매년 반복하다 보면 사업의 아이디어가 "고갈"(10)되어 감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교육 방식은 대중들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방법을 확장하는 "신선"(15)한 시도이기도 하다.

> 우선 기관의 입장에서는 4월에 저희가 장애 주간 행사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 인식 개선, 그다음에 장애인의 날을 기념한 행사, 종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하면 할수록 아이템이 사실 고갈되는 부분들은 있는 부분이죠. (참여자 10)

문화예술은 어떤 주제든 담아낼 수 있고, 누구나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에서는 지식전달형 강의를 위한 역량보다는 '예술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누어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적 역량이 있는 장애 예술인을 포용할 수 있다(16). 예술이라는 특성상 교육 대상의 특성만 고려한다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11) 연령의 제한도 없다. 공연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와 장애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도 있다.

> 유아들에게는 이론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장애 인식 개선이 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유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런 거, 내용, 장애 인식 개선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보통 인형극으로 소방 안전이나 아니면은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 안전 생활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장애 인식 개선 교육도 인형극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인형극을 제작하게 되었고 (참여자 6)

> 다양한 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오케스트라가 되고 같이 함께 노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이제 곡만 바뀌면 되니까 이제 레퍼토리만 바꿔서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면 되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참여자 4)

수행기관의 경험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일방향 교육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 연극이나 무용과 같은 문화예술을 접목한 교육과 참여형 콘텐츠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미"(10)를 느끼게 함으로써 학습동기를 높이는데 기여한다.[3] 참여 예술인들 역시 장애란 무엇인지 "이론적인 배경"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보다는(10),[4] 장애인의 삶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14)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예술은 "정답이 없"(3)기 때문에 공연의 내용과 각자의 경험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과 유대감의 형성"(3)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 저희 10년 전에 제가 학교 가서 휠체어 밀어주고 이런 장애는 이렇게 대해야 되고 이런 거랑은 확실히 좀 다르고 딱 들어왔을 때부터 흥미를 관심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것의 차이도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

3)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효과성 연구(백영은, 유은주, 2021)에서도 "흥미로운", "이해하기 쉬운" 교육 내용의 구성, 문화·체험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바 있다.

4) 이는 장애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불필요함을 의미하지 않는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제3항)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등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적정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필요하다. 당사자 참여자(15)는 뇌병변장애는 운동적인 측면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경직 등으로 인하여 소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물론 이러한 특성은 '장애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어야 하는(16) 이유이기도 하다.

제가 그 소감문 받았던 것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강의였으면은 아무도 안 들었을 텐데”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의 관심도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장애 인식 개선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한다고?’ 어쨌든 이게 재미없을 거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지언정 관심은 가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게 있어요 (참여자 9)

비장애인 분들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지식한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가능한 부분 -중략- 학생들한테도 되게 재미없는 걸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지만 점차 조금 더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식 개선이 되어진다면 조금 더 우리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인분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참여자 10)

그냥 스며든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이거를 이렇게 책상 놓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했을 때 오히려 안 들어오는 부분이 편하게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매체가 가진 힘인 것 같아요.(참여자 14)

② 더 체계적인 교육 :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의 진전

각 기관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시작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장애인식개선을 목적으로 공연을 추진해왔지만(F, H), 장애 예술인과 공연 활동을 계기로 주변의 권유를 받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시작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C, G). 또한 장애 예술인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확인되었다(I). 다만 사업 참여의 계기와 무관하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됨으로써 각 기관의 교육 운영은 이전보다 체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수년간 사업에 지속 참여한 기관의 경우, 참여 경험이 축적될수록 학습자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교구나 사후활동지, 활동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구상하고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금 덕분에 리메이크하고 조금 보수하고 다른 좀 전문적인 장비를 저희가 좀 더 마련을 할 수 있었다는 점과 그리고 사후 활동지가 저희가 사실 이제 가정으로까지 그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는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참여자 3)

올해는 저희가 똑같이 구성은 진행되는데, 오케스트라는 곡들이랑 이런 레퍼토리는 많이 바뀌게 되고, -중략- 근데 여기 조금 추가적으로 오케스트라에서 뮤지컬로 넘어가는 준비 과정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 하다가 DIY 큐브라고 해서 이제 무장애라고 적혀 있는 이 큐브를 만드는 -중략- 아이들이 이제 충분히 좀 지루할 수 있는 기다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걸 만들고, 같이 그거 가지고 게임도 하고 퀴즈도 내고 하면서 이제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첫해 때보다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4)

저희는 지금 진행 과정에서 일단 생애 주기를 유아와 청소년으로 좀 나누었고, -중략- 청소년은 젠가와 보드 게임 그다음에 뮤지컬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아는 지금 현재는 동화책,

동화책으로 해서 아이들이 저희가 공연이다 보니까 이 공연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의 그런 공감이나 감동은 굉장히 강한데, 이걸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것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어 동화책을 두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참여자 7)

신규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장애와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내부적 이해가 확장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관은 본 사업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애예술인이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확보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였다. 사업을 통해 체계화된 교육은 사업이 종료되어도 사라지지 않고, 각 수행기관의 공연 콘텐츠로 축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관의 역량강화로 이어지며, 문화예술을 접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저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사업 기간 동안 질 높은 교육(공연)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저희의 이제 설립 목적을 가진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거든요. 너무 하고 싶었던 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의 회사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력으로 봤을 때를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거를 직접 진행을 해봄으로써 좀 더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하는지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참여자 9)

이제 개발원에서는 이제 너무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셔서 학교에서는 이제 아직도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학교에서 – 중략 – 이제 장애인개발원에 저희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거 연락처 보고 연락주시는 학교가 굉장히 많으세요.(참여자 1)

③ 부가적 효과 : 미래의 장애 예술인을 위한 진로 교육

개별 수행기관은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역량이 있는 장애 예술인들이 활동할 자리를 만들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다른 장애인들과의 접점을 만들기도 한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기회는 비장애인만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과 삶을 함께 하는 가족,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수학교도 장애인식개선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수학교에 계절제할 때 장애인식개선으로 중고등학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하고 (참여자 7)

발달장애인을 만났을 땐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교에 이제 특수학교나 특수 학급 학생들이 이제 좀 몇 명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라는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걱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 되는 지식을 주셔서 너무 고맙다. (참여자 1)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의 진로교육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수행기관들은 예술적인 재능을 지닌 장애 아동의 보호자, 예술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예술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실현가능한 '진로'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문화예술특화형 교육이 지니는 부가적 효과라 할 수 있다.

>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사실 그런 경우는 좀 어린 친구들이에요. 뭐 중고등학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직업적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연락주시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그렇죠. (참여자 1)

> 사실 장애인 저희가 복지관이나 이렇게 가면 그 복지관에서 공연을 저희가 봤을 때 부러워하는 시선이 진짜 많았거든요. 자기도 노래하고 싶다고 -중략- 그중에서도 또 정말로 재능이 있어서 마음속에 이제 자기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을 또 저희가 모셔서 같이 활동을 하고 그런 기회가 또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참여자 12)

> 취직을 앞둔 장애인 청소년 친구들한테,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직업에 조금 폭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줄 수 있어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게 장애인 청소년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냐 그런 진로 체험 센터에 가는 경우들도 많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거에서 어머님들이 아직 다 장애인 친구들이 갈 수 있을 만한 데는 공공기관이 공장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협동조합, 공연 극단 이런 것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직업이 된다라는 걸 조금 아이들의 직업에 조금 더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참여자 17)

(3) 중증 장애 예술인의 '삶의 자리' 만들다

①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경험: '움츠린 어깨'를 펴다

중증장애인들이 '예술'을 접하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로는 다양했다. 장애인 복지관이나 지원기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일자리로 연계되어 단원이 되기도 하고, 오랜 기간 예술인으로서 장애 예술인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예술활동을 지속한다고 해도 공연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그것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떤 무대를 찾아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자 12)

본 사업은 참여예술인들에게 정해진 교육 회기만큼의 공연 기회[5]를 보장하고, 일정 사례비

5) 공고문에 따르면 사업수행기관은 12회 이상(2025년 기준, 2024년은 15회 이상) 의무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일'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경력을 만들어 낼"(10) 자리를 만들어주었다. 장애 예술인들은 사업에 참여하며 "내가 이 사회에서 한 파트"(12)를 담당하는 "사회인"이라는 감각을 경험하고 있었다. 크지 않더라도 일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과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긍정적인 경험이 다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참여자들의 목소리는 본 사업이 장애 예술인이 자립하기 위한 "첫걸음"(17)이 되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저희가 무대가 횟수가 15회기 이렇게 좀 횟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학교들 가면 호응이 정말 학생들이 너무 잘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자존감이나 자신감도 되게 많이 향상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명함도 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무언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느끼시는 것 같고 (참여자 8)

> 사실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관 시설로 올 때 다들 상처가 많은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설에서 있고 이런 공연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중략- '내가 이 사회에서 한 파트를 하고 있구나.' '이 공연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그게 큰 것 같아요. (참여자 12)

>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걸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고, -중략- 뭔가 사회인이 된 것 같아요. 사회인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 중략- 제가 움츠려들고 있었던 그런 어깨들이 펴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당당하게 예의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15-당사자)

>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저희 공연 때는 그때는 돈 안 받았거든요. 하나도 안 받았는데, 제가 무료로 했거든요. 근데 근데 공연도 있고 자기 개발해가지고 이제 공연하고 하니까 돈 받으니까 그게 좋다고 하더라구요.-중략- 내가 땀을 흘렸구나 우리가 한 게. 뿌듯한 마음 (참여자 11-당사자)

② '장애+예술인'으로서 정체성을 인식하는 경험: '나'를 설명할 '단어'가 생기다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기관은 교육 콘텐츠 구성 시 각 기관의 특색을 유지하되, 당사자의 직접 메시지를 포함해야 한다. 수행기관들은 당사자의 경험은 연극 스토리에 포함하거나(E, H), 당사자가 교육에서 직접 발언하거나 작품을 설명(G, I)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당사자의 경험을 전달한다.

수행기관 담당자들은 '예술'이 매개체가 되더라도 준비 과정이나 공연을 하면서 타인에게 자신의 경험을 '발화'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부분(3)임을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살아오며 마주한 장애인으로서 받았던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이 담긴 말을 '예술'에 녹여내는 과정은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공연을 통해 표현하며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15)도 긍정적인 경험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예술'

을 매개로 무대 위에서 관객(학습자)들에게 전달되며, 공연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과 응원,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장애 예술인'으로 인지하거나-재구성하거나-확립하는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시각장애인 소녀랑 친구가 되는 그 내용이었는데, 주인공이 시각장애 당사자분이 연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께도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좀 삶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라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내보이는 것부터가 이미 너무 힘드신 거예요. -중략- 장애 당사자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막혀서 (참여자 3)

> 저희가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토크쇼 같은 걸 할 때 저희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유치원 다닐 때 어땠어? 초등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그런 얘기하면 내가 어땠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거를 좀 해소하시기도 하고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서 특화형이 장애 당사자들에게는 장애 정체성과 장애 자부심을 조금 더 느끼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 창작의 예술에서도 창작의 예술에서는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면 (참여자7)

> 아마 제 공연 영상 보시면 물구나무서기 동작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사실은 그 물구나무서기 동작이 저한테 가장 큰, 그냥 어떻게 보면 감정 해소의 안무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그냥 이루고 싶은 그냥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서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서야 되는 부분이 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웃으며] 그렇게라도 거꾸로 서 있다 보면 반대로 또 엄청난 감정은 해소가 되더라고요. (참여자 15)

이는 타인/사회가 자신을 명명해 온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전부가 아님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예술 공연을 하는 '단원'이나 "싱어"(8)와 같이 '나'라는 사람을 명명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찾으며, 참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힘"(15)이 생기기도 한다.

> 본인 SNS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난타 단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올려놓고 -중략- 본인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중략- 프로필 사진을 찍고 그 사진으로 내가 팜플렛에 나오고, 그걸로 공연을 올리고, 이렇게 이런 게 그 사람들 인생에서 좀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참여자 12)

> 저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시간은 많이 걸리는 말 속도긴 하지만, 최대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긴 것 같고요. 신중해지는 부분도 사실 있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참여자 15-당사자)

> 자기들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받을 거리가 많이 적었던 친구들이기도 하고 -중략- 잘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게 느끼고 이런 걸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중략- 공연을 통해서 공연을 잘하고 공연을 보여주면서 아이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인정 욕구를 인정받고, 그만큼 안정감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7)

③ '예술인'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경험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신청·운영하거나, 교육 전체를 진행·강의를 하는 것은 주로 비장애 예술인, 사회복지사, 전문 강사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공연에는 장애 예술인이 중심에 있다. 기관 특성이나 참여자 개인 상황에 따라 예술인으로서 전문성이나 참여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공연을 이끌어가는 참여자의 다수가 장애 예술인이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F, H)하기도 하고, 참여자의 서사(G, 11)나 의견(15)이 공연의 주 콘텐츠가 되기도 한다.

> 출연진은 공연마다 조금 많이 다르긴 해요. 어떤 데는 비장애인이 주가 되는 공연이 있고, 어떤 거는 100% 비장애, 100% 장애인 분들이 하시는 공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거는 조금 더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분들의 비율이 조금 높은 공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참여자 6)

> 저희는 사회자하고 전문 강사 그리고 밴드의 일렉 기타 외에는 전부 장애인 분들이시고요. -중략- 프로그램 자체도 이걸로 하자라기보다는 참여자 분들이 그곳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을 지원하려다 보니 (참여자 8)

그러나 공연은 다른 사회적 인식개선교육과 달리 참여자들의 예술적 역량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악기 연주나 마술 등은 개인 연습 외에 레슨도 필요하다. 사업비는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할 수 있어서 개인 레슨만으로는 부족한 장애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수행기관에서는 예술 영역별 전문 강사 연계, 콘텐츠에 관한 자문을 통해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적 전문성을 높이고, 스피치 및 무대 매너 등 교육 강사로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디딤돌 건너가듯이 완성해 가는 방법"(17)으로 공연의 바탕을 만들어 간다. 수행기관 담당자들은 장애 예술인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반복 연습과 밀착된 지원이 필요한데, 사업 "덕분에"(1) 전문가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 음악에 대한 기량, 그 다음에 미술에 대한 이제 그런 손놀림 같은 경우를 좀 배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참여자 10)

> 혼자 할 때는 이제 짜야잖아요. 스텝이, 어떻게 마술을 처음부터 하는 건지 음악으로 마술이 어려운 게 음악이었어요. -중략- 선생님도 짜주고 제가 중간에 수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0분짜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참여자 11-당사자)

> 10년이 된 인형극단이다 보니, 10년 전에 바라보는 어떤 사회적인 시선과 지금 시선이 상당히 다르고 원하는 내용도 달라요. 장애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것보다는 뭔가 다문화까지 뭔가 포용하고, 다 같이 사는 세상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담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제작이 어려워서 그게 힘들었고. 이미 저희가 맨날 나오셔서 연습은 하시지만 전문가가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어떤 활동이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참여자 3)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결과(장선녀 외, 2024)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장애 예술인들은 “무대를 설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없”(10)다. 이런 상황에서 본 사업은 창작에서 머무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활동”(17)하면서 공연할 기회를 제공한다. 동작을 이해하고, 무대 전체를 흐름을 이끌고 가는 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수행기관 담당자나 장애 예술인들은 사업에 참여하면서 긴 호흡으로 연습을 지속한 결과가 긍정적인 변화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사업은 장애 예술인들에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에서 나아가, 훈련과 공연을 반복해서 참여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경험을 하면서 예술인으로서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우리 성공하자” 이러고 있어요. 아무래도 연주를 앞두고는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업되어 있어요. 긴장감도 있지만 내일 연주가 있으니까 우리 좀 긴장감 갖고 좀 이렇게 좀 잘해보자 좀 파이팅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어서 (참여자 5)

>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중략- 책임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무대에서 더 잘하려고 하는 듯한 이 느낌을 받는다 라고는 하세요. (참여자 10)

> 배우들이 이제 회차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무대에 설 수 있는 회차가 그래도 12번이 생긴 거니까 사실 배우들은 관객 만나고 박수 받는 걸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회차가 생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서도 원하는 방향성이기도 하고, 장애 예술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점이고 (참여자 14)

> 그때는 근데 더 이렇게 지금처럼 힘 있게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은 됐었는데 중간에 힘이 떨어지거나 이랬었는데 무용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중략- 선생님들의 얘기도 듣고 하면서 어떻게 힘을 주고 중심을 잡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신 거라기보다는 뭔가 집중을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더 깔끔한 진 것 같아요. (참여자 15-당사자)

④ 의미있는 관계와 장소를 만들어가는 경험

장애 예술인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관계’였다. 이들은 연습과 공연을 계기로 자주 만나고 연습하면서 함께하는 구성원들을 살피고, 누군가 아플 때 빈자리를 채우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로의 ‘장애’로 인한 차이를 인식하고, 소통방식을 이해하면서 “공존”(15)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이용하던 장소의 의미도 변화한다. 예술인으로서 ‘단원’이 된다는 것은 수행기관이 복지 서비스를 ‘받는’ 장소가 아니라, ‘함께’ 일상을 나누는 장소가 됨을 의미한다.

> 서로 이렇게 서로 챙겨줘요. 악기 나를 때도 챙겨주고 이제 이제 연습 끝나면 좀 중간에 저희 시간이 있었거든요. 음료수 제공해 주고, 갔다 주고, 근데 이제 그 팀마다 다 달라요. 또 챙기는 게. 저희는 되게 팀워크가 좋죠. (참여자 11-당사자)

최근에 작년에 들어오셨던 분이 생신이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다 같이 음식을 사 들고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어떤 좀 도움은 좀 있으셨겠지만 그래서 관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지관에 의존하기보다는 또 그분들끼리의 어떤 관계망이 생겼다라는 변화가 좀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참여자 3)

대화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그런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동료들을 위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호흡을 맞추면서 얘기를 해보면 쉽게 또 뭔가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계속 뭔가 다른 걸로 인해서 이제 들어주는 게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듣는 훈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참여자 15-당사자)

일단 자주 만나고 하나의 음악을 만들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친구들 나름대로 이제 소통이 되고 서로 챙겨주고 너무 사회성이 늘더라고요. (참여자 1)

예술로 소통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험은 장애 예술인의 삶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15)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장애 예술인들은 찾아가는 공연의 특성상 다양한 곳을 방문하기도 하고, 낯선 사람들 앞에서 공연자로 서서 소통해보는 경험을 하면서 받는 시선은 이전의 경험과 다르다고 보고했다.

이제는 개방성이 생기면서 어디를 어느 불편한 곳을 가도 그러니까 좀 예전 같으면 많이 힘들 것 같은 데는 웬만하면 가지 않는 그 방법을 택하면서 많이 꺼려했었는데, 무용 자체를 하면서 조금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두려움도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없어진 거. (참여자 15-당사자)

공연할 때는요 긴장감 있어요. 저도 사람이랑 긴장감이 긴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그게 내성적이고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사람 앞에 가면 약간 떨리는 그런 얘기도 못하고 그런 거 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그 뭐냐 공연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기뻐하시고, 좀 환호해주고 좋더라고요. (참여자 11-당사자)

물론 이런 관계가 본 사업만으로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 예술인'이 존중받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수행기관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은 '공연'을 매개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희는 거의 여름 휴가, 겨울 휴가 이런 거 빼고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는 같이 있거든요. 퇴근할 때까지 그래서 같이 이 안에서 -중략- 저희가 이거를 일, 업무로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업무로 생각해서 이거를 장애 인식 개선을 가야 돼서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그게 잘 모를 것 같아요. (참여자 7)

⑤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는 경험

장애 예술인의 사업 참여는 지원기관과 수행기관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장애 예술인마다 독립적인 활동 범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독립된 거주지에 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혼자 이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연습과 공연을 위해서 가족구성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저희는 거의 모든 공연에 보호자들이 다 같이 오시고, 저희 이제 앙상블 연습 때도 보호자들이 이제 항상 같이 오시고, 이제 활동 보조 선생님들이 오시는 경우도 -중략-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만 참여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거의 저희는 가족의 개념이에요. (참여자 1)

물론 사업 참여가 장애 예술인을 지원해야 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참여 과정에서 가족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을 보호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강점을 지닌 자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활동의 결과로 받는 '사례비'도 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참여자들의 공연을 관람한 가족들은 활동할 기회 자체에 감사를 표하며,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사업은 학습자와 수행기관의 구성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보호자들의 이제 조금 더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는 '발달장애인 우리 자녀들이 일을 할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중략- 이제 수당이 들어옴으로써 얘네가 조금은 사회 일원으로 조금 활동을 하고 있구나를 느끼시면서 많이 인식 개선도 보호자님들도 많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참여자 10)

> 예전 과거 같으면 사실 발달장애인들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머님들도 감사하는 마음 또 그 김에 어머님들도 바깥에 우리 아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데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참여자 1)

> 어린이집에서 공연했거든요. 딸이 공연할 때마다 딸이 계속 어깨가 으쓱 올라가요. 자랑스럽게 우리 아빠라고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술공연 해주고. 뿌듯해요. (참여자 11-당사자)

> 우리 언니는 맨날 복지관에 돈 냈는데 또 내야 된다고 그러고, 복지관에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맨날 전화 오고, 이런 우리 언니인데 우리 언니가 이걸 하는구나. 이거를 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이걸 보여주는구나 -중략- 거기서 오는 보호자분들의 어떤 마음이 우리 가족 누구가 이렇게 사회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셨고, 그걸 같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고 계세요. (참여자 3)

2)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수행의 어려움

(1) 정해진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교육 콘텐츠 '공연'

① 교육 '실적'과 '효과'의 불일치 : 운영 기준의 한계

교육 실적은 교육 횟수(기관 수)와 참여 인원 중심으로 산정된다. 수행기관들은 정해진 교육 횟수('25년도 기준 12회) 내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대상과 많은 인원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교육이 반드시 높은 교육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인원이 많을 경우, 공연에 대한 집중도가 저하되고, 규모에 맞는 무대 설치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참여형 공연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동시에 활동하기 어렵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기획된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확인되었다.

> 250명이 들어와서 음악을 듣고 미술 전시전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사실 그 상황이 좀 장난치려고 하는 분위기 그래서 선생님들이 옆에서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보고 하는 부분들은 있어서 -중략- 그냥 이렇게 250명이 우르르르 빠져나가고 우르르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이게 조금은 아쉬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참여자 10)

>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군가 빈 그 연결선을 꺼버린 거예요. 저희는 빔 프로젝터가 정말 중요한 공연인데 -중략-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한 번에 많은, 그 학생들이 통제가 조금 어려워서 좀 인원에 제한을 둘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하나, 인원이 꼭 많은 게 좋다라는 생각이 어제 처음으로 들지 않았어요. 뭔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참여자 9)

> 저희가 교육을 나갈 때 한 50명 아니면은 60명 있는 데는 한꺼번에 다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는데 몇백 명이 있으면은 유아친구들이 또 함께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아 친구들도 그 시간 안에 그러니까 몇 타임으로 나눠서 하면 좋긴 하지만 그 시간 안에 이제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한 타임 안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참여자 16)

그러나 수행기관이 교육 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교육 '효과'를 고려하여 '인원'을 제한하거나, 동일 기관 내에서 인원을 분산하여 여러 차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한 곳에서 두 번 진행을 해도 한 번으로 카운트가 된다"(9)는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육 효과나 안전을 고려하여 인원을 조정하여 교육을 진행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장애 예술인이 회차별로 공연한 것에 적절한 사례비 지급은 불가능하다.

> 저희는 배우들한테 회차당 페이를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곳에서 2회를 하면은 2회 차 페이를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해서 지금은 그냥 수용 인원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하고 있는데 -중략- 연극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저희 공연에, 저희 연극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는 한 250명까지가

좀 적정선인 거는 같거든요. 그 정도까지 인원이었을 때가 가장 잘 봤고요. 그리고 300명 넘었던 적은 두 번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도가 좀 많이 흐트러지고 (참여자 9)

사실 저희가 지금 규모로 생각을 하는 건 거의 150명 정도가 최대 인원이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장소가 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학교나 이런 곳에서 섭외를 해야 되더라고요. 건물을. (참여자 10)

② '좋은' 공연이라는 기준의 모호함 : 공간과 상황의 한계

수행기관은 당일 교육이나 사업 전반의 효과를 고려하여 '좋은' 공연을 위해 사전에 다양한 준비를 한다. 본 사업은 학습자들이 있는 기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공연에 적합한 소품, 조명, 음향 등 무대 설치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에 수행기관들은 공연의 질과 장애예술인의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사전 점검용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교육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연장이 아니"(4)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기관 사정에 따라 공연 전날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장비 임차료 부담이 증가(9)하고, 사전 점검을 거쳤음에도 해당 공간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던 용도와 달라 장비 오작동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4). 이러한 문제는 공연 환경으로서의 물리적 한계, 즉 "공간의 제약"(2)에서 기인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장 자체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 저희는 연극이라서 너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미리 좀 사전에 선생님들이랑 많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장 사진 무조건 천장 공연장 천장부터 바닥까지 사진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 이제 섭외할 때 안내문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공연 가기 일주일 전에 또 안내문 따로 보내드리고 공연 전날에도 연락을 해서 어떠한 물품 필요한지, 공연장에서 어떻게 저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아예 그냥 엄청 상세하게 타임 테이블을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략- 만약에 저희는 오전 시간에 지금 5시간 정도가 확보가 돼야지만 설치를 하고 공연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했던 학교들이 있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임차료가 늘어나거든요. 전날 설치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었고, (참여자 9)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딱 쓰는 그런 그것들 이런 그런 부분만 사용하는데 매번 하는 것들은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외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거나 이제 예를 들어서 조명이나 이런 음향이 조금 더 전기가 많이 사용되어 진다거나 했을 때 갑자기 전기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중략- 이제 실제로 가서 해보지 않으면 잘 이제 모르는 그런 부분이라서 (참여자 4)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와 같은 공연예술에서는 조명이나 음향기기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교육기관은 본래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기관이 기대하는 수준의 '완성도 높은' 공연을 구현하기가 어렵다. 결국 공연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비 중 상당한 비중이 기기 임차 비용으로 사용된다. 이는 의도치 않게 장애 예술인의 사례비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업 구조상 공연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비용과 장애 예술인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사례비가 동일 사업비 안에서 경쟁하도록 설계된 구조적인 한계에서 기인하는 문제다.

>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음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똑같이 다 학교에서는 체육관에 시설이 돼 있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너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체육관에서 연주를 했는데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음향이 조금 볼륨이 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참여자 5)

> 무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너무 많았어요. 6-700명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자체 장비만을 쓰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다른 데서 쓰이는 사업비랑 다 다 그냥 어디 여기저기서 모아서 이제 저희가 조명 감독님 음향 감독님 온갖 전문 업체들을 다 불렀어요. (참여자 1)

> 저희가 항상 조명도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음향도 이제 음향팀이 같이 움직여 주세요. 근데 사실 조명 제가 10번 중에 한 8번은 조명이 없이, 음향도..(참여자 12)

> 이제 앰프 하나로는 음향을 커버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마다 조금 사전에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전문 음향 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강당에서 쓰는 마이크 정도로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서 -중략- 사실은 저희가 포인트를 두는 부분이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수당을 받게끔 지금 하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하는 부분은 있는데 앰프를 조금 더, 음향 쪽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이제 어떻게 예산 조정을 해서 지금 음향 쪽을 좀 강화해야 되는지가 조금 고민입니다. (참여자 10)

공연의 출연진의 특성이 공연의 변수가 되기도 한다. 공연장과의 거리, 오랜 대기 시간, 날씨 등은 장애 예술인 개개인의 상황과 맞물리며, 공연에 영향을 미친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대응해야 하는 일은 항상 생긴다. 모든 것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참여자 분들이 연주하는 거를 따라갈 때가 있기는 하시긴 하시는데 사실 발달장애 특성상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호흡을 하다가도 본인이 음이 틀려버리면 다시 되돌아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호흡이 깨질 때도 있지만 (참여자 10)

> 아침에 차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충분히 쉬지 못했다거나 하면은 이 공연 때 틱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기관에 보통 계시는데 아침에 나와서 원래 오전에 밥 먹고 이제 약을 먹잖아요. 근데 보통 그걸 놓칠 때도 있거든요. 약 먹는 걸 놓치는 왜냐하면 차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약 먹는 걸 놓치게 되면 이게 오후가 되면 또 그게 또 틱이 좀 심해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좀 있고요. (참여자 12)

> 저희 공연 할 때마다 항상 비 오는 날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비 오는 날이 뭐가 하기 싫은 느낌이

에요. 왜냐하면 비오는 날 마음이 쳐지잖아요. 이거 꼭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속으로 했어요. (참여자 11-당사자)

오늘 이렇게 운영하게 된 이유,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랑 얘기했던 거랑 좀 달랐던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미술을 하셨던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참여자분이, 자폐성 장애인 분인데 본인이 읽고 준비했던 그 인터뷰지를 놓고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된 변수 상황에서 왜 그 참여자는 안 하고 있는 이제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참여자 10)

이러한 참여자들의 경험은 중증장애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연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에서 역량이 있는 장애 예술인들의 '좋은(완성도 높은)'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한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기획 단계에서 설정된 방향과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각 수행 기관은 "대처를 해서 유연하게"(16) 대응하고 있었다. 교육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연 안에서 마주하는 변수에 맞추어 "호흡"(10)하는 경험 자체도 교육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연의 '질'만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아닌지, 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요소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③ 보이지 않는 'cost'의 발생 : 접근성 제약이 만드는 구조적 부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더라도, 수행기관이 모든 교육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 기관 선정 과정에서 거리, 이동수단, 소품과 장비 운송가능 여부, 장애 예술인의 건강상태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된다. 특히 원거리로 이동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와 여비를 사업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이나 지원인력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이동 인원이 배로 늘어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부담(실질적인 비용과 노력 등)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수행기관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cost'로 작동한다.

부피가 큰 탈인형극이나 이러면은 조금 이동할 때에 기본 짐 싣는 차 한 대, 사람 있을 차 한 대 이렇게 해서 2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차가 작은 경우에는 총 3대가 움직이기도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여서 이제 작년에는 탈린 연극이었어서 그래서 그런 이동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조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중략- 최대한 이 근처로만 이제 신청을 받았었고 (참여자 6)

저희가 앙상블이다 보니 기본 움직여야 되는 이제 보호자까지 포함해서 거의 서른명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버스가 있어야 되고 해서 다 거절은 지금 한 상황인데, (참여자 10)

발달장애인들 시각장애인까지 하면 모두 보호자가 동반하셔야 되니까, 정말 원 플러스 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30명 이상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데 드는 비용만 해도 너무나 많고 (참여자 1)

교육에 대한 수요는 높아도 접근성의 문제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지역, 영세하거나 시설이 노후한 곳은 교육 수요가 있어도 공연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 간혹 동일 지역 내 규모가 있는 교육 기관에서 타 기관을 초청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 운영 기준 상 이렇게 운영되는 교육은 수행기관의 실적(교육 횟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을 네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학교가 함께 모여서 이제 공연을 같이 관람을 했어요. 장애 인식 개선 공연을. 그랬는데 이제 네 다섯 군데지만은 다 모였는데 한 280명 300명이 안 되는 아무래도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는 그런 학교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기 어려운 학교들이 그렇게 한 군데서 같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니까는 (참여자 5)

탈인형을 아이들이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적잖아요. -중략- 작년에 보니까 그 공간이 안 돼서 다 커트를 시키는 경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중략- 그래서 이제 그래서 최대한 큰 장소들로 저희들이 다 강당이나 이런 데로 빌려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초등학생 초등학교를 조금 몰려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거는 또 한 군데만 또 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 또 횟수를 채워야 되는데 이걸 한 번 해서 또 여러 군데를 부르면 이제 여러 명을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또 횟수가 인정은 안 되니까 이거를 또 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부분이 조금 교육을 받는 사람도, 그리고 교육을 하는 사람도 둘 다 약간 안타까운 상황이 되더라고요. (참여자 6)

그럼에도 수행기관에서는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공공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더 큰 대상, 문화예술 소외 지역, 예산이나 장소의 제약을 지닌 소규모 기관 등을 선정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편의시설이 미비한 환경에서의 교육 운영, 이동에 따른 여비 발생 등 추가적인 부담은 수행기관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 담당자들은 이러한 공공성 실현을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이나, 노력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지역 간 인프라 격차로 인하여 모든 교육 기관이 공연에 적합한 조건을 갖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한 운영 기준 마련이 검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통합 교육으로 학교에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부르고, 너무너무 부르고 싶어 하시는데 예산이 맞지 않아서 못 갔던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 이걸 통해서 그렇게 좀 통합 교육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9)

이 국고가 아니면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없는 한 30명 이하로 되어 있는 영세한 어린이집을 저희가 30%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참여자 7)

23년도에 섬 쪽에서 의뢰가 와서 섬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섬으로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이제

배편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이미 연초 사업 초반에 이미 다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개발원에 문의도 해봤는데 역시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약간의 추경이나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는 몫이 좀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저희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들어갔었는데, 일단 배로 들어가면 이제 날씨나 이런 영향 같은 것도 있고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참여자 8)

(2) 한정된 예산이 만드는 한계

① '현실'과 거리가 있는 예산 집행 기준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지원받음으로써 한 해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다수의 수행기관들은 전반적인 예산 축소가 장기적으로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다.[6] 실제로 사업의 예산 감소는 교육 수행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러 해에 걸쳐 사업에 참여한 수행기관의 경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 목적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적극적인 변화는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 결과, 교육 내용이나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제한적인 수준의 변화만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예산적으로는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뭔가를 이제 만들 만들려고 하면은 디자인비, 그리고 인건비도 솔직히 말해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참여자 16)

저희가 공연이다 보니까 이 공연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의 그런 공감이나 감동은 굉장히 강한데, 이걸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것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동화책을 두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옛날에 사업비가 좀 컸을 때는 저희가 보드게임도 다 주고 왔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저희가 보드게임은 드리지 못하고 동화책에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자 7)

물가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연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또한 부담이 크다. 공연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규모는 기관마다 다르며, 인원이 많을수록 식비나 여비 등 가장 기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가가 너무 다 비싼데 사실 식비나 다과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제한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이제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 (참여자 3)

---

6) 연도별 지원규모를 보면, 2021년 서울/경기지역 대상 기관당 28,000천원(4개소)에서 2022년 지역(대구/전북 추가)과 수행기관수(6개소)를 확대하며 기관당 37,500천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 그러나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한 2023년 이후 2023년 35,000천원, 2024년 28,000원, 2025년 23,000천원으로 전체 예산은 감소하였다. 예산 감소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교육 횟수도 줄어들었다.

일단 그러니까 공연 회의, 운영비 같은 경우도 공연 날 식대로는 저희가 사용하는데 저희는 연습도 두 달 정도 내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용하는 돈에 대한 책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때 비용은 저희가 다 충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부담이 필수도 아니고, 그걸 증빙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따로 사용하는 돈이 많기는 한 상황입니다. (참여자 9)

지방 갈 일도 워낙에 많고, 요즘 물가도 비싸고, 정말 교통비 식비만 해도 정말 인원이 저희가 워낙 이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떨 때는 연주자만 20명이 될 때가 있어요. 15명, 20명 (참여자 1)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위해 집행 기준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 공연을 위해 필요함에도 집행이 어려운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문화예술공연'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집행 기준에서 비롯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대를 위한 소품이 자산 취득으로 간주하는 기준이다. 일부 소품은 지원기관으로부터 '대여'하라는 권고를 받지만, 기준에 맞춰서 대여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습 과정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공연 준비 전반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공연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자산보다는 "소모품"(17)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책상이 저희 공연은 책상이 꼭 필요한데 여기서는 책상은 사용이 구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정도는 그냥 자부담으로 쓰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돈이 남는데, "여비 책정하셔도 돼요. 교통비 책정하셔도 돼요"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수도권 지역만 가서 교통비가 따로 들지 않고 또 "회사 차량만 운영을 하셔야 돼요." 하는데 저희는 법인 차량은 따로 없거든요 (참여자 9)

인형 하나 만드는 데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고 -중략- 저희가 이게 어려워서 사업을 보통 지원을 받는 건데, 이 인형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이거를 대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형 정도는 이거를 자산으로 취득을 해도 조금 이거에 대한 문제가 좀 안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형도 어찌 됐든 소모품이라서. 저희가 사실은 3년이 넘어가면 인형이 너덜너덜해요. -중략- 매번 이거에 대해서 이 인형을 사적 자산인지 아닌지를 매번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내용에 이제 이게 사적 자산으로 취급이 되면 저희는 이걸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 -중략- 그냥 한번 사는 거에 대한 돈보다 대여가 더 비싸요. 대여는 횟수별로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 인형극이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조금 더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공연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자산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참여자 17)

그냥 악기나 마술 같은 거 도구나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게 악기가요. 오래됐어요. 만약에 스피커가 오래됐고 그런 것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금 음향이 지금 한 15년째 됐거든요. 오래됐어요. 한번 바꿨는데 근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비싸서. 그런 이제 이렇게 자기 개발 이렇게 다 도와주면 저희도 힘 날 것 같아요. -중략- 개인이 악기 산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저는 악기 바싸 잖아요.비싸니까 그거 조금 도와주면, 그 점을 도와주면 우리 팀이나 모두 행복할 거예요. (참여자 11-당사자)

② “두 마리 토끼” 잡기 : ‘좋은’ 공연과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 운영비에는 ‘전문가 활용비’가 포함되어 있어 강사나 프로그램 참가자에 해당하는 장애 예술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집행기준에 ‘장애 예술인의 인건비’에 대한 별도 기준이나 전체 예산 대비 최소 비중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수용가능한 범위”[7] 내에서 편성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의 ‘유연함’은 기관의 여건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참여 장애 예술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각 수행기관에 배분되는 총 예산 규모가 동일한 상황에서, 교육 장소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동과 무대 설치 비용, 참여 인원의 수에 따라 운영비용이 증가하면, 장애예술인에게 돌아가는 참가 사례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8] 중증 장애 예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경제적인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예산 구조에서는 ‘일자리’라고 볼 만큼 “적정 페이”(13)가 지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출연료는 그냥 이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n분의 1로 해서 책정을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 (참여자 5)

> 저희가 음향 팀에 나가는 음향료만 전체 사업비의 한 40%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다른 대표님들 고민과 마찬가지로 공연을 나갔는데 음향 때문에 이 공연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환경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죠. (참여자 8)

> 그럼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운영비를 더 확보를 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앙상블을 하다 보면 악기마다 지금 선생님들이 다 필요한 상황이고, 피아노 선생님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강사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수당을 줄이자니 지금 저희 복지관 예산보다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게 지금 사실은 조금 고민되는 포인트입니다. (참여자 10)

장애 예술인은 12회의 공연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연습에 투자하고 있었다. 매일 몇 시간씩, 다른 일을 하는 경우 퇴근한 후에, 공연 전에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습한다. 장애 유형으로 인한 소통방식의 차이나 속도를 고려할 때 일정 역량을 갖추기까지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 장애 예술인에 대한 참가자 수당(인건비성 사례비)은 ‘과정’보다는 공연 ‘출연’을 기준으로 책정된다.[9]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참가자 수당이 적은 상황에서 연중 사업에 참여한

---

7) 2025년도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전문가 활용비는 출연자 참가비 외에 외부 전문가 강사료, 수어통역, 스텝 비용 등을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8) 2025년 7개 사업 수행기관의 예산을 기준으로 회당 지급되는 최저 비용은 약 2만원, 최고비용은 20만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장애 예술인의 인건비 비중은 평균 20% 내외이다.

9) 시범사업(2020년)의 경우, 장애인 참가자의 프로그램 훈련 기간(2개월) 훈련비(월200,000원), 근로기간(6개월) 급여(월897,660원), 매니저, 지원 인력 등의 급여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었던 반면, 현재는 이러한 기준이 없다.

다고 해도 실제 소득은 크지 않다. 오히려 다른 전문가에게 집행되는 비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10)]

> 그 다음에 마술할 때 연습할 때 좀-중략-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합니다. (참여자 11-당사자)

> 저희가 이제 인식 개선 교육 그런 뭔가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교육을 갔다 와서 남는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여의치않을 때는 연습을 하루나 정도는 좀 쉬었다가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거진 뭐 교육받는 거, 교육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연습하는 거 위주로 일정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참여자 15-당사자)

> 저희 딴에서는 열정 페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예술가 분들 그렇게 조금 작업을 많이 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연습을 했는데 연습에 대한 대가는 없고 그냥 작품 결과에 대한 것만 있다 보니까 (참여자 16)

수행기관들은 적정 인건비 제공이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의 자원에 "시선을 돌릴 수 밖에 없는"(8) 상황에 놓여 있다. 공공일자리나 민간·공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의 연계가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예산집행기준 에 따르면, 기관이나 타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참가자는 공연에 참여하더라도 사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수행기관들은 근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급여가 많지 않은 장애인 일자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공연을 위한 해당 근로와 구분되는 추가적인 연습과 공연 참가를 '중복 수혜'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사업 참여가 실제 참가자들에게 일정한 '일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를 근거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했거나, "일자리를 창출했다"(8)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수행기관들은 현재의 제한된 예산 구조 속에서 공연의 '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립 지원이라는 목표까지 달성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7)를 잡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회기 참여하셔도 나갈 수 있는 수당이 1인당 5만 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사업비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 계속 수당을 줄이는 형태인 거예요. -중략-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과 연계하는 일자리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장애인개발원 사업은 이런 예술인 분들에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계기 혹은 기회를 드리는 사업 정도로 저희는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늘지 않는 이상 이게 일자리로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두 명? 빼고는 다 정규직이세요. 정규직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페이가 이 수당으로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 제한이 돼서, -중략- 저희는 출연진은 한 11명 13명인데,

10) 각 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른 전문가 활용비가 같이 책정 된 경우 유선상으로 해당 기관에 평균 금액을 확인함) 전체 예산 대비 장애 예술인의 공연에 대한 참가자수당 적게는 0%에서 많게는 32.6%이다. 인건비는 참여예술인의 수와 비례하며, 12회기 모두를 참여해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대부분 100만원 미만이며, 현재 1개 기관만이 회당 20만원을 책정하여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수당으로 가져가시는 분은 네 분밖에 안 계세요. (참여자 7)

우리 선생님 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이 선생님이 5월 달에 4대 보험으로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비장애인 선생님이 계셨어요. 일단 이 선생님이 근데 그전에는 훈련을 같이 하는 훈련생이었는데, 그 훈련비까지 못 받게 됐어요. (참여자 7)

회사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아예 인건비는 다 사용하지 않고, 인건비는 다 저희 어차피 정규직이고 하니까 회사에서 다 지급을 하고 이제 이거는 정말 오로지 공연을 만들기 위한 것들로만 다 채워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사용하고 있고요.(참여자 6)

이제 구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어떤 이제 교육비로 일정 부분의 어떤 수당으로 강사분들께 지급을 해서 좀 유지가 될 수 있게 했는데, 이제 때마침 한 한 2년 전부터 장애인 일자리로 저희가 직무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로서 이제 강사 활동에 대한 거는 확보를 했었고 (참여자3)

(3)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벽

① 교육 기관의 수요와 사업 수행 방식의 간극

의무교육기관에는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등 공직유관단체도 포함된다. 수행기관들은 문화예술공연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을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확산하고자 자체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들은 사업이 선정되어 시작하는 시기(2025년 기준 4월)와 의무교육기관들이 연간 교육을 수립하는 시기 시기(매년 초)가 일치하지 않아, 교육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사업 운영 시기와 기관의 교육 계획 수립 시점이 일치한다면 교육대상 기관 확보가 원활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산을 위해서는 사업 시기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제 성인 대상으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좀 많이 하고 싶은 좀 욕심이 있어서 공공기관을 이제 섭외를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공문을 보내 협조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보통 이제 아까 다른 기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다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교육을, 이제 계획을 수립을 다 하기 때문에 이미 다 [웃으며] 교육이 잡혀 있다고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참여자 5)

학사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언제 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게 좀 어려운거 같아요. (참여자 9)

개발원에서 이렇게 많이 공문을 보내도 움직이지는 않으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거의 학사 일정이 짜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학교에서도 움직이고 싶은데 학사 일정이 고정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아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참여자 10)

한편, 교육 지침(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25)에 따르면 각 기관은 1회 이상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기관이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을 수강할 경우 만점(30점)이 부여되고, 참여율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수행기관은 인식 개선이 필요한 성인학습자로 구성된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시간 중 진행되는 대면·집합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 "온라인으로 때우는"(1) 경우가 더 많고, 대면교육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각급 학교 역시 정규 수업 일정과 공연 운영 시간이 맞지 않아 섭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부과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기관이 일정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문화예술특화형 교육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기에는 제도적 유인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 어쨌든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냥 온라인으로 때우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참여자 1)

> 일정 맞추기 어려운 곳 그리고 시청이나 이런 데 아무래도 각 부서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는 한 타임에 가서 한 번에 모여서 이제 교육하는 것 자체를 조금 기관에서 부담스러워하거나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꺼려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참여자 4)

> 우선 다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근무들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시냐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많은 인원은 참석을 할 수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참여자 10)

> 저희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공연만 60분이라서 무조건 2차시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던가 (참여자 9)

② 사업에 대한 낮은 이해

본 사업은 시범사업 시점까지 포함하면 6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수행기관의 경험에 따르면 전반적인 인지도는 여전히 높이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선정된 수행 기관 정보는 교육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에 홍보되고 있다. 매년 발간되는 교육 지침에서도 '문화예술특화형 교육'이 선택 가능한 교육 방식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일부 수행 기관과 교육 기관은 이러한 공식적인 홍보 경로를 통해 연결되기도 한다.

> 사실 회기 수를 모집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육 대상 기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발원에서 사이트에 올려주시기만 해도 그 한 달 동안은 전화가 폭주할 정도이거든요. 어려움은 없는데 (참여자 8)

그러나 수행기관들의 담당자들은 여전히 이 사업을 잘 모르는 기관이나 지역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새로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9) 홍보

해야 하는 상황을 어려움으로 보고했고, 이러한 어려움은 인력과 자원이 제한적인 소규모 단체일수록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원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송하는 공문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 교육기관들에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식적인 홍보 채널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교육의 차별화된 지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강사가 강의를 하는 거랑 저희 기관이 사실은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장애인들이 연주 연습, 공연 연습,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알려지지도 않았고 많이 이제 기관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참여자 5)

> 구마다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협력 네트워크가 워낙 잘 되어 있어요. -중략-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지 않고 유기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의뢰를 받고 있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리스트로 홍보를 쭉 하고 있고요. (참여자 2)

> 저희 지역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화예술로서 장애 인식 개선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중략- 저희가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제 기관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조금 발 벗고 나서서 이제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이런 문화예술로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가능하다 (참여자 4)

>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타깃으로 했던 거는 다 학교였기 때문에, 교육청에 이제 저희가 그냥 막 전화드렸어요. 사실은. 처음에. -중략-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냥 막 마구 부딪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참여자 1)

> 개발원 통해서 저희도 교육청에 공문을 이제 발송을 했는데, 반응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더 발로 뛰어 보자 (참여자 10)

③ 편의시설의 부재를 감당하기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편의시설과 관련한 법·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기관은 여전히 장애인이 진입하고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행기관들은 교육 기관 선정 과정에서 신청 기관의 여건을 최대한 확인하지만 편의시설의 여부가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그것을 "따져가면서 교육을 하지는 않"(16)는다고 설명하였다. 오히려 환경이 열악한 기관일수록 문화예술을 접목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예술인이 참여하는 경우,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해당 교육기관 구성원 도움을 받아 이동해야

하거나, 공연·강연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애 예술인이 원치 않는 시선을 경험하고, 사업 담당자나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개인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다기 보다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물리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사회적 한계로 만들어진 '장벽'으로 인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 지체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휠체어를 타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공연을 해야 되는 강당이 계단밖에 없는 데다 이러는 경우도 있죠. 보통은 남자분들이 학교에 남자 선생님들이 계시거나 하시면 대표님이 이렇게 무거우신 분은 아니셔서 대표님을 안고 올려드린 다음에 휠체어를 같이 가지고 와서 다시 앉혀드리고..-중략- 아무래도 우리가 공연을 보여주러 온 입장인데 도움을 받아야 되게 되면 그 순간에 약간 이게 조금 더 잘 돼 있었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도움을 안 요청해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하거든요. (참여자 17)

> 휠체어 저희 무용수 선생님은 지금 저희랑 무용도 활동하고 같이 계시는 분이셔서 이렇게 팔에 힘이 많이 좋으셔서 이렇게 계단이 있는 곳은 내려서 이동을 하신다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중략- 그런 거에 대해서 내려와도 왜 저렇게까지 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중략-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한테는 좀 어려운..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좀 많이 같이 따라서 현장에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게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매번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시니 당황스러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휠체어 무용수도 본인도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자 16)

수행기관들은 교육 기관의 편의 확보 여부는 사전에 점검되고 지속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수행 교육기관 관리·감독(모니터링)지표」[11] 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기준이라는 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준이 평가로 작동하게 되면, 부정적 평가를 우려한 수행기관이 영세하거나 노후한 기관, 즉 문화예술을 접목한 교육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관을 교육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편의시설의 부재가 교육 접근성을 낮추거나 장애 예술인이 '장애'를 경험하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점검과 점검 결과의 활용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일단 계단이 있는 곳은 저희가 휠체어가 갈 때, 그러면 그런 좀 노후된 어린이집 이런 데는 저희가 참여 예술가가 못 가는 경우도 있죠. 물리적인 접근성이 안 되는 경우 - 중략 - 조금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는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면 또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세한 데는 더 안 가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참여자 7)

> 모니터링 항목 중에서 사전 체크리스트에 장애 예술인 편의 환경 확보가 있어요. 근데 사실 대기실이나 화장실,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편의시설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자 8)

11) 〈수행 교육기관 관리·감독(모니터링) 지표〉 교육현장 평가, 법정필수교육내용 반영, 운영체계·지속성 부분을 검토하며, 이중 '교육현장 평가'지표에 '편의환경 확보(대기실·화장실·엘리베이터 접근성)'가 포함되어 있다.

3) 수행 기관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개선 방안

(1) 사업 안착을 위한 밑그림의 재구성

① 사업 선정 및 운영 기간의 조정

본 사업은 매년 초에 사업 수행기관을 새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은 선정공고일(2025년 기준 4월)로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의무교육 대상기관 모집 홍보, 사업 세부 기획, 장애예술인의 역량 강화 지원과 교육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 초안 기획 이후 지원기관의 "사전 검토와 승인"이 "필수"적[12]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운영 기간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수행기관들은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선정 시기와 운영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교육기관 확보가 더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의무교육기관인 각급 학교나 공공기관이 연초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행 기관 선정 및 사업 위탁 시기 조정은 교육 기관 확대와 교육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저희도 이제 신청 이제 학교나 이런 데에서 유치원에서도 이제 신청이 막 들어오는데 대부분 이 사업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의가 많이 전화가 왔었어요. 2월이나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다 사업 1년 치 이제 일정을 다 짜고 그러시는데,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결정 나면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참여자 4)

> 학사 일정이 조금 결정되고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4월이면 사실 상반기 결정이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업 진행 과정이 조금은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요. (참여자 10)

>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제일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작년 말이면 1년 사업 일정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려워서 앞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좀 수업 일정이 당겨지면 그런 공공기관들이나 좀 다양한 유형의 기관에서 저희가 사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8)

또한 연초부터 연말까지 "온전한"(7) 1년을 단위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참여 장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연속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속해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일을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다. 사업 선정이 되기 전까지 연초 일정 기간 일과 수입이 중단되는 상황이라면, 본 사업은 자립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

>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많은 일자리를 드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일이 저희가 선정

12) 2025년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고문

이 될 지 안 될지 모르니까 4월 달 이럴 때 선정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오히려 연말에 딱 선정이 돼버려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거리가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하고도 연결되고 (참여자 7)

지금 개발원에서 하시는 사업은 항상 단년, 그 해에 그냥 다 마무리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속이 안 되다 보니 힘든 점은 사실은 많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건비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사실은 제일 시급한 문제거든요. (참여자 1)

한편, 선정부터 8개월 이내에 사업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현재의 운영 기간은 문화예술을 위한 창작과 연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장애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개별적인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며, 교육 대상과 맥락에 맞추어 공연 내용 구성하고 익히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소통에 제약이 없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정된 사업 일정에 맞추어 운영될 경우, 참여 장애 예술인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참여하는 역량을 강화할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곡을 완벽하게 해서 공연에 올리기까지가 보통 한 달 이렇게는 절대 안 되고요. 두 달 세 달 이렇게까지도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제 저희가 공연을 달에 한 5번 나가면 매번 타깃이 바뀌는 거잖아요.(참여자 12)

공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10분을 넘지 않아요. 한 10분 공연을 저희가 거의 한 두 세 달, 네 달? 길게는 한 진짜 다섯 여섯 달까지 한 공연을 계속 하루 종일 연습을 똑같은 걸 반복 연습을 해서 이 친구들이 이걸 외울 수 있게 (참여자 17)

이러한 점에서 본 사업이 단년도 성과 중심의 구조를 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년도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긴 호흡으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안정적인 운영할 기반이 마련된다면, 교육의 질과 공연의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 확보의 어려움이나 열악한 조건의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 역시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다년 사업으로 간다라고 하면 작품을 하나를 만들고, 그거를 2년 3년 이렇게 그 작품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초기에 들어가는 작품 비용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덜할 것 같긴 합니다 (참여자 8)

아무래도 사업이 연속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업 기관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만약에 안 되더라도 – 중략– 미리 사업 일정을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 8)

문화예술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기관 뭐 이렇게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년 약정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서 계속해서 위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

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서 지속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12회 안에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몇 회 이상 몇 명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담보다는 다양한 대상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섬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나 이런 기간들도 지금은 몇 월까지 끝내야 되고 몇 월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조금 학교나 이런 실정에 맞춰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여자 4)

오히려 위탁기관으로 내가 선정돼서 3년이나 뭐 몇 년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늘 새로운 작품을 준비했다가 그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 사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그 제안을 해서 혹은 제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참여자 7)

② 수행기관 선정-점검-평가 기준의 조정

가. 수행기관의 선정 기준

수행기관 선정 시[13]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에 관한 의견도 있었다. 우선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와 장애 예술인의 역량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육의 효과를 고려할 때 각 기관의 콘텐츠가 장애인식개선에 적합한지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콘텐츠의 내용도 사실 인형극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자격을 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형극 내용이 맞지 않다면은 그거는 교육으로서의 효과성이 없다고 좀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그 콘텐츠 자체에 대한 인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제도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몰라서 -중략- 예술 분야가 다양하니까 음악은 음악을 하시는 당사자분께서의 기술이 상당히 더 중요하겠지만, 인형극은 연출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내용 스토리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약간 분야별로의 특성과 인증 방법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자 3)

심사 단계에서 신청 기관의 휴형보다는 사업 수행 의지나 필요성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 중에서도 예산의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경우라도, 문화예술사업이 주 목적 사업이 아닌 경우 본 사업과 같은 외부 재원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저희가 면접 때 항상 듣던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복지관인 경우에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관은 예산이 많은데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냐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중략-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고요. (참여자 10)

13) 현재 수행기관 선정 시 고려되는 기준은 사업 목적의 적합성, 프로그램 운영 실적, 사업 수행 역량 및 실행 능력, 사업의 성과 및 기대 효과이다. 각 년도 공고문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20년도에는 '사업운영계획, 근로자 훈련 계획, 관련 경력 전문성'이 주된 선발기준이었다. '21년도부터는 선발기준은 유사하나 배점 기준이 달라졌다. '22년도까지는 사업목적의 적정성이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23년도부터는 20%로 비중이 줄었고, 수행기관의 경험과 역량에 대한 평가 비중이 전체 60%를 차지한다.

연속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도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사업에 지속 참여한 경험이 있는 수행기관들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기관마다 참여하는 장애 예술인의 장애 유형과 예술 역량, 새로운 교육 내용을 익히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대면심사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접목"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사업에 지속 참여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과 참여자의 긍정적인 변화, 지역 안에서의 파급효과 등을 가늠하기 위한 다른 선정 기준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 근데 해가 갈수록 굉장히 다양화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단순 공연만으로는 힘들겠다, 개발원 사업을 따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때 했어서 -중략- 일단 개발원에서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극뿐만 아니라 여러 개지 굉장히 다양한 제가 금방 기억은 안 나지만 많은 면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서 아마 기관마다 다 애로사항이 다르실 거예요. -중략- . 왜냐하면 단순히 음악만 하는 단체 그런데 이제 폭넓게 다른 쪽으로도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랑은 더 이상 안 맞는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시는 거죠. (참여자 1)

> 내년도에 참여를 했을 때 저희 참여자분들이 그대로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은 성장이 아직은 덜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건 포트폴리오를 좀 내본다든지, 아니면 내 이력을 좀 정리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술, 미술이라고 하면은 예술 참여 정도 예를 들면 전시 그 다음에 대회에 나갔다라는 그런 증빙 서류들을 내서 아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인식 개선 강사로 조금은 확대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참여자 10)

> 저희가 이제 탈인형을 했을 때 장애인 인원들이 제가 그 당시에 5명인가 정도밖에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장애인 근로자를 증가시키고 있고, 그만큼 이제 공연 횟수도 늘리고 있고, 또 공연에 대한 퀄리티도 높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줬을 때 이 사람들이 발전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조금 더 중점으로 봐주고 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17)

나. 사업 수행의 점검

수행기관들은 사업 점검은 단순히 관리·감독을 넘어, 사업의 질을 높이고 수행기관의 역량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제시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물로서 공연의 질과 횟수와 같은 결과 지표만이 아니라, 준비와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장기간 협업하며 축적한 경험, 장애 유형별 소통방식이나 역량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대응해온 과정과 역량은 현재 점검 체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공연의 우수성을 점검하기 위한 '표현·연출의 효과성', '전달 방식'이나 '시간'의 적정성과 같은 지표에 더하여, 공연 과정에서 '대처 방식의 적절성/유연성' 지표를 포함하거나, 수행 과정에서 기관 내의 변화와 같은 성과를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점검 방식 보완이 필요하다.

정말 장애를 잘 이해를 하고, 예술가로서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게 하려면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물론 중요하잖아요. 개발원에서도 사실 저희가 무대에 올라가서 완벽하고 멋있게 무대를 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인식 개선이. 근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겪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무대 하나를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오래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뭔가 성과에 보고를 할 때 결과에 치중하지 않고 이런 과정들도 조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들어요. -중략- 아무래도 공연을 하는 모습만 보신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연습하는 그 모습은 보실 수가 없으니까, (참여자 12)

둘째, 모니터링 지표의 구성이나 비중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현재의 모니터링 지표는 교육 기관의 준비 상태나 공연 자체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변화나 반응을 측정할 지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인식개선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1개 문항에 불과한 반면, 수행기관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표는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다. 관리·감독 지표와 현황 파악 지표를 분리하고 사업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새로운 지표 체계가 요구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링 체크 리스트를 봤는데 좀 현장의 반응을 주요하게 좀 더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참여자 8)

그 시설에 대한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좋은 시설에 가서 좋은 점수 받으려고 자꾸 영세한 곳을 피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정말 그러한 곳에 저희가 어쩌면 더 가서 그들이 또 자각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참여자 7)

사전 체크리스트에 장애 예술인 편의 환경 확보가 있어요. 근데 사실 대기실이나 화장실,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편의시설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해당 교육 장소의 시설을 평가하는 다른 사업에서 배점이 되어야 하는 거지, (참여자 8)

셋째, 모니터링 시점과 방식 개선에 관한 의견도 있었다. 기관별로 사업 수행 경험과 속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니터링은 정해진 시기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 수행기관들은 신규 참여 기관의 경우 모니터링 횟수를 확대하거나, 사업 수행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점검이 이루어질 경우 피드백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제한된 인력으로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며 교육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실시간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은 수행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에 즉각적인 질의응답 보다는 교육 이후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확보하거나, 모니터링 직후 서면 피드백을 제공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수행 기관들은 모니터링 자체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인정하고 있었다. 이를 고려할 때 지원 기관의 모니터링이 관리·감독에 머무르지 않고 기관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당사자나 전문 예술가를 연계하여 콘텐츠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확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팅도 해줘야 되고 인식 개선도 준비해 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음향은 왜 이런지 계속 이제 궁금하셔서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 끝나고 물어보셨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중략-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그냥 서면으로 한 번에 보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참여자 10)

저는 모니터링을 하고 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피드백을 바로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피드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이 아예 나중에가 아니라 좀 바로 좀 피드백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9)

초반에 만약에 나오셔서 점검을 하시면은 이후에 한 두 번 정도 나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개선은 되었는지 -중략- 한 두 번 정도 주시고 텀을 주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9)

다. 사업 수행의 성과 평가

수행기관들은 학습자의 인식 개선이라는 교육의 주된 효과 외에도 사업 수행을 통한 기관과 구성원의 긍정적인 변화를 사업의 성과로 보고하였다. 기관의 교육이 활성화되는 것, 기관 내에서 장애-비장애 예술인 간의 이해와 협력이 강화되는 것,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는 것, 참여 장애 예술인의 일자리 전환 등이 그 예이다. 지원기관은 사업을 통한 기관의 성장과 변화를 어떻게 측정하고, 문화예술특화형 사업의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성과 평가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그런 횟수가 증가를 했던 거, 관심이 증가했던 거, 약간 요런 걸로 비교 분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2)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14명이었던 인원이 21명으로 늘었다. 우리 공연을 보고 이제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충원을 하셨다, 두 명을 올해 더 뽑으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거 이제 그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참여자 1)

한편, 본 사업은 참여 중증장애 예술인의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지원기관과 수행기관이 공통으로 가져가야 할 중증장애 예술인의 '자립'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구체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과 관계가 확장되고, 예술적인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취업'이나 '소득'과 같은 기준은 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성과로써 '자립'을 평가할 기준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최종 목표 자체는 이게 장애인들 자립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사실 결과적인 거 하나만 보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참여자 12)

③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가. 교육 효과 측정을 위한 기준 제시

수행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원하는 만족도 조사와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행기관 역시 만족도 조사는 “필수적”(1)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장애인식개선이라는 교육 효과를 점수로 “수치화”(10)하여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일단 만족도 조사가 가장 가장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저희도 사실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나 장애 인식[개선]이 정말 됐다.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중략- 장애 인식 개선이 되었다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수치로 사실 내기가 너무 힘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서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자 1)

> 우선 저희가 만족도 조사에는 인식 개선이 도움이 됐냐 정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점수적인 부분을 판단을 하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예를 들면 이 공연으로 장애인분들이 직업 생활을 할 수 있고 발달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했냐.라고 하면 사실상은 조금은 지표로 만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참여자 10)

만족도 조사는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사 가능한 대상이 제한되거나,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자들의 인식을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각 수행기관이 독자적으로 체계적인 효과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수행기관 담당자들은 교육 중 학습자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에 주목하여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거나, 사후 활동지나 소감문과 같은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성적 조사 결과는 사업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공유되거나, 이후 사업 기획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저희도 만족도 조사 진행하는데, 저희는 아이들 참여한 아이들 위주로 하지 않고 있고요. 교사 위주로 만족도 조사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후 이제 기대하는 변화, 기대하는 바 약간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참여자 2)

> 저희가 이제 학습지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지를 활용을 하셨는지 유무를 파악을 하고, 이제 후기로 남겨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용으로 담겨주시면서 저희가 느껴지는 바로 저희가 이제 매월 결과 보고를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반영해서 교육 자료에 어떤 걸 좀 더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반영해서 교육 자료 같은 것들 수정하려고 매년 노력하고 있고, (참여자 2)

> 최대한 질문 내용 자체가 공연을 통해서 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전후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그래서 그걸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도 꼭 받아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자 9)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감문의나 본인들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수 체크도 이제 받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받기보다는 소감문을 조금 중점으로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자 10)

그러나 본 사업이 6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개별 수행기관의 효과 측정에서 나아가서 '인식개선'이라는 교육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행기관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기본 지표와 함께, 각 기관의 사업 특성이나 세부 목표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사업 평가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지표들이 조금씩 쌓여야 되지 않나 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질문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하나는 좀 더 저희도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 9)

나.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운영 기준 개선

교육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대상 기관들의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한 교육 운영 기준 개선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교육 횟수 중심의 인정 기준과 인원 제한 없는 교육 운영 방식은 오히려 교육이 필요한 기관의 접근성을 낮추거나, 교육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수행기관의 경험에서 드러났다.

먼저 교육 기관의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체 공간에서 공연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문화예술 공연기관을 대관하거나 편의시설이 확보된 장소에서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교육 제공 횟수로 인정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4] 이는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한 교육 환경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저희가 12번이지만 12번보다 더 많은 기관에게 공연을 한 횟수의 한 기관만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이 같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연 제도적으로 있으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참여자 4)

>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공연장 같은 곳을 조금 대관을 해서 조금 다양한 기관들이 찾아와서 공연을 같이 관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면은, 저희 공연의 질도 어떻게 보면은 전문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이제 가서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열악한 환경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것과 조금 더 공연 퀄리티도 좋아지고 또 더 많은 기관들에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참여자 4)

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사업장별 연 1회 교육 강사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법인 사업체 내 다수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별 교육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장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① 교대근무, ② 교육장 협소, ③ 교육 미실시 인원 추가 교육 필요, ④ 사업장 지역별 분산 등의 경우 최대 4회까지 분리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

그래서 그런 장소 부분들이나 이런 걸 조금 넓혀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공연들을 더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조금 자주 하게 됐고, (참여자 6)

또한 교육 효과나 학습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 참여 인원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행기관의 경험을 토대로 적정 인원 기준은 공연 유형, 참가자의 연령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교육 참가 인원이나 안전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동일 기관에서 교육을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 참여 장애 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일 2회 교육 시 1회만 인정"된다는 운영 기준도 재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지금은 그냥 수용 인원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보고 싶을 테니까, 그리고 [무대] 설치도 이미 되어 있어서 그 회차를 늘리는 건 저희 쪽에서 어렵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한 학교에서 두 번 진행이 된다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9)

회기 한 기관에서 100명, 200명 이상일 때 두 번 나눠서도 인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냥 밑에 한 줄만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0)

일부 기관에서는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교구나 사후활동지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제한된 예산 여건 상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거나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도 드러났다. 이에 수행기관의 이러한 경험과 시도를 토대로 지원기관에서 교육 콘텐츠나 보조자료를 개발하여 수행기관들이 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교육를 제고하는 동시에 수행기관이 문화예술 공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고 한다면 오히려 공연 딱 시작 끝 하고 할 때 이제 시작 전과 끝나고 난 후 이제 토크 같은 데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참여자 14)

④ 수행기관의 성과와 참여자들의 기여 인정

현재 수행기관은 선정 과정에서 사업에 관한 역량을 보여주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종료되는 시점에서 성과에 대한 인정 체계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수행기관의 좋은 성과를 가시화하고 더 좋은 교육을 독려하기 위한 성과 인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우수 수행기관에 대한 포상 제공, 참여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이력 인정을 통한 전문 강사 진입 기반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사업 수행하시는 담당자들한테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략- 이제 저희 복지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이 사업을 더 안고 가야 되는 거는 사실상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의 성장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 파트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은 담당자들이 이 사업을 도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참여자 10)

다른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제 똑같은 사업이 또 이제 반복되는 경우 작년에 참여했던 기관은 예를 들어서 서류 심사를 면제한다 아니면 뭐를 면제해 준다 그런 식의 좀 그런 보너스 같은 게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래서 개발원에서도 이제 만약에 되신다면 그런 식으로 작년에 정말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았던 그런 기관은 좀 다음에 모집할 때 좀 어떤 가점을 주신다던가 그러면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자 1)

제가 느껴지는 가장 큰 인센티브는 '자격'을 주시는 거거든요. '장애 인식 개선 강사 자격'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1년 동안 잘 물론 당연히 잘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수행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영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참여자 9)

참여자들은 본 사업에서 장애 예술인의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교육의 기반을 닦고, 공연을 만들어가는 비장애 예술인들의 기여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비장애 예술인들은 사업을 기획하고, 한 사람의 예술인으로서 공연에 참여하기도 한다. 장애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외부 전문가를 연계하며(6), 연습과 교육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접근성 코디네이터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장애 예술인의 참여를 독려하고(17), 장애인의 삶을 곁에서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비장애 선생님들이 계속 살피고 계시다가 네 네 그리고 그리고 같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또 안쪽에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공연을 하고 있다가도 동선이 갑자기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안무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절대 당황하지 않고요. 복화술로 얘기를 합니다. -중략-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당황을 하지 않고 가요. 근데 그런 훈련을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예술가 분들도 뭔가 빠졌다 뭐가 됐다 하면은 가만히 서 있고 계시진 않아요. 일단 자기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비장애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다 이제 대처를 해서 유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그다음 거를 다시 또 다시 이어서 나가세요. (참여자 16)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정도만 대충 간단하게만 알고 있어서 이제 전문가분들을 조금 섭외해서 하는데, 이거는 특화형으로 말고 다른 사업이 다른 게 선정이 돼서 그걸로 지금 보강을 하고 있긴 한데, 저희는 보통 다 저랑 선생님이랑 같이 두 분이서 주로 인형극 공연 관련해서 모든 연기 발성 부분, 인형 움직이는 부분, 동작 부분, 이런 연출 부분이나 이런 걸 다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참여자 6)

그러나 현재 비장애 예술인은 본 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근로"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를 받지 못한다.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가 외부 인력인 경우 '강사비'를 집행할 수 있지만, 내부 강사인 경우 사업 내에서의 역할과 무관하게 '일'을 하더라도 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다. 수행기관들은 이러한 운영 방식은 비장애 예술인의 근로를 비가시화하며, 상대적으로 소규모

의 기관은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함을 보고하였다. 예산의 윤리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과 무관한 인력의 인건비나 자본적인 경비는 제외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사업기간 동안 담당 인력의 실제 기여나 참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 기준도 필요하다.[15]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은 예산의 일정 비율을 간접비로 책정하도록 조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분들은 근로를 했는데 이 근로에 대한 비용을 안 받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는 장애인 비장애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라고 얘기하고 있고 함께 그걸 하기 위해서 장애 인식 개선을 하는데 비장애인들은 수당을 받지 못한다? -중략- 이해하기 힘든 근로의 조건이 아닐까 -중략- 저희가 다 공연을 다 같이 나가도 공연비에서 다 같이 받고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이 들어가든 장애든 비장애든 다 같이 받아요. -중략- 강사비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출연하는 출연진 전체가 이 일을 하는 근로의 조건에 대해서는 근로비를 받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중략- 저희는 그 비용 안에서 어쨌든 수당이라는 거를 그래도 자기 예술인들한테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참여자 7)

> 저희가 초등학교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수어같은 거도 배워보고 싶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또 수어하시는 분이 계셔서 같이 갔던 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가더라도 사례비나 이런 거는 따로 챙겨드릴 수는 없죠. (참여자 12)

> 대표자 사례비 항목이 있으면 어쨌든 12회 차 회차에 대한 지금 이런 활동들 기획도 하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무보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여서 -중략- 이런 게 있다면 좋지 않을까 뭔가 더 진짜로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지원금에서 조금 소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본인 사례비에서 쓸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참여자 14)

⑤ 예산 구조 및 사업 지원 방식의 점검과 개선

가. 예산 구조의 점검과 개선

문화예술특화형 교육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수행기관들은 이 사업의 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여전히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지역이나 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교육을 활성화하고, 장애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지원 금액은 물론 전체 사업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예산적인 거는 전보다는 특화형도 지금 줄어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이 안타까워요. 예산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않고 계속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더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아무래도 같이 협업해서 같이 조금 많은 사람들하고

15) 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의 경우에도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나 "사업추진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강사 자격을 갖추 회원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두기도 한다(부천시 문화정책과, 2025). 이 경우 강사의 전문성과 구체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예산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여자 16)

문화 체험형이 워낙에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셔서 많은 기관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도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계시는, 그러니까 지방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못 가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참여자 4)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집행 지침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공통으로 언급한 부분이다. 사안마다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예산 집행 지침 편성 기준 내에 집행가능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연이라는 특성과 장애 예술인의 자립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이 예산 집행 지침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 예술인의 사례비는 강사료 지급 기준과 같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공연에 사용되는 소품은 '종류'보다는 '용도'에 준하여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

지침이 조금만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어떤 몫의 돈을 쓸 수 있는지가 좀 더 드러나면 좋겠다, 아니면 전에 이제 다른 기관들이 어떤 몫으로 돈을 썼었는지를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참여자 8)

무대에 4명의 배우가 나오는데 한 명의 배우만 농인 배우고 스태프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런 숫자적인 비율보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30%를 이제 지자체에서 장애 예술인을 함께 해라라고 했을 때 진짜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와 달리 [웃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체에 불과할 정도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여기서 맡고 있는 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준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참여자 14)

배우 페이는 그 정도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곳,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차라리 조율이 필요하면 가이드라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9)

나. 사업 지원 방식의 점검과 개선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은 1인의 강사가 아닌 여러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동작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구성원 간의 상시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때문에 사업 담당자들은 실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공연 중심의 예산 외에 구성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워크숍 운영을 위한 지원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워크샵, 이런 것도 한 번씩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개발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저희가 이제 단합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건데 공연을 하다 보면 저희가 1년 동안 다 같이 모여서 있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공연을 하는 날은 이제 온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저희는 그 이후에는 계속 다음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또 연습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좀 제가 서로 피드백을 받고 참여하는 단원들끼리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럴 만한 장을 뭔가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참여자 12)

수행기관 간 소통할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FGI 참여는 다른 기관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연간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타 기관의 사업 수행 방식이나 노하우가 궁금하지만 현재로서는 간담회 외에 공식적으로 교류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수행 과정에서의 간담회, 상호 정보 교류 기회나 기관 간 방문, 공동의 성과발표회와 같은 방식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자극제(8)가 되며, "응원과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3)로 "좋은 영향력"(3)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기회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또한 사업 담당자들만이 아니라 장애 예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로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저희는 저는 인형극밖에 못 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각자 어떤 공연으로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중략-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한다면 각자 사업에 좀 좋은 부분은 접목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여자 3)

사업 지원을 받은 곳이 여러 곳인데, 사실상 어느 곳이 어떤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제 잘 모르기는 해요. 그냥 처음에 합격을 했을 때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시기는 해서 여기가 이런 걸 하는 데구나라고 하는데 다..각자의 사업을 하지 서로 이렇게 통합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서로 이렇게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은 좀 있어요. (참여자 17)

이게 지금 맞는 속도인지 안 맞는 속도인지, 그리고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다른 기관과의 교류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기관과의 이런 진행 과정 안에 있었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게 정말 더 의의가 있지 않았나 (참여자 7)

저희가 처음에 참여했을 때는 콘서트를 진행을 해서 다른 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영상 촬영할 때는 저희 팀만 하고 워낙에 촬영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냥 다른 팀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콘서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같이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저희 스스로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참여자 분들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서 다른 기관들하고 교류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꼭 그런 기회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 중략- 그리고 간담회도 사실 간담회 가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 듣고, 저희 기관에 적용하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참여자 8)

서로서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중략- 실제로 그런 교육의 자리는 마련이 된 적이 없었고 합동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공연만 한 1시간인가 2시간에 걸쳐서 공연만 했기 때문에 정말 교육까지 아예 보여주시면 그것도 어찌 보면 좀 되게 낯부끄러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찌 보면 되게 서로 서로를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참여자 1)

(2) 사업의 고유성을 강화할 방안

① '문화예술'이 손상되지 않는 지원

수행기관들은 문화예술 특화형 사업의 고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문화예술이 손상되지 않"도록(7)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일한 예산 내에서 정해진 횟수의 공연을 하려면 회차당 투입 가능한 예산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의 효과를 고려한 "양질의"(14)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자체를 창작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지원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예술가로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의상과 뭔가 좋은 음향, 좋은 조명, 그 다음에 조금 더 멋진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좀 예산적인 부분이 사실 좀 그렇죠. -중략- 음향팀도 예산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네. 저희 공연이 더 빛나게 해 주실 수 있는 건데 항상 소규모로만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그런 준비했던 거에 비해서 좀 아쉽게 나올 때도 있고(참여자 12)

문화예술 기관으로서 문화예술단으로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을 때 필요한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조금 구분 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1회에 얼마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밖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는데, (참여자 4)

문화예술 특화형이라고 하면 어떤 강의에서 문화예술이 손상되지 않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예술가들의 어떤 페이로만 선정되는 건 아니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무대에 들어가는 비용 (참여자 7)

문화예술특화형 사업 수행기관의 경험과 지원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 선정 대상을 다각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모든 기관이 동일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관의 예산 자립 정도, 인력, 사업 참여 및 콘텐츠 제작 경험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여러 번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사업 참여 인건비가 확보된 '중견' 기관은 신규 콘텐츠 개발 지원, '신규'로 진입하는 기관은 인력과 콘텐츠의 안정을 위한 훈련 및 공연 사례비 지원과 콘텐츠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연계 등 "기관의 상황에 따라"(3) 사업 유형과 지원 내용을 다양화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기관들이 모두 100%의 예산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어떤 전문성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들로는 안 되거든요. 예술에 대한 전문성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뭔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야도 좀 있으면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워낙 원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반복으로 하는 게 어렵다라면 어떤 사후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명목으로라도 그런 소정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생기면은 좀 더 어떤 효과성에서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참여자 3)

효과적인 교육 운영과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품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창작비만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 경우, 기관의 역량에 따라 창작된 공연을 활용하여 더 많은 교육을 운영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장애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정 기준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어느 정도 사용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어떻게 몇 퍼센트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참여자 4)

만약에 이걸 회기를 정해두지 말고 이 작품 구성의 작품비에 2300이나 2천이나 3천을 정해 두시면, 나머지 이거를 뭐 10번을 하던 20번을 하던 이걸로 최대한 몇 번까지 하시라 이렇게 작품 구성비에다가 창작비로만 주시는 것도 어떨까 그것도 대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회기로 정해져 버리면 아까 우리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명수 그러니까 몇 명이 들었냐가 아니고 회기로 정해버리면 정말로 저희가 한계점에 많이 다다르게 됐거든요. (참여자 7)

② 장애 예술인이 '장애'를 경험하지 않도록

장애 예술인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감각과 소통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장애'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애유형별 차이도 고려되어야 한다. 수행기관에서는 장애 예술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참여 당사자들은 사업 참여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약을 경험하고 있었다.

피아노 혼자 치시는 분도 계신데 발달장애인이신데 악보를 전혀 못 봐요. 저희 팀은 악보를 볼 수 있는 멤버가 거의 없어요. -중략- 리듬을 익히도록 하고 그런 본인들이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같은 경우는 좀 이 박자들을 좀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그런 거를 본인의 이름으로 변경해서 한다든지, 그런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서 해 주시더라고요. (참여자 12)

한쪽 팔이 없으셨는데, 이제 그분이 막대 인형을 하고 인형이 이렇게 크게 달려 있어요. 근데 무게가 꽤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 팔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무겁고 힘이 들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게 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좀 더 가벼운 소재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참여자 3)

의사소통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가 청각장애이다보니 여러 명이 대화를 나눌 때 가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따로 물어볼 때가 있어서 (참여자 13-당사자: 서면 인터뷰)

동일한 상황에서 장애인은 추가 비용(통역, 이동 등)을 부담하게 되므로 '접근성 비용(Access costs)'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사업의 경우 현재 예산 집행 기준 상 수어통역에 대한 지출이 가능하다.[16] 그러나 '별도 예산'은 확보되지 않아 공연 운영비나 인건비에 우선하여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수어 통역 외에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예산 집행 기준이나 별도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기관 내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장애 예술인 개인 또는 수행기관이 어려움 또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 장애인이 예술활동을 접근하는 데에 발생하는 '비용'이 공식화되지 않고 개인적인 '부담'으로 전가되면, 지속적인 참여가 어렵다. 이는 결국 사업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수어통역을 고용할 수 있다고 써 있지만 그 돈 안에서는 해결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당 20만 원인데 저희가 연습을 하루에 짧게 해도 4시간이고 길게 하면 6 7시간 하는데 그렇게 해서 20만 원씩이면은 그것만 해도...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자 9)

따라서 훈련과 교육 과정, 공연의 준비와 진행 등 모든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원할 방법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17] 부가적인 장비(우퍼 조끼나 지원을 위한 음향기기) 확보, 소통 지원, 그에 적합한 기술지원 등은 별도의 예산이 요구되는 항목은 장애 예술인들이 자신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외의 접근성 지원 사례[18]를 볼 때 '접근 비용'은 '수어통역'만이 아니라, 자막 제공, 개인 지원, 이동 보조, 접근 코디네이터 인건비, 보조기기 대여, 오디오 디스크립션, 접근성 평가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 장애인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거나 그분들이 저희 쪽으로 이제 소통이 되어 있을 때, 그분들이 뭔가 음악이나 이런 예술을 조금 더 이해하고 하기에는 그런 보조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참여자 12)

> 소통의 매개가 될 만한 수어 통역사라든지 이런 속기사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참여자 14)

16) 사업 예산집행 작성지침(2025)에 따르면, 전문가 활용비 내에 "그 외 심사, 수어통역, 스텝, 작품운송설치 등 수당은 전문가 활용비 예산 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 접근성과 관련된 비용 중 일부가 집행할 수 있는 내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17) 근거 조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당한 편의제공),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8조(인식제고), 제9조(접근성)

18)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경우, 청각 장애인, 장애인 및 신경다양성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예술 보조금을 신청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Access Support를 제공한다. 이는 신청 전에 기관 담당자 차원에서 정보를 찾고 도움을 주는 담당자 비용을 지불하는 것,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개인 접근 비용(personal-access cost), 프로젝트 예산의 일부로 결과물을 공유하는 과정 등에서 청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비용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장애 접근성 지원을 위해 구매하는 장비는 자산 취득의 개념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운영 비용으로 편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예산과 우선순위를 다투어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수행 기관들이 사업 계획단계부터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예산 편성 기준으로 포함하고, 심사 항목(가/감점 사유)으로 포함한다면, 장애 예술인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립의 "첫걸음"에서 나아가 '실질적' 자립 지원으로

본 사업은 장애 예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경험하고 일정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자립의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한계를 보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① 소득의 적정성 확보

사업 참여자들은 공연에 참여하는 장애 예술인에 대한 '사례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한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상징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장애 예술인들에게 정해진 공연 횟수와 사례비라는 예측가능한 소득은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이제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길 때가 종종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5-당사자)

그러나 장애 예술인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는 강사료 지급 기준과 달리 하한선과 같은 기준이 없다. 일반적인 장애인식개선 '강의'와 달리 여러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이라는 점과 장애 예술인의 감각과 소통 방식 차이로 인하여 더 긴 시간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공연 준비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 사업(기관)의 기원을 받는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수행기관별로 사례비의 금액이 다르고, 참여자 모두가 지원받지는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 공연이 조금 있으면은 거의 이제 공연 연습으로 일단은 일상이 거의 채워지고요. 그다음에 일상 그 공연 연습 일상 속에서 저희가 이제 인식 개선 교육 그런 뭔가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교육을 갔다 와서 남는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여의치않을 때는 연습을 하루나 정도는 좀 쉬었다가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참여자 15-당사자)

>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장애인 개발원 때는 10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갑자기 깎이더라고요. 깎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팔구년 전에 왔을 때, 처음에 개발원 할 때니까, 일당 10만원 받았었거든요. 한번 할때마다 10만원 받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오만원씩 주더라고요. 갑자기요. (참여자 11-당사자)

예술 활동을 계속하고 연습도 하고 사실 본인 생활들도 지금 그 시간대에 나와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각자 내서,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예산적인 부분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죠. (참여자 12)

사실 이거를 예술가분들에 대한 합당한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하기에는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는 저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여자 8)

문화예술역량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 장애 예술인 당사자들에게 '사례비' 여부가 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아니다(13). 이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15)하는 기대를 안고 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이라는 최종 성과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 '일'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과정을 '일'로 인정하고, 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의 적정한 "소득"(9)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지원할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수행기관들의 중론이었다.

소득활동이라기엔...-중략- 소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려 알바도 해야 하는 느낌..(참여자 13-당사자)

이 사례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예술인 처우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딱 공연에 대한 것만 지출할 수 있는데 -중략- 이게 사실 한 번의 공연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은 하루에 나가서 공연하는데 좀 과한 금액이다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한 달 두 달 이 연습 과정에서 쏟았던 것과 이제 고민했던 부분 연습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습하고 혼자서도 대본 보고 이런 것들을 대입시켜 보면 결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 14)

예술을 할 수 있는 훈련비가 나오면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지원이 안 되니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으시면 제일 좋고 -중략- 강사분들한테는 다 지급이 되는데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의 일정을 빼서 본인의 시간을 내서 본인이 이게 참여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훈련비가 없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면은 교통비라도 지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여자 16)

저는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2번의 회차인데 만약에 회당 피해가 그 정도여도 사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절대 소득이 아니잖아요. (참여자 9)

그분들이 이제 본인의 힘으로 본인이 예술가로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처우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2)

②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수행기관 담당자들은 장애 예술인들이 사업 참여 경험을 딛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선 사업 참여 경력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 필요하다. 다른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업이 '강사'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본 사업은 '수행기관'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장애 예술인의 진입 문턱이 낮지만,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례로 교육 수행 후, 교육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없다. 사업 수행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함을 공식적으로 "인정"(10)하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면 참여 장애 예술인도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다른 사업 참여 시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기관의 행정처리가 수월해지는 이점도 있다.

> 증빙 자료들이 -중략- 학교들에서 제가 제일 많이 연락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강사증이 있으신가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중략- 소속 기관에 지정서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강사분들도 내가 지금 여기 소속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중략- 거의 지금 제가 장애 인식 개선만 한 거의 4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매년 듣고 있어요. (참여자 16)

> 인식 개선 강사 등록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1년짜리더라도 장애 인식 개선 강사가 등록이 된다면, 참여자 분들도 조금은 책임성을 더 갖고 일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여자 10)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한 일 경험이 사업 종료 이후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경험이 전문강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할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실제 관련 강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장애인개발원의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수행기관 담당자는 물론 장애 예술인의 진입하기에 "턱이 높"(7) 다. 수행기관 담당자들은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 과정의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기본 지원 자격 기준[19] 내에 본 사업 참여 경험을 포함한다면 장애 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장애유형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류 제출 방식을 다양화(1)하거나, 비대면 교육 비중 변경(7)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강의를 몇 회 3년 이내 몇 회 이상을 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사회복지사 자격 자격증이라든지 뭔가 이런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나, 이런 부분 중에 가점 상의 문화예술 특화형에 참여했던 제작진이든 출연진이든 누가 되었든 참여했던 사람이 가점이 있으면 어떨까 (참여자 9)

19) 전문강사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공고(한국장애인개발원, 2025)에 따르면 "① 장애 분야(장애인복지 등) 현장 경력 3년 이상, ②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경험 5회 이상(최근 3년, 2022년 5월 ~ 2025년 5월), ③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의 소속강사, ④ 공공 또는 민간 분야 유사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문화예술, 언론, 미디어 분야 등의 특기가 있는 자, ⑤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 수준을 갖춘 자" 중 1개 이상 자격이 충족되어야 한다.

예술가 자격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나 아니면 이력서를 받아도 충분히 이분들이 그동안에, 그동안 해오신 거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략- 저희 소속 단원분들 중에서는 발음이 좀 명료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 자체는 되게 저희가 들어도 되게 놀라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을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8)

각 지역에 소속 기관들이 있어서 그 나머지는 다 줌으로 좀 듣고 나머지는 각 지역에 있는 소속기관에서 이걸 좀 위탁 운영하실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주시는 어떨까 (참여자 7)

그러나 전문 강사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이해하고 학습하는 거에는 어려움”(2)이 있을 수 있다. 담당자들은 발달장애 등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교육 과정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문화예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과정도 문화예술특화형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비장애인이나 혹은 이제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게 시험도 보고 막 되게 어렵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고 (참여자 1)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양성 과정이나 약간 이런 걸 조금 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양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장애 당사자가 보통 학교에 가서 자기의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하는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서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약간 IL센터 같은 곳에서 주로 많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약간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문화예술 단체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매뉴얼화하고 보편화시키고 약간 이런 부분들로의 개발이 조금 더 되면 네 더 의미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개발원에서 인증해 준, 약간 이런 식으로 (참여자 3)

장애 예술가들 발달 장애 예술가들한테만 그럼 따로 열어서 특화형 장애 예술가로 열어주시고, 그리고 각 지역에 소속 기관들이 있어서 그 나머지는 다 줌으로 좀 듣고 나머지는 각 지역에 있는 소속기관에서 이걸 좀 위탁 운영하실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주시는 어떨까 (참여자 7)

③ 장애 예술인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한 지원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 확대”라는 사업의 목적을 제시하지만, ‘문화·예술활동’을 한다는 것과 ‘당사자의 경험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는 것’ 외에 장애인의 주체적인 ‘참여’를 강화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마다 주 목적 사업의 유형, 장애예술인의 장애 유형, 사업 참여 경로나 목적이 달라 장애 예술인의 참여는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부 참여자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참여자들이 모두 이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식개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이게[서면 인터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려웠어요. (참여자 13-당사자)

(연: 직접 공연 기획이나 사업 자체 진행 방식 이런 거에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자리가 있거나 좀 오랫동안 참여하셨던 분들이 좀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시는 사례도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발달장애인 중에는 그냥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 1)

저희는 일단은 간담회 형식으로는 진행을 이제 하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내가 맡은 역할에서의 어떤 뭐가 뭐가 잘 안 돼요 뭐가 힘들어요? 아니면은 이제 스위치 껐다 켜셨던 분은 나는 언제 역할을 맡나요? 이런 정도의 이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고요. (참여자 3)

노래 보통 저희가 선곡을 할 때요. 하고 싶은 노래가 있냐고 먼저 좀 물어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노래를 채택을 해서 하기도 하고 보통 하고 싶은 노래는 이건데 또 본인들의 키랑 맞지 않거나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참여자 12)

당사자 참여자들은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고유한 문화나 삶(경험)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언어로서 수어를 접하고 비장애인 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경험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인의 생활 방식과 경험 자체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연극 내용 중]"네가 생각하는 장애의 기준이 뭔데", 이거를 뭔가 짧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더 길게 이야기를 했으면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 좀 부분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13-당사자)

왜냐하면 당사자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어떤 부분이라든지 다양하게 더 많은 것들을 사업에 보충시키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보안 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자 15-당사자)

이를 위해서는 수행기관이 장애 예술인들이 '장애'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경험한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험을 교육 콘텐츠로 녹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 예술인들이 '사회적 인식개선'이라는 사업의 목적 자체를 이해하고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행위자로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참여자(13)의 의견을 고려할 때, 사업 선정, 점검, 평가 등의 전 과정에 당사자들의 관점을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저 말고 다른 농인들은 그런 내용이랑 많이 배치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조금 뭔가 있다는 것보다는, 많은 농인들한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약간 지금 하는 공연이 약간 함축적인? 이야기여서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참여자 13-당사자)

장애 예술인이 수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고 일정 역할 이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기관과 지원기관이 함께 사업 방향과 운영 원칙을 재정립하는 것

도 필요하다.[20] 수행기관에서는 사업 내에서 장애 예술인의 참여율 또는 기여도가 선정-평가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이런 숫자적인 비율보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30%를 이제 지자체에서 장애 예술인을 함께 해라라고 했을 때 진짜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와 달리 [웃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체에 불과할 정도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여기서 맡고 있는 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준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여자 14)

(4)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① 교육 기관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의무교육기관의 교육 인지도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전히 문화예술 특화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내 소개하거나 공문을 발송하는 것 외에 사업 신청 경로, 사업 효과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매년 교육 기관에 배포되는 지침 내에 사업에 관한 간략한 소개 외에 수행기관 정보를 포함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업 선정·운영 시기가 우선 조정되어야 한다.

> 문화예술 특화형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안에 조금 잘 소개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런 인식이 아니라 문화예술로서 장애인식 개선이 확실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원되어지고 또 홍보가 좀 되어져서 그리고 제도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자리 잡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여자 4)

문화예술 특화형 사회적인식개선교육은 일정 시간 이상의 공연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교육 기관의 수요와 간극이 있다. 교육의 안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가산점 방식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의무교육기관의 참여도를 높일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공공기관에서 뭔가 조금 참여하실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거는 마련이 필요한데 이 공공기관들이 모든 공공기관들이 특수성을 본다면 사실 참여율이 굉장히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참여자 10)

> 장애 인식 개선 강사가 1회 교육을 하는 거랑 저희가 1회 장애인식 개선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을 하는 거랑 똑같은 횟수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을까 (참여자 10)

---

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은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사업 내에서 팀제로 참여할 경우 2인 중 1인, 3인 중 2인, 4인 중 3인 이상이 장애인 강사를 포함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수행기관들의 지원 기간 종료 이후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문화예술을 접목한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교육기관은 1인의 강사를 부르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이런 사업이 아니고서는 부르기에는 부담"(4)스럽다. 일부 수행 기관은 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지만, 실제 예산이 없는 교육기관은 본 사업과 같은 국고 사업(무료) 외에는 문화예술특화형 교육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 7, 9). 의무 교육기관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문화예술특화형 교육사업을 활성화할 중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 어떤 선생님이 오히려 저한테 "이거 우리 돈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사업이 이미 다 마감돼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의무적으로 무조건 하라고 하면서 우리 돈을 다 거기에다가 부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히려 이제 저한테 막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중략 - 비용입니다. -중략- 저희가 이거 막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좀 비싸요. [웃음] 아마 그 중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훌쩍 넘어가니까 네 학교에서 이제 다행히 그런 비용이 있으시면 이제 또 선뜻 저희한테 이제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가는 경우가 사실 이제 저희한테 연락주셨는데도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참여자 1)

> 법적으로는 이제 의무교육이 아이의 숫자가 적든 많든 법정 의무 기간인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금액을 내야 되는 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면. [국고 사업을 의미함]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가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액 지원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강의식이든 뭐든 금액 지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금액 지원이 없는 거예요. (참여자 7)

> 저희가 맨 처음에 극단을 창단할 당시에 특수 교육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공연을 보셨고 그때 엄청 관심을 가져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통합 교육으로 학교에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부르고, 너무너무 부르고 싶어 하시는데 예산이 맞지 않아서 못 갔던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 (참여자 9)

② 장애 예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 예술인의 사업 참여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 예술인들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당사자 참여자(11)는 복지서비스도 "몰라서 신청을 못한다"며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화예술 관련 사업도 비장애인 중심의 언어와 소통방식으로 제공되면, 정보는 존재하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본 사업과 같은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 예술인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사업 공고문이나 운영 지침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나 점자, 음성언어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는 장애 예술인이 비장애 예술인의 통역에 의해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업을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 인식 개선 교육이나 캠페인 같은 것들은 홍보가 잘 안 돼도 어떤 사회적인 밖에 나와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홍보가 굉장히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은 거예요. 아무리 홍보가 된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적인 일하시는 분들한테만 정보가 소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홍보적인 부분도 사실 있으면 조금 더 많은 또 장애 예술인 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참여자 15-당사자)

> 만약에 저희가 "향후" 이런 말들 있잖아요. 공문이나 이런 데 보면 "향후" "강화를 통해" 이거 이 사업을 지원해 지원을 바랍니다. 뭐 이런 어려운 말들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말들 아닌지 모르세요. 그래서 그쵸 그쵸 이 말은 네 유아 친구들한테 저희 쉽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말을 쉬운 말로 바꿔서 저희가 쉬운 말로 조금 많이 바꿔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발달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쉬운 말로. 쉬운 말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뭔가 이제 공문이 하나가 있으면은 여기는 원래 공문이고요. 여기는 쉬운 말로 바뀐 번역 공문이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면은 함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16)

③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

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인터뷰에 참여한 당사자(15)는 장애 예술인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하고, 어린 시절부터 문화예술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무교육 기관의 편의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문화예술특화형 사업을 통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더라도,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 없다. 장애 예술인이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장애 아동·청소년이 교육기관에, 성인이 일터에 진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찬찬히 해결해야 한다. 그간 모니터링을 통해 의무교육기관의 시설에 점검 사항에 관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 편의시설 마련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뭔가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그 어쨌든 편의시설...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중략- 사실은 지금 인터뷰하시는 선생님도 만약에 정말로 교통편이나 모든 것들이 불편하면 이렇게 움직이시기가 쉽지는 않으신 것처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한테 맞는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그런 기준들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보장이 된다면, -중략- 조금 더 편하다기보다 원활하게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중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참여자 15-당사자)

나.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

더 많은 장애 예술인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누리고 즐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참여 당사자들은 예술에 대한 일상적인 낮은 접근성,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방식이 장애인들이 예술인을 꿈꾸고, 예술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모두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애초부터 자막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 게 있나? 그렇구나 끝이예요. 이게 많이 보여줘야지, 많이 드러나는 건데, 농인들한테는 되게 많이 모르니까 -중략-
> 예술에 관심이 있더라면 지금도 농인들 한국 영화 잘 못 보잖아요. 자막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예술에 대해서 접점이 없는 거죠. (참여자 13-당사자)

> 사실상 제가 콘서트도, 아마 제가 살면서 한 네 번밖에는 못 가본 것 같아요. -중략- 예술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공연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중략- 그런 공연을 보면서 아마 그런 예술적인 부분들을 그냥 키웠는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략 어릴 때부터 뭔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뭔가가 더 이렇게 넓어져야 만이 좀 더 다양하게 저희가 예술인이라든지 뭔가 다른 것들도 원활하게 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15-당사자)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접하는 데에 제약을 경험하지 않도록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문화예술이 확장되어야 한다. 기관들은 장기적으로는 본 사업 안에서도 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문화예술 자체에서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참여함으로써 장애 예술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찾게 될 것이다.

> 이제 청각장애도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 수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청각장애인분들께서는 내용 파악이 어려울 수 있겠다 라고도 생각이 됐고 그리고 수어를 사용한다 해도 그럼 음악이 나올 때는 어떻게 알려주지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정도만 표현해 드리면 나. 근데 저희가 공연을 볼 때 이제 배경 음악이 나오면은 이제 정말 생뚱맞은 음악을 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에 어떤 음악이 나온다 정도는 표현해 주면 좋겠다. -중략- 그냥 이미지만으로 봤을 때 느껴질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계속 시도해 봐야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면 그걸로 끝이니까 소리의 시각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해 보고 (참여자 14)

> 제가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곳을 가는 장애인이 있는 곳으로 간다든지라고 했을 때 그분들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거를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 드는 게 만약에 저희가 팜플렛 제작을 할 때도요. -중략- 비싸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고, 사실 그리고 청각장애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중략- 이런 거가 저희가 구입을 해서 나가기에는 좀 어렵고 -중략- 팜플렛 말고도 그 해설이 되어 있는 그런 책들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여자 12)

본 사업 외에 교육이나 문화예술사업 전반에서 참여 장애 예술인의 접근성 지원을 강화할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참여에 대한 지원이 공식화되지 않으면 이들을 지원하는 비용과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어 참여 기회 자체를 줄일 수 있다.

> 청인들은, 장애인이 꼭 필요하냐? 그냥 차라리 청인 배우 앞에 장애인 연기를 주는 게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감독님이 많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참여자 13-당사자)

> 말을 못하는 농인들한테는 무조건 수어 통역자, 속기사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농인 배우들 섭외 안 하는 이유가 소통이 안 되니까, 수어 통역자를 불러야 되 그것도 돈이 들어, 근데 안되니까 다 연기를 포기하더라고요. 연극을 안하는 이유, 수어 통역자, 소통의 방법, 차별.. (참여자 13-당사자)

이러한 어려움은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와 만나면서 심화된다. 현재 장애인 복지 용구 구입이나 접근성 지원을 위한 제도에서 예술활동은 제외된다. 현재 있는 보조 기구들이 문화예술 공연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장시간 착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지 않는 측면도 실제 사용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장애인들은 장애유형에 따라 소통방식이 다르고,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조기구나 접근성 지원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경우 문화예술이 아닌 일상적 활동의 범주로 포함하여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저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내용은, 예술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수어통역사 지원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중략- 병원이나 학교나 그런 것들, 지원을 해 주는데, 외부에서는 일이기 때문에 따로... -중략-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게, 부르고 싶으면은 한 시간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참여자 13-당사자)

> 조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냥 입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1시간 2시간 입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좀 그리고 사실 소리.. 이제 연극이나 그런 공연에서 소리를 표현하는 게, 그 조끼를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음악 자체도 좀 조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중략- 모든 악기가 다 울리니까 아예 그거 플레이어 하는 거와 여기 플레이어 하는 거를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딱 중요한 박자들을 맞춰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그냥 다 틀어주면은 악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악기를 여기서 느끼는 거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참여자 9)

> 어떤 사람은 진동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동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중략- 장애인이라서 그게 입고 있는 건가, 그런 시선도 불편하다고. -중략- 무겁대요 무거워요. -중략- 근데 만약에 에어컨 없으면은... (참여자 13-당사자)

장애 예술인들이 본 사업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예술이라는 '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증장애 예술인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예술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예술활동에 접근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로 인하여 소요되는 '접근비용(Access Costs)'을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

록 적정 예산 지원하는 것과 예술계-종사자들이 장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제도적인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④ 장애 예술인 고용안정화를 위한 제도 간 연계

본 사업은 단일한 문화예술 교육 사업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제도와 맞물려 작동하고 있었다. 특히 본 사업 예산만으로 현실적으로 교육 수행과 동시에 장애인의 고용 안정까지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수행기관들은 공공 및 민간의 장애인 일자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는 기관의 선택이라기보다, 현행 사업 구조가 안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저희는 대부분의 지원금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공단 쪽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고용에 대한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가 받고 있고요. -중략- 어렵죠.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이 사업으로 하는 거는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들의 속도", 이 사업에 대한 지원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미 만들어놓은 사업들을 이제 공연 유료 공연으로 돌리면서, 그 공연에 돈, 수익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지금 공연 제외하고 교육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수익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인원이 많기도 하고, 인형극을 만드는 데 대부분 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수익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없기는 해요. (참여자 17)

문화예술 특화형 사업 내에서 장애 예술인의 참여가 단기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국감 제출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현재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평균 장애인 고용율은 0.72%에 불과[21]하여 의무고용율(3.0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여백이 여전히 있음을 보여준다.

수행기관 담당자들은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장애 예술인을 연계하는 방식이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식개선이나 의무고용율 준수라는 정책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고, 장애예술인에게는 개인적인 특성과 문화예술이라는 직무의 특성을 모두 인정받으면서 공연 연습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공공 일자리도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근무시간과 연계하여 연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들이 하는 모든 음악적 활동을 근무로 본다. B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제 기업이 그렇게 보고계세요. 그래서 중간에 사실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회사에 출근해서 연주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출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 역할을 이제 아트위캔 같은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모든 근태를 비롯한 모든 관리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직접 고용만 하시면서 이제 회사

21)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에서 필요한 행사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러이러이런 거 한 거 있는데 그때 와주세요”라고 하시면 저희가 가서 공연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회사에서도 큰 부담 없이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률도 좀 낮추시면서 좀 부담 없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 (참여자 1)

단원들이 대부분이 또 저희 오케스트라 단원이기도 해요. 이게 서로 조금 이렇게 겹치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공연을 나갈 때는 공공기관이 여기 J의료원이거든요. 의료원에 업무 협조를 요청을 해서 이제 여기 협조 요청을 받고 -중략- 그렇게 연주를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자 5)

사실 오전에 하는 일자리는 그렇게 크게 급여가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저희 상근으로 계시는 분은 주 5일 이렇게 8시간씩 근무를 하셔요. -중략- 저렇게 근무를 하면서 오후 시간에는 보통 혼자 노래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본인이 부족한 연습을 일자리로서 그런 급여나 이런 부분을 좀 내가 채울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12)

이러한 경험은 장애 예술인의 고용 안정화를 개별 사업의 성과로 한정하기보다, 장애인 고용정책과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연결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사업이 장애 예술인의 ‘경험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자립 경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간 연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운영 기준과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문화예술특화형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중증 장애문화예술 강사의 자립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와 장애·비장애 예술인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FGI(3개 그룹, 총 10명) 및 심층면접(총 7명)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이들의 경험을 풍부하게 탐색하기 위하여 사업 운영, 교육 기획 및 참여 경험, 사업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분석을 통해 발견한 본 사업의 의미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수행기관과 학습자 모두에게 장애인과의 접촉면을 확장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교육은 학습자들은 기존의 고정관념에 가려 인식하지 못했던 장애인의 역량과 긍정성을 발견하고, 본질적으로 자신과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인식하는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비장애 예술인 역시 장애 예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협력하는 동료 예술인으로 인식하며, 함께 소통하고 작업하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다.

둘째, 문화예술특화형 교육은 기존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범위와 효과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형·체험형 특성을 지닌 문화예술을 접목한 교육은 학습자들의 호기심과 참여 동기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정답이 없는 예술의 특성상 공연 내용이 개인의 경험과 결합되면서 자연스러운 공감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특이할만한

점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수행기관의 교육 기획과 운영이 점차 체계화되는 양상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한 경험은 기관의 역량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 예술인의 모습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예술을 직업으로 삼는 현실적인 진로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셋째, 본 사업은 장애 예술인이 예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형성하는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 예술인들은 제한적인 활동 여건 속에서 본 사업 참여를 통해 일정한 공연 기회와 사례비를 보장받으며, 일을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공연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돌아보고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변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연 준비와 수행 과정은 예술적인 역량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관계에서의 변화도 드러났다. 공연을 함께하는 다른 예술인과의 협력과 소통, 가족으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경험하며, 사업 참여 과정에서 삶의 반경이 넓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다음으로 참여자의 경험에서 드러난 문화예술특화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구조적인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연'이라는 교육 콘텐츠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기준'에 의한 사업 운영이 갖는 한계이다.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교육은 공연 집중도 저하, 무대 설치에 따른 비용 증가,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획된 교육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여기에 완성도 높은 공연을 수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기관의 물리적인 제약과 장애 접근성 문제가 교차되면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수고와 비용적인 부담도 수행기관이 감당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수행기관의 사례들은 교육 운영 방식과, 예산 집행 기준 전반에 있어서 보다 유연하고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한정된 예산 구조였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사업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로 수행기관들은 기본적인 운영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따라서 개별 기관들이 축적된 경험을 반영하여 교육의 질적인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사업의 특성이 예산집행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이 공연 준비에 차질을 주는 요소임이 드러났다. 한편, 한정된 예산 규모와 장애예술인의 최소 소득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예산 구조 속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공연의 '질'을 유지하는 것과 장애 예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이 드러났다.

셋째, 수행기관들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여러 구조적인 '장벽'을 마주하고 있었다. 먼저 본 사업이 2분기에 시작되고 대면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식은 교육 기관의 연간 교육 일정과 충분히 부합하지 않아 수요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에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개별 수행기관이 짧은 사업 기간(8개월) 내에 교육 기관을 직접 발굴하고 설득하는 구조는 기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는 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홍보와 참여 유인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장애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은 교육 운영만이 아니라 참여 장애 예술인에게도 부정적인 경험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는 물리적인 접근성 개선을 이끌어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도출한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기존 운영 방식에 대한 '밑그림'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수행기관들은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교육기관 확보를 위해서 1년 단위 운영이나 다년도 사업으로의 전환 등 사업 선정 및 운영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수행기관의 선정·점검·평가 과정에서 기관의 참여 경험이나 교육 횟수, 결과물 중심의 기준을 넘어 사업의 고유한 목적과 교육 수행 과정에서의 노력과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임이 드러났다.

한편,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행 기관의 개별 노력에 맡기기 보다, 지원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효과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물리적 한계를 고려한 운영 기준 개선, 교육 콘텐츠 및 보조자료 개발 등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행 기관의 성과를 적절히 인정할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사업 여건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해야 할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6년 간 축적된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수행 기관의 현장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사업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임을 보여준다.

둘째, '문화예술특화형'이라는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과 '장애 예술인 참여'라는 고유성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장애인식개선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완성도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질의 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 적정 예산 지원 전제되어야 하며, 수행기관의 역량과 경험을 고려한 예산 배분 방식의 다양화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 참여 과정에서 장애 예술인이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장애'를 경험하지 않도록 감각과 소통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근성 비용(Access costs)'이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예산 집행 기준이나 별도 예산 확보 방안이 요구되며, 수행기관이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예술인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 참여를 통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참여 장애예술인의 교육 준비 및 수행이라는 전 과정을 '노동'로 인정하고 적정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업 참여 경험을 딛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참여 경력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역량 강화 등 전문성 제고를 지원할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전반에서 장애예술인이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닌 주체적인 행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기관과

지원기관이 사업 방향과 운영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본 교육을 둘러싼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무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동기를 높일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 예술인들이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사업 참여자들의 경험은 장애인의 자립이 개별 사업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다양한 복지제도와 지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일상에서의 이동 제약, 예술에 대한 낮은 접근성, 장애로 인한 접근성 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업 구조는 장애인이 예술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 예술인의 지속적인 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본 사업과 장애인 고용제도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Ⅳ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1. 조사개요

1) 연구방법

본 절에서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체계, 실행 과정, 성과 수준, 그리고 교육 참여자의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양적 연구방법(quantitative research method)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교육을 기획·운영한 관계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검수를 거쳐 개발된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의 목적

본 조사 목적은 문화예술 기반 접근이 기존의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비교해 어떠한 차별적 강점을 갖는지, 그리고 교육 기획-운영-성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실제 현장 담당자가 인식하는 운영의 충실성, 효과성, 개선 요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기반 접근이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 방향과 향후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사 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기획하거나 실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교육 담당자 62명으로, 전국 5개 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을 포함하여 표집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62개 기관의 교육 담당자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Ⅳ-1-1〉와 같다.

먼저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53명(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9명(14.5%)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령대는 30대 20명(32.3%), 40대 21명(33.9%)으로 두 집단이 전체의 약 66%를 구성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 외 20대가 5명(8.1%), 50대가 13명(21.0%), 60대 이상이 3명(4.8%)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연령은 42.3세였다.

직급은 직원급이 58명(93.5%)으로 대부분을 이루며, 기관장 또는 사업주가 4명(6.5%)이었다.

응답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소재지는 호남권이 19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영남권 14명(22.6%), 충청권 12명(19.4%), 수도권 9명(14.5%), 제주도 8명(12.9%) 순으로 나타나 전국 각 지역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38명(61.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는 조사 대상자의 다수가 장기 종사자임을 의미한다. 그 외 5~10년 미만 11명(17.7%), 3~5년 미만 5명(8.1%), 1~3년 미만 4명(6.5%), 1년 미만 4명(6.5%)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1〉 응답자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9	14.5	소재지 범주	수도권*	9	14.5
	여자	53	85.5		충청권	12	19.4
연령대	20대	5	8.1		호남권	19	30.6
	30대	20	32.3		영남권	14	22.6
	40대	21	33.9		제주도	8	12.9
	50대	13	21.0	근무경력	1년미만	4	6.5
	60대이상	3	4.8		1-3년미만	4	6.5
	평균연령: 42.3세				3-5년미만	5	8.1
직급	직원	58	93.5		5-10년미만	11	17.7
	기관장, 사업주	4	6.5		10년이상	38	61.3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인구의 50% 이상 거주하고 있음

(2) 기관 유형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총 62곳이며, 이들은 크게 A유형(국가기관 등), B유형(학교), C유형(보육기관)으로 구분된다. 먼저 A유형(국가기관 등)은 전체의 9.7%(6곳)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국가기관이 4곳(6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이 각각 1곳씩(각 16.7%)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B유형(초·중·고·특수학교)은 전체의 62.9%(39곳)로,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참

여 비중을 보인 유형이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가 25곳(64.1%)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중학교는 8곳(20.5%),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각각 3곳(각 7.7%)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C유형(보육기관)은 전체의 27.4%(17곳)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유치원이 14곳(82.4%)으로 대부분을 구성하였다. 어린이집은 3곳(17.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기관 중에서도 유치원 중심으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응답 기관은 학교급 기관(B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중에서도 초등학교의 참여가 매우 높았다. 이는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특히 높은 수요와 활용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공공기관 및 보육기관도 일정 규모로 참여하고 있어, 교육이 다양한 유형의 기관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1-2〉 기관 유형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빈도	백분율
A유형	국가기관	6 (9.7)	4	66.7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1	16.7
	지방공사 및 공단		1	16.7
	특수법인		-	-
B유형	초등학교	39 (62.9)	25	64.1
	중학교		8	20.5
	고등학교		3	7.7
	특수학교		3	7.7
	대학교		-	-
C유형	어린이집	17 (27.4)	3	17.6
	유치원		14	82.4
합계		62		100.0

(3) 참여기관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참여유형별 현황

응답 참여기관이 참여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유형을 조사 결과, 응답 기관들은 그동안 문화예술형 및 비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 무료 교육과 유료 교육 형태로 다양한 참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문화예술형 무료 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 62개 기관 중 54개

기관(87.1%)이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참여 비율을 보였다. 반면, 참여 경험이 없는 기관은 8개(12.9%)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문화예술형 무료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기관 현장에서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화예술형 유료 교육 참여 여부에서는 참여 비율이 크게 낮아져, 참여 기관은 17개(27.4%), 비참여 기관이 45개(72.6%)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경우 무료 교육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관이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유료 교육을 운영하거나 참여하는 비율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비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경우 무료 교육 참여 여부에서는 참여 30개 기관(48.4%), 비참여 32개 기관(51.6%)으로 문화예술형 교육보다 비교적 균형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문화예술형 교육에 비해 비문화예술형 무료 교육이 상대적으로 널리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 기관이 다양하지 않음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비문화예술형 유료 교육 참여는 더욱 제한적으로 나타나, 참여 12개 기관(19.4%), 비참여 50개 기관(80.6%)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문화예술형 교육과 마찬가지로 비문화예술형 교육에서도 무료 교육 참여 비중이 높고, 기관 자체 예산을 활용한 유료 프로그램 참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기관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있어 무료 교육 중심으로 참여 경험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형 무료 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료 교육 참여는 문화예술형·비문화예술형 모두에서 낮게 나타나, 예산을 활용한 교육 운영보다는 외부 지원 기반 교육 참여가 더 주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1-3〉 장애인식개선교육 참여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백분율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무료교육 참여여부	참여	54	87.1
	비참여	8	12.9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유료교육 참여여부	참여	17	27.4
	비참여	45	72.6
비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무료교육 참여여부	참여	30	48.4
	비참여	32	51.6
비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유료교육 참여여부	참여	12	19.4
	비참여	50	80.6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4) 자료수집

(1)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경험이 있는 보육기관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담당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문지 초안을 개발한 후, 문항의 명확성 및 응답 용이성을 검토하여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온라인 조사 방식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글폼(Google Forms)으로 변환하였다.

이후 전국의 보육기관과 학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담당자에게 공문 및 이메일을 통해 설문 참여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안내문에는 조사 목적, 참여 절차, 익명성 보장, 응답 소요시간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였다. 응답자는 제공된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문지에 접속하여 문항에 응답하였고, 제출 즉시 연구팀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저장되도록 설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동안 미응답 기관에는 1~2회에 걸쳐 참여 요청을 재안내하였으며, 회수된 응답 중 불성실 응답(중복 제출, 동일 문항 반복 값 등)을 제외한 자료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실태와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2) 조사의 내용

본 조사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운영하거나 교육을 요청·참여한 기관(보육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 등)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의 운영 실태와 성과, 향후 개선 요구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교육 운영의 전 과정(계획-투입-실행)과 성과(결과-영향), 만족도, 운영 어려움 및 향후 발전 요구를 포함한 다음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과정 영역은 교육이 실제로 기관에서 어떻게 기획되고 준비되며 실행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계획-투입-실행'의 세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성과는 교육이 단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영역이다.

셋째,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만족도 영역은 교육 전체의 질적 수준과 운영 적절성에 대한 기관 담당자의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넷째,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의견으로 법정의무교육 기관 교육 담당자가 경험에 기반하여 제시하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향후 발전 전략 등에 대한 자유서술형 응답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정량적 분석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제언 도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어려움 및 요구로 실제 교육 운영 시 겪는 구체적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적·실천적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영역이다.

위의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된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Ⅳ-1-4〉과 같다.

〈표 Ⅳ-1-4〉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설문지구성

영역	내용	측정 수준	문항 수
응답자 기본 정보	기관 소재지, 기관 유형 및 세부유형, 직급, 성별, 연령, 근무 경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참여 횟수(문화예술형·비문화예술형)	명목척도 / 비율척도	7문항
운영 과정	계획(교육목표·다양성·문화예술 기반 계획·이해관계자 의견수렴·모니터링 포함) 투입(예산·출연자·협업·환경) 실행(계획 달성·예산 집행·평가·기관 지원·강사 역량·참여자 환경 및 경험)	5점 Likert 척도	계획 6문항 투입 4문항 실행 9문항 = 19문항
운영 성과	결과(목표 달성·관심 증가·봉사/활동 증가·부정정서 감소·유대감 향상) 영향(전문성 향상·인프라 확대·다양성 제고·인식개선 기여)	5점 Likert 척도	결과 5문항 영향 5문항 = 10문항
만족도	교육 목적·다양성·공연출연자·운영과정·기관 지원·환경 준비·수강생 적합성·태도·성장·기획안·자료·교수방법·교육 결과·사업 전체 만족도	5점 Likert 척도	14문항
향후 진행 계획	향후 교육 재실시 의향, 자체 예산 활용 계획	명목척도	2문항
운영의 어려움	계획 수립·실무자 경험 부족·참여 저조·장소 마련·기관 찾기·학사/일정 조율 등의 어려움	5점 Likert 척도	6문항
발전방안	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	서술형	1문항

5) 자료 분석

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검토와 결측값 및 미응답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통해 구축한 원자료를 SPSS 통계 프로그램 25.0 버전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 등을 통해 빈도, 비율, 평균 및 변수 간 관계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집단과 운영 과정 및 성과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여 평균 차이를 비교하고 검정통계량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기반으로 주요 변수를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 분석 결과

1)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과정의 충실성

이 조사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이하 교육) 관계자가 인식하는 운영과정 및 운영 성과와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과정 영역은 교육이 실제로 기관에서 어떻게 기획되고 준비되며 실행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계획-투입-실행'의 세 차원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분석은 기관 유형과 지역군을 중심으로 운영과정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고, 이어서 응답 기관의 교육 담당자가 인식하는 각 차원, 즉 '계획-투입-실행'의 충실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1) 주요 요인별 운영 과정 평균 비교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과정(계획, 투입, 실행)에 대해 기관 유형과 지역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는 〈표 Ⅳ-2-1〉과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높은 수준의 운영 충실성이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먼저 기관 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A유형(국가기관 등), B유형(학교), C유형(보육기관) 모두 계획단계에서 4.75점에서 4.86점 사이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계획 충실성을 보였다. 투입 단계 또한 4.67점에서 4.82점 사이로 나타났으며, 실행단계에서도 4.80점에서 4.93점으로 세 유형 모두 높은 평가를 기록하였다. 특히 계획, 투입, 실행단계의 표준편차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교육 운영과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 검정 결과에서도 계획(F=.695), 투입(F=.744), 실행(F=1.03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기관 유형에 따른 운영 수준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비교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계획단계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모두 4.69점에서 4.90점 사이에 분포하여 지역 간 큰 편차가 없었다. 투입 단계에서도 모든 지역이 4.68점에서 4.77점 사이에 위치하였으며, 실행단계 역시 4.74점에서 4.9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평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별 F 검정 결과(계획 F=.883, 투입 F=.092, 실행 F=.709)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지역별로도 운영과정 평가가 고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기관 유형과 지역 모두에서 운영과정(계획-투입-실행)의 평균값은 4.7점 후반에서 4.8점 후반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어떠한 요소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기관의 성격이나 지역적 조건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일정한 품질과 완성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체계가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일관된 교육 효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2-1〉 주요 요인별 운영과정 평균비교

구분		N	계획		투입		실행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관 유형	A유형	6	4.78	0.251	4.67	0.606	4.80	0.347
	B유형	39	4.86	0.234	4.68	0.421	4.85	0.261
	C유형	17	4.75	0.537	4.82	0.340	4.93	0.152
	전체	62	4.82	0.343	4.72	0.419	4.87	0.246
F 검정 통계량			.695		.744		1.033	
지역	수도권	9	4.76	0.324	4.69	0.391	4.74	0.385
	충청권	12	4.90	0.207	4.77	0.345	4.88	0.239
	호남권	19	4.87	0.212	4.68	0.463	4.89	0.153
	영남권	14	4.69	0.573	4.71	0.414	4.90	0.217
	제주도	8	4.88	0.231	4.75	0.535	4.86	0.307
	전체	62	4.82	0.343	4.72	0.419	4.87	0.246
F 검정 통계량			.883		.092		.709	

(2) 운영 과정: 계획 단계의 충실성

교육의 계획단계 충실성에 대한 담당자 인식 분석 결과는 〈표 Ⅳ-2-2〉와 같이, 전체 6개 문항 모두 평균 4.63~4.94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담당자들이 문화예술특화형 교육의 기획·준비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문항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교육을 계획하였다.”(평균 4.94점)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계획 과정에서 ‘장애인식개선’이라는 핵심 목적이 명확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담당자들이 사업의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기관의 운영목적 또는 교육목적과의 연계성”(평균 4.89점)과 “참여자 수준에 적합한 목표설정”(평균 4.85점)도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계획단계에서 기관의 운영철학

및 학습자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교육이 단순한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와 연계된 체계적 과정임을 시사한다.

한편,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를 고려한 계획"(평균 4.87점)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담당자들이 콘텐츠 다양성 확보, 방식의 다변화 등 교육의 질적 향상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한 문항은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을 계획에 반영하였다"(평균 4.63점)와 "기관장·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평균 4.74점)였다.

〈표 Ⅳ-2-2〉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계획단계의 충실성에 대한 담당자 인식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과정: 계획 하위 문항		전체		순위
		평균	표준편차	
1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기관(혹은 학교)의 운영목적 또는 교육목적과 관련이 깊다.	4.89	0.447	2
2	나는 우리 기관(혹은 학교) 교육 참여자/수강생의 수준에 맞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4.85	0.438	4
3	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고려하여 교육을 계획하였다.	4.87	0.424	3
4	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교육을 계획하였다.	4.94	0.307	1
5	나는 기관(혹은 학교) 종사자/구성원 등 이해 관계자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4.74	0.477	5
6	나는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을 교육 계획에 포함하였다.	4.63	0.730	6

(3) 운영 과정: 투입 단계의 충실성

교육 투입 단계의 충실성에 대한 담당자 인식 분석 결과는 〈표 Ⅳ-2-3〉과 같이, 전체 문항의 평균값이 4.16점에서 4.95점 사이에 분포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충실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교육에 공연연출자 간의 협업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가 평균 4.9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교육 준비 과정에서 공연전문가들 간의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예술 기반 교육의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교육에 장애인 공연전문가가 적절히 투입되었다"(평균 4.90점)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당사자 관점 반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어서 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환경이 적절히 마련되었다는 문항 4(평균 4.85점)도 높은 점수를 보여, 교육 장소·설비·기자재 등 기반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교육에 필요한 예산(혹은 재정 지원)이 적절히 제공되었다”(평균 4.16점)로 나타나 평균점수는 여전히 긍정적 수준(4점 이상)이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Ⅳ-2-3〉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투입단계의 충실성에 대한 담당자 인식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과정: 투입 하위 문항		전체		순위
		평균	표준편차	
1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혹은 재정 지원)이 우리 기관(혹은 학교)에서 적절히 제공되었다.	4.16	1.308	3
2	교육에 장애인 공연출연자가 적절히 투입되었다.	4.90	0.349	2
3	교육에 공연출연자들 간에 협업이 적절히 이루어졌다.	4.95	0.282	1
4	교육을 실시하는 물리적 환경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다.	4.85	0.355	4

(4) 운영 과정: 실행 단계의 충실성

교육의 실행 단계의 충실성에 대한 담당자 인식을 분석한 결과 〈표 Ⅳ-2-4〉와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높은 수준의 충실성이 확인되었다. 각 문항의 평균 점수는 4.73점에서 4.9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이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었음을 시사한다.

먼저, 응답자들은 “교육 참여자/수강생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였다”와 “나는 교육/수강생에게 장애인인식개선 활동 자체의 즐거움을 제공하였다”는 항목이 평균 4.94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나타냈다. 이는 교육장 시설, 분위기, 학습 환경 등 교육 실행에서의 물리적·정서적 조건이 참여자에게 매우 잘 갖춰졌으며, 프로그램이 즐거움 중심의 경험적 학습 활동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교육 참여자/수강생에게 장애인 관련 학습자료를 제공하였다”(평균 4.92점)도 높게 평가되어, 교육과정에서 학습적 자료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은 공연예술자 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평균 4.89점)의 경우, 프로그램이 문화예술 콘텐츠의 특성과 협력 구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해 계획한 내용을 모두 달성하였다”(평균 4.84점)는 교육이 계획 대비 실제 실행이 충실히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를 실시하였다”(평균 4.73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결과는 사후평가가 대체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는 평가의 체계화가 향후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지원과 관련한 문항으로 “교육은 우리 기관(혹은 학교)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진행되었다”(평균 4.87점)의 경우 기관의 행정적·물적 지원이 교육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주었으며, “나는 효율적으로 예산(혹은 재정지원)을 집행/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평균 4.79점)의 경우 예산 집행이 대체로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기관별 상황이나 자원 배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Ⅳ-2-4〉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행단계의 충실성에 대한 담당자 인식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과정: 실행 하위 문항		전체		순위
		평균	표준편차	
1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해 계획한 내용을 모두 달성하였다.	4.84	0.451	7
2	나는 효율적으로 예산(혹은 재정지원)을 집행/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4.79	0.547	8
3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혹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4.73	0.682	9
4	교육은 우리 기관(혹은 학교)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진행되었다.	4.87	0.383	6
5	교육은 공연출연자의 높은 교육목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4.89	0.409	4
6	교육은 공연출연자의 뛰어난 교수능력(노래, 연주, 연기 등)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4.89	0.367	4
7	교육 참여자/수강생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4.94	0.248	1
8	교육 참여자/수강생에게 장애인식개선 활동 자체의 즐거움을 제공하였다.	4.94	0.307	1
9	교육 참여자/수강생에게 장애인식 관련 학습효과를 제공하였다.	4.92	0.329	3

2)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성과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성과는 교육을 통한 교육 참여자의 변화와 참여자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관유형과 지역 요인을 중심으로 운영결과와 영향에 대한 평균을 비교한 후 운영결과와 영향의 하위요인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1) 주요 요인별 운영 성과 평균 비교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성과를 기관 유형과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표 Ⅳ-2-5〉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성과가 나타났으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와 ‘영향’ 두 영역 모두 평균값이 4.7점 후반에서 5.0점 수준에 이르러, 교육의 효과성과 파급력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먼저 기관 유형별 결과 영역 평균을 살펴보면, A유형(국가기관 등)은 4.80점, B유형(학교)은 4.72점, C유형(보육기관)은 4.88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4.77점으로, 기관 유형 간 큰 편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표준편차 역시 모든 유형에서 0.219~0.548 범위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교육성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영향 영역에서도 A유형 4.97점, B유형 4.94점, C유형 4.93점으로 기관 유형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전체 평균은 4.94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F 검정 결과 역시 결과(F=.722), 영향(F=.097)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관 유형에 따른 성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기관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관되고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지역별 평균에서 지역별 결과는 4.5~4.9점대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영향의 경우 모두 4.8~5.0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표준편차 또한 대체로 낮게 나타나 교육성과가 지역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발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4.56점, 충청권 4.62점, 호남권 4.83점, 영남권 4.86점, 제주도 4.85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역 간 평균 차이가 일부 존재하나, F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F=1.439), 지역별 차이는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 영역에서도 수도권 4.87점, 충청권 4.88점, 호남권 4.97점, 영남권 5.00점, 제주도 5.00점으로 모든 지역에서 매우 높은 평균을 보였다. 특히 영남권과 제주도의 영향 평균은 만점에 가까운 수준(5.00점)으로 나타나 교육의 파급 효과가 매우 높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F=1.099).

기관 유형과 지역을 기준으로 한 비교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두 요인 모두에서 교육의 결과 및 영향 영역 평균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기관의 성격이나 지역적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일관적이고 안정된 품질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실질적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본 교육 프로그램이 표준화된 운영체계와 충분한 교수역량, 그리고 문화예술 기반 콘텐츠의 강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관 및 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확산 및 보급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Ⅳ-2-5〉 주요 요인별 운영성과 평균비교

구분		N	결과		영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관 유형	A유형	6	4.80	0.219	4.97	0.082
	B유형	39	4.72	0.548	4.94	0.179
	C유형	17	4.88	0.224	4.93	0.199
	전체	62	4.77	0.457	4.94	0.176
F 검정 통계량			.722		.097	
지역	수도권	9	4.56	0.713	4.87	0.283
	충청권	12	4.62	0.618	4.88	0.233
	호남권	19	4.83	0.367	4.97	0.138
	영남권	14	4.93	0.216	4.96	0.116
	제주도	8	4.85	0.207	5.00	0.000
	전체	62	4.77	0.457	4.94	0.176
F 검정 통계량			1.439		1.099	

(2) 운영 성과: 결과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성과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교육이 참여자에게 미친 효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는 4.56점에서 4.92점 사이로 나타나, 교육이 기획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와 기대효과를 충실히 달성하였음을 시사한다.

먼저, 응답자들은 “교육을 통해 계획된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다”(평균 4.92점)고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문화예술 중심의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기관 또는 학교가 의도한 목표와 교육 설계 의도를 실제 실행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응답도 평균 4.82점을 기록하여, 문화예술 기반 접근이 장애 관련 감수성과 이해를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교육의 인식적 변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육 참여자가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봉사활동 또는 사회적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문항은 평균 4.5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육이 참여자들의 자발적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다만, 다른 항목과 비교할 때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은 참여자들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정서 감소에 기여하였다”는 항목에서도 평균 4.69점으로 긍정적 평가가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간접적 경험이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공연연출자와 참여자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었다”(평균 4.87점)도 높은 점수를 보여 교육과정에서 상호작용 경험의 질이 매우 높았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예술 활동 특유의 협력 과정과 감정 공유가 교육의 사회·정서적 효과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인식 변화, 정서적 반응,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항목에서 높은 점수와 낮은 표준편차가 나타난 점 역시 담당자들 사이에서 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일관적임을 보여준다.

〈표 Ⅳ-2-6〉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결과에 대한 담당자 인식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성과: 결과 하위 문항		전체		순위
		평균	표준편차	
1	본 교육을 통해 계획에 명시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4.92	0.329	1
2	본 교육을 통해 교육 참여자/수강생의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4.82	0.463	3
3	본 교육은 교육 참여자/수강생의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봉사활동(혹은 학교외 활동)을 증진하였다.	4.56	0.822	5
4	본 교육은 교육 참여자/수강생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감소에 기여하였다.	4.69	0.898	4
5	본 교육은 교육을 실시한 공연출연자 및 교육 참여자/수강생 간 유대감을 향상시켰다.	4.87	0.383	2

(3) 운영 성과: 영향

조사 결과, 담당자들은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기관과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는 4.92점에서 4.97점 사이에 분포하여, 교육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었다.

우선, “교육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문항의 경우 평균 4.92점을 기록하여 담당자들이 문화예술 기반 접근이 교육의 전문성 확보에 효과적이라고 보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교육자 및 운영기관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지식과 방법론을 더욱 체계적으로 축적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 참여 기관의 운영역량 향상에 기여하였다”(평균 4.95점)의 경우 문화예술특화형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이 교육기관의 교육기획, 협업 구조 형성, 운영 관리 등 전반적 역량 강화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문화예술특화형 교육이 지역사회 장애인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에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문항

3) 역시 평균 4.92점으로 높게 나타나, 본 교육이 단기적 교육 효과를 넘어서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과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교육이 장애인 문화예술의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였다”(평균 4.97점)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본 교육이 장애 관련 콘텐츠의 표현 방식과 예술적 접근의 폭을 넓히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주며, 문화예술 중심의 인식개선이 기존 교육 방식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다양성의 가치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이 사회 전반의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평균 4.94점)도 높은 순위로 나타나 본 교육이 기관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태도 변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모든 문항의 표준편차가 0.216에서 0.308 범위로 매우 낮아, 담당자들의 인식이 일관적이며 교육의 영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2-7〉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영향에 대한 담당자 인식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성과: 영향 하위 문항		전체		순위
		평균	표준편차	
1	문화예술형 교육은 향후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 같다.	4.92	0.275	4
2	본 교육은 교육 제공기관의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4.95	0.216	2
3	본 교육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였다.	4.92	0.275	4
4	본 교육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문화예술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4.97	0.178	1
5	본 교육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	4.94	0.248	3

3)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만족도

(1) 주요 요인별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만족도 평균비교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영향에 대한 담당자 인식을 기관 유형 및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Ⅳ-2-8〉과 같이,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교육이 기관의 성격이나 지역적 조건에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기관 유형별 만족도 평균은 A유형(국가기관 등) 4.76점, B유형(학교) 4.91점, C유형(보육시설) 4.98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4.91점이었다. 세 유형 모두 4.7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특히 C유형의 경우 4.98점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

하였다. 표준편차 또한 0.042~0.284 범위로 매우 낮아, 기관 유형별로 큰 편차 없이 안정적인 인식 경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F 검정 결과(F=1.794)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기관 유형 간 만족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설명될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일관된 만족도를 제공할 만큼 표준화된 운영 및 콘텐츠 품질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지역별 만족도 비교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수도권은 평균 4.72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충청권 4.90점, 호남권 4.98점, 영남권 4.97점, 제주도 4.88점으로 지역별 편차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전체 지역 평균은 4.91점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공통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표준편차는 0.038~0.531 범위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지역 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F 검정 결과(F=2.193)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지역별 교육여건, 접근성, 교육참여 규모 등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본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환경의 교육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지역과 유형에 따른 품질 편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프로그램 확산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표 Ⅳ-2-8〉 주요 요인별 만족도 평균비교

구분		N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기관 유형	A유형	6	4.76	0.281
	B유형	39	4.91	0.284
	C유형	17	4.98	0.042
	전체	62	4.91	0.246
F 검정 통계량		1.794		
지역	수도권	9	4.72	0.531
	충청권	12	4.90	0.221
	호남권	19	4.98	0.038
	영남권	14	4.97	0.077
	제주도	8	4.88	0.208
	전체	62	4.91	0.246
F 검정 통계량		2.193		

(2)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만족도에 대한 응답자 인식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하위문항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에서 평균 4.84점에서 4.98점 사이의 매우 높은 수준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이는 교육의 목적, 내용, 운영, 환경 전반에서 담당자들이 교육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응답자들은 "나는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적과 의도에 만족한다", 그리고 "나는 문화예술 분야 다양성 제고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확대에 만족한다"는 항목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각 평균 4.97점, 4.98점). 이는 본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참여자 및 담당자에게 충분히 공감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문화예술적 접근이 장애 인식개선 효과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콘텐츠 및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우수하였다. "나는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공연출연자에 만족한다"(평균 4.95점)와 "나는 연극공연자가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시도한 교수방법(공연) 및 활동에 만족한다"는 문항(평균 4.92점)에서 나타난 높은 점수는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는 공연·예술 요소가 충분한 전문성과 완성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운영체계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지속되었다. 응답자들은 "나는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만족한다"(평균 4.95점)고 응답하였으며, "나는 우리 기관(혹은 학교)의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에 대한 관심/지원 정도에 만족한다"(평균 4.85점), "나는 우리 기관(혹은 학교)의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운영을 위한 공간 준비 정도에 만족한다"(평균 4.84점)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기관의 협력 및 지원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의 수준과 대상 적합성에 대한 평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나는 우리 기관(혹은 학교) 교육 수강생의 수준이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주제 및 구성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은 평균 4.89점을 기록하여, 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교육 내용 간 조화가 잘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또한 교육 일정, 교육 환경, 교수자 역량 등 교육 실행 요소 모두에 대해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교육 준비 측면에서도 "나는 교육을 위해 준비한 기획안에 만족한다"(평균 4.92점), "나는 교육 운영을 위해 준비한 자료(교재·교구 등)에 만족한다"(평균 4.92점)라는 응답이 나타나 교육 기획과 사전 준비의 질이 충분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교육성과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게 평가되었다. "나는 교육을 실시한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결과에 만족한다"(평균 4.92점), "나는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전반에 만족한다"(평균 4.95점)라는 응답 결과는 본 교육 프로그램이 목적 달성뿐 아니라 체감 성과, 운영의 완성도,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의 흐름에 대해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표 Ⅳ-2-9〉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만족도에 대한 응답자 인식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만족도 하위 문항		전체		순위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적과 의도에 만족한다.	4.97	0.178	2
2	나는 문화예술 분야 다양성 제고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확대에 만족한다.	4.98	0.127	1
3	나는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공연출연자에 만족한다.	4.95	0.216	3
4	나는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만족한다.	4.95	0.216	3
5	나는 우리 기관(혹은 학교)의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에 대한 관심·지원 정도에 만족한다.	4.85	0.438	12
6	나는 우리 기관(혹은 학교)의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운영을 위한 환경 준비 정도에 만족한다.	4.84	0.518	14
7	나는 우리 기관(혹은 학교) 교육 수강생의 수준이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주제 및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4.89	0.447	10
8	나는 교육 수강생들의 교육 참여 및 태도에 만족한다.	4.87	0.461	11
9	나는 교육 수강생의 성장에 만족한다.	4.85	0.474	12
10	나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공연출연자가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준비한 기획안에 만족한다.	4.92	0.329	6
11	나는 공연출연자가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준비한 자료(교재·교구 등)에 만족한다.	4.92	0.275	6
12	나는 공연출연자가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시도한 교수방법(공연, 연극, 연주 등)에 만족한다.	4.92	0.375	6
13	나는 공연출연자가 실시한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결과에 만족한다.	4.92	0.329	6
14	나는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전반에 만족한다.	4.95	0.216	3

(3)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향후 실시계획

한편, 응답 기관에서 향후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할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Ⅳ-2-10〉과 같다. 기관(혹은 학교)이 향후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시 실시할 의향은 대체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귀 기관(혹은 학교)은 앞으로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시 실시할 계획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평균 9.50점을 부여하여, 교육 재실시에 대한 강한 긍정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에 수행된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기관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향후에도 유사한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귀 기관(혹은 학교)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서는 평균 8.13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의 응답이 나타났다.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을 재실시할 의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부담, 기관의 재정 구조,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등 현실적 제약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준편차가 2.446으로 나타나, 기관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응답의 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조사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재실시 의향이 매우 높으며, 예산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 자체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자체 예산 투입 여부는 기관별 상황에 따른 편차가 크기 때문에, 향후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외부 재정지원 체계 마련, 공공·민간 협력 기반 확충 등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Ⅳ-2-10〉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계획

구분	평균	표준편차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시 실시할 계획	9.50	1.225
자체 예산으로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시 실시할 계획	8.13	2.446

4)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의 어려움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과정에서 기관(혹은 학교)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난이도 수준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항목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전체 평균값은 1.60점에서 2.95점 사이로 분포하여 전반적인 어려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몇몇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담당자들은 “문화예술형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제공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2.95점)를 보였다. 이는 외부 전문 교육기관 섭외가 일정 부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 내 전문기관의 분포, 정보 접근성, 프로그램 수급 상황 등과 관련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기관(혹은 학교)의 행사 또는 학사일정과의 시기 조율의 어려움” 항목(2.45점)이 뒤를 이었다. 이는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사일정, 기관 행사, 운영 로드맵과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며, 일정 조정이 주요한 어려움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표준편차 역시 1.445로 높게 나타나, 기관별 일정 운영 체계에 따라 어려움의 정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관(혹은 학교)의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계획 수립의 어려움” 항목도 평균 1.98점을 기록하여 두 번째로 높은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자료 접근성, 콘텐츠 구성 등에서 기관이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기관(혹은 학교) 실무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경험 부족”(평균 1.89점) 역시 주요한 어려움으로 확인되었다. 많은 실무자가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운영해본 경험이 부족하여, 교수자와 연출자와의 협업 방식, 교육자료 구성, 활동 설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교육 장소 마련의 어려움”(평균 1.60점)과 “교육 참여자/수강생의 관심 저조”(평균 1.61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려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교육 공간 확보와 참여자 모집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여자의 관심 부족 또한 큰 장애요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1〉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의 어려움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의 어려움 하위 문항		전체		순위
		평균	표준편차	
1	기관(혹은 학교)의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계획 수립의 어려움	1.98	1.180	3
2	기관(혹은 학교) 실무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경험 부족	1.89	1.132	4
3	교육 참여자/수강생의 관심 저조	1.61	1.046	5
4	교육 장소 마련의 어려움	1.60	0.949	6
5	문화예술형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제공기관을 찾는데 어려움	2.95	1.552	1
6	기관(혹은 학교)의 행사 또는 학사일정과의 시기 조율의 어려움	2.45	1.445	2

5)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분석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과정(계획, 투입, 실행)의 충실성이 운영성과(결과,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운영과정의 계획, 투입, 실행 충실성이 운영결과와 영향,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1) 운영과정과 운영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운영과정(계획, 투입, 실행)과 운영성과(결과, 영향) 하위 변인들 간 상관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먼저 운영성과는 실행, 결과, 영향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행 요인(r=.482, p<.01)과 운영성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 실행의 충실성과 프로그램의 실제 효과에 대한 인식이 운영성과 평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반면 계획(r=.127)과 투입(r=-.005)은 운영성과와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아, 운영성과는 초기 단계인 계획이나 자원 투입보다는 실행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 및 영향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운영 과정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계획은 투입(r=.349, p<.01) 및 실행(r=.381,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투입과 실행도 (r=.427, p<.01)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계획의 충실성이 적절한 자원 투입과 실행 단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획은 결과(r=.106)나 영향(r=.149)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계획 단계는 결과나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투입과 실행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행 요인은 결과(r=.442, p<.01)와 영향(r=.455, p<.01)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결과와 영향 간에도 (r=.640, p<.01)의 정적 상관이 확인되어, 실행의 충실성이 프로그램 결과를 높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영향력 인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분석 결과는 운영성과가 계획이나 투입 단계보다 실행-결과-영향의 흐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며, 이는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실행 단계의 질적 관리와 결과 및 영향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운영성과 향상의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표 Ⅳ-2-12〉 운영 과정, 운영 성과 간 상관관계

구분	운영성과	계획	투입	실행	결과	영향
운영성과	1					
계획	.127	1				
투입	-.005	.349**	1			
실행	.482**	.381**	.427**	1		
결과	.973**	.106	.000	.442**	1	
영향	.800**	.149	-.016	.455**	.640**	1

*p<.05, **p<.01, ***p<.001

(2) 운영과정의 충실성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검증

① 운영과정의 충실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운영과정의 계획, 투입, 실행의 충실성이 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 운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투입, 계획, 실행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6.083, p<.01). 모형의 설명력은 R^2=.239로, 운영과정 요인들이 운영 결과의 약 23.9%를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운영 과정 중 실행 요인만이 운영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47, t=4.157, p<.001). 이는 실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질수록 운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의미하며, 운영 과정에서 실행 단계의 중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반면 계획(β=-.025, t=-.194)과 투입(β=-.225, t=-1.733)은 운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초기 단계의 계획 수립이나 자원 투입 자체가 운영 결과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운영 과정의 앞 단계보다 실제 수행 과정의 충실도와 질이 운영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또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VIF 값을 검토한 결과, 모든 변수의 공차한계는 .756~.812 범위에 위치하여, 1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VIF 값 역시 1.231~1.322 범위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운영 과정 가운데 실행 요인만이 운영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실행 단계의 효과적 관리와 수행의 질적 향상이 결과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임을 시사한다.

〈표 Ⅳ-2-13〉 운영과정: 계획, 투입, 실행의 충실성이 운영 결과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공차한계	VIF
상수	1.135	1.105		1.027		
운영 과정: 계획	-.033	.169	-.025	-.194	.812	1.231
운영 과정: 투입	-.246	.142	-.225	-1.733	.778	1.286
운영 과정: 실행	1.019	.245	.547	4.157***	.756	1.322
R^2	.239					
F	6.083**					

$^{*}p < .05$, $^{**}p < .01$, $^{***}p < .001$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② 운영과정의 충실성이 영향에 미치는 영향

운영과정의 계획, 투입, 실행의 충실성이 운영의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 운영 과정의 계획, 투입, 실행이 영향에 미치는 설명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6.868, p<.001).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R^2=.262로, 운영 과정 요인들이 영향 변수를 약 26.2%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독립변수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실행 요인(β=.557, t=4.294, p<.001)이 영향에 가장 큰 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행 단계의 충실도가 높을수록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이 크게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투입 요인(β=-.264, t=-2.061, p<.05)은 영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자원의 투입 수준이 높다고 해서 영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이 실행 과정과 적절히 맞물리지 않을 경우 오히려 영향 인식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계획 요인(β=.029, t=.229)은 영향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아, 계획 단계의 충실성은 영향에 직접적인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운영성과의 영향 수준은 초기 계획 단계보다 실제 실행 과정의 질적 수행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 검토 결과, 공차한계(.756~.812)는 모두 0.1 이상이며 VIF(1.231~1.322) 또한 기준치 10 미만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영향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행이며, 투입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보였고, 계획은 영향에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떤 결과와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는 자원 투입이나 계획보다 실행의 실제적 질과 적합성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표 Ⅳ-2-14〉 운영과정: 계획, 투입, 실행의 충실성이 교육의 영향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공차한계	VIF
상수	3.451	.419		8.246		
운영 과정: 계획	.015	.064	.029	.229	.812	1.231
운영 과정: 투입	-.111	.054	-.264	-2.061*	.778	1.286
운영 과정: 실행	.399	.093	.557	4.294***	.756	1.322
R^2	.262					
F	6.868***					

$^{*}p < .05$, $^{**}p < .01$, $^{***}p < .001$

(3) 운영과정의 충실성이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운영 과정의 계획, 투입, 실행의 충실성이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2-15〉와 같이,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F=22.930, p<.001). 모형의 설명력(R^2=.543)은 운영 과정 요인들이 교육 만족도의 약 54.3%를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설명력으로 평가된다.

독립변수별 영향을 살펴보면, 실행 요인(β=.799, t=7.820, p<.001)이 교육 만족도에 가장 강력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799로 매우 높으며, 실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질수록 참여자의 교육 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실행 단계의 질이 프로그램 만족도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결과이다.

반면, 투입 요인(β=-.226, t=-2.246, p<.05)은 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투입되는 자원이나 요소가 많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투입이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거나 실행과의 정합성이 낮을 경우 오히려 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투입 단계에서의 비효율성이나 과잉/부족 투입은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계획 요인(β=.017, t=.170)은 교육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의 충실성이 직접적으로 만족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만족도의 주요 영향 요인은 초기 준비 단계가 아니라 실제 수행 단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 검토 결과, 공차한계(.756~.812)는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며, VIF 값(1.231~1.322)도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교육 만족도는 계획이나 투입 단계보다 실행 단계의 질적 수준에 의해 가장 크게 결정되며, 투입 단계는 오히려 부적 영향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실행의 충실성이 만족도 향상의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는 결과로, 실질적인 교육 경험의 질이 참여자의 만족도 판단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표 Ⅳ-2-15〉 운영과정: 계획, 투입, 실행의 충실성이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공차한계	VIF
상수	1.591	.461		3.451		
운영 과정: 계획	.012	.071	.017	.170	.812	1.231
운영 과정: 투입	-.133	.059	-.226	-2.246*	.778	1.286
운영 과정: 실행	.800	.102	.799	7.820***	.756	1.322
R^2	.543					
F	22.930***					

$^{*}p < .05$, $^{**}p < .01$, $^{***}p < .001$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6)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을 위해 응답자들이 제시한 자유기술식 응답 전체를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절차에 따라 범주화하고, 핵심 주제(Themes)-하위범주(Sub-themes)-대표 진술(Exemplary Quotes) 구조로 재구성한 분석 결과이다. 연구보고서에 포함 가능한 서술형 분석으로 정리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 높은 만족도, 교육적 효과성, 지속적 지원 요구, 운영·콘텐츠 개선 필요성 등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귀납적 범주화 과정을 통해 5개의 핵심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각 주제는 교육의 질적 고도화와 제도적 지원 강화라는 방향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1) 교육의 효과성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

다수의 응답자는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기존의 전달식 교육과 달리 참여도·흥미·이해도·정서적 몰입을 높인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공연·음악·연기 등 문화예술적 요소는 학생들에게 감동을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육의 효과성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대한 하위범주는 다음과 같다.

- 참여도 및 몰입도의 향상
-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집중도가 높음
- 연령대가 다양한 학습자도 쉽게 접근 가능
- 즐거운 경험이 인식 개선으로 연결됨
- 정서적 공감과 편견 감소
- 장애예술인의 공연은 감동을 주며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유도
- 직접 보고 경험하는 방식이 인식 전환에 효과적
- 교육 질에 대한 높은 만족도
- “예상보다 높은 퀄리티”, “전국 최고 수준” 등 매우 긍정적인 표현 다수

교육의 효과성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대표진술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무겁지 않게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프로그램이라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노래하며 편견이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문화예술형은 비문화형보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2) 프로그램 운영의 확대 및 지속성 요구

문화예술특화형 교육에 대한 지속적 지원, 사업 확대, 보다 많은 학교의 참여 가능성 보장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학교 단독 예산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만큼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프로그램 운영의 확대 및 지속성 요구에 대한 하위범주는 다음과 같다.

- 지속적·정기적 운영 요청
-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 교육을 대체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필요
- 1회성에 그치지 않는 연속성 요구
- 교육 대상·지역 확대
- 전남 등 지역 접근성 문제 언급
- 더 많은 학교·기관에 제공되기를 희망
- 정책적·행정적 홍보 강화
- 교육청·지자체 차원의 공문 홍보 필요
- 기관 목록·신청 절차 안내 부족을 지적

프로그램 운영의 확대 및 지속성 요구에 대한 대표범주는 다음과 같다.

>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지역에 기관이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더 확산되길 바랍니다.”
> “공문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 비용과 예산 관련 현실적 어려움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형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로 높은 비용이 가장 두드러지게 언급되었다. 비용과 예산 관련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하위범주는 다음과 같다.

- 무료 지원의 필요성
- 유료 공연 시 몇백만 원의 비용 부담 발생
- 무료 지원 없이는 도입 자체가 어려운 환경
- 예산 구조의 제약
- 특수교사의 별도 예산 요구 필요
- 일반 학교 예산으로는 지속 운영 곤란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비용과 예산 관련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대표 진술은 다음과 같다.

"유료 공연은 예산이 너무 높아 학교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무료 공연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적정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4) 콘텐츠의 다양화 및 학습자 특성 반영 필요

현재 공연의 질은 높게 평가되었으나, 콘텐츠의 난이도·연령 적합성·다양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콘텐츠의 다양화 및 학습자 특성 반영 필요에 대한 하위범주는 다음과 같다.

- 연령대별 맞춤 콘텐츠 필요
- 내용 구성의 다양성 확대
- 장애인식 내용의 명료화

콘텐츠의 다양화 및 학습자 특성 반영 필요에 대한 대표 진술은 다음과 같다.

"공연은 훌륭하나 중학생 눈높이에 비해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공연에만 치중하지 말고 장애인식 내용도 함께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가 다양해지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5) 장애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요구

일부 응답은 장애예술인의 공연 수준 및 예술적 주체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식개선 교육의 본래 취지를 더 잘 살리기 위한 예술인 역량 강화·주체성 반영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장애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요구에 대한 하위범주는 다음과 같다.

- 장애예술인 역량 강화: 참여자 수준 차이 존재, 연습 과정·노력 등에 대한 설명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요소로 언급됨
- 장애예술인의 주체성 확대: 예술적 맥락과 장애 정체성을 함께 담아내는 교육 필요, 상호소통 중심의 구성 요구

장애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요구에 대한 대표 진술은 다음과 같다.

"공연은 좋았으나 참여자 역량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주체성이 드러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6) 의견에 대한 종합논의

응답 전체는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기존 교육을 대체할 만한 실효성 높은 방식이라는 점에서 일관된 긍정적 평가를 보여준다. 특히 참여도 향상, 정서적 공감, 편견 완화로 이어지는 경험 기반 교육의 가치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교육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 지원, 지자체·교육청의 체계적 홍보, 콘텐츠의 연령·수준별 세분화, 장애예술인의 역량 강화라는 조건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일회성 행사를 넘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정규적·구조적 교육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준다. 특히 재정 지원 체계 구축은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콘텐츠의 다양화는 학습자 특성별 맞춤형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3. 소결

본 연구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과정과 성과, 그리고 교육 만족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교육 모델의 효과성과 개선 과제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본 프로그램은 운영 단계의 충실성, 교육 성과, 만족도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실행 단계의 질적 수준이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운영 과정에 대한 기관 담당자의 평가는 계획·투입·실행 모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과 지역 간에도 통계적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교육 운영은 표준화된 절차와 안정성을 갖추고 있었다. 계획 단계에서는 기관 목표와의 연계성, 참여자 수준에 맞는 목표 설정 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는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투입 단계에서는 공연출연자 간 협업·당사자 참여·환경 준비 등 문화예술 기반 프로그램의 특성이 잘 구현되었으나, 예산 지원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구조적 자원 배분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실행 단계는 모든 항목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기록해 교육 내용과 활동의 실질적 질이 프로그램 운영의 강점임을 보여주었다.

운영 성과 또한 결과·영향 영역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결과 측면에서는 교육 목표 달성,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 출연자와의 유대감 형성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영향 측면에서는 전문성 향상, 기관 운영역량 확장,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다양성 제고, 사회적 인식 개선 기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예술 기반 접근이 단기적 학습효과를 넘어

구조적·사회적 가치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방식임을 의미한다. 만족도 역시 교육 목적·콘텐츠 전문성·운영절차·출연자 역량·환경 준비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교육 참여 경험이 질적으로 우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어려움 분석에서는 기관 일정과의 조율 문제, 전문 교육기관 섭외의 어려움, 실무자 경험 부족 등 현실적 운영 제약이 식별되었다. 특히 예산 확보와 전문성 기반 운영체계 마련은 프로그램의 장기적 지속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나타났다.

운영 과정과 성과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발견은 실행 단계가 결과·영향·만족도에 모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계획과 투입은 성과를 직접 설명하지 못했으며, 특히 투입은 영향과 만족도에서 부적 영향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자원을 많이 투입하거나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성과가 확보되지 않으며,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즉 교육 활동의 질·출연자의 역량·참여자의 경험·콘텐츠 운영 방식 등이 핵심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성패는 기획 단계보다 현장에서의 실행 역량에 달려 있으며, 교육 활동의 전문성·경험성·상호작용성이 고품질 교육 효과의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논의점을 제공한다.

첫째, 문화예술 기반 접근은 기존의 강의식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달성하기 어려웠던 감정적 공감·실제 경험·정서적 거리 감소 효과를 창출하여, 인식 개선을 보다 지속적이고 참여 중심의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교육모델임을 시사한다.

둘째, 실행 단계의 질이 성과를 좌우한다는 결과는 문화예술형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연출연자 및 교육자의 역량 강화, 교육 활동의 표준 운영 매뉴얼 개발, 지역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 당사자 예술인의 참여 확대는 교육의 공감성·다양성·현장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관의 예산 부담과 전문기관 섭외의 어려움은 교육 확산의 주요 제약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앙·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높은 성과를 보인 만큼, 공공 교육 정책 내에서 본 교육모델을 제도화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지속가능성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조사기관들은 교육 재실시 의향이 매우 높아 프로그램의 현장 수용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자체 예산 활용 의향은 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는 높지만, 비용 구조와 기관 자원의 한계가 실제 실행 의지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제도적 지원 확대와 예산 부담 완화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V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델파이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절차

본 조사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지정(선정)과 관리·감독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델파이 조사방법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게 의견 도출을 위한 질문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강용주, 2008). 이러한 델파이 조사는 평가지표의 선행연구가 미비한 주제에 대해 사전 검증된 판단을 적용하여 가능한 대안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개발해내는 데에 유용하다(Sandford,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의 문헌분석과 연구진 검토를 통해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지정(선정)과 관리·감독을 위한 평가지표'의 초안을 개발하고 전문가 패널에게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평가지표 개발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 [그림 V-1]과 같다.

문헌분석 및 지표 초안 개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	
연구진 검토 및 델파이 패널 구성	**개발된 지표 초안에 대한 연구진의 검토와 의견 수렴** **문화예술 및 장애 관련 학계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 등 15명의 델파이 패널 구성**
⬇	
델파이 조사	**1차 조사: 평가지표 초안에 대한 적합도 및 내용 타당도 검증** **2차 조사: 1차 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평가지표에 대한 동의도 검증**
⬇	
평가지표 개발	**문헌분석, 연구진 검토, 델파이 조사,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그림 V-1]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절차

2) 델파이 전문가 패널 구성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은 장애학 또는 장애인복지, 장애인식개선 분야의 학계 전문가 4명과 장애인식개선 및 문화예술 분야의 현장 전문가 11명 총 15명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전문가 패널 구성은 〈표 V-1〉과 같다.

〈표 V-1〉 델파이 조사 전문가 패널 구성

구분	참여자	분야	소속	직위
학계 전문가	패널 1	장애인 고용,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OO개발원	부장
	패널 2	사회복지, 장애학	OO대학교	교수
	패널 3	장애인고용,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OO연구원	책임연구원
	패널 4	사회복지, 장애인식개선	OO연구소	소장
현장 전문가	패널 5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OO협동조합	팀장
	패널 6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OO공단	차장
	패널 7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주)OO극장	대표
	패널 8	장애인식개선	OO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패널 9	장애인복지,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OO복지관	팀장
	패널 10	장애예술	OO예술원	부장
	패널 11	사회복지,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주)OOO	대표
	패널 12	장애인식개선, 교육, 문화예술	OO하우스	이사
	패널 13	장애인식개선	OO센터	사무국장
	패널 14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사단법인 OO	대표
	패널 15	문화예술	OO예술단	부장

3) 델파이 조사를 위한 평가지표(안) 개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문헌분석과 연구 초반 진행한 FGI결과를 기초로 하여 1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예비문항의 타당도 검증과 문항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연구진 검토를 거쳐 1차 델파이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문항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지정(선정)을 위한 지표(이하 A지표)와 수행기관 관리·감독(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이하 B지표) 두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A지표

는 38문항, B지표는 34문항으로 총 7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 구성은 〈표 V-2〉와 〈표 V-3〉과 같다.

〈표 V-2〉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A지표) 초안

구분	항목	지표(안)
기관 역량 (조직·인력·실적)	최근 2년 실적	1. 연간 프로그램 수
		2. 주요 대상군(영유아, 초·중·고 학생, 성인 등) 중심 운영 및 타 연령대 확장 가능성 여부
		3. 강의 재의뢰 건수/비율
	협력 네트워크 및 교육 홍보	4. 학교·문화기관·지자체와의 MOU/공동 운영 경험
	전담 인력 확보	5. 기획·운영·안전·행정 전담/대행 지정
	역할 분장 명료성	6. 전담 인력의 역할과 책임 문서화 및 공지(결원 시 대체 체계 포함)
	강사진 전문성 (교육강사, 공연참여자(장애·비장애), 연출가 등)	7. "교육강사"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8. "장애인 공연참여자"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9. "비장애인 공연참여자"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10. "공연 연출가"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장애당사자 강사 비율	11. 강사 중 장애당사자 비율 목표·현황 명시
		12. 장애당사자 강사진의 주도적 참여 정도
		13. 장애당사자 강사진의 참여 역할 (교육강사, 공연참여자, 연출가, 콘텐츠 기획·제작)
		14. 강사 중 중증장애예술인 비율 목표·현황 명시
		15. 중증장애예술인의 주도적 참여 정도
	기관장 의지·미션	16. 미션/정책 공개·인권/포용 가치 명시
	독립적 운영 (재정·책임성)	17. 재정건전성(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자부담 능력
운영 계획 (정합성·준비도)	사전 조사 체계	18. 대상 분석·욕구 반영을 위한 사전 조사 체계 보유
	접근성 계획	19. 물리/정보/의사소통 접근성 체크·보완계획
	순환적 모니터링 체계	20. 관찰·피드백·개선 회의 주기·기록
	리스크 관리	21. 안전/민원/중단 시 공연 안전 대처 능력
	데이터 관리 체계	22. 근거 기반 기록 체계·자료 보전·접근 권한
	성과확산 계획	23. 공유회·오픈 공연·결과 공개 계획
	사업운영	24. 사업(공모) 프로그램 운영 계획(연간 횟수)

〈표 Ⅴ-2〉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A지표) 초안(계속)

구분	항목	지표(안)
프로그램·훈련 기반 (교안·기자재·윤리)	교안-목표의 일치성	25. 세션별 목표-콘텐츠-활동 일치
	표현 윤리 준수	26. 비낙인·비시혜·다양성 존중 반영
	저작권·초상권	27. 원저작물·이미지·음원 사용 적법성
	평가 도구 내장	28. 사전/사후 문항·관찰 척도·만족도 설문 포함
	기자재 적정성	29. 무대·음향·시청각 장비 목록·상태
	보조공학·편의	30. 유형별 보조공학·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 확보
	확산·전파	31. 작품/성과의 2차 확산(전시/영상) 계획
법정필수 교육내용 반영	필수 교육내용 반영 여부	32.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33.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4.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35.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36.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37.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필수 교육내용 반영 방식	38. 강의+콘텐츠 병행, 콘텐츠 내용 내 포함 여부

〈표 Ⅴ-3〉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평가지표(B지표) 초안

구분	항목/세부항목		지표(안)
교육 현장 평가	현장	무대·음향·조명 점검	1. 사전 점검표·리허설 이행
		시청각 자료 가독성	2. 자막 가독·명암 대비·폰트 크기
		편의환경 확보	3. 대기실·화장실·엘리베이터 접근성
			4. 확보 불가능 시 대처 방안 및 노력(의뢰기관 시설 이용, 대관 등)
		동선 안전 표식	5. 진입로~공연장 표식·안내 인력
	효과성	목적 부합 구성	6. 교안 구조가 목적 달성에 기여
		장애인식개선 기여도	7. 장애인식개선 메시지의 명확성
		표현·연출 효과성	8. 흥미/집중·호응 유도
		대상 맞춤성	9. 연령·이해 수준·사전 조사 반영
		전달 방식 적정	10. 속도·언어·음량·제스처
		시간 적정성	11. 연령대별 표준 시간 충족
		교육 효과성	12. 교육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변화 정도
	문화예술	예술성·창의성	13. 완성도·창의적 구성
		인식개선 효과	14. 공감·행동 의도 변화 관찰

〈표 V-3〉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평가지표(B지표) 초안(계속)

구분	항목/세부항목	지표(안)
법정필수 교육내용 반영	필수 교육내용 반영	15.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포함 여부
		16.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포함 여부
		17.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18.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19.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포함 여부
		20.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여부
	반영 방식	21. 강의 요약 + 연출 상징 병행
	교육대상의 내용 체감도	22. 메시지 이해·공감 확인
	콘텐츠 내재화 비율	23. 필수 교육내용의 '콘텐츠 자체 포함' ≥50% 여부
	방식 분포 균형	24. 강의/콘텐츠/병행의 불균형 방지
운영 체계· 지속성	피드백 수집→조치(개선)	25. 참여자/강사/대상 기관 피드백 반영·개선 여부 및 개선 정도(달성률: %)
	사전·사후 모니터링 적용	26. 사전·사후 조사 및 평가 분석/반영
	접근성 이행률	27. 수어·자막·쉬운글·대체자료 이행
	강사 공정성	28. 배치 적정·계약·보수 공정성·만족
	사고·민원 관리	29. 보고-조치-재발방지 체계
	협업·확산	30. 공유회·오픈 공연·지역연계 실적
	교육효과 대비 비용 적정성	31. 교육대상 및 효과 등에 따른 비용의 적정성
	지속가능성·제도화	32. 후속 연계·내부 제도화 문서·재원 다변화
	성과보고 충실성	33. 성과보고서 및 결과 발표의 충실성·투명성
	사업결과의 활용 및 지속적 유지	34. 성과물(교안·영상·콘텐츠 등)을 후속 활용 및 프로그램 유지 계획

4) 자료분석 방법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내적 타당도 확인 및 자료의 분석은 Microsoft 365 Excel Program을 사용하였다.

분석 내용은 기술통계를 통한 집중경향치(평균, 중앙값)와 산포도(표준편차, 사분위수)를 산출하였고, 문항의 타당도는 Murry & Hammons(1995)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 문항 평균 4점 이상인 경우를 타당하다고 간주하였으며, 표준편차는 1.0 미만인 경우 의견 일치도가 높다고 분석하였다(박광옥 외, 2020).

개별문항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값을 확인하였는데, [그림 V-2]와 같이 Lawsh(1975)가 제시한 CVR 공식에 근거하여,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 인원 15명을 기준으로 할 때의 CVR 최소값인 0.49 이상인 문항의 경우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N은 사례수 즉, 조사에 참여한 전체 패널 수이고, ne는 문항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례 수를 의미한다.

$$\text{내용 타당도 비율(CVR)} = \frac{ne - N/2}{N/2}$$

[그림 V-2] 델파이 조사 문항 내용 타당도 비율(CVR) 공식

또한 각 문항에 대한 의견 수렴도와 합의도를 산출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석은 Microsoft 365 Excel Program을 사용하였다. 전문가 패널 집단의 의견에 대한 수렴도와 합의도를 산출한 공식은 [그림 V-3]과 같다. 공식에서의 Mdn은 중앙값, Q1과 Q3은 각각 제1사분위와 제3사분위 계수로 전체 사례수의 누적값 중 25%, 75%의 값을 의미한다.

수렴도는 의견이 한 지점으로 수렴되었을 때 0의 값을 가지고, 반대로 의견의 편차가 커지면 수렴도 역시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합의도는 Q1과 Q3이 일치하여 완전히 합의되었을 때 1의 값을 가지고, 반대로 의견의 편차가 커질수록 수치가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수렴도는 0에 가까울수록 의견이 수렴되었음을 의미하고, 합의도는 1에 가까울수록 의견이 합의되었음을 의미한다.

$$\text{수렴도} = \frac{Q_3 - Q_1}{2} \qquad \text{합의도} = 1 - \frac{(Q_3 - Q_1)}{Mdn}$$

[그림 V-3] 델파이 조사 문항 내용 타당도 비율(CVR) 공식

2. 조사 결과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 양적 분석 결과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문항의 집중경향치에 대한 결과는 72개의 전체 문항 평균 4.11점이며, A지표 38개의 전체 문항 평균은 4.12점, B지표 34개의 전체 문항 평균은 4.09점으로 확인되었다. 제시된 각 문항별 평균값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은 A지표와 B지표 모두 법정 필수

교육 내용 반영 여부 중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4.87점), 가장 낮은 평균값은 A지표에서는 기관 역량(조직·인력·실적) 중 '강의 재의뢰 건수/비율'과 '학교·문화기관·지자체와의 MOU/공동 운영 경험'(3.33점), B지표에서는 법정 필수 교육 내용 반영의 방식 분포의 균형에 해당하는 '강의/콘텐트/병행의 불균형 방지'였다. 또한 각 문항의 중앙값은 3~5로 나타났다.

1차 델파이 조사의 개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비율(CVR)값을 분석한 결과, Lawsh(1975)가 제시한 전문가 패널 15명일 때의 CVR 최소값 0.49 이상인 문항은 전체 72개 문항 중 44문항에서 내용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A지표 38문항 중에서는 21문항, B지표 34문항 중에서는 23문항에서 내용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 패널이 제시한 의견의 수렴도와 합의도 분석 결과, A지표 38문항 중 19개 문항에서 수렴도 0.5 이하, 합의도 0.75 이상으로 나타났고, B지표 34문항 중 18개 문항에서 수렴도 0.5 이하, 합의도 0.75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 72개 문항 중 37개 문항에서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가 높아 타당한 문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델파이 전체 문항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확인한 결과, 전체 문항의 신뢰도가 0.938로 나타났다.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표 V-4〉, 〈표 V-5〉와 같다.

〈표 V-4〉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A지표)

구분	항목	지표(안)	평균	표준편차	수렴도	합의도	CVR	결과
기관 역량 (조직·인력·실적)	최근 2년 실적	1. 연간 프로그램 수	4.33	0.79	0.5	0.8	0.6	유지
		2. 주요 대상군(영유아, 초·중·고 학생, 성인 등) 중심 운영 및 타 연령대 확장 가능성 여부	3.67	1.19	0.75	0.63	0.3	삭제
		3. 강의 재의뢰 건수/비율	3.33	1.01	0.75	0.5	-0.1	삭제
	협력 네트워크 및 교육 홍보	4. 학교·문화기관·지자체와의 MOU/공동 운영 경험	3.33	0.79	0.5	0.67	-0.2	삭제
	전담 인력 확보	5. 기획·운영·안전·행정 전담/대행 지정	4.47	0.62	0.5	0.8	0.9	유지
	역할 분장 명료성	6. 전담 인력의 역할과 책임 문서화 및 공지(결원 시 대체 체계 포함)	4.4	0.49	0.5	0.75	1	유지
	강사진 전문성 (교육강사, 공연참여자(장애·비장애), 연출가 등)	7. "교육강사"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4.53	0.62	0.5	0.8	0.9	유지
		8. "장애인 공연참여자"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3.67	1.07	0.75	0.63	0.2	삭제
		9. "비장애인 공연참여자"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3.8	1.05	1	0.5	0.2	삭제
		10. "공연 연출가"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3.87	1.2	1	0.5	0.3	삭제

〈표 Ⅴ-4〉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A지표)(계속)

구분	항목	지표(안)	평균	표준편차	수렴도	합의도	CVR	결과
기관 역량 (조직·인력·실적)	장애당사자 강사 비율	11. 강사 중 장애당사자 비율 목표·현황 명시	4.13	1.02	1	0.6	0.3	삭제
		12. 장애당사자 강사진의 주도적 참여 정도	4.07	0.85	1	0.5	0.3	삭제
		13. 장애당사자 강사진의 참여 역할(교육강사, 공연참여자, 연출가, 콘텐츠 기획·제작)	3.93	1.18	1	0.5	0.2	삭제
		14. 강사 중 중증장애예술인 비율 목표·현황 명시	3.87	1.02	1	0.5	0..3	삭제
		15. 중증장애예술인의 주도적 참여 정도	3.87	0.96	1	0.5	0.2	삭제
	기관장 의지·미션	16. 미션/정책 공개·인권/포용 가치 명시	3.87	1.15	1	0.5	0.3	삭제
	독립적 운영 (재정·책임성)	17. 재정건전성(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자부담 능력	4.07	1	1	0.5	0.3	삭제
운영 계획 (정합성·준비도)	사전 조사 체계	18. 대상 분석·욕구 반영을 위한 사전 조사 체계 보유	4.33	0.7	0.5	0.75	0.7	유지
	접근성 계획	19. 물리/정보/의사소통 접근성 체크·보완계획	4.33	0.7	0.5	0.75	0.7	유지
	순환적 모니터링 체계	20. 관찰·피드백·개선 회의 주기·기록	4.27	0.77	0.5	0.75	0.6	유지
	리스크 관리	21. 안전/민원/중단 시 공연 안전 대처 능력	4.53	0.72	0.5	0.8	0.7	유지
	데이터 관리 체계	22. 근거 기반 기록 체계·자료 보전·접근 권한	4	0.89	1	0.5	0.2	삭제
	성과확산 계획	23. 공유회·오픈 공연·결과 공개 계획	4.2	0.91	0.5	0.75	0.6	유지
	사업운영	24. 사업(공모) 프로그램 운영 계획(연간 횟수)	4.27	0.68	0.5	0.75	0.7	유지
프로그램·훈련 기반 (교안·기자재·윤리)	교안-목표의 일치성	25. 세션별 목표-콘텐츠-활동 일치	4.4	1.02	0.5	0.8	0.7	유지
	표현 윤리 준수	26. 비낙인·비시혜·다양성 존중 반영	4.53	0.72	0.5	0.8	0.7	유지
	저작권·초상권	27. 원저작물·이미지·음원 사용 적법성	4.67	0.79	0	1	0.9	유지
	평가 도구 내장	28. 사전/사후 문항·관찰 척도·만족도 설문 포함	4.13	0.96	0.75	0.63	0.5	삭제
	기자재 적정성	29. 무대·음향·시청각 장비 목록·상태	3.6	1.14	0.75	0.63	0.1	삭제
	보조공학·편의	30. 유형별 보조공학·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 확보	3.67	1.3	1	0.5	0.1	삭제
	확산·전파	31. 작품/성과의 2차 확산(전시/영상) 계획	3.8	0.91	0.75	0.63	0.2	삭제
법정 필수 교육 내용 반영	필수 교육내용 반영 여부	32.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4.87	0.34	0	1	1	유지
		33.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4.27	1.06	0.5	0.8	0.6	유지
		34.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6	0.8	0.25	0.9	0.9	유지
		35.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4.6	0.8	0.25	0.9	0.9	유지
		36.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4.33	0.94	0.5	0.8	0.6	유지
		37.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4.2	1.17	0.75	0.7	0.5	삭제
	필수 교육 내용 반영 방식	38. 강의+콘텐츠 병행, 콘텐츠 내용 내 포함 여부	3.93	1.39	0.5	0.75	0.6	유지

〈표 Ⅴ-5〉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B지표)

구분	항목/세부항목		지표(안)	평균	표준편차	수렴도	합의도	CVR	결과
교육현장평가	현장	무대·음향·조명 점검	1. 사전 점검표·리허설 이행	3.8	1.47	0.75	0.63	0.5	삭제
		시청각 자료 가독성	2. 자막 가독·명암 대비·폰트 크기	4.13	0.88	0.5	0.75	0.6	유지
		편의환경 확보	3. 대기실·화장실·엘리베이터 접근성	3.67	1.19	0.75	0.63	0.3	삭제
			4. 확보 불가능 시 대처 방안 및 노력(의뢰기관 시설 이용, 대관 등)	4.4	0.71	0.5	0.8	0.7	유지
		동선 안전 표식	5. 진입로~공연장 표식·안내 인력	4.07	0.93	0,75	0.63	0.5	삭제
	효과성	목적 부합 구성	6. 교안 구조가 목적 달성에 기여	4.33	1.01	0.5	0.8	0.9	유지
		장애인식개선 기여도	7. 장애인식개선 메시지의 명확성	4.73	0.44	0.25	0.9	1	유지
		표현·연출 효과성	8. 흥미/집중·호응 유도	4.27	1.29	0.5	0.8	0.5	유지
		대상 맞춤성	9. 연령·이해 수준·사전 조사 반영	4	1.21	0.75	0.64	0.5	삭제
		전달 방식 적정	10. 속도·언어·음량·제스처	3.53	1.41	1	0.33	-0.1	삭제
		시간 적정성	11. 연령대별 표준 시간 충족	3.67	1.45	1	0.5	0.1	삭제
		교육 효과성	12. 교육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변화 정도	4.33	1.07	0.5	0.8	0.7	유지
	문화예술	예술성·창의성	13. 완성도·창의적 구성	4.4	1.08	0.5	0.8	0.7	유지
		인식개선 효과	14. 공감·행동 의도 변화 관찰	4.47	0.72	0.5	0.8	0.7	유지
법정필수교육내용반영	필수 교육내용 반영		15.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포함 여부	4.87	0.34	0	1	1	유지
			16.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포함 여부	3.8	1.22	1.25	0.38	0.3	삭제
			17.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4.6	0.8	0.25	0.9	0.9	유지
			18.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4.4	1.02	0.5	0.8	0.7	유지
			19.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포함 여부	4.2	1.05	0.5	0.8	0.6	유지
			20.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여부	4.27	1.12	0.5	0.8	0.6	유지
	반영 방식		21. 강의 요약 + 연출 상징 병행	3.6	1.31	0.75	0.63	0.3	삭제
	교육대상의 내용 체감도		22. 메시지 이해·공감 확인	4.07	1.06	0.75	0.63	0.5	삭제
	콘텐츠 내재화 비율		23. 필수 교육내용의 '콘텐츠 자체 포함' ≥50% 여부	3.47	1.45	1	0.5	0.1	삭제
	방식 분포 균형		24. 강의/콘텐츠/병행의 불균형 방지	3.4	1.31	0.75	0.63	0.2	삭제

〈표 Ⅴ-5〉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B지표)(계속)

구분	항목/세부항목	지표(안)	평균	표준편차	수렴도	합의도	CVR	결과
운영체계·지속성	피드백 수집→조치(개선)	25. 참여자/강사/대상 기관 피드백 반영·개선 여부 및 개선 정도(달성률: %)	4.33	0.7	0.5	0.75	0.7	유지
	사전·사후 모니터링 적용	26. 사전·사후 조사 및 평가 분석/반영	4.53	0.62	0.5	0.8	0.9	유지
	접근성 이행률	27. 수어·자막·쉬운글·대체자료 이행	4.33	0.87	0.75	0.7	0.5	삭제
	강사 공정성	28. 배치 적정·계약·보수 공정성·만족	3.93	1.18	1	0.5	0.3	삭제
	사고·민원 관리	29. 보고-조치-재발방지 체계	4.27	0.77	0.5	0.75	0.6	유지
	협업·확산	30. 공유회·오픈 공연·지역연계 실적	3.67	1.07	1	0.33	-0.1	삭제
	교육효과 대비 비용 적정성	31. 교육대상 및 효과 등에 따른 비용의 적정성	3.47	1.15	0,5	0.75	0.1	유지
	지속가능성·제도화	32. 후속 연계·내부 제도화 문서·재원 다변화	3.6	0.88	0,5	0.67	-0.1	삭제
	성과보고 충실성	33. 성과보고서 및 결과 발표의 충실성·투명성	4.47	0.88	0.5	0.8	0.7	유지
	사업결과의 활용 및 지속적 유지	34. 성과물(교안·영상·콘텐츠 등)을 후속 활용 및 프로그램 유지 계획	4.07	1.12	0.75	0.63	0.5	삭제

(2) 질적 분석 결과

전문가 패널의 1차 델파이 조사에서 각 문항에 대한 자유의견 또는 연구에 대한 자유의견을 수집하였고, 그 결과 지표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과 추후 지표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 측정 방법 등에 대한 의견,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기존 장애인식개선교육이나 장애인문화예술공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나 기관 외에도 좋은 장애감수성과 가치를 담아낸 콘텐츠를 보유한 기관이라면 다양하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행정 중심의 평가가 아닌 현장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단편적인 정량 평가인 실적 위주의 평가보다 콘텐츠와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문가 패널의 자유의견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Ⅴ-6〉와 같다.

〈표 V-6〉 1차 델파이 조사 질적 조사 결과

구분	자유의견
A지표	• 협력 네트워크 및 교육 홍보: 대표자의 유대관계에 편향될 우려 • 장애당사자 참여가 중요하지만 콘텐츠의 질과 방향성에 집중하는 평가지표 필요 • 장애인식개선교육 특성상 기자재 및 공연 시설은 수행기관 보유가 중요하지 않음 • 과도한 행정 업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표의 간소화 • 교육강사의 경력 및 자격 등 전문성 확인은 필수적임 • 재정건전성: 자부담 중심보다 집행의 투명성 중심 평가 • 기관마다 활동 공연 분야 및 방식, 대상 기관 및 연령 등이 모두 다르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지표 개발 필요
B지표	• 측정·평가방법의 명확성 및 객관성 • 효과성 & 만족도: 개발원 만족도 및 모니터링을 활용하기에 기관 자체 보유는 의미가 없음 • 예술성 & 창의성: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 협업 및 확산: 가산점 고려
연구 전반	• 행정 편의적 지표가 아닌 현장 실무 중심의 지표 • 실적보다 프로그램(교육)의 질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지표 • 문화예술 공연 제작진은 프로젝트 단위로 구성되기에 공연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프로듀서를 수행기관에서 보유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3)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문항 수정

1차 델파이 조사의 양적 분석 결과와 질적 분석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반영하고 조정한 2차 델파이 조사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양적 분석 결과를 통해 타당도가 낮은 문항으로 확인된 것들은 모두 삭제하였고, 추가문항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각 지표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자유의견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정된 2차 델파이 문항은 A지표 26문항, B지표 24문항 총 50개의 문항이다.

또한 패널들의 자유의견을 참고하여 기존 지표의 구성을 함에 있어서 배점 평가 문항과 가산점 평가 문항으로 구분하여 문항의 순서 등을 조정하였다.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한 2차 델파이 조사 문항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7〉, 〈표 V-8〉과 같다.

〈표 Ⅴ-7〉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표 조정 내용(A지표)

구분	항목	1차 델파이 문항		2차 델파이 문항	반영 결과
기관 역량 (조직·인력·실적)	최근 2년 실적	1. 연간 프로그램 수		1. 연간 프로그램 수	유지
		2. 주요 대상군(영유아, 초·중·고 학생, 성인 등) 중심 운영 및 타 연령대 확장 가능성 여부		-	삭제
		3. 강의 재의뢰 건수/비율		-	삭제
	협력 네트워크 및 교육 홍보	4. 학교·문화기관·지자체와의 MOU/공동 운영 경험		-	삭제
	전담 인력 확보	5. 기획·운영·안전·행정 전담/대행 지정		2. 기획·운영·안전·행정 전담/대행 지정	유지
	역할 분장 명료성	6. 전담 인력의 역할과 책임 문서화 및 공지(결원 시 대체 체계 포함)		3. 전담 인력의 역할과 책임 문서화 및 공지(결원 시 대체 체계 포함)	유지
	강사진 전문성 (교육강사, 공연참여자(장애·비장애), 연출가 등)	7. "교육강사"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4. "교육강사"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유지
		8. "장애인 공연참여자"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	-	삭제
		9. "비장애인 공연참여자"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	삭제
		10. "공연 연출가"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	삭제
	장애당사자 강사 비율	11. 강사 중 장애당사자 비율 목표·현황 명시		-	삭제
		12. 장애당사자 강사진의 주도적 참여 정도		-	삭제
		13. 장애당사자 강사진의 참여 역할 (교육강사, 공연참여자, 연출가, 콘텐츠 기획·제작)		-	삭제
		14. 강사 중 중증장애예술인 비율 목표·현황 명시		-	삭제
		15. 중증장애예술인의 주도적 참여 정도		-	삭제
	기관장 의지·미션	16. 미션/정책 공개·인권/포용 가치 명시		-	삭제
	독립적 운영 (재정·책임성)	17. 재정건전성(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자부담 능력		-	삭제
운영 계획 (정합성·준비도)	사전 조사 체계	18. 대상 분석·욕구 반영을 위한 사전 조사 체계 보유		5. 대상 분석·욕구 반영을 위한 사전 조사 체계 보유	유지
	접근성 계획	19. 물리/정보/의사소통 접근성 체크·보완계획		6. 물리/정보/의사소통 접근성 체크·보완계획	유지
	순환적 모니터링 체계	20. 관찰·피드백·개선 회의 주기·기록	→	7. 관찰·피드백·개선 회의 주기·기록	유지
	리스크 관리	21. 안전/민원/중단 시 공연 안전 대처 능력		8. 안전/민원/중단 시 공연 안전 대처 능력	유지
	데이터 관리 체계	22. 근거 기반 기록 체계·자료 보전·접근 권한		-	삭제
	성과확산 계획	23. 공유회·오픈 공연·결과 공개 계획		9. 공유회·오픈 공연·결과 공개 계획	유지
	사업운영	24. 사업(공모) 프로그램 운영 계획(연간 횟수)		10 사업(공모) 프로그램 운영 계획(연간 횟수)	유지

〈표 Ⅴ-7〉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표 조정 내용(A지표)(계속)

구분	항목	1차 델파이 문항		2차 델파이 문항	반영 결과
프로그램·훈련기반(교안·기자재·윤리)	교안-목표의 일치성	25. 세션별 목표-콘텐츠-활동 일치		11. 세션별 목표-콘텐츠-활동 일치	유지
	표현 윤리 준수	26. 비낙인·비시혜·다양성 존중 반영		12. 비낙인·비시혜·다양성 존중 반영	유지
	저작권·초상권	27. 원저작물·이미지·음원 사용 적법성		13. 원저작물·이미지·음원 사용 적법성	유지
	평가 도구 내장	28. 사전/사후 문항·관찰 척도·만족도 설문 포함		-	삭제
	기자재 적정성	29. 무대·음향·시청각 장비 목록·상태		-	삭제
	보조공학·편의	30. 유형별 보조공학·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 확보	→	-	삭제
	확산·전파	31. 작품/성과의 2차 확산(전시/영상) 계획		-	삭제
		-		14. 콘텐츠 기획·운영 전문 인력(전문 프로듀서 또는 제작진·스텝) 보유	추가
		-		15. 보유 교육 콘텐츠의 창의성	추가
		-		16, 보유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다양한 메시지의 내재화)	추가
		-		17. 교육 목표의 명료성(목표 및 성취기준 제시 가능성)	추가
		-		18. 교육 피드백 체계 보유(만족도, 피드백 수집)	추가
		-		19. 제작진 또는 출연진 등의 장애당사자 참여 여부	추가
법정필수교육내용반영	필수 교육내용 반영 여부	32.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20.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유지
		33.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21.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유지
		34.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22.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유지
		35.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23.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유지
		36.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24.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유지
		37.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삭제
	필수 교육 내용 반영 방식	38. 강의+콘텐츠 병행, 콘텐츠 내용 내 포함 여부		25. 강의+콘텐츠 병행, 콘텐츠 내용 내 포함 여부	유지
		-		26. 메시지 제시/표현/참여 등 교육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다양한 메시지 전달 방식 보유 여부	추가

〈표 Ⅴ-8〉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표 조정 내용(B지표)

구분	항목		1차 델파이 문항		2차 델파이 문항	반영 결과
교육 현장 평가	현장	무대·음향·조명 점검	1. 사전 점검표·리허설 이행		-	삭제
			-		1. 안전 대응 및 비상시 동선 확보	추가
		시청각 자료 가독성	2. 자막 가독·명암 대비·폰트 크기		2. 자막 가독·명암 대비·폰트 크기	유지
		편의환경 확보	3. 대기실·화장실·엘리베이터 접근성		-	삭제
			4. 확보 불가능 시 대처 방안 및 노력(의뢰기관 시설 이용, 대관 등)		3. 자체 공간 확보 불가능 시 대처 방안 및 노력(의뢰기관 시설 이용, 대관 등)	유지
		동선 안전 표식	5. 진입로~공연장 표식·안내 인력		-	삭제
	효과성	목적 부합 구성	6. 교안 구조가 목적 달성에 기여		4. 교안 구조가 목적 달성에 기여	유지
		장애인식개선 기여도	7. 장애인식개선 메시지의 명확성	→	5. 장애인식개선 메시지의 명확성	유지
		표현·연출 효과성	8. 흥미/집중·호응 유도		6. 흥미/집중·호응 유도(콘텐츠의 몰입성)	유지
		대상 맞춤성	9. 연령·이해 수준·사전 조사 반영		-	삭제
		전달 방식 적정	10. 속도·언어·음량·제스처		-	삭제
		시간 적정성	11. 연령대별 표준 시간 충족		-	삭제
		교육 효과성	12. 교육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변화 정도		7. 교육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변화 정도	유지
	문화예술	예술성·창의성	13. 완성도·창의적 구성		8. 콘텐츠의 완성도·창의적 구성	유지
		인식개선 효과	14. 공감·행동 의도 변화 관찰		-	문항 7과 통합
			-		9. 교육대상 중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를 고려한 접근성(음성해설/대체자료/자막) 대응 마련	추가
			-		10. 관객(교육대상)과의 상호작용의 균형	추가
			-		11. 현장 대응력(현장 수준과 분위기 대응)	추가

〈표 Ⅴ-8〉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표 조정 내용(B지표)(계속)

구분	항목	1차 델파이 문항		2차 델파이 문항	반영 결과
법정 필수 교육 내용 반영	필수 교육내용 반영	15.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포함 여부		18.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포함 여부	유지
		16.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포함 여부		-	삭제
		17.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19.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유지
		18.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20.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유지
		19.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포함 여부	→	21.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포함 여부	유지
		20.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여부		22.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여부	유지
	반영 방식	21. 강의 요약 + 연출 상징 병행		-	삭제
	교육대상의 내용 체감도	22. 메시지 이해·공감 확인		-	삭제
	콘텐츠 내재화 비율	23. 필수 교육내용의 '콘텐츠 자체 포함' ≥50% 여부		-	삭제
	방식 분포 균형	24. 강의/콘텐츠/병행의 불균형 방지		-	삭제
운영 체계 · 지속성	피드백 수집→조치(개선)	25. 참여자/강사/대상 기관 피드백 반영·개선 여부 및 개선 정도(달성률: %)		12. 피드백·모니터링 수집 및 관리 체계	수정 이동
	사전·사후 모니터링 적용	26. 사전·사후 조사 및 평가 분석/반영		13. 사전·사후 조사 및 평가 분석/반영	유지 이동
	접근성 이행률	27. 수어·자막·쉬운글·대체자료 이행		-	삭제
	강사 공정성	28. 배치 적정·계약·보수 공정성·만족		-	삭제
	사고·민원 관리	29. 보고-조치-재발방지 체계		14. 보고-조치-재발방지 체계	유지 이동
	협업·확산	30. 공유회·오픈 공연·지역연계 실적		-	삭제
	교육효과 대비 비용 적정성	31. 교육대상 및 효과 등에 따른 비용의 적정성	→	15. 교육대상 및 효과 등에 따른 비용의 적정성	유지 이동
	지속가능성·제도화	32. 후속 연계·내부 제도화 문서·재원 다변화		-	삭제
		-		16. 예산 집행과 재정 관리의 투명성	추가
	성과보고 충실성	33. 성과보고서 및 결과 발표의 충실성·투명성		17. 성과보고서 및 결과 발표의 충실성·투명성	유지 이동
	사업결과의 활용 및 지속적 유지	34. 성과물(교안·영상·콘텐츠 등)을 후속 활용 및 프로그램 유지 계획		-	삭제
		-		23. 다양한 교육 대상을 고려한 다변 교육 방식(교육생의 참여/표현 등) 운영	추가
		-		24. 참여자/강사/대상 기관 피드백 반영·개선 여부 및 개선 정도(달성률: %)	추가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 양적 분석 결과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문항의 집중경향치에 대한 결과는 50개의 전체 문항 평균 4.38점이며, A지표 26개의 전체 문항 평균은 4.36점, B지표 24개의 전체 문항 평균은 4.4점으로 확인되었다. 제시된 각 문항별 평균값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은 A지표에서는 '"교육강사"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과 '교육 피드백 체계 보유(만족도, 피드백 수집)',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4.67점), B지표에서는 '콘텐츠의 완성도·창의적 구성'과 '성과보고서 및 결과 발표의 충실성·투명성'(4.73점)이었다. 가장 낮은 평균값은 A지표에서는 '공유회 오픈 공연 결과 공개 계획'(3.93점), B지표에서는 법정 필수 교육 내용 중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여부'(3.8점)였다. 또한 각 문항의 중앙값은 4~5로 나타났다.

2차 델파이 조사의 개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비율(CVR)값을 분석한 결과, CVR 최소값 0.49 이상인 문항은 전체 50개 문항 중 44문항에서 내용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A지표 26문항 중에서는 24문항, B지표 24문항 중에서는 22문항에서 내용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 패널이 제시한 의견의 수렴도와 합의도 분석 결과, A지표 26문항 중 18개 문항에서 수렴도 0.5 이하, 합의도 0.75 이상으로 나타났고, B지표 24문항 중 21개 문항에서 수렴도 0.5 이하, 합의도 0.75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 50개 문항 중 39개 문항에서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가 높아 타당한 문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델파이 전체 문항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확인한 결과, 전체 문항의 신뢰도가 0.935로 나타났다.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표 V-9〉, 〈표 V-10〉과 같다.

〈표 V-9〉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A지표)

구분	항목	지표(안)	평균	표준편차	수렴도	합의도	CVR	결과
배점 평가	운영의 정합성	1. 연간 프로그램 수	4.07	0.77	0.75	0.63	0.5	삭제
		2. 기획·운영·안전·행정 전담/대행 지정	4.33	0.7	0.5	0.75	0.7	확정
		3. 전담 인력의 역할과 책임 문서화 및 공지(결원 시 대체 체계 포함)	4.2	0.83	0.75	0.63	0.5	삭제
		4. "교육강사"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4.67	0.6	0.25	0.9	0.9	확정
		5. 대상 분석·욕구 반영을 위한 사전 조사 체계 보유	4.33	0.6	0.5	0.75	0.9	확정
		6. 물리/정보/의사소통 접근성 체크·보완계획	4.2	0.91	0.5	0.75	0.6	확정

〈표 Ⅴ-9〉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A지표)(계속)

구분	항목	지표(안)	평균	표준편차	수렴도	합의도	CVR	결과
배점평가	운영의 정합성	7. 관찰·피드백·개선 회의 주기·기록	4.07	0.85	1	0.5	0.3	삭제
		8. 안전/민원/중단 시 공연 안전 대처 능력	4.6	0.61	0.5	0.8	0.9	확정
		9. 공유회·오픈 공연·결과 공개 계획	3.93	0.85	1	0.5	0.2	삭제
		10. 사업(공모) 프로그램 운영 계획(연간 횟수)	4.07	0.77	0.75	0.63	0.5	삭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안·기자재·윤리성	11. 세션별 목표-콘텐츠-활동 일치	4.47	0.88	0.5	0.8	0.7	확정
		12. 비낙인·비시혜·다양성 존중 반영	4.6	0.71	0.25	0.9	0.7	확정
		13. 원저작물·이미지·음원 사용 적법성	4.47	0.81	0.5	0.8	0.9	확정
	교육 콘텐츠 다양성 및 창의성	14. 콘텐츠 기획·운영 전문 인력(전문 프로듀서 또는 제작진·스텝) 보유	4.2	0.65	0.5	0.75	0.7	확정
		15. 보유 교육 콘텐츠의 창의성	4.53	0.62	0.5	0.8	0.9	확정
		16. 보유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다양한 메시지의 내재화)	4.53	0.5	0.5	0.8	1	확정
	콘텐츠의 질적 향상·모니터링	17. 교육 목표의 명료성(목표 및 성취기준 제시 가능성)	4.47	0.5	0.5	0.75	1	확정
		18. 교육 피드백 체계 보유(만족도, 피드백 수집)	4.67	0.6	0.25	0.9	0.9	확정
가산점 적용	장애당사자 구성원 참여	19. 제작진 또는 출연진 등의 장애당사자 참여 여부	4.6	0.71	0.25	0.9	0.7	확정
	법정 필수 교육내용 반영	20.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4.67	0.6	0.25	0.9	0.9	확정
		21.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4.07	1.24	0.75	0.7	0.5	삭제
		22.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33	1.07	0.5	0.8	0.7	확정
		23.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4.27	1.12	0.5	0.8	0.6	확정
		24.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4.27	1.12	0.5	0.8	0.6	확정
		25. 강의+콘텐츠 병행, 콘텐츠 내용 내 포함 여부	4.13	1.15	0.75	0.7	0.5	삭제
	모두를 위한 교육 콘텐츠 설계	26. 메시지 제시/표현/참여 등 교육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다양한 메시지 전달 방식 보유 여부	4.53	0.62	0.7	0.8	0.9	삭제

〈표 Ⅴ-10〉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B지표)

구분	항목/세부항목	지표(안)	평균	표준편차	수렴도	합의도	CVR	결과
배점 평가	교육 현장 접근성 및 교육 효과성	1. 안전 대응 및 비상시 동선 확보	4.53	0.81	0.5	0.8	0.9	확정
		2. 자막 가독·명암 대비·폰트 크기	4	0.97	1	0.5	0.3	삭제
		3. 자체 공간 확보 불가능 시 대처 방안 및 노력(의뢰기관 시설 이용, 대관 등)	4	1.03	0.75	0.63	0.5	삭제
		4. 교안 구조가 목적 달성에 기여	4;4	0.61	0.5	0.75	0.9	확정
		5. 장애인식개선 메시지의 명확성	4;67	0.47	0.5	0.8	1	확정
		6. 흥미/집중·호응 유도(콘텐츠의 몰입성)	4.6	0.71	0.25	0.9	0.7	확정
		7. 교육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변화 정도	4.47	0.62	0.5	0.8	0.9	확정
		8. 콘텐츠의 완성도·창의적 구성	4.73	0.44	0.25	0.9	1	확정
		9. 교육대상 중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를 고려한 접근성(음성해설/대체자료/자막) 대응 마련	4.6	0.61	0.5	0.8	0.9	확정
		10. 관객(교육대상)과의 상호작용의 균형	4.2	0.75	0.5	0.75	0.6	확정
		11. 현장 대응력(현장 수준과 분위기 대응)	4.27	0.68	0.5	0.75	0.7	확정
	운영 체계·지속 가능성	12. 피드백·모니터링 수집 및 관리 체계	4.53	0.72	0.5	0.8	0.7	확정
		13. 사전·사후 조사 및 평가 분석/반영	4.33	0.87	0.5	0.8	0.7	확정
		14. 보고-조치-재발 방지 체계	4.33	0.87	0.5	0.8	0.7	확정
		15. 교육 대상 및 효과 등에 따른 비용의 적정성	4.33	0.87	0.5	0.8	0.7	확정
		16. 예산 집행과 재정 관리의 투명성	4.6	0.61	0.5	0.8	0.9	확정
		17. 성과보고서 및 결과 발표의 충실성·투명성	4.73	0.44	0.25	0.9	1	확정
가산점 적용	법정 필수 교육내용 반영	18.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포함 여부	4.67	0.6	0.25	0.9	0.9	확정
		19.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4.33	1.07	0.5	0.8	0.7	확정
		20.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4.2	1.11	0.5	0.8	0.6	확정
		21.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포함 여부	4.13	1.09	0.5	0.75	0.6	확정
		22.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여부	3.8	1.33	1	0.5	0.3	삭제
	교육의 질적 향상	23. 다양한 교육 대상을 고려한 다변 교육 방식(교육생의 참여/표현 등) 운영	4.6	0.61	0.5	0.8	0.9	확정
		24. 참여자/강사/대상 기관 피드백 반영·개선 여부 및 개선 정도(달성률: %)	4.47	0.72	0.5	0.8	0.7	확정

(2) 질적 분석 결과

전문가 패널의 2차 델파이 조사에서도 각 문항에 대한 자유의견 또는 연구에 대한 자유의견을 수집하였다. 양적 결과에서 1차 델파이 조사에 비해 문항 타당초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가 높았던만큼 자유의견이 1차 델파이만큼 많지는 않았으나 지표에 대한 의견과 본 연구의 전반에 대한 의견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문가 패널의 자유의견을 정리하면 다음 〈표 V-11〉와 같다.

〈표 V-11〉 2차 델파이 조사 질적 조사 결과

구분	자유의견
A지표	• 연간 프로그램 수: 휠체어 사용자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실적 차이 고려 •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상황을 고려 • 공유화·오픈 공연·결과 공개 계획: 가산점 부여 고려 & 오픈 공연 제외 • 장르와 프로그램 특성 고려
B지표	• 관객(교육대상)과의 상호작용 및 현장 대응력: 기관의 규모나 여건에 따른 차이 고려 • 성과보고서 및 결과 발표의 충실성·투명성: 성과보고서의 충실성으로 수정
연구 전반	• 사업의 홍보를 위한 항목 고려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써의 메시지 전달의 명료성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사후 검증 체계 및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필요 • 장애유형별 당사자 참여 비율이 들어가야 함

(3) 2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2차 델파이 조사의 양적 분석 결과와 질적 분석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반영하고 조정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양적 분석 결과를 통해 타당도가 낮은 문항으로 확인된 것들은 모두 삭제하였고, 추가문항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각 지표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자유의견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필수 항목과 필수는 아니지만 가산점을 적용함으로써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A지표인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지표'는 '운영의 정합성'(5개)과 '교육 프로그램 및 교안·기자재·윤리성'(3개), '교육 콘텐츠 다양성 및 창의성'(3개), '콘텐츠의 질적 향상·모니터링'(2개) 영역으로 구성된 배점 지표 총 13개 지표와 '장애당사자 구성원 참여'(1개)와 '법정 필수 교육 내용 반영'(4개) 영역으로 구성된 가산점 적용 지표 총 5개 지표로 전체 18개 지표로 확정되었다.

B지표인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교육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지표'는 '교육현장 접근성 및 교육 효과성'(9개)과 '운영 체계·지속 가능성'(6개) 영역으로 구성된 배점 지표 총 15개 지표와 '법정 필수 교육내용 반영'(4개)과 '교육의 질적 향상'(2개) 영역으로 구성된 가산점 적용 지표 총 6개 지표로 전체 21개 지표로 확정되었다.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정된 최종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12〉, 〈표 V-13〉과 같다.

〈표 V-12〉 최종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지표'

구분	영역	지표(안)
배점 평가	운영의 정합성	1. 기획·운영·안전·행정 전담/대행 지정
		2. "교육강사"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3. 대상 분석·욕구 반영을 위한 사전 조사 체계 보유
		4. 물리/정보/의사소통 접근성 체크·보완계획
		5. 안전/민원/중단 시 공연 안전 대처 능력
	교육 프로그램 및 교안·기자재·윤리성	6. 세션별 목표-콘텐츠-활동 일치
		7. 비낙인·비시혜·다양성 존중 반영
		8. 원저작물·이미지·음원 사용 적법성
	교육 콘텐츠 다양성 및 창의성	9. 콘텐츠 기획·운영 전문 인력(전문 프로듀서 또는 제작진·스텝) 보유
		10. 보유 교육 콘텐츠의 창의성
		11. 보유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다양한 메시지의 내재화)
	콘텐츠의 질적 향상·모니터링	12. 교육 목표의 명료성(목표 및 성취기준 제시 가능성)
		13. 교육 피드백 체계 보유(만족도, 피드백 수집)
가산점 적용	장애당사자 구성원 참여	14. 제작진 또는 출연진 등의 장애당사자 참여 여부
	법정 필수 교육내용 반영	15.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16.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17.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18.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표 V-13〉 최종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교육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지표'

구분	항목/세부항목	지표(안)
배점 평가	교육 현장 접근성 및 교육 효과성	1. 안전 대응 및 비상시 동선 확보
		2. 교안 구조가 목적 달성에 기여
		3. 장애인식개선 메시지의 명확성
		4. 흥미/집중·호응 유도(콘텐츠의 몰입성)
		5. 교육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변화 정도
		6. 콘텐츠의 완성도·창의적 구성
		7. 교육대상 중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를 고려한 접근성(음성해설/대체자료/자막) 대응 마련
		8. 관객(교육대상)과의 상호작용의 균형
		9. 현장 대응력(현장 수준과 분위기 대응)
	운영 체계·지속 가능성	10. 피드백·모니터링 수집 및 관리 체계
		11. 사전·사후 조사 및 평가 분석/반영
		12. 보고-조치-재발 방지 체계
		13. 교육 대상 및 효과 등에 따른 비용의 적정성
		14. 예산 집행과 재정 관리의 투명성
		15. 성과보고서 및 결과 발표의 충실성·투명성
가산점 적용	법정 필수 교육내용 반영	16.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포함 여부
		17.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18.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19.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포함 여부
	교육의 질적 향상	20. 다양한 교육 대상을 고려한 다변 교육 방식(교육생의 참여/표현 등) 운영
		21. 참여자/강사/대상 기관 피드백 반영·개선 여부 및 개선 정도(달성률: %)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Ⅵ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 방향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체계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설문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Ⅵ-1〉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 방향

영역	세부내용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기관 성과 중심 운영 체계	1) 성과 중심 운영의 필요성 2) 성과 중심 운영의 개념 3) 교육 실시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후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장기 추진 과제	1)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홍보 강화 2) 정량적 수치 중심의 수행기관 실적 평가 개선
기타	1) 의무교육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필요 2) 의무교육기관 종사자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1.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기관 성과 중심 운영 체계

1) 성과 중심 운영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의무교육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관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균등한 사업 품질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관 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A유형(국가기관 등), B유형(학교), C유형(보육기관) 모두 계획단계에서 4.75점에서 4.86점 사이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계획 충실성을 보이며 투입 단계도 4.67점에서 4.72점 사이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실행단계도 4.80점에서 4.89점으로 높은 수준의 평균을 보여준다. F 검정 결과에서도 계획(F=.695), 투입(F=.744), 실행(F=1.03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기관 유형에 따른 운영 수준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의 성격이나 지역적 조건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일정한 품질과 완성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체계가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일관된 품질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담당자들의 교육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기관 유형별 만족도 평균은 A유형(국가기관 등) 4.76점, B유형(학교) 4.91점, C유형(보육시설) 4.98점으로 나타났으며 전

체 평균은 4.91점이었다. 세 유형 모두 4.7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의 전문가 인터뷰에 참석한 전문가 중 다수는 문화예술 실력의 단기 완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요구하였다. 특히, 인터뷰 분석에 의하면 '더 체계적인 교육: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의 진전', '예술인'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경험', '수행기관 선정-점검-평가 기준의 조정' 등에서 장기적인 역량 강화 운영 체계를 제시하였다(전문가 인터뷰 참여자 4, 참여자 7,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질적분석 등).

이처럼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의무교육기관의 사업의 균일성 및 만족도 등 교육 방식과 효과 가능성은 일정 수준 확인되었다. 그러나 단년도 공모 방식으로 인해 성과의 누적과 검증, 교육기관의 안정적 성장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예술적 표현과 체험을 통해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 방식이다. 이러한 교육은 콘텐츠 기획 제작 시범 운영 개선의 과정을 거쳐 완성도가 제고되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매년 단기 공모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콘텐츠의 축적과 고도화가 제한되어 사업의 본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문화예술 기반 교육 콘텐츠는 연출 창작 리허설 참여자 반응 분석 등 반복적 검증 과정을 필요로 한다. 단년도 지원 체계에서는 사업 종료 시점에 맞춘 성과 중심 운영이 불가피하여 콘텐츠의 완성도와 교육 품질이 일관되게 관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시기에 따른 운영 체계는 교육기관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성과에 따른 운영 체계는 단계별 목표 설정과 평가를 통해 교육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즉, 교육기관을 동일한 조건의 단년도 참여 주체로 보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 성과를 축적하고 역량을 발전시키는 성장 대상 기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특화형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차별 성과 관리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하고, 교육기관별 성과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기관이 매년 공모에 참여하더라도, 이전 연도의 운영 실적과성과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선정 및 지원 수준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중장기 운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2) 성과 중심 운영의 개념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기관의 운영은 성과에 의한 단계별 운영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성과 중심 성장 경로는 진입 성장 자립의 단계적 모델로 개념화할 수 있다. 진입 성장 자립 단계는 성과 혹은 효과성의 수준에 따라 구분되며 유사한 개념으로는 초기 진입 단계, 확장 및 안정화 시기, 자립 및 고도화 단계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단계 구분은 성과에 따라 각 기관의 유형이나 형태를 구분한다는 동일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편의상 수행기관의 성과에 따른 구분을 진입 성장 자립 단계로 구분하였다. 구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체적으로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운영 방식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초기 진입 단계는 공모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 기본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단계로, 사업 기준 이해도, 교육 내용의 적합성, 기본적인 운영 관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표준 운영 지침 제공, 기본 교육 자료 공유, 행정 및 정산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확장 및 안정화) 단계는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수행기관으로 분류된 이후, 기획 및 운영 역량을 고도화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 콘텐츠의 심화 개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효과성분석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전문 컨설팅과 심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우수 사례 공유와 성과 확산을 통해 기관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고도화) 단계는 공모사업 외에도 자체적인 연계 사업이나 외부 수요 확보 가능성이 확인되는 단계로,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기업, 지역 사회, 교육 기관 등과의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네트워크 연계, 성과 인증, 브랜드화 지원 등을 통해 교육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단계적 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체계를 설계할 경우, 단년도 공모 구조 하에서도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교육 품질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1) 초기 진입 단계 교육기관 선정

초기 진입 단계는 사업 내에서 사업 착수 이전 또는 착수 직후에 적용되는 단계로, 해당 연도에 처음 참여하는 교육기관 또는 누적 성과 이력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 수행 결과를 평가하기보다, 공모 선정 과정 자체가 진입 단계 평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공모 선정 지표를 통해 기본 운영 역량과 수행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기관을 초기 진입 단계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진입 단계 교육기관 선정의 적용 시점은 사업 선정 및 초기 수행 단계로 평가 목적은 기본 수행 가능성 및 사업 이해도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단계에 유입시킬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기관 선정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 지표 및 전문가 의견에 기초해 아래와 같은 지표 초안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국가·지자체에서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 사용하는 평가지표는 기본적으로 조직 역량, 전문성, 사업 기획 및 수행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2026년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또한 진입 단계에서는 문화예술 콘텐츠의 '실현 가능성과 교육적 구조화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예술 활동 지원사업 평가).

〈표 Ⅵ-2〉 초기 진입 단계 교육기관 선정 지표 초안

구분	주요 내용	배점
사업 이해도 및 기획 적정성	-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정책 취지 및 목표 이해도 10점 - 교육 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획의 적정성 10점 - 기존 강의형 교육과의 차별성 및 사업 목적 부합성 5점	25
문화예술 콘텐츠의 창의성 및 전문성	- 문화예술 요소와 교육 목표 간 연계성 10점 - 교육 대상 특성 고려 여부 10점 - 도입 전개 정리 등 교육 흐름의 체계성 5점	25
기본 운영 역량	- 기획 운영 행정 역할 분담의 명확성 10점 - 문화예술 또는 교육 사업 수행 경험 8점 - 정산 보고 등 행정 처리 수행 가능성 6점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구성 여부 6점	30
수행 준비도	- 사업 일정의 실행 가능성 8점 - 교육횟수 방식 인력 투입계획 7점 - 운영상 문제 인식 및 대응 계획 5점	20

(2) 성장 단계(확장 및 안정화) 기관 평가

성장 단계(확장 및 안정화)는 사업 중에 새롭게 진입하는 단계가 아니라, 과거 참여 이력과 성과 평가 결과가 누적된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성장 단계 평가는 해당 연도의 사업수행 결과뿐만 아니라, 직전 연도 또는 다년도 누적 성과를 함께 반영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또는 과거 참여 시 실시한 성과 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기관을 성장 단계 대상 기관으로 사전 분류한 후, 해당 연도에는 성장 단계에 적합한 성과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단기 평가 기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성과의 연속성과 축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성장 단계 기관 평가의 적용 시점은 사업 중반 및 종료 시점에 실시하며 평가 목적은 교육 성과의 질과 운영 고도화 수준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 단계에서 교육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 지표나 전문가 의견에 기초해 아래와 같은 지표 초안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문화예술 관련 지원 사업 평가표에서도 기관의 사업 목적 이해, 조직체계/운영 역량, 프로그램 계획과 측정 계획, 문화예술 활동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2026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장애인복지관 평가 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성과평가 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Ⅵ-3〉 성장 단계 교육기관 평가 지표 초안

구분	주요 내용	배점
교육 효과성	- 계획 대비 교육 성과 달성 수준 10점 - 참여자 만족도 및 인식 변화 결과 10점 - 대상 맞춤 전달 방식과 참여 유도 수준 10점 -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정책 취지 및 목표 이해도 10점 - 교육 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획의 적정성 10점 - 기존 강의형 교육과의 차별성 및 사업 목적 부합성 5점	30
교육 콘텐츠 완성도	- 교육 내용의 논리성과 완결성 8점 - 문화예술 요소의 인식 개선 기여도 8점 - 타 대상 적용 가능성 4점	20
운영 성과	- 일정 준수 및 운영 관리 수준 8점 - 행정 처리 정확성 및 투명성 6점 - 모니터링 피드백 결과 반영 여부 6점	20
성과 발전 가능성	- 성과 사례의 구체성 10점 - 성과 분석 및 개선 시도 10점 - 향후 프로그램 개선 계획 10점	30

(3) 자립 단계(고도화) 교육기관 운영

자립 단계 역시 사업 기간 내에서 새롭게 도달하는 단계라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 우수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한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지정 단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립 단계 적용 대상은 최근 다년도에 걸쳐 성장 단계 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달성하고, 공모 외 외부 수요 확보 실적이 확인된 기관으로 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립 단계 평가는 해당 연도의 사업 결과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근 다년도 성과 자료와 외부 연계 실적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이와 같이 자립 단계는 단기 사업과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 지정 체계로 설정하고, 지정 유효기간을 두어 정기적으로 재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성과 중심 운영 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핵심 장치

성과에 의한 성장 모델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 교육기관별 성과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도별 평가 결과와 주요 성과를 누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년도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의 단계 분류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공모 단계에서부터 교육기관을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하기보다, 기존 참여 기관과 신규 기관을 구분하여 적용 지표와 기대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단계별 적용 결과를 차년도 공모 구조와 명확히 연계하여, 진입 단계 기관은 기본 수행 여부 중심으로, 성장 단계 기관은 성과 중심으로, 자립 단계 기관은 지정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성과 중심 사업 구조에서는 진입 성장 자립 단계를 시간 순서의 연차 개념이 아닌, 성과 누적 수준에 따른 상태 단계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러한 방식은 평가 기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3) 교육 실시에 대한 모니터링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기관 모니터링은 교육 품질의 제고 및 사업의 표준화된 운영을 위해 수행하는 관리·평가 활동이다. 동 모니터링은 교육기관의 운영 적정성, 콘텐츠의 교육적 타당성, 장애 이해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교육기관이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기관의 보완·개선 계획 수립, 우수기관 발굴, 교육 콘텐츠 고도화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1) 체크리스트 방식 모니터링 지표 도입

현행 한국장애인개발원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모니터링 지표는 정량화된 점수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 모니터링 평가 체계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교육 효과를 모니터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량적 수치보다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체크리스트 방식은 평가 항목별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수행기관과 모니터링 담당자가 평가 기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점수 산정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각 항목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과 기대 수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정량화가 어려운 과정 중심 요소가 많다. 체크리스트 방식은 교육 기획의 적절성 장애 당사자 참여 여부 콘텐츠 표현의 적합성 현장 운영의 안정성 등 질적 요소를 충족 여부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어 문화예술 교육의 특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점수 중심 평가는 소수점 단위 점수 차이로 기관 간 서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방식은 기준 충족 여부에 초점을 두어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수행기관이 평가를 관리와 개선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협력적 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체크리스트는 미충족 항목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단순 총점 제시보다 항목별 보완 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향후 컨설팅과 보완 조치로 바로 연계할 수 있다. 이는 모니터링의 목적을 통제보다 역량 강화로 전환하

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중장기 지원 체계에서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준 충족 여부 중심의 관리가 적합하다. 체크리스트 방식은 단계별 필수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점검하는 데 용이하다.

(2) 체크리스트 방식 모니터링 지표

구체적인 교육기관 대상 모니터링 지표는 현행 한국장애인개발원 모니터링 지표(한국장애인개발원, 2025),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니터링 지표(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를 기초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에서 분석된 모니터링 추가 지표를 포함하여 제시할 수 있다(델파이조사 B지표: 7. 교육대상 중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를 고려한 접근성(음성해설/대체자료/자막) 대응 마련, 10. 피드백·모니터링 수집 및 관리 체계, 11. 사전·사후 조사 및 평가 분석/반영, 12. 보고-조치-재발 방지 체계, 13. 교육 대상 및 효과 등에 따른 비용의 적정성, 14. 예산 집행과 재정 관리의 투명성).

단, 1-2. 장애예술인 편의환경 확보 및 1-3. 공연장 동선 및 안정성에 대한 지표는 수행기관이 주도적으로 통제하거나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전 체크는 하되 수행기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지표는 의무교육기관의 물리적 접근성과 관련된 경우인지를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Ⅵ-4〉 체크리스트 모니터링 지표안 초안

구분	주요 내용
사전체크리스트	**1-1. 교육 준비 및 점검** - 무대, 음향, 조명 등 공연 설비가 사전 점검을 포함하여 적절히 준비되었는지 확인 **1-2. 장애예술인 편의환경 확보** - 대기실,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장애예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적절히 제공되었는지 여부 **1-3. 공연장 동선 및 안정성** - 진입로, 공연장까지의 동선이 안전하고 명확하게 확보되었는지 여부 **추가: 1-4. 장애 교육대상자 접근성** - 교육 대상자 중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를 고려한 접근성(음성해설/대체자료/자막) 대응 마련
문화예술 특화형/ 공연·전시·체험 교육 내용	**2-1. 문화예술 교육 시간의 적정성** - 프로그램 시간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 * 유아(20분), 초등학생(40분), 중학생(45분), 고등학생(50분), 대학생·성인(60분) 기준 **2-2. 공연의 예술성 및 창의성** -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의 예술적 완성도와 창의적 구성 여부 **2-3. 장애인식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정도** - 공연의 메시지가 관람자의 인식변화나 공감 반응을 유도했는지 여부 **추가: 2-4. 사전·사후 조사 및 평가 분석/반영 체계** - 만족도 및 피드백 수집/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활용하는지 여부

〈표 Ⅵ-4〉 체크리스트 모니터링 지표안 초안(계속)

구분	주요 내용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	**추가: 3-1.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 예산 지출 관련 근거 서류를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추가: 3-2. 적절한 예산 사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집행 적정성 여부 **추가: 3-3.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 초기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여부 및 과다한 낭비(행사)성 경비 지출 여부
사업집행 적정성	**추가: 4-1.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집행** - 초기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추가: 4-2. 사업계획 변경 집행여부** - 계획한 사업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4) 사후 관리 및 운영

자립 단계 이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중단하며 기관이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후 관리 차원에서 기관의 중장기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지정과 비재정적 운영의 두가지 핵심적인 영역에서 기관 관리가 필요하다.

단, 여기서 제안한 사후 관리 방법으로 제시한 기관 지정이나 비재정적 관리는 자립 단계를 거친 모든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수행기관의 특성이나 성과에 따라 개별적,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즉, 기관 지정 여부는 개별 수행기관이 결정해야하며 비재정 운영 역시 수행기관의 과거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는 성장 단계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비재정적 운영 방식을 적용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질적인 적용 기준은 개별 기관의 성과,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기관 지정

본 연구의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행 단기 공모 사업의 개선점으로 '사업 안착을 위한 밑그림의 재구성'과 '사업의 고유성을 강화할 방안으로 중장기적인 지원'을 제안하였다(전문가 인터뷰 참여자 1, 참여자 3, 참여자 10 등). 단기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적 도약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공모 중심의 단기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정을 통해 검증된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을 확산하고, 개발원은 품질 관리와 정책 연계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공모 방식으로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현행 구조는 사업의 공정성과 신규 진입 기회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나,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지속성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교육 품질의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모 선정 여부가 매년 변동됨에 따라, 교육 콘텐츠의 장기적 고도화보다는 단년도 성과 중심의 기획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축적된 노하우와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수행기관의 불안정한 운영 구조가 지속될 수 있다. 매년 선정 여부가 불확실한 구조에서는 전문 인력의 상시 고용, 장기적 콘텐츠 투자, 조직 안정화가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문화예술형 교육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완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셋째, 공모 대응 중심의 형식적 기획이 고착화될 수 있다. 교육기관이 실제 교육 수요나 현장 요구보다는 공모 평가 기준에 맞춘 단기적 사업 설계에 집중하게 되어, 창의적·실험적 교육 모델 개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넷째, 반복 선정 기관과 신규 기관 간의 구조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부 역량 있는 기관의 반복 선정 또는 반대로 경험 부족 기관의 단기 진입이 반복되면서, 사업의 형평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① 교육기관 지정 평가 지표

지정 제도는 기관의 일시적 사업계획이 아닌, 교육 철학, 콘텐츠 수준, 운영 역량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품질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지정을 받은 기관은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어, 콘텐츠 고도화와 전문 인력 육성 등 중장기적 투자와 성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정 기관은 개발원의 직접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 학교, 민간 영역에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어, 자립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교육기관 지정 평가는 단년도 사업 수행 능력이 아닌,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구조적 역량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지정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는 현행 한국장애인개발원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공모 심사기준(한국장애인개발원, 2025),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 기관 지정 지표(보건복지부, 20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화예술형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심사기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를 참고하여 핵심 지표인 사업 적합성, 기관의 기본적인 역량, 예산 사용의 적정성 등과 관련된 지표를 설계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된 지표를 추가하여 지정 지표를 설계하였다(델파이조사 A 지표: 4. 물리/정보/의사소통 접근성 체크·보완계획, 5. 안전/민원/중단 시 공연 안전 대처 능력, 8. 원저작물·이미지·음원 사용 적법성, 13. 교육 피드백 체계 보유/만족도, 피드백 수집).

〈표 Ⅵ-5〉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기관 지정 지표 초안

구분	주요 내용	배점
사업목적의 적합성	- 사업 목적에 부합성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장비/시설/예산 등의 구비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도	20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	-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경험(실적) - 기관의 사업수행의지 및 문화예술 강사 등의 전문성 - 추가: 원저작물·이미지·음원 사용 적법성	30
사업수행역량 및 실행 능력	- 프로그램 운영 가능여부와 프로그램의 예술성 -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 프로그램 신청기관 모집 및 교육운영 계획 적절여부 - 추가: 물리/정보/의사소통 접근성 체크·보완계획 - 추가: 안전/민원/중단 시 공연 안전 대처 능력	30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사업운영을 통한 성과 대외적 활용 능력(홍보 등) - 사업의 완성도와 추후 발전 가능성(환류) - 추가: 교육 피드백 체계 보유(만족도, 피드백 수집)	20

②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인증 및 교육 방안

현행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 체계는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단일 인증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연극 음악 미술 무용 영상 문학 등 다양한 장르와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단일 교육과정만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단계적인 강사 인증 및 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은 표준화보다는 역량 중심 다원화된 체계를 지향한다. 장애 인권과 장애 이해에 대한 공통 기반을 확보하되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인증 과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가. 공통 기본교육과 분야별 심화교육의 이원화

공통 기본교육 과정은 모든 문화예술 특화형 강사에게 필수로 이수하도록 한다. 해당 과정에는 장애 개념과 장애 인권 장애 관련 법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적과 원칙 교육 윤리와 강사 책무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분야별 심화교육 과정은 연극 음악 미술 무용 영상 등 문화예술 장르별로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는 각 분야의 표현 방식이 장애인식개선 메시지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사례 중심으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로 교육하며 교육 콘텐츠의 적절성과 수용성에 대한 검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특화형 강사 인증은 단일 시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역량 기반 평가 방식으로 운영한다. 주요 평가는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능력 장애인식개선 메시지 전달력 교육 대상자와의 소통 능력 장애 당사자 관점 반영 여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포트폴리오 제출 시연 평가 동료 및 전문가 평가를 병행하는 다면 평가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나. 유연한 인증 방식 도입

기존 문화예술 분야 경력과 성과를 일부 인정하는 방식의 유연한 인증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경력 수상 실적 공공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기본교육 이수 후 간소화된 심화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우수한 문화예술 인력을 장애인식개선교육 영역으로 유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비재정적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에서 자립 단계 이후의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은 사업의 순환성과 신규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다만, 단순한 지원 종료가 아닌 비재정적·구조적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 기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민간과 공공 영역 전반에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직접 지원 종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비재정적 지원과 성과 모니터링을 병행함으로써,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은 공공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적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단기 사업 성과를 넘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적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된다.

비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성장 지원 체계란, 직접적인 사업비 교부를 제외하고 교육기관의 자립 역량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의미한다. 과거 선정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비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성장 지원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 재정 의존도를 완화하고, 교육기관의 자율적 기획과 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즉 교육 기획, 콘텐츠 구성, 접근성 설계, 인권 기반 교육 방법론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관이 공모 사업 없이도 자체적으로 교육 품질을 유지·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수요 연계 강화

과거 선정 기관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 수요처 발굴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 학교 교육과정,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형성하도록 한다. 개발원 누리집, 통합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② 공공 브랜드 활용 및 홍보 강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 수행 경험을 공신력 있는 이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 확인 및 홍보 강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확인서, 우수 수행기관 사례집 발간, 성과 공유회, 정책 포럼 등을 통해 기관의 대외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이 자체 영업 및 협력 과정에서 공공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전문 컨설팅 및 역량 강화

과거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조직 운영, 재원 다각화, 저작권 관리, 계약 실무 등 실질적인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단체, 사회적기업, 장애인단체 등 유사 조직의 성장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기반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이 단순 수행기관을 넘어 자립 가능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동 기획, 합동 공연·전시, 지역 간 순회 교육 등 협력 모델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확산 효과를 제고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 연계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④ 교육 콘텐츠 고도화 및 인증

교육 콘텐츠 고도화 및 품질 인증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적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가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를 통해 수행기관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교육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우수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에 대해 개발원 차원의 품질 인증 또는 권장 모델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자문, 시범 평가, 개선 피드백 등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간·공공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 콘텐츠로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인증 콘텐츠는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마련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가. 1단계: 품질 기준 및 인증 체계 구축

장애인 권리 기반성, 문화예술 활용 적절성, 교육 효과성, 접근성 확보 수준 등을 핵심 요소로 한 표준 품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의형 교육과 차별화된 문화예술형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량·정성 지표를 병행 구성한다. 인증은 단일 등급이 아닌 단계형 인증 체계로 운영하여 기관의 성장 수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 2단계: 콘텐츠 진단 및 전문가 심사

인증 신청 콘텐츠에 대해 장애학, 문화예술, 교육학, 접근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서류 심사, 시연 평가, 현장 또는 영상 기반 평가를 병행하여 콘텐츠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다. 3단계: 개선 컨설팅 및 고도화 지원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접근성 요소 보완, 메시지 명확화, 참여형 요소 강화 등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 4단계: 품질 인증 부여 및 활용 연계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해 개발원 명의의 품질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인증 콘텐츠는 공공기관, 학교, 기업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추천 모델로 연계·홍보한다.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재인증을 통해 품질 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인증의 최우선 기준은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혜적·동정적 관점 배제, 장애 유형의 다양성과 현실 반영 여부는 핵심 품질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교안 심의 기준에 의하면 교육 내용의 인권 기반성, 차별적 표현 배제 여부, 장애 유형의 균형적 반영 여부를 필수 검토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교안 심의 기준).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지표에서도 장애인 관련 교육 자료에서 인권 기반 접근과 다양성 반영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지표).

문화예술 특화형 콘텐츠는 기존 강의형 교육과의 차별성을 통해 학습자의 감수성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예술적 창의성 뿐만 아니라 콘텐츠 구성의 완성도와 교육 목적과의 조화 여부를 인증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심의 기준,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지원 기준).

콘텐츠 인증은 단순한 표현 방식 검증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인식 변화와 학습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이해도, 몰입도, 핵심 메시지 전달력은 인증 지표의 중심 요소가 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프로그램 평가 체계). 그리고 공공 인증 콘텐츠는 일회성 활용이 아닌 다양한 교육 현장으로의 확산과 지속적 개선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장 적용 가능성과 업데이트 체계 구축 여부를 별도 영역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보건복지부 사회복지 교육 콘텐츠 관리 지침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표 Ⅵ-6〉 교육 콘텐츠 품질 인증 지표 초안

구분	주요 내용	배점
장애인식 개선 적절성	-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메시지의 명확성 10점 - 시혜적·동정적 접근 배제 여부 5점 - 장애 유형 다양성 및 현실 반영 수준 5점	20
문화예술 활용의 창의성 및 완성도	- 문화예술 요소 활용의 창의성 및 독창성 10점 - 공연·전시·체험 등 콘텐츠 구성의 완성도 10점 - 예술성과 교육 목적 간의 조화 10점	30
교육 효과성 및 전달력	- 교육 대상자의 이해도 및 몰입도 제고 가능성 10점 - 참여형·체험형 구조 설계 수준 10점 - 교육 목표 및 핵심 메시지 전달의 명확성 10점	30
콘텐츠 운영 및 확산 가능성	- 다양한 교육 현장 적용 가능성 10점 - 콘텐츠 개선 및 업데이트 체계 구축 여부 10점	20

2.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장기 추진 과제

1)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홍보 강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교육 효과의 지속성, 감수성 향상, 장애 이해의 실질적 체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교육기관의 정보 접근성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충분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공공적 확산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해야 할 홍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공식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 운영 방식, 참여 장애 예술인의 구성, 교육 효과, 우수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교육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문화예술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교육 효과와 사례 중심의 콘텐츠를 통해 문화예술 특화형 장

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홍보를 위한 온라인 기반의 통합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수행기관 정보, 공연 영상 일부, 교육 신청 절차, 운영 지침 등을 포함한 통합 정보 페이지를 마련할 경우 교육기관의 수요 확대와 프로그램 선택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다. 스마트폰 기반 접근성을 강화하여 학교와 공공기관 담당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홍보와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및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교육이라는 특성상 정기적인 교육 수요가 존재하므로 문화예술 형 교육을 소개하는 설명회, 담당자 교육, 지역별 순회 홍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별 여건에 따라 공연형, 강연형, 혼합형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경우 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우수 수행기관과 참여 장애 예술인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교육 효과가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뷰 영상, 현장 스케치, 참여 학생 의견 등을 수집하여 홍보 영상 또는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수행기관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통합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행기관이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정책 홍보와 연계한 대국민 인식 확산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공공적 의미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을 대국민 캠페인, 언론 보도, 공공 광고 등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정책적 관심과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홍보 전략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사회적 인지도 향상과 교육기관 수요 확대가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질적 향상과 장애 예술인의 활동 기반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량적 수치 중심의 수행기관 실적 평가 개선

본 연구에 참여한 다수 전문가들의 인터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정해진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교육콘텐츠 '공연'과 '교육 '실적'과 '효과'의 불일치'를 제시하여 효과성 평가의 개선을 요구하였다(전문가 인터뷰 참여자 1, 참여자 4 등).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평가와 관련해 교육 참여자 수, 교육 횟수 등과 같이 단순 정량적 수치에 중점을두어 평가하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다. 즉 단순 정량적 수치 만으로는 교육의 질이나 효과 등을 적절히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교육 대상, 교육 방법, 교육 내

용 등에 따른 가중치 적용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 실적에 대한 가중치 적용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교육 대상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학교 등 법정 의무교육 기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하여 추가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무성이 높은 교육 실적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교육을 평가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1.2배, 학교·교육기관 1.1배, 일반 민간기관 1.0배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교육 방식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면 참여형 교육과 같이 교육 효과가 높은 방식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온라인 강의 중심의 교육은 기본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구성한다. 혼합형 교육은 대면과 온라인의 장점을 고려하여 중간 수준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대면 참여형(워크숍, 체험형) 1.3배, 혼합형(온라인+대면) 1.1배, 온라인 강의형 1.0배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교육의 난이도와 심화 정도를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단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기본 교육에는 기본 가중치를 적용하고, 장애인 실생활 연계 교육이나 장애 유형별 전문 교육 등 심화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향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교육 내용의 전문성과 실제적 활용도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 인식개선교육 1.0배, 사례기반 실생활 연계 교육 1.2배, 특수분야 전문교육(보조공학, 장애유형 특성 등) 1.3배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 인식개선교육의 목적은 장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고, 일상 속 편견과 차별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내용 예시로는 장애예술인의 공연 관람 중심 교육(시각장애인 연주자의 음악 공연, 지체장애 무용수의 창작 무용 등,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공연 후 장애예술인의 삶과 예술 활동에 대한 간단한 토크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함), 문화예술 작품을 활용한 장애 이해 강의(장애를 주제로 한 연극, 영화, 미술 작품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일상과 감정을 소개하고,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문제임을 전달함), 감성 중심 체험형 프로그램(간단한 리듬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보다는 공통된 감정과 표현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 교육을 실시함) 등이 있다.

사례기반 실생활 연계 교육의 목적은 장애인의 실제 생활 경험과 사회 참여 맥락을 이해하고, 일상 및 조직 내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내용 예시로는 장애예술인의 실제 삶 사례를 반영한 공연형 교육(장애예술인이 자신의 학업, 직업, 이동, 문화생활 경험을 이야기 형식의 공연이나 스토리텔링 연극으로 구성하여 관객이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함), 문화예술 기반 사례 토론 프로그램(장애를 주제로 한 연극이나 뮤지컬 관람 후, 직장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참여자가 자신의 생활 속 실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함), 일상 환경과 연결된 예술 워크숍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장애예술인과 함께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의 전시 기획, 공연 관람 동선 체험 등 실생활과 연결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접근성과 배려의 중요성을 체감하도록 구성함) 등이 있다.

특수분야 전문교육의 목적은 장애 유형별 특성과 지원 기술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 및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내용 예시로는 보조공학과 문화예술의 결합 교육(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촉각 악보, 자막 및 수어 통역 기술이 적용된 공연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 보조공학 기기를 활용한 예술 창작 과정을 시연함),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접근성 전문 교육(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동 기반 음악 체험, 발달장애인을 위한 단계화된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교육 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룸) 등이 있다.

넷째, 지역적 및 환경적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도서 산간 지역이나 접근성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혹은 소규모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한 경우 추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교육 접근성 향상 노력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도서·산간 지역 교육 → 1.3배, 소규모 기관(사회복지시설·농어촌 학교 등) 교육 → 1.1배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 평가는 교육 실적의 양적 수준뿐만 아니라 교육 방식의 효과성, 교육 내용의 전문성, 지역적 특성, 프로그램의 질과 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수행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기타

1) 의무교육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필요

본 연구의 전문가 및 심층인터뷰 결과를 통해 의무교육기관들의 '편의시설의 부재를 감당하기'와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전문가 인터뷰 참여자 16, 참여자 17 등).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 중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가 결여되어 있는 학교가 다수임을 지적하였다. 이는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기본적인 물리적 환경도 마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은 면적에 상관없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2015년 7월 29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후로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학교는 의무 인증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해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의 편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법률의 부칙 2조(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

시설과 이 법 시행 당시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대상시설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8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하고 있다. 즉 이 법이 공포된 일자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시공중이거나 변경중이었던 모든 대상시설 또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인 학교는 적합한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어야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 편의가 부족한 학교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초등학교 6,192개교 중 인증을 받은 학교수는 약 318개로 전체 5.14%에 불과하다(이정수, 오영숙, 은동신, 2019). 이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나 현황을 조사하여 교육기관의 장애인 편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 인증을 실시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편의 시설이 미비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적합한 편의를 갖출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2) 의무교육기관 종사자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본 연구의 전문가 및 심층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의 담당자 혹은 종사자 중 장애인식개선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 수행기관에 공연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요구하거나 장애 예술인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추가 보조인력의 학교 입장을 꺼려하는 등의 부정적인 장애인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부정적인 장애 인식을 갖게 되는 주요 이유로는 장애 관련 교육 경험 부족, 대학 및 교사 양성과정에서 장애 이해 교육 비중이 매우 낮음, 실제 장애학생 지도 경험이 부족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 형성 등이 있다. 또한 부정적 경험의 일반화에 의해 일부 장애학생의 어려운 행동 사례를 전체 장애학생으로 일반화하기도 한다(Smart, 2017).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의 부정적인 장애인식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장애 예술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서류나 각서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 장애인 차별 가능성이 높은 실제 사례 등을 함께 고지하여 교육기관이 장애 차별적인 요구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참고문헌

강용주. (2008). *델파이 기법의 이해와 적용사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예성, 하웅용. (2021). 지역사회 주민들의 발달장애인 접촉경험과 인식 연구. *발달장애연구, 25*(2), 137-159.

김인숙. (2024). 질적연구의 방법과 분석. 집문당.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25). *2025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부천시 문화정책과. (2025). *2025년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 집행 안내.* 부천시.

백영은, 유은주. (202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과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정수, 오영숙, 은동신. (2019). 초등학교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실태분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7). 26-35.

이종남, 한상미. (2018). 장애인식교육의 효과성 연구. *재활복지. 22*(2), 103-126.

이준우, 임승희, 임수정, 박종미, 이진영, 이문오, 서성제. (2024).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진수. (2008).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청소년의 인식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이한우, 강인언. (2006).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3), 137-169.

이현용. (2021). 장애 초등학생과 비장애 초등학생간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례 연구: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효과성 검증. *인문사회21. 12*(3), 901-916.

정숙희. (2020).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수강이 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교육, 50,* 1-27.

정혜경. (2016).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20*(1), 69-89.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선녀 외). (2024).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특별과정) - 참가자 모집안내.* (출처: https://www.koddi.or.kr/bbs/notice01_view.jsp?brdNum=7422075&brdTp=&searchParamUrl=)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 *2025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제7기 전문강사 양성교육(전문과정) - 교육생 모집안내.* (출처 : https://www.koddi.or.kr/bbs/notice01_view.jsp?brdNum=7425679&brdTp=NOT01&searchParamUrl=searchType%3D%26amp%3BpageSize%3D20%26amp%3BbrdType%3DNOT%26amp%3BbrdTp%3DNOT01%26amp%3Bpage%3D4%26amp%3BsearchKeyword%3D%26amp%3BselBr

dProgSt%3D, 2025.11.1. 인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 *2025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사업 위탁계획* (출처 : https://edu.kead.or.kr/aisd/cscntr/board/BbsDtl.do, 2025.11.1. 인출)
Ford Foundation (2025). *Disability Futures Fellows*. https://www.fordfoundation.org/
Honeycomb Project (2025). *Tres Fridas project.* https://www.revecatorres.com/
Lawshe, C. H. (1975). A quanto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hycholo gy, 28*, 563-575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25). *Accessibility for the art activities*.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RQS Productions Inc. (2025). *8 disabilities awareness art projects for kids. https://artp rojectsforkids.org/*
Smart, J. (2017). *Disability, individual and the society*. Pro-ed.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25). *SSI spotlight on income from the arts.* Social Sec urity Administration.
Vermont Statewide Independent Living Council (2025). *Disability in the arts.* https://ve rmontsilc.org/education/

(관련 자료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n.d.) https://www.law.go.kr
사단법인 꿈틔움 홈페이지 (n.d.) https://www.phd4u.co.kr
영국예술위원회 홈페이지 - 접근성 지원 안내 (출처 : https://www.artscouncil.org.uk/access-su pport/access-support-personal-access-costs)
세종시교육청 블로그 '세종교육 온소식' (n.d.) https://blog.naver.com/sje_go_kr/223580628127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n.d.) https://www.able-edu.or.kr/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 2025년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교육기관 소개 (출처 : https://www.able-edu.or.kr)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포털 (n.d.) https://edu.kead.or.kr/aisd/
하트-하트재단 홈페이지 (n.d.) https://www.heart-heart.org/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모 안내 (출처 : https://www.koddi.or.kr)

부록 1 포커스 그룹인터뷰 및 심층인터뷰 질문지

포커스그룹인터뷰 질문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기관 관계자(기관장, 담당자)/교육 강사
포커스그룹인터뷰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에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포커스그룹인터뷰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 관계자/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를 파악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반드시 보장됩니다. 모든 질문에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책임 : 서원선 부연구위원

<조사문의>

□ 서원선 책임연구원 (　　)

□ 고은정 연구교수 (　　)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본인은 본 조사가 연구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였고, 조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비밀보장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본인이 응답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엄격하게 관리되며, 익명화된 연구자료는 연구목적으로 제3자(조사기관)에게 제공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연구 종료 후 3년까지 보관되며, 보관기관이 지난 즉시 파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4. 사전 조사 : 조사 진행에 관한 동의 및 인터뷰 참여자/소속 기관 관련 정보

본 조사에 대한 안내 및 인터뷰 참여자/소속 기관에 관한 기본정보를 하단의 온라인 설문지에 기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정보는 FGI 결과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조사	조사 바로 가기 (링크 주소: https://_____)

5. FGI 주요 질문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 개선 사업 참여 경험

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사업 운영

1) 귀 기관은 주로 어떠한 유형의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공연, 전시 등)을 실시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유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귀 기관에서 교육 시 사용하는 교구/소품 등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교구/소품 등을 준비하십니까?

3)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 대상 기관은 어떻게 확보/연락하십니까?

4)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 강사는 어떻게 확보/섭외/운영 하십니까?

5)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에서 경험하는 문제점/어려움은 무엇입니까?

6)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점/지원은 무엇입니까?

7)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8) 기관에서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표/조사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또는 무엇이 본 교육(사업)의 효과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 수강생의 측면, 사업 참여 장애 당사자의 측면 등

나. 교육기관 선정 및 모니터링 관련

1)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의 선정 절차/지표/방법에 대해 문제점/개선점 등이 있습니까?

2)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의 모니터링 평가 절차/지표/방법에 대해 문제점/개선점 등이 있습니까?

3)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의 선정 및 모니터링 평가 절차/지표/방법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습니까?

4) 중증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자립/직업 확보를 위해 필요한 평가 지표는 무엇입니까?

5)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의 선정 및 모니터링 평가 절차/지표/방법에 고려해야 할 기타 사항이 있습니까?(예: 인센티브 등)

다.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

1)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2)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확대를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은 무엇입니까?

3) 기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심층인터뷰 질문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일대일 심층면접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에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심층면접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 참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은 향후 심층면접 인터뷰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반드시 보장됩니다. 모든 질문에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책임 : 서원선 부연구위원

<조사문의>
□ 서원선 책임연구원
□ 고은정 연구교수

3. 사전 조사(공통) : 조사 진행에 관한 동의 및 인터뷰 참여자 관련 정보

본 조사에 대한 안내 및 인터뷰 참여자/소속 기관에 관한 기본정보를 하단의 온라인 설문지에 기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정보는 인터뷰 결과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조사	조사 바로 가기 (링크 주소: https://_____)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 인터뷰 주요 질문

가. 비장애 참여자

구분	세부 질문
여는 질문	● 귀 기관에서 일을 시작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업 진행 관련	● 귀 기관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문화예술 특화형 교육(공연, 전시 등)을 실시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유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에서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에서 경험하는 문제점/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또는 보람되거나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사업 선정 과정, 모니터링, 결과 보고 등의 절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좋을지 의견을 주세요.
사업 효과 관련	● 본 사업을 통하여 바뀌었으면 하는 장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잘못된 이해가 있나요? ● 사업에 참여하면서 장애-장애인에 대하여 다르게 이해하게 된 점이 있나요? ● 문화예술을 접목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 이 사업이 참여 장애인의 자립(경제적, 관계 형성 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의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장애-비장애 참여자)로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요?
기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나. 장애인 당사자 참여자

구분	세부 질문
여는 질문 (일상)	● 요즘 일상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나요? ●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로 누구와 상의하나요?
사업 진행 관련	● 귀 기관에서 일을 시작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이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현재 하는 일과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해주세요. ●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에서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 사업에 참여하면서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떠한 지원을 하나요? ● 공연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에 나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충분히 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문화예술 특화형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억에 남는 날을 이야기해 주세요. – 장애인식개선 교육 신청 과정, 준비하는 날과 교육하러 가는 날 등 ● 사업에 참여하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 사업에 참여하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보람되거나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 효과 관련	● 본 사업을 통하여 바뀌었으면 하는 장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잘못된 이해가 있나요? ● 문화예술을 접목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질문이나 반응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나의 일상에서 바뀐 부분이 있나요? ●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소득 활동, 관계 형성 등에 도움이 되나요? ● 이 사업에 강사로 계속 참여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연습이나 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나요? 어떤 부분(사업, 제도 등)이 바뀌면 나아질까요? ● 문화예술인으로, 그리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로서 나와 동료들이 계속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기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부록 2 설문조사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 요청기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에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요청한 기관(혹은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파악하여 교육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반드시 보장됩니다. 모든 질문에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책임 : 서원선 부연구위원

〈조사문의〉
□ 서원선 책임연구원(
□ 임수정 교수(

〈조사 참여에 대한 답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1만원에 해당하는 모바일 쿠폰을 제공합니다.
설문 마지막에 본인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본인은 본 조사가 연구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였고, 조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비밀보장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본인이 응답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엄격하게 관리되며, 익명화된 연구자료는 연구목적으로 제3자(조사기관)에게 제공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연구 종료 후 3년까지 보관되며, 보관기관이 지난 즉시 파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A. 응답자 일반 사항

1. 귀 기관(혹은 학교) 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2. 소속 기관(혹은 학교) 유형

① A유형 (국가기관 등) **(2-1문항으로 이동)**
② B유형 (학교) **(2-2문항으로 이동)**
③ C유형 (어린이집, 유치원) **(2-3문항으로 이동)**

2-1. A유형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 ④ 지방공사 및 공단 ⑤ 특수법인

2-2. B유형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각종학교 ⑥ 대학교

2-3. C유형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3. 응답자 직급

① 공공기관/일반회사/학교 직원 (교직원 및 공무원 포함)
② 사업주, 기관장
③ 기타 ( )

4. 응답자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5. 응답자 연령

만 ( )세

6. 응답자 경력

기관(학교) 근무 경력을 작성해주세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업무 담당 경력이 아닙니다.

① 1년 미만 **(6-1문항으로 이동)**
② 1년 이상 **(6-2문항으로 이동)**

6-1. 응답자 경력 ( ) 개월

기관(학교) 근무 경력을 작성해주세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업무 담당 경력이 아닙니다.

( ) 개월

6-2. 응답자 경력 ( ) 년

기관(학교) 근무 경력을 작성해주세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업무 담당 경력이 아닙니다.

( ) 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7. 귀 기관(혹은 학교)이 지금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한 총 횟수
(문화예술형 및 비문화예술형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무료 교육지원을 받았거나 자체적으로 예산을 활용 한 경우 각각의 횟수를 작성해주세요)

문화예술형: 무료 교육 (회), **유료** 교육 (회)

비문화예술형: 무료 교육 (회), **유료** 교육 (회)

B.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성과

1. 다음은 귀하의 기관(혹은 학교)에서 **올해 실시한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영 과정은 '계획, 투입, 실행'을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의견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계획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기관(혹은 학교)**의 운영목적 또는 교육목적과 관련이 깊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우리 기관(혹은 학교)** 교육 참여자/수강생의 수준에 맞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고려하여 교육을 계획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교육을 계획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기관(혹은 학교)** 종사자/구성원 등 이해 관계자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을 교육 계획에 포함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투입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혹은 재정 지원)이 우리 기관(혹은 학교)에서 적절히 제공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에 장애인 공연출연자가 적절히 투입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에 공연출연자들 간에 협업이 적절히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을 실시하는 물리적 환경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실행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해 계획한 내용을 모두 달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효율적으로 예산(혹은 재정지원)을 집행/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혹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은 우리 기관(혹은 학교)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은 공연출연자의 높은 교육목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은 공연출연자의 뛰어난 교수능력(노래, 연주, 연기 등)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 참여자/수강생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 참여자/수강생에게 장애인식개선 활동 자체의 즐거움을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 참여자/수강생에게 장애인식 관련 학습효과를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귀하의 기관(혹은 학교)에서 **올해 실시한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영 성과는 프로그램의 '결과'와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결과	본 교육을 통해 계획에 명시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본 교육을 통해 교육 참여자/수강생의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본 교육은 교육 참여자/수강생의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봉사활동(혹은 학교외 활동)을 증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본 교육은 교육 참여자/수강생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감소에 기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본 교육은 교육을 실시한 공연출연자 및 교육 참여자/수강생 간 유대감을 향상시켰다.	①	②	③	④	⑤
영향	문화예술형 교육은 향후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본 교육은 교육 제공기관의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본 교육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본 교육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문화예술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본 교육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C.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만족도

3. 다음은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적과 의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화예술 분야 다양성 제고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확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공연출연자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리 기관(혹은 학교)의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에 대한 관심·지원 정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우리 기관(혹은 학교)의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운영을 위한 환경 준비 정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우리 기관(혹은 학교) 교육 수강생의 수준이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주제 및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교육 수강생들의 교육 참여 및 태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교육 수강생의 성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공연출연자가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준비한 기획안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공연출연자가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준비한 자료(교재·교구 등)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공연출연자가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시도한 교수방법(공연, 연극, 연주 등)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공연출연자가 실시한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결과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전반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귀 기관(혹은 학교)은 앞으로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시 실시할 계획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없음 매우 있음

4-1. 귀 기관(혹은 학교)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무료 교육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로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없음 매우 있음

D.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어려움

5. 귀 기관(혹은 학교)이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음의 문항에 응답해주세요. 어려움이 없는 경우 '전혀 아니다'에 응답해주세요.

	운영의 어려움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1	기관(혹은 학교)의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 계획 수립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2	기관(혹은 학교) 실무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경험 부족	①	②	③	④	⑤
3	교육 참여자/수강생의 관심 저조	①	②	③	④	⑤
4	교육 장소 마련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예술형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제공기관을 찾는데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6	기관(혹은 학교)의 행사 또는 학사일정과의 시기 조율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E. 의견 조사

6.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일반적인(비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비하여 긍정적이거니 아쉬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F. 답례품

〈조사 참여에 대한 답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1만원에 해당하는 모바일 쿠폰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쿠폰은 25년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1. 연락처 (휴대폰번호)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예: 01012341234)
( )

2. 연락처 (휴대폰번호) 확인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예: 01012341234)
( )

1차 델파이 조사 응답 방법

1. 본 설문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지표 및 수행 교육기관 운영 관리·감독 지표 개발을 위한 1차 델파이 조사입니다.
2. 각 문항(항목별 지표)의 필수성(예/아니오)과 타당도(5점 척도)에 ∨ 또는 ○를 표시해주세요.
   ※필수성: 해당 항목 또는 지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가
   ※타당도: 해당 항목 또는 지표가 평가지표로써 타당한가
3. 각 문항에 수정 의견이나 자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4. 연구를 위해 추가적인 의견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라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축소되거나 정교화될 예정입니다.

A.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지표

A. 수행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지표 *아래의 내용이 평가항목으로 타당한지 검토해주세요.			필수성		타당도					문항 관련 자유 의견
영역	항목	기준	예	아니오	매우 타당하지않다	타당하지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기관 역량 (조직·인력·실적)	최근 2년 실적	연간 프로그램 수								
		주요 대상군(영유아, 초·중·고 학생, 성인 등) 중심 운영 및 타 연령대 확장 가능성 여부								
		강의 재의뢰 건수/비율								
	협력 네트워크 및 교육 홍보	학교·문화기관·지자체와의 MOU/공동 운영 경험								
	전담 인력 확보	기획·운영·안전·행정 전담/대행 지정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역할 분장 명료성	전담 인력의 역할과 책임 문서화 및 공지(결원 시 대체 체계 포함)								
	강사진 전문성 (교육강사, 공연참여자(장애·비장애), 연출가 등)	"교육강사"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장애인 공연참여자"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비장애인 공연참여자"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공연 연출가"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장애당사자 강사 비율	강사 중 장애당사자 비율 목표·현황 명시								
		장애당사자 강사진의 주도적 참여 정도								
		장애당사자 강사진의 참여 역할 (교육강사, 공연참여자, 연출가, 콘텐츠 기획·제작)								
		강사 중 중증장애예술인 비율 목표·현황 명시								
		중증장애예술인의 주도적 참여 정도								
	기관장 의지·미션	미션/정책 공개·인권/포용 가치 명시								
	독립적 운영 (재정·책임성)	재정건전성(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자부담 능력								
운영 계획 (정합성·준비도)	사전 조사 체계	대상 분석·욕구 반영을 위한 사전 조사 체계 보유								
	접근성 계획	물리/정보/의사소통 접근성 체크·보완계획								

	순환적 모니터링 체계	관찰·피드백·개선 회의 주기·기록								
	리스크 관리	안전/민원/중단 시 공연 안전 대처 능력								
	데이터 관리 체계	근거 기반 기록 체계·자료 보전·접근 권한								
	성과확산 계획	공유회·오픈 공연·결과 공개 계획								
	사업운영	사업(공모) 프로그램 운영 계획(연간 횟수)								
프로그램·훈련 기반 (교안·기자재·윤리)	교안-목표의 일치성	세션별 목표-콘텐츠-활동 일치								
	표현 윤리 준수	비낙인·비시혜·다양성 존중 반영								
	저작권·초상권	원저작물·이미지·음원 사용 적법성								
	평가 도구 내장	사전/사후 문항·관찰 척도·만족도 설문 포함								
	기자재 적정성	무대·음향·시청각 장비 목록·상태								
	보조공학·편의	유형별 보조공학·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 확보								
	확산·전파	작품/성과의 2차 확산(전시/영상) 계획								
법정 필수 교육 내용 반영	필수 교육내용 반영 여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필수 교육내용 반영 방식	강의+콘텐츠 병행, 콘텐츠 내용 내 포함 여부								
*총평:										

B.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교육기관 관리·감독(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B. 수행 교육기관 관리·감독(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아래의 내용이 평가항목으로 타당한지 검토해주세요.				필수성		타당도					문항 관련 자유 의견
영역	항목		기준	예	아니오	매우 타당하지않다	타당하지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교육 현장 평가	현장	무대·음향·조명 점검	사전 점검표·리허설 이행								
		시청각 자료 가독성	자막 가독·명암 대비·폰트 크기								
		편의환경 확보	대기실·화장실·엘리베이터 접근성								
			확보 불가능 시 대처 방안 및 노력(의뢰기관 시설 이용, 대관 등)								
		동선 안전 표식	진입로~공연장 표식·안내 인력								

	효과성	목적 부합 구성	교안 구조가 목적 달성에 기여								
		장애인식개선 기여도	장애인식개선 메시지의 명확성								
		표현·연출 효과성	흥미/집중·호응 유도								
		대상 맞춤성	연령·이해 수준·사전 조사 반영								
		전달 방식 적정	속도·언어·음량·제스처								
		시간 적정성	연령대별 표준 시간 충족								
		교육 효과성	교육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변화 정도								
	문화예술	예술성·창의성	완성도·창의적 구성								
		인식개선 효과	공감·행동 의도 변화 관찰								
법정 필수 교육 내용 반영	필수 교육내용 반영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포함 여부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포함 여부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포함 여부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여부								
	반영 방식	강의 요약 + 연출 상징 병행								
	교육대상의 내용 체감도	메시지 이해·공감 확인								
	콘텐츠 내재화 비율	필수 교육내용의 '콘텐츠 자체 포함' ≥50% 여부								
	방식 분포 균형	강의/콘텐츠/병행의 불균형 방지								
운영 체계· 지속성	피드백 수집→조치(개선)	참여자/강사/대상 기관 피드백 반영·개선 여부 및 개선 정도(달성률: %)								
	사전·사후 모니터링 적용	사전·사후 조사 및 평가 분석/반영								
	접근성 이행률	수어·자막·쉬운글·대체자료 이행								
	강사 공정성	배치 적정·계약·보수 공정성·만족								
	사고·민원 관리	보고-조치-재발방지 체계								
	협업·확산	공유회·오픈 공연·지역연계 실적								
	교육효과 대비 비용 적정성	교육대상 및 효과 등에 따른 비용의 적정성								
	지속가능성·제도화	후속 연계·내부 제도화 문서·재원 다변화								
	성과보고 충실성	성과보고서 및 결과 발표의 충실성·투명성								
	사업결과의 활용 및 지속적 유지	성과물(교안·영상·콘텐츠 등)을 후속 활용 및 프로그램 유지 계획								

*총평:

○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2차 델파이 조사 응답 방법

1. 본 설문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지표 및 수행 교육기관 운영 관리·감독 지표 개발을 위한 2차 델파이 조사입니다.

   ※응답해주신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5명 패널 응답의 의견 수렴도와 합의도, 내용 타당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존 문항 중 수렴도 0.5 이하, 합의도 0.75 이상의 기준을 벗어나는 문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2. 각 문항(항목별 지표)의 적절성(예/아니오)과 동의 정도(5점 척도)에 ∨ 또는 ○를 표시해주세요.

   ※적절성: 해당 항목 또는 지표와 평가 방법(배점, 가산점) 등이 적절한가

   ※동의 정도: 평가지표로써 해당 항목 또는 지표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

3. 각 문항에 수정 의견이나 자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4. 연구를 위해 추가적인 의견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표 개발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A.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지표

A. 수행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지표 *아래의 내용이 평가항목으로 타당한지 검토해주세요.			필수성		타당도					문항 관련 자유 의견
평가 방식	영역	기준 세부 항목	예	아니오	매우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배점 평가	운영의 정합성	연간 프로그램 수								
		기획·운영·안전·행정 전담/대행 지정								
		전담 인력의 역할과 책임 문서화 및 공지(결원 시 대체 체계 포함)								
		"교육강사"의 경력·자격·연수 이수 현황(%)								

		대상 분석·욕구 반영을 위한 사전 조사 체계 보유								
		물리/정보/의사소통 접근성 체크·보완계획								
		관찰·피드백·개선 회의 주기·기록								
		안전/민원/중단 시 공연 안전 대처 능력								
		공유회·오픈 공연·결과 공개 계획								
		사업(공모) 프로그램 운영 계획(연간 횟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안·기자재·윤리성	세션별 목표-콘텐츠-활동 일치								
		비낙인·비시혜·다양성 존중 반영								
		원저작물·이미지·음원 사용 적법성								
	교육 콘텐츠 다양성 및 창의성	콘텐츠 기획·운영 전문 인력(전문 프로듀서 또는 제작진·스텝) 보유								
		보유 교육 콘텐츠의 창의성								
		보유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다양한 메시지의 내재화)								
	콘텐츠의 질적 향상·모니터링	교육 목표의 명료성(목표 및 성취기준 제시 가능성)								
		교육 피드백 체계 보유(만족도, 피드백 수집)								
가산점 적용	장애당사자 구성원 참여	제작진 또는 출연진 등의 장애당사자 참여 여부								
	법정 필수 교육내용 반영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강의+콘텐츠 병행, 콘텐츠 내용 내 포함 여부								
	모두를 위한 교육 콘텐츠 설계	메시지 제시/표현/참여 등 교육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다양한 메시지 전달 방식 보유 여부								
*총평:										

B.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 교육기관 관리·감독(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B. 수행 교육기관 관리·감독(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아래의 내용이 평가항목으로 타당한지 검토해주세요.			필수성		타당도					문항 관련 자유 의견
영역	항목	기준	예	아니오	매우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배점 평가	교육 현장 접근성 및 교육 효과성	안전 대응 및 비상시 동선 확보								
		자막 가독·명암 대비·폰트 크기								
		자체 공간 확보 불가능 시 대처 방안 및 노력(의뢰기관 시설 이용, 대관 등)								
		교안 구조가 목적 달성에 기여								
		장애인식개선 메시지의 명확성								

		흥미/집중·호응 유도(콘텐츠의 몰입성)								
		교육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변화 정도								
		콘텐츠의 완성도·창의적 구성								
		교육대상 중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를 고려한 접근성(음성해설/대체자료/자막) 대응 마련								
		관객(교육대상)과의 상호작용의 균형								
		현장 대응력(현장 수준과 분위기 대응)								
	운영 체계·지속 가능성	피드백·모니터링 수집 및 관리 체계								
		사전·사후 조사 및 평가 분석/반영								
		보고-조치-재발 방지 체계								
		교육 대상 및 효과 등에 따른 비용의 적정성								
		예산 집행과 재정 관리의 투명성								
		성과보고서 및 결과 발표의 충실성·투명성								
가산점 적용	법정 필수 교육내용 반영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포함 여부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포함 여부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포함 여부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여부								
	교육의 질적 향상	다양한 교육 대상을 고려한 다변 교육 방식(교육생의 참여/표현 등) 운영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참여자/강사/대상 기관 피드백 반영·개선 여부 및 개선 정도(달성률: %)								
*총평:										

○ **문화예술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발 행 일 : 2025년 12월
발 행 인 : 이경혜
발 행 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9567
http://www.koddi.or.kr
연구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집·인쇄 : (사)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ISBN 978-89-6921-797-4 (9333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전재·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